

발 간 등 록 번 호

#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평가 및 추진과제 발굴 연구

2018. 12





# 제 출 문

## 법무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평가 및 추진과제 발굴 연구」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년 12월

- 연구기간: 2018. 5. 17 ~ 2018. 12. 14
  - 연구책임자: 정명주 (부산대 경제통상대학 공공정책학부 교수)
  - 공동연구원: 최무현 (상지대 인문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  
황민철 (순천대 사회복지학부 조교수)
  - 연구보조원: 허거훈 (사단법인 Dream C.T. 다문화공동체 사무국장)

본 보고서는 법무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결과로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법무부의 공식적인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목 차

---

## I편 서론 ..... 1

제1장 연구목적 ..... 3

제2장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 4

## II편 2017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평가 ..... 5

제3장 시행계획과제의 성과 평가 ..... 7

제1절 2017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자체평가 개요 ..... 9

제2절 중앙행정기관 평가 결과 ..... 13

1. 정책목표별 평가 결과 ..... 13

2. 중앙행정기관별 평가 결과 ..... 14

3. 정책목표별 성과목표달성을 평가 결과 ..... 15

4. 중점과제별 평가 결과 ..... 16

제3절 지방자치단체 평가 결과 ..... 21

1. 정책목표별 평가 결과 ..... 21

2. 지자체별 평가 결과 ..... 23

3. 정책목표별 성과목표달성을 평가 결과 ..... 24

4. 과제유형별 평가 결과 ..... 25

5. 중점과제별 평가 결과 ..... 27

제4장 과제별 유사중복과제 평가 ..... 34

제1절 중복 유사성 논의의 기초 ..... 34

1. 정책 중복·유사성의 개념 ..... 34

2. 정책 중복·유사성의 효과 ..... 34

제2절 중복 유사성 평가를 .....	35
1. 정책의 중복·유사성의 식별 .....	35
2. 정책의 중복·유사성의 효과 분석 .....	36
제3절 2017년도 외국인정책 중복유사성 분석 .....	3
1. 2017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개요 .....	3
2. 2017년도 외국인정책의 중복유사성 분석 및 결과 .....	3
제5장 우수사례 발굴 .....	65
제1절 우수사례 및 모범사례 발굴의 정책적 의의 .....	65
제2절 외국인정책 관련 우수사례 발굴 .....	66
1. 중앙부처의 외국인정책 관련 우수사례 .....	66
2.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정책 관련 우수사례 .....	68
3. 지방자치단체 추천 외국인정책 우수사례 .....	70
III편 2019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추진 방향 정립 .....	3 8
제6장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특징 및 주요 추진 방향 .....	88
제1절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의의 .....	88
1. 외국인정책의 개념 .....	88
2.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법적 근거와 절차 .....	88
제2절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발전과정 .....	90
1.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	90
2.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	91
3.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	92
제7장 주요국 이민정책동향분석 및 이민정책환경 분석 .....	99
제1절 캐나다 .....	100
1. 역사적 접근 .....	100

2. 이민자 현황	100
3. 연방정부 이민정책 추진체계	102
4. 지역 거버넌스	103
제2절 호주	109
1. 역사적 접근	109
2. 이민자 현황	109
3. 연방정부 이민정책 추진체계	110
4. 지역 거버넌스	112
제3절 일본	118
1. 역사적 접근	118
2. 이민자 현황	119
3. 이민정책 추진체계	120
4. 지역 거버넌스	122
 제8장 정책대상집단의 수요 분석	126
제1절 실무자(외국인 정책 담당자) 수요 분석	127
1. 중앙부처 외국인정책 담당자 인식조사	127
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인식조사	136
제2절 이민자 수요 분석	144
1. 지역별 이민자 유형 및 특성	144
2. 이민자 유형별 정책 필요도	163
3. 지역별 매트릭스 분석: 이민자 유형+정책필요도	174
제3절 외국인정책 관련 민간단체 면접	185
1. 심층면접 개요	185
2. 심층면접의 결과	186
 제9장 2019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추진 방향	196
제1절 지역별 시책의 차별화	196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199
1. 서구 선진국 사례	199

2. 공무원 인식조사 결과 .....	202
제3절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단체의 거버넌스 확립 .....	205
<b>참고문헌 .....</b>	<b>210</b>
<b>부 록 .....</b>	<b>216</b>

# 표 목차

---

<표 3-1> 2013년~2017년 시행계획 과제 및 예산 규모	8
<표 3-2>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자체 평가표	9
<표 3-3> 정책목표별 목표달성을 평가 결과	11
<표 3-4> 정책목표별 성과목표달성을 평가 결과	21
<표 3-5> 정책목표별 목표달성을 평가 결과	31
<표 3-6> 중앙행정기관별 목표달성을 평가 결과	41
<표 3-7> 정책목표별 성과목표달성을 평가 결과	51
<표 3-8> [개방] 경제 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	6 1
<표 3-9> [통합] 대한민국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	7 1
<표 3-10> [인권] 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존중	9 1
<표 3-11> [안전]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구현	0 2
<표 3-12> [협력]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	1 2
<표 3-13> 정책목표별 평가 결과	2 2
<표 3-14> 지자체별 목표달성을 평가 결과	3 2
<표 3-15> 정책목표별 성과목표달성을 평가 결과	4 2
<표 3-16> 과제유형별 평가 결과	5 2
<표 3-17> [개방] 경제 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	7 2
<표 3-18> [통합] 대한민국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	9 2
<표 3-19> [인권] 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존중	0 3
<표 3-20> [안전]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구현	2 3
<표 3-21> [협력]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	3 3
<표 4-1>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 유사중복 관련 평가지표 및 판단기준	6 3
<표 4-2> 정책 중복·유사성 확인 절차	3
<표 4-3> 정책 중복·유사성에 대한 가치 판단 기준	3
<표 4-4> 「2017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전체	8 3
<표 4-5> 「2017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중앙부처와 지자체	8 3
<표 4-6> 「2017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상의 중앙행정기관 사업규모 및 예산 현황	9 3

<표 4-7> 「2017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상의 지방자치단체 사업규모 및 예산 현황	0 4
<표 4-8> 부처별 프로그램 개수: 중앙행정기관	4 5
<표 4-9> 분야별 프로그램 개수: 중앙행정기관	4 5
<표 4-10> 대상집단별 프로그램 개수: 중앙행정기관	5 5
<표 4-11> 프로그램별 분포: 중앙행정기관	6 5
<표 4-12> 부처별 프로그램별 분포: 중앙행정기관	8 5
<표 4-13> 분야별 예산 분포: 중앙행정기관	9 5
<표 4-14> 자치단체별 프로그램 개수: 지방자치단체	0 6
<표 4-15> 분야별 프로그램 개수: 지방자치단체	1 6
<표 4-16> 대상집단별 프로그램 개수: 지방자치단체	2 6
<표 4-17> 프로그램별 분포: 지방자치단체	3 6
<표 4-18> 지자체별 프로그램별 분포: 지방자치단체	4 6
<표 5-1> 중앙부처 외국인정책 관련 시책 우수사례	6 6
<표 5-2> 중앙부처 외국인정책 기반 시행계획 사업	7 6
<표 5-3> 지자체 외국인정책 관련 시책 우수사례	8 6
<표 5-4> 지자체 외국인정책 기반 시행계획 사업	9 6
<표 7-1> 2015-2016 장기 이민 통계(캐나다)	1·0 1
<표 7-2> 2015-2016 단기 이민 통계(캐나다)	2·0 1
<표 7-3> 캐나다 지역추천 이민자 선발 유형	❶
<표 7-4> 2015-2016 장기 이민 통계(호주)	1·1 1
<표 7-5> 2015-2016 단기 이민 통계(호주)	1·1 1
<표 7-6> 호주 지역추천 이민자 선발 유형	❶
<표 7-7> 2015-2016 장기 이민 통계(일본)	0·2 1
<표 7-8> 2015-2016 단기 이민 통계(일본)	0·2 1
<표 8-1> 정책목표별 우선순위: 중앙부처 담당자	❷
<표 8-2>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 있는 개방' 중점과제 우선순위(중앙부처 담당자)	128
<표 8-3>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 있는 개방' 세부추진과제 우선순위(중앙부처 담당자)	128
<표 8-4>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중점과제 우선순위(중앙부처 담당자)	129
<표 8-5>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세부추진과제 우선순위(중앙부처 담당자)	130
<표 8-6>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중점과제 우선순위(중앙부처 담당자)	131
<표 8-7>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세부추진과제 우선순위(중앙부처 담당자)	131

<표 8-8>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중점과제 우선순위(중앙부처 담당자) .....	132
<표 8-9>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세부추진과제 우선순위(중앙부처 담당자) .....	133
<표 8-10>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중점과제 우선 순위(중앙부처 담당자) .....	134
<표 8-11>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세부 추진과제 우선 순위(중앙부처 담당자) .....	134
<표 8-12> 정책 대상자별 중요도 분석(중앙부처 담당자) .....	31
<표 8-13> 정책 목표별 우선순위: 지자체 담당자 .....	61
<표 8-14>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 있는 개방’ 중점과제 우선순위(지자체 담당자) .....	136
<표 8-15>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 있는 개방’ 세부추진과제 우선순위(지자체 담당자) .....	137
<표 8-16>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중점과제 우선순위(지자체 담당자) .....	138
<표 8-17>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세부 추진과제 우선순위(지자체 담당자) .....	138
<표 8-18>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중점과제 우선순위(지자체 담당자) .....	139
<표 8-19>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세부추진과제 우선순위(지자체 담당자) .....	140
<표 8-20>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중점과제 우선순위(지자체 담당자) .....	140
<표 8-21>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세부추진과제 우선순위(지자체 담당자) .....	141
<표 8-22>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중점과제 우선 순위(지자체 담당자) .....	142
<표 8-23>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세부 추진과제 우선 순위(지자체 담당자) .....	142
<표 8-24> 정책 대상자별 중요도 분석(지자체 담당자) .....	31
<표 8-25> 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지역별 연령대’ 분포 .....	145
<표 8-26>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체류기간별’ 분포 .....	148
<표 8-27> 등록외국인 ‘지역별 국적별’ 분포 .....	153
<표 8-28> 체류자격별 분류표 .....	9
<표 8-29> 체류자격 그룹별 지역별 분포 .....	9
<표 8-30> 연령별 정책 필요도 .....	4
<표 8-31> 체류기간별 정책 필요도 .....	5
<표 8-32> 출신국가별 정책 필요도 .....	8
<표 8-33> 출신국가별 정책 필요도 .....	9
<표 8-34> 출신국가별 정책 필요도 .....	9
<표 8-35> 출신국가별 정책 필요도 .....	11
<표 8-36> 체류자격별 정책 필요도 .....	11
<표 8-37> 지역+연령별 정책 필요도 .....	31
<표 8-38> 지역+체류기간 정책 필요도 .....	71

<표 8-39> 지역+출신국가 정책필요도	91
<표 8-40> 지역+체류자격 정책필요도	181
<표 8-41> 면접자 인적사항	5
<표 9-1> 정책 담당자의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중요도 분석	9
<표 9-2>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중점과제 중요도 분석	203

## 그림 목차

---

<그림 5-1> 다문화가정 자녀가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	08
<그림 5-2> 글로벌 인재육성(한국의 오바마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개요	0 8
<그림 5-3> 글로벌 인재육성(한국의 오바마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내용	1 8
<그림 5-4> 글로벌 인재육성(한국의 오바마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실적	2 8
<그림 6-1>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참여 부처	98
<그림 6-2>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0 9
<그림 6-3>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1 9
<그림 6-4>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5 9
<그림 7-1> 상위 10개국 출신 이민자 유입 비율(2006~2016, 캐나다)	1 0 1
<그림 7-2> 상위 10개국 출신 이민자 유입 비율(2006~2016, 호주)	0 1 1
<그림 7-3> 상위 10개국 출신 이민자 유입 비율(2006~2016, 일본)	9 1 1
<그림 7-4> 일본 외국인정책 추진체계	3
<그림 7-5> 일본 외국인정책 전달체계	3
<그림 9-1>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 유형: 제1유형-정부가 직접 관리	62
<그림 9-2>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 유형: 제2유형-주계약자 관리형태	62
<그림 9-3>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 유형: 제3유형-제3의 기관 관리 형태	72
<그림 9-4> 외국인정책 민관협력 거버넌스	82

## 연구요약

### | 편. 서 론

#### □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의거하여 2017년도에 추진된 시행계획을 대상으로 정책의 효과성 및 목표달성을 평가하고, 우수사례는 도출하여 정책적 확산을 꾀하도록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첫 번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에 즈음하여 2019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의 기본적인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다.

#### □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2017년도 시책에 대한 평가는 각 기관에서 자체평가를 시행한 결과를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2017년도에 추진한 시책 중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의 외국인정책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우수사례를 추천 받도록 한다.

2019년도 시행계획의 중점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정책대상을 정책담당자, 이민자, 외국인시책관련 민간단체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집단에 대한 정책수요를 조사한다. 정책담당자에 대한 수요조사는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이민자에 대한 수요는 2016년도에 실시한 바 있는 이민자대상 설문조사결과를 원데이터로 활용하여 2016년과 관점을 달리하여 분석을 시행한다. 민간단체에 대한 수요는 법무부소관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심층인터뷰를 시행하도록 한다.

이 외 2019년도 시행계획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호주, 캐나다, 일본 등 외국의 사례에 대한 문헌연구를 시행한다.

## II 편. 2017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평가

2012년 11월 28일 제12회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3년~2017년)’이 확정되었다. ‘세계인과 더불어 성장하는 활기찬 대한민국’라는 비전 아래 ‘개방, 통합, 인권, 안전, 협력’의 5대 정책목표가 수립되었고 각 정책목표 별 하위 중점과제가 선정되었다. 이러한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해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6조’에서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본 편에서는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마지막 사업연도인 2017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과제평가와 유사증복 평가 등을 통해 전반적인 평가를 하고자 하였다.

### □ 2017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과제의 목표달성도 평가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정책위원회 소속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자체 평가 내용 중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를 적용한 목표달성률과 예산집행률을 분석하여 2017년 시행계획을 평가코자 하였다.

2017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은 총 1,122개의 세부추진과제가 추진되었다. 정책목표별로 [개방] 129개(10.6%), [통합] 666개(54.5%), [인권] 335개(27.4%), [안전] 45개(3.7%), [협력] 47개(3.8%)의 과제가 추진되었다. 목표달성률 ‘110% 이상’인 과제는 407개(33.8%), ‘100~110% 미만’ 573개(46.9%), ‘90~100% 미만’ 58개(4.7%), ‘80~90% 미만’ 51개(4.2%), ‘80% 미만’ 133개(10.9%)로 나타났다.

2017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1,122개의 추진과제 중, 목표를 달성한 과제(자체 평가 결과 당초 목표의 100% 이상을 달성한 경우)는 980개로서 전체의 80.2%였다. 정책목표별로는 [개방] 86개(정책목표과제 대비 66.7%), [통합] 528개(정책목표 내 과제대비 80.9%), [인권] 277개(정책목표 내 과제대비 82.7%), [안전] 39개(정책목표 내 과제대비 86.7%), [협력] 40개(정책목표 내 과제대비 85.1%)의 과제가 목표를 달성했다.

예산이 투입되는 과제는 1,019개(83.4%), 비예산 과제는 203개(16.6%)로 예산이

투입된 과제가 절대적으로 많았다. 예산이 투입된 1,019개 과제의 예산총액은 6878.5억원이며, 예산 집행액은 6757.9억원으로 98.2%의 집행률을 보였다.

18개의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한 184개 과제 중 147개의 과제가 목표를 달성(목표 달성을 79.9%)<sup>1)</sup>하였고, 4568.3억 원의 책정 예산 중 4489.1억 원이 집행되었다(예산집행률 98.2%).

17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1,038개 과제 중 833개의 과제가 목표를 달성(목표 달성을 80.3%)<sup>2)</sup>하였고, 2350.3억 원의 책정 예산 중 2308.9억 원이 집행되었다(예산집행률 98.2%).

## □ 유사증복과제 평가

본 연구에서는 전달체계 간의 유사증복과 대상자 유사증복을 중심으로 2017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의 유사증복성을 평가하였다.

「2017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은 내수활성화에 기여하는 외래 관광객 유치, 해외인적자본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19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자체가 5대 부문 1,248개 과제를 협업하여 추진하였다.

○ 과제 : 1,248개 (중앙부처 189개, 지자체 1,059개)

○ 예산 : 6,772억 원 (중앙부처 4,372억 원, 지자체 2,400억 원)

본 연구는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세부사업의 세부내용들을 코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은 MS EXCELL과 SPSS 22.0으로 실시하였다.

### 1)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외국인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

1) 중앙행정기관 184개의 세부추진과제 중 목표달성을 0%인 과제는 총 11개로 분석되었고 미달성 과제 수에 포함하였다.

2) 지방자치단체 1,038개의 세부추진과제 중 목표달성을 0%인 과제는 총 14개로 분석되었고, 미달성 과제수에 포함하였다.

첫째, 법무부가 107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 전체 중 46.5%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다. 그 외 문광부 22개(9.6%), 교육부 19개(8.3%), 고용노동부 13개(5.7%) 등이었다.

둘째, 5개 분야 중에서 통합분야 59개(25.7%), 개방분야 56개(24.3%)로 나타난다. 반면 협력분야는 28개(12.2%)로 다섯분야 중에서 가장 적은 과제수를 가지고 있었다.

셋째, 전체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109개(47.4%)였다. 그리고 특정집단에 특화된 프로그램으로는 결혼이민자 및 가족(17건, 7.4%), 외국인노동자(19건, 8.3%) 등이 운영되고 있었다. 특히 외국인 고급인력 및 유학생(27건, 11.7%), 외국인 관광객 및 투자자(19건, 8.3%) 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많았다.

중앙행정기관의 외국인정책의 유사중복성을 분야별 프로그램로 분석한 결과를 유사중복성이 강한 것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을 대상으로 채용 및 일자리관련 프로그램은 교육부(8), 미래창조과학부(4), 외교부(3), 법무부(4), 문광부(2), 산업통산자원부(4), 보건복지부(2), 고용노동부(4) 여성가족부(1), 중소기업청(1) 등 10개 부처에 33개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 이는 채용 및 일자리관련 프로그램은 근래 전정부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앞으로 일자리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유사 및 중복 채용 및 일자리 관련 프로그램의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둘째, 이주민 관리(단속, 통계 등) 프로그램은 교육부(3), 외교부(1), 법무부(37), 행정자치부(2), 문광부(3), 보건복지부(1), 고용노동부(7), 여성가족부(2), 해양수산부(2), 국민안전처(2), 경찰청(3) 등 11개 부처가 관련되어 있었다. 외국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앞으로 더 중요해 질 것인데, 지나치게 많은 부처들이 관련하고 있어 유사 및 중복의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이주민 관리 관련 프로그램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

셋째, 복리 및 처우개선 관련 프로그램은 교육부(2), 법무부(14), 행정자치부(1), 문화체육관광부(1), 산업통산자원부(1), 보건복지부(4), 여성가족부(4) 등 7개 부처에서 실시되고 있다. 복지서비스의 성격상 다양한 부처들이 관여하는 것은 당연하

나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복지서비스의 중복급여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감독하여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의 소지를 없앨 필요가 있다.

넷째, 다문화 거버넌스 관련 프로그램은 교육부(1), 외교부(2), 법무부(8), 행정자치부(1), 문화체육관광부(3), 고용노동부(1) 등 5개 부처에서 실시되고 있다. 현재는 범무부와 문광부가 다문화 거버넌스 관련 프로그램을 다수 운용 중에 있다. 앞으로 외국인정책의 거버넌스가 중요시될텐데 어디를 핵심기능을 담당하게 할 것인가 하는 외국인정책 추진체계에 대한 명확한 방향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 2)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도 165개, 충남 155개, 서울 151개, 부산 149개 등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반면, 제주 48개, 강원 54개, 충북 63개, 전북 73개, 울산 75개, 전북 76개의 비교적 적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별 프로그램의 개수 차이는 전반적으로 외국인관련 프로그램의 수가 인구수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으나, 충남의 경우 155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 서울이나 부산보다도 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아 지역의 특성이나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 등도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통합분야가 58.4%, 인권분야가 28.2%로 이 두분야의 비중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중앙정부의 분야별 프로그램 분포와는 사뭇 다른 것이었다.

셋째, 결혼이민자 및 가족 823개(48.9%)와 이주자 아동 178개(10.6%)였고,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374개(22.2%)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중앙정부의 분포하고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경우는 전체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용 프로그램이 거의 전반을 차지하였다. 요컨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외국인 정책의 주요 정책고객은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인 것이 프로그램 수에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일단 그 규모가 작아 유사중복 업무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원천

적으로 낫다. 그리고 현재처럼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취합되는 시행계획의 자료의 성격상 어떤 분야의 프로그램의 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집행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를 유사 및 중복 사업이라 하기 어려운 점이 감안될 필요가 있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 관련 프로그램의 분포는 복리 및 처우 개선이 26.3%, 사회통합 21.7%, 교육일반 12.0%, 한국어 및 언어교육 7.7%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포는 중앙정부와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고객이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 그리고 외국인노동자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별로 분야별 외국인 관련 프로그램의 분포가 상이했다. 전체적으로는 “복리 및 처우개선”분야(442건)와 “사회통합” 분야(366건), “교육일반” 분야(202건), “다문화 거버넌스”(193건), “한국어 및 언어교육”분야(129건), “이주민 관리(단속, 통계 등)”(110건) 등이었다. 하지만 개별적인 지방자치단체별로 들어가면 분야별 프로그램의 수의 분포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간에 외국인정책 관련 정책 이니셔티브가 상이함을 의미한다.

### III. 2019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추진 방향 정립

2000년 이후 급속한 이민자 유입은 이민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 정부는 이민 정책 총괄 부서로 법무부 산하 외국인정책본부를 설치하였고, 체류 외국인 대상의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법률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는 외국인정책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 및 수행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 제정되면서 5년 단위로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관련 부처가 개별적으로 진행하였던 이민 정책이 외국인정책본부 총괄에 입각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이 수립, 실행되는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외국인정책이 수행되고 있다. 사실상, 한국의 이민정책의 추진방향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이민 정책이 수립 및 수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외국인정책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수립 및 수행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지방 정부 역할이 점점 더 확대되고, 반대로 중앙정부의 역할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차원에서 이민정책이 수립되지만 실질적인 이민정책의 수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서구에서의 기존연구들에 의하면 지속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보다는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이민정책 수립 및 수행에서의 역할이 확대되는 현상을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논의하고 있다(Sumption, 2014). 먼저 수요 측면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되는데,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성장 동력이 부족한 지역은 이민자 유입 증진을 희망하게 되는 지방정부가 나타날 수 있다 (Filomeno, 2015). 이러한 수요에 의해 지방정부는 우호적인 이민정책을 수행하여 지역으로 유입을 장려하며,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정착 관련 교육, 의료, 사회복지 등과 같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거나 경제적으로 지역 노동시장 참여를 증진 할 수 있는 이민정책을 수립 할 수 있다(Filomeno, 2015). 공급적 측면은 이민자를 중심으로 논의가 되는데, 이민자는 본국 출신 이민자 중심의 사회관계망이 활발히 작동되는 지역, 또는 경제적으로 노동시장 참여가 유리한 지역을 선호하게 된다 (Portes and Rumbaut, 2006). 그러나 기대하지 않은 이민자가 지역사회에 급속하게 유입하게 되면 지방정부는 이민자 유입을 억제하거나 조례를 통해 이민자만을 위한 정착과 관련된 특별한 혜택 제공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인 이민정책의 일환으로 시장경제에 의해 노동시장이 작동되는 방법의 이민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 (Sumption, 2014). 결국 지역마다 이민자들과 관련된 다양한 수요와 공급이 존재하며, 이러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이민정책이 지역마다 상이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한국에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민정책 수립 및 수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서구와 다르게 중앙행정기관에서 수립된 이민정책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감독 하에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지역마다 이민과 관련된 수요와 공급이 다르지만 그러한 지역에 따른 수요와 공급을 반영하지 못한 이민정책이 수립되거나 실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한국도 서구 이민국가처럼 지역마다 동일한 이민자가 유입되

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이민 관련 수요와 공급에 의해 다양한 이민자 유형이 정착하고 있다고 가정하였다. 본 보고서는 3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시도하였다. 첫째,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특징 및 주요 추진 방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의 범위 및 협력 수준에 대해 파악하였다. 둘째, 서구 이민국가에서의 이민정책 흐름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즉, 최근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이민정책 수립 및 수행의 구체적인 서구의 사례들을 탐색하였다. 셋째, 정책 대상 집단의 수요를 파악하였다. 이민정책을 수립 또는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간의 이민정책의 인식차이를 조사, 지역에 따른 이민자 유형이나 특성의 차이를 분석, 이민자 유형 또는 특성에 따라 이민정책 욕구 또는 필요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접근을 바탕으로 어떻게 중앙행정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수요와 공급)을 고려한 이민정책(외국인정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지 논의를 시도하려 하였다. 더 나아가 외국인정책 시행에 있어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였다.

## □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

2018년 2월 12일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의결을 통해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18~'22)」 확정하였다.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5대 정책목표(국민이 공감하는 질서있는 개방,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협력에 바탕한 미래지향적 거버넌스)개방, 통합, 인권, 안전, 협력) 및 세부추진과제에 따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 계획에 있다.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 이전 기본계획과는 구분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있는 외국인정책'을 통해 정책의 국민 수용성 제고 및 지속 발전가능한 체계 구축이다. 지금까지 이민정책은 적극적 이민의 협용이라는 양적인 측면에 치우쳐 있어 외국인 지원 관련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국민 일자리 등의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에 따라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의 우선적인 정책목표는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있는” 외국인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두 번째, ‘재한외국인의 자립’을 촉진하는 미래 지향적 외국인정책 추진이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유입에 초점을 두다 보니 유입이후의 관리에 소홀한 점이 많았다. 따라서 제3차 기본계획은 유입뿐만 아니라 유입이후 【유입 → 자립 → 성장 → 기여】의 관점에서 미래지향적 외국인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세 번째, ‘체계적 인권증진 및 차별방지’ 정책 추진이다. 지금까지 외국인 인권보호는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성격이 강하였고, 아동 등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외국인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했다.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인권보호제도를 마련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핵심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한다. 그리고 아동 등 취약한 상황에 있는 외국인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네 번째,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시민사회’의 협업 증진이다. 지금까지 외국인정책의 거버넌스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중앙차원에서는 이민정책 관련 정부위원회간의 협력체계가 부족하고, 지역차원에서는 지자체 및 시민단체 등과 같은 이민정책 거버넌스에서 핵심적인 참여자들의 참여가 부족하였다.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외국인정책 거버넌스 체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정책의지가 인상적이다. 구체적으로 중앙차원에서 이민정책관련 정부위원회간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차원에서 지자체와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중앙간 지자체간 혹은 지자체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시민단체와 외국인 당사자 등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정책수요자 참여형 외국인정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다섯 번째 ‘체계적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이다. 지금까지 이민관련 통계와 연구기반이 미흡하였다. 그리고 이민관계를 체계적인 법제 정비가 미진하였다.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체계적인 이민정책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이민관련 통계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이민기록정보원 등을 신설하는 등 기반 확충을 하고, 이민관련 법제를 점검하여 고도화하고자 하고 있다.

## □ 주요국 이민정책동향분석 및 이민정책환경 분석

선진 이민국가의 이민자 유입(입국 허가, 선발 제도)은 중앙정부 또는 연방정부가 수립한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캐나다와 호주에서는 ‘지역추천 이민자 선발제도’를 개발하였다. 이는 지역의 수요에 따라 주정부나 지방정부에 선발 방식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선발방식의 부합한 이민자를 연방정부나 중앙정부에 추천하여 최종적으로 선발하게 되는 방식이다. 주정부나 지방정부에 의한 지역추천 이민자 선발제도는 새롭게 이주하는 이민자들이 대도시에 집중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도시화 문제를 해결하고 각 지방정부의 경제발전과 인구 부족 현상을 이민자 유입과 함께 고려하는 이민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추천 이민자 선발제도와 더불어 중앙정부는 이민자의 수월한 정착을 돋기 위하여 정착서비스를 고안하였고, 일선 현장에서 지방을 기반으로 설립되어진 다양한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각 지방의 환경과 정착 이민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착서비스를 전달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다문화공생’이라는 이민정책을 중앙정부 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단체 중심의 이민정책이 실행되고 있다. 결국 각 지방정부는 지역의 수요에 맞게 지역추천 이민자를 선발하고 있으며, 이들의 정착을 돋기 위해 지역의 네트워크를 통한 비영리 민간단체의 참여를 장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이민정책에서 지역 거버넌스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 □ 정책대상 집단의 수요 분석

한국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이민정책 수립 및 수행은 상당히 제약이 뒤따르고 있다.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 의하면(법무부, 2018), 중앙행정기관에서 수립한 이민정책을 중앙행정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감독 하에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어떻게 중앙행정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을 반영한 이민정책(외국인정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려 하였

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시도하였다. 첫째, 중앙정부의 행정 기관의 이민정책 담당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이민정책 담당자 간의 정책 인식차이를 서베이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17개 광역시도를 기준으로 어떤 이민자들이 정착하고 유입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17년 행정안전부와 2018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생산된 체류 외국인 통계를 탐색하여 지역별 이민자 유형 또는 특성을 분석하였다. 셋째, 2016년 법무부에서 발표된 “2015 외국인정책시행계획 평가 연구”의 원자료(raw data)를 사용하여 이민자 유형 또는 특성에 따른 이민정책 욕구와 필요의 차이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넷째, 17개 광역 시도에서의 이민자 유형(특성)과 이민정책 욕구(필요)를 교차하여 지역별 이민자 유형에 따른 이민정책 욕구를 동시에 파악하였다.

### 1) 실무자(외국인정책 담당자) 수요 분석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인식조사에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발견 할 수 있었다. 먼저 유사점은 다음과 같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인식조사 중 우선순위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공통적으로 우선순위에 두는 정책목표는 협력에 기반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라 할 수 있다. 결국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 협력 기반의 거버넌스 구축이 3차 기본계획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정책 목표라 할 수 있다.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에 의하면 이민관련 국제 협력 증진을 가장 중요한 세부 정책목표로 고려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중앙부처, 지자체, 시민사회 협력 강화를 다음으로 중요한 세부 정책목표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공통된 인식은 거버넌스 구축의 중요성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국제적 거버넌스를 가장 중요한 세부계획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중앙부처, 지자체, 시민사회 협력 강화가 거버넌스에서 중요한 세부계획으로 인식하였다. 다음으로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 중앙부처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간의 차이점을 살펴 볼 수 있다. 정책목표 중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구축”을 제외하고는 다른 정책 목표가 중앙부처, 지방부처 담당 공무원들 간에 인식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다.

## 2) 이민자 수요 분석-체류 외국인 통계와 2016년 설문지 이차분석

첫째, 지역별(시도)로 가장 많은 연령대를 파악하고, 이러한 연령대에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동시에 고려하려 한다. 지역별로 살펴본 연령과 정책 필요도는 다음과 같다. 각 시도별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는 연령대는 20대 또는 30대였으며, 다음으로 높은 비율은 40대였다. 서울만 특이하게 50대의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높게 나왔다. 이러한 연령대(20대, 30대, 40대, 50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이민정책 영역은 20대를 제외하고 유사하게 도출 되었다. 20대의 경우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등 비자 관련정보, 다음으로 외국인등록 등 민원접수, 편의시설 등과 관련된 생활정보였다. 30대가 가장 필요한 정책 영역은 건강검진, 질병치료 등 보건의료 지원서비스, 다음으로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등 비자 관련정보였다. 40대가 가장 필요한 정책 영역은 건강검진, 질병치료 등 보건의료 지원서비스, 다음으로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등 비자 관련정보였다. 50대가 가장 필요한 정책 영역은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등 비자 관련정보, 다음으로 건강검진, 질병치료 등 보건의료 지원서비스였다. 시도에 상관없이 이민정책은 20대부터 50대까지를 고려해야 하며, 동시에 이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 영역인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등 비자 관련정보, 건강검진, 질병치료 등 보건의료 지원서비스 영역에 초점을 맞춘 이민정책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시도별 2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은 부산, 광주, 전북, 전남이었다. 30대부터 50대까지의 이민자들뿐만 아니라 20대를 좀 더 고려한 이민정책이 이들 지역에서는 필요해 보인다. 즉, 외국인등록 등 민원접수, 편의시설 등과 관련된 생활정보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이민정책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지역별(시도)로 거주하는 외국인 중 체류기간의 분포를 파악하고, 이들이 체류기간에 따라서 어떤 정책을 필요로 하는지 동시에 고려하려 한다. 지역별로 살펴본 체류기간 분포와 정책 필요도는 다음과 같다. 각 시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다수는 10년 미만을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시도별로 거

주하는 외국인들은 1년 미만, 1~2년 미만, 2~3년 미만, 5~10년 미만의 체류기간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시도에 비해 제주도만 5년 미만의 체류 외국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의 외국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이민정책 영역을 제외하고 1~2년 미만, 2~3년 미만, 5~10년 미만의 외국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 영역은 유사하게 도출되었다. 체류기간이 1~2년 미만의 외국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이민정책 영역은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등 비자 관련정보, 다음으로 건강검진, 질병치료 등 보건의료 지원서비스였다. 체류기간이 2~3년, 5~10년인 외국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이민정책 영역은 건강검진, 질병치료 등 보건의료 지원서비스와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등 비자 관련정보였다. 그러나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인 외국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 영역은 외국인등록 등 민원접수, 편의시설 등과 관련된 생활정보, 다음으로 폭력피해의 예방, 신고, 구제, 피해보상이다.

시도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10년 미만의 체류기간을 고려한 이민정책이 필요하다. 다수의 외국인의 체류기간이 10년 미만이기 때문이다. 체류기간이 10년 미만인 외국인을 위해서는 건강검진, 질병치료 등 보건의료 지원서비스와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등 비자 관련정보에 초점을 맞춘 이민정책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인 외국인의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지역은 부산, 광주,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였다. 이들 지역에서는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의 외국인을 위한 이민정책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즉,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인 외국인을 위해 외국인등록 등 민원접수, 편의시설 등과 관련된 생활정보와 폭력피해의 예방, 신고, 구제, 피해보상에 초점을 맞춘 이민정책의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별(시도)로 거주하는 외국인 중 출신국가의 분포를 파악하고, 출신국가에 따라서 어떤 정책을 필요로 하는지 함께 고려하려 한다. 이때 출신국가의 분포는 시도별 10% 이상인 출신국가만을 고려하였고, 이들 출신국가별 정책 필요도를 살펴보았다. 지역별로 출신국가 분포와 정책 필요도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조선족이 상대적으로 다른 출신국가의 이민자들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중국 한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조선족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 영역은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등 비자 관련정보와 한국 법, 문화 등 한국사회 관련정보 영역이었다. 중국 한족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 영역은 건강검진, 질병치료 등 보건의료 지원서비스와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등 비자 관련정보 영역이었다. 따라서 수도권 지역의 시도(서울, 경기, 인천)에서는 이들 지역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중국 출신 이민자를 위해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등 비자 관련정보, 한국 법, 문화 등 한국사회 관련정보, 건강검진, 질병치료 등 보건의료 지원서비스 영역에 초점을 맞춘 이민정책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해 보인다. 두 번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의 경우 중국 출신뿐만 아니라 베트남 출신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베트남 출신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 영역은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증 등 민원서류 신청 할 때 외국어서비스, 취업교육 및 직업교육 영역이었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는 중국 출신 이민자들이 필요한 정책뿐만 아니라 베트남 출신들이 필요한 정책 영역인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증 등 민원서류 신청 할 때 외국어서비스, 취업교육 및 직업교육 영역도에도 초점을 맞추어 이민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광주에서는 중국, 베트남 출신 다음으로 우즈백 출신의 이민자들의 비율이 높았다. 이는 타 시도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우즈백 출신들의 이민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 영역은 통번역 서비스와 한국 법, 문화 등 한국사회 관련정보였다. 따라서 광주에서는 중국, 베트남 출신 이민자들뿐만 아니라 우즈백 출신 이민자들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통번역 서비스와 한국 법, 문화 등 한국사회 관련정보 영역에 초점을 맞춘 이민정책 수립 및 시행 또한 필요해 보인다. 네 번째, 전남의 경우 베트남, 중국한족 출신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 비해 캄보디아 출신의 이민자들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캄보디아 출신 이민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이민정책 영역은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증 등 민원서류 신청 할 때 외국어서비스와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등 비자 관련정보 영역이다. 따라서 전남에서는 베트남, 중국한족 출신들이 필요한 정책 영역과 캄보디아 출신 이민자들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증 등 민원서류 신청 할 때 외국어서비스와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등 비자 관련정보 영역의 이민정책 또한 수립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별(시도)로 거주하는 외국인 중 체류자격의 분포를 파악하고, 체류자격

에 따라서 어떤 정책을 필요로 하는지 동시에 고려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본 체류자격 분포와 정책 필요도는 다음과 같다. 지역별 체류자격의 분포와 정책 필요도는 유사점과 차이점이 존재한다. 먼저 유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시도는 비전문취업(E-9, H-2) 자격을 소지한 이민자의 비율이 높았다. 서울, 부산, 제주는 비전문취업 비율이 2번째로 높았지만, 다른 시도는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모든 시도는 비전문취업 자격 소지자의 정책 필요도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 영역은 한국 법, 문화 등 한국사회 관련정보와 건강검진, 질병치료 등 보건의료 지원서비스 영역이었다. 둘째, 외국국적동포(F-4)의 비율이 높았다. 외국국적동포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는 시도는 서울이며,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지역은 인천, 대구,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경남이다.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지역은 부산, 광주, 경부이다. 외국국적동포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 영역은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등 비자관련정보와 건강검진, 질병치료 등 보건의료 지원서비스 영역이다. 따라서 모든 시도에서 공통적으로 비전문취업, 외국국적동포를 위한 이민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즉, 한국 법, 문화 등 한국사회 관련정보, 건강검진, 질병치료 등 보건의료 지원서비스,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등 비자 관련정보 영역에 초점을 맞춘 이민정책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 반대로 각 시도별 차이점이 존재하였고,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교육/연수(D-1~7) 자격을 소지한 이민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시도는 부산, 대구, 광주, 세종, 충북, 충남, 전북, 경북이다. 교육/연수 체류자격 소지자가 가장 필요한 정책 영역은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등 비자 관련정보와 외국인등록 등 민원접수, 편의시설 등과 관련된 생활정보 영역이었다. 따라서 부산, 대구, 광주, 세종, 충북, 충남, 전북, 경북은 비전문취업, 외국국적동포 집단뿐만 아니라 교육/연수 체류자격 소지자가 필요로 하는 정책 영역도 수립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거주/영주 체류자격을 소지한 이민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시도는 서울, 인천, 울산, 경기, 제주이다. 거주/영주 체류자격 소지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 영역은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등 비자 관련정보와 한국어 방문교육 영역이다. 따라서 이들 시도는 비전문취업, 외국국적동포뿐만 아니라 거주/영주(F-2, F-5) 체류자격을 소지한 이민자가 필요로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

할 필요가 있다. 즉, 한국어 방문교육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정책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다. 세 번째, 결혼이민자(F-6) 자격을 소지한 이민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시도는 전북, 전남, 경남이다. 결혼이민자가 가장 필요한 정책 영역은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등 비자 관련정보와 자녀교육 및 자녀학습이다. 따라서 전북, 전남, 경남은 비전문취업과 외국국적동포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가 필요한 정책 영역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즉, 자녀교육 및 자녀학습 영역에 초점을 맞춘 정책 수립과 시행이 필요해 보인다. 네 번째, 제주는 다른 시도에 비해 전문취업(D-8~10/E-1~7/F-3) 체류자격 소지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전문취업 체류자격 소지자들이 가장 필요한 정책 영역은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등 비자 관련정보와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증 등 민원서류 신청 할 때 외국어서비스 영역이다. 따라서 제주는 비전문취업과 외국국적동포뿐만 아니라 전문취업 체류자격 소지자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즉, 외국어서비스 영역에 초점을 맞춘 이민정책 수립 및 시행 또한 필요해 보인다.

### 3) 외국인 관련 민간단체 면접

본 연구는 외국인정책 관련 정책대상집단 수요분석의 일환으로 법무부 인증 외국인정책 민간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반구조화된 면접지를 구성하였다(<부록> 참조). 면접지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피면접 민간단체의 외국인정책 관련 연혁과 현황, 그리고 건의사항 등을 질문하였다. 둘째,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주요 정책목표와 기본계획의 내용을 바탕으로 피면접 민간단체가 중점을 두고 있는 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셋째,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주요 정책목표와 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을 작성할 때 도움이 되는 새로운 정책과제를 제시하도록 요청하였다. 구체적으로 2018년 11월초부터 11월말부터 총 5개 외국인정책 관련 민간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방문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각각의 기관들이 제시하는 외국인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포교육지원단과의 면접을 통한 외국인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 번

째, 지원단은 4. 동포와 함께 공존·발전하는 환경조성 분야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중에서 협력에 바탕한 미래지향적 거버넌스라는 정책목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라는 정책 목표 있어 국내적인 문제와 국외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재외동포에 있어서 원스탑서비스가 필요하다. 세 번째, 현재 있는 상담센터도 전문성이 부족하여 유명무실하다. 사회통합전문가 양성교육이 필요하다. 네 번째, 비자 확대가 아닌 이런 부분이 동포들에 대한 유대강화에 도움된다. 현재 3만 명이 비자규제자가 있는데 흉악범, 마약범 등 질 안 좋은 범죄자가 아닌 단순한 불체자, 간단한 경제사범에 대한 비자완화가 필요하긴 한데 현재 기준에서 판단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 다섯 번째, 현재 동포의 2가지의 비자체계(H2, F4)를 한가지로 일원화 시켜야 한다. 여섯 번째, 관련된 부처가 법무부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외국인정책 관련하여 총리실 사회정책 수석실이나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리 점검하는 과제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각 부서 별 반대로 인해 절대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법률에 못 둔다면 이를 전담 지휘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둘째, 건강사회본부와의 면접을 통한 외국인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건강사회본부는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와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를 주요 정책목표로 생각한다. 두 번째, 외국인 정책이 한쪽에 쏠리지 않고 균형을 잡았으면 좋겠다. 외국인정책의 경우 법질서체계과 지원 두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민간단체에서 이 두 가지 정책에 있어 균형과 중심을 잡고 진행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다. 현재 법무부가 외국인 정책 주관부서인데 출입국관리 쪽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정책 전체적인 것을 아우르는데 있어서 우리 기관(민간단체)이 도움을 줄수 있다고 본다. 세 번째, 한국사회에서 외국이민자들에게 국가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데,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외국이민자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즉 외국인 내국인을 불문하고 공정한 차별받지 않는 법 체계가 필요하다.

셋째, '김해 이주민의 집'과의 면접을 통한 외국인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기존의 단속위주의 불법체류방지와는 상이한 전략으로써의 '이주민 기술학교'의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두 번째, 협력에 바탕한 미

래 지향적 거버넌스을 위해 프로그램 개발 위탁사업의 확충이 필요하다. 외국인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해결과제들이 존재하며, 정부가 이를 모두 해결하거나 관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난민 관리에 있어 법무부에서는 난민 심사만으로도 인력의 부족하다. 이에 사업 역량과 경력이 있는 민간단체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다. 민간단체와의 파트너십의 구축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 개발 위탁 사업’을 활용할 수 있다.

넷째, (사)재한외국인사회통합지원센터와의 면접을 통한 외국인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정책목표는 ‘이민의 전 단계를 고려한 유기적 사회통합교육 실시(②-1-②)’와 ‘이민자 취업 및 직장생활 지원 강화(②-1-③)’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민의 전 단계를 고려한 사회통합교육이 실시될 필요가 있고, 이민자 취업 및 직장생활 관련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겠다. 두 번째, 결혼이민자의 장기체류화와 학령기 자녀의 증가는 ‘이민자의 자립’에 대한 중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결혼이민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때 출입국외국인청과의 유연한 상호협력을 사업의 홍보에 크게 도움을 준다. 이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줄 몰랐다’는 ‘정보격차’를 줄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세 번째, 제3차 외국인 정책의 정책목표 중 ‘개방’은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 있는 개방’이 있다. 여기에서 “국민이 공감하는”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즉 ‘다문화 사회’라고는 하지만, 그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다. ‘다문화사회에 대한 예절, 배려, 수용’등이 국민의 인식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재한외국인지원협회와의 면접을 통한 외국인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외국인정책의 혜택과 대상자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적어도 영주권을 획득한 사람에게 한국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사회복지 안전망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재한외국인지원협회는 법무부 지정, 관리 단체로 소속되어 있지만, 법무부로부터 특별한 재정 지원이나 인센티브를 받고 있지 못하다. 법무부로부터는 특별한 지원이나 인센티브가 부족하여 후원금만으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 □ 2019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추진 방향

### 1) 지역별 시책의 차별화

중앙정부에서 공통적으로 수립해야 할 이민정책에 대한 골격을 완성하고, 그 골격을 기반으로 지역별 상이한 환경과 욕구를 고려한 지방자치수준에서의 세부 이민정책의 수립과 시행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중앙정부에 의한 이민정책은 이민자가 입국하여 실제 거주하는 지역의 특수 환경과 수요를 정확히, 신속하게 파악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비해, 지방자치단체는 이민자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민자의 수요를 파악할 수 있으며,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데 유리하다. 요구에 적합하지 않은 이민정책의 수립과 시행은 정책 수혜자에게 적절한 혜택을 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한 이민정책 수립과 시행에 대해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때 중앙정부는 이민정책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넘기면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부 이민정책의 시행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지방의 상이한 환경과 욕구를 고려한 세부 이민정책 수립과 시행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통합을 위한 기금 확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의무화를 통해 외국인에게 국적 취득에 있어 이용료 또는 응시료를 받으며 기금을 확충하고 있지만 이러한 이용료 또는 응시료는 기금 확보 차원에서 한계라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2가지 제안을 할 수 있다. 첫째, 외국인 고용 기업 차원의 기금 확보이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들은 저렴한 노동력의 대가로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 기업들에서 발생한 이윤의 일부분을 기금으로 확보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다른 방법은 무비자로 한국을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입국세를 거두어 들이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미국, 캐나다의 경우 무비자 입국 시 일정액의 비용을 지불한 경우 사증 면제가 가능하다. 이러한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한국에 사증 면제를 통해 입국하는 국가의 외국인에게 입국세를 거두어 들여 기금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충한 기금을 통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민 정책을 시행 할 수 있는

재원을 제공해 주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 2) 서구 선진국의 사례

캐나다와 호주 모두 연방정부 내에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부서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총괄 부서가 존재하지 않아 컨트롤 타워의 부재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캐나다, 호주, 일본의 경우 지역의 거버넌스를 강화한 이민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민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아직까지 거버넌스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역할 확대와 관련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이민자를 선발하기 보다는 중앙정부가 수립한 이민자 선발제도에 의해 일률적으로 이민자가 선발되고 있으며, 이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서비스 또한 일률적이고, 일괄 계약에 의해 오로지 하나의 기관에 의해서만 서비스가 일선현장에서 전달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이민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역의 경제상황과 인구변동을 고려한 지역추천 이민자 선발제도에 대한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즉, 이민자 유입이 지역의 경제 부흥과 고령화를 늦추며, 생산인력 확충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이민자 수요 조사를 통한 이민자 선발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거버넌스 중심의 이민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에게 권한부여가 선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민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에게 권한을 부여하지 못한다면 지방자치단체들은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거버넌스 중심의 이민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민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에게 확실한 권한 부여를 명시화하여야 한다. 이때 지방자치단체에게 이민정책에 대해 책임만 전가하고 예산을 줄이는 방안은 지양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게 복지의 책임을 넘기며 예산을 축소하는 경향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버넌스 중심의 이민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는 책임과 함께 예산까지 배정이 필요할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재단을 설립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한국의 이민재단을 활용하여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각각의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거점 사회통합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이민자 대상의 적응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와의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 할 수 있을 것이다.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 사회에 거주하는 이민자의 적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나 욕구를 개별조직과의 연계를 통해 문제, 욕구를 함께 해결 할 수 있는 지역 거버넌스 구축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이민정책 수립과 시행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3)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중요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공통된 인식은 거버넌스 구축의 중요성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국제적 거버넌스를 가장 중요한 세부계획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중앙부처, 지자체, 시민사회 협력 강화가 거버넌스에서 중요한 세부계획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결과 기반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거버넌스 구축에서도 국제협력 증진은 서구 선진국과의 협력 구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외국인정책을 위한 새로운 공적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해 보인다. 부처간 협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외국인정책본부를 이민부로 전환하여 전체 이민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민부가 설립된다면 기존의 공적 전달체계를 이민부→법무부→출입국관리소→시·도→시·군·구→사회통합프로그램센터로 이루어지는 전달체계 구축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 가족정책의 경우 여성가족부→시·도→시·군·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일원화 되어 있다. 이러한 일원화 되어 있는 전달체계를 기반으로 다문화 가족정책은 많은 지원을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시군구에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민부 중심으로 지자체로의 일원화된 이민정책 전달체계 구축을 시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시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책 목표가 중앙부처, 지방부처 담당 공무원들 간에 인식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차이에 대한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매개체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가장 좋은 방안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담당 공무원들과의 주기적인 만남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여 인식의 차이를 좁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나 전체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중앙부처 담당 공무원들의 만남이 이루어지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이민정책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인식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부처인 외국인정책본부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에 대해 고려해 볼 수 있다.

#### 4)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단체의 거버넌스 확립

외국인정책에 관여하는 조직은 정부기관으로서의 법무부를 포함하여 권역별 출입국관리청,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민간단체들이 존재하고 있다. 본 절에서 다루는 핵심내용은 이들 간의 기능분담과 운영을 어떻게 원활하게 끌고 갈 것인가, 즉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를 확립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외국인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첫째의 고려사항에서 보면 정보제공과 서비스 제공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둘째 거버넌스를 통한 목표는 사실상 모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지만 우선은 각 집행기관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즉시적인 인식과 이를 기반으로 한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로의 투입이 중요한 목표가 될 것이다. 외국인 정책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갖고 추진해야 할 사항이며, 자금동원과 관련해서는 앞의 절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사회통합기금을 마련한다는 전제하에 이러한 기금이 구축된 거버넌스 내 조직들의 활동에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가 시행하는 시책인 만큼 책무성은 반드시 따라야 하나, 거버넌스 내 조직들의 유형이나 기능, 목적 등이 다양하므로 어느 정도 시행 상에 유연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기로 결정하고 나면, 이들 간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업무관리 어플리케이션을 공유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모든 외국인정책관련 업

무 전달 및 정보 공유, 기능 조정,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 때의 정보 및 업무전달의 흐름은 하향식, 상향식 양방향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단계별로 접근하는 경우, 먼저 법무부 차원에서 관련 기관과의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다음 단계는 본 보고서에서 제안한대로 외국인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새로운 조직이 확립되면 그러한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기존의 외국인정책, 다문화정책관련 기관들을 거버넌스 체제 내로 흡수하여 확대, 강화해나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 론



## 제1장 연구 목적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인의 유입에 주목, 본격적으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한 것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이에 한국정부는 이들 다양한 정책들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기에 이르렀고, 이 모든 다양한 정책을 대표하고 포괄하는 정책분야로 ‘외국인정책’을 확립하여, 조직, 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2006년 외국인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2007년 제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정이 이루어졌으며, 본 법에 의거, 2008년도에는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이 매년 수립, 집행되는 체계가 확립되었다.

2008년도 제1차 기본계획에 이어 2013년도에는 제2차 기본계획, 그리고 2018년도에는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발표됨에 따라 2018년도에는 2017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제2차 기본계획 사업에 대한 최종점검을 하고, 제3차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될 2019년도 시행계획 과제 발굴을 위한 방향정립이 요청되었다.

따라서 2017년도에 추진된 시행계획을 대상으로 정책의 효과성 및 목표달성을 평가하고, 부진사례에 대해서는 그 부진 사유를 도출하고, 우수사례는 도출하여 우수요인에 대한 정책적 확산을 꾀함과 동시에, 2019년도 시행계획에 포함될 주요 과제의 방향을 도출하는 등 2019년도 시행계획수립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제2장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외국인정책관련 다양한 연구보고서와 기관 발간 통계들을 활용한 문헌연구를 시행한다. 그리고 2017년도 시행계획 평가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정책 실무자를 대상으로 성과목표 달성을 점검하고, 우수사례 발굴 및 2019년 시행계획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다.

그리고 2016년도에 시행한 이민자 대상의 설문조사의 원데이터를 활용하여 2016년과는 다른 각도에서 분석을 시도한다. 우선 지역별 외국인 분포를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에서 생산하는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파악하고, 그에 따른 지역별 특성을 도출한다. 이러한 지역별 특성을 2016년도 데이터에 포함된 시책의 필요성 부분과 연계하여 새로운 결과 데이터를 산출하도록 한다.

그리고 정책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도출된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심층인터뷰를 시행한다. 민간단체와의 심층인터뷰는 2019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의 방향을 설정하고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 편

# 2017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평가



## 제3장 시행계획과제의 성과 평가

2012년 11월 28일 제12회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3년~2017년)’이 확정되었다. ‘세계인과 더불어 성장하는 활기찬 대한민국’라는 비전 아래 ‘개방, 통합, 인권, 안전, 협력’의 5대 정책목표가 수립되었고 각 정책목표 별 하위 중점과제가 선정되었다. 이러한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해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6조’에서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6조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사항을 기본계획 및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다음 해 시행계획과 지난 해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기 조항에 의거, 외국인정책위원회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차년도 시행계획과 지난 해 추진실적 및 평가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는 제출받은 평가 결과와 시행계획을 심의·조정하여 차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주무부처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에서 ‘○○○○년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통해 외국인정책 관련 추진실

적과 시행계획 상의 사업 과제와 예산의 규모를 공표한다.

2013년과 2014년 7,600억 원에 이르렀던 예산의 규모는 2차 기본계획 과정을 거쳐오면서 6,700억 원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급증하는 국내 체류외국인 수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참여자 수의 지속적 증가 등을 고려했을 때 줄어드는 예산 규모에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평가체계와 유사·중복성 과제 개선에 대한 학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이는 평가체계의 안정화와 끊임없는 자성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과 정책의 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표 3-1〉 2013년~2017년 시행계획 과제 및 예산 규모

(단위: 개, 억원)

정책 목표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과제수	예산	과제수	예산	과제수	예산	과제수	예산	과제수	예산
합 계	1,142	7,684. 80	1,272	7,600. 69	1,173	6,969. 25	1,227	6,658. 72	1,248	6771. 96
1. [개 방]	150	3,772. 15	156	3,654. 55	147	3,502. 78	137	2861. 40	134	2920. 78
2. [통 합]	570	1,482. 41	644	1,595. 52	592	1,357. 71	645	134,5. 54	685	1416. 29
3. [인 권]	325	590. 66	357	619. 90	326	633. 42	343	661. 10	337	656.87
4. [안 전]	49	134. 18	58	157.30	59	81.63	56	250.88	46	337.34
5. [협 협]	48	1,705. 40	57	1,573. 42	49	1,393. 71	46	1539. 80	46	1440. 68

※ 2013년~2016년 과제 수 및 예산은 평가를 거쳐 차년도 시행계획 공표를 통해 확정된 내용이며, 2017년은 추경예산 미반영 및 평가 이전의 수치로, '2017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외국인정책위원회, 2017a, 2017b)'에서 발췌하였다.

본 장에서는 외국인정책위원회 소속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자체 평가 내용 중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를 적용한 목표달성을과 예산집행률을 분석하여 2017년 시행계획을 평가코자 한다. 세부적으로는 5가지 정책목표별, 하위

중점과제별 분석을 통해 세부추진과제의 분포와 예산의 규모도 확인해 볼 것이다.

## 제1절 2017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자체 평가 개요

2017년은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5년차이자 제2차 기본계획의 마지막 연차이다. 즉,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으로 전환되기 전의 마지막 평가라 할 수 있다.

외국인정책 주무부처인 법무부에서는 매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정책담당자의 자체 평가를 제출받고 있다. <표 3-2>는 그 자체 평가표로서 정량평가라 할 수 있는 ‘성과목표달성도 항목(목표달성률, 예산집행률)’과 정성평가라 할 수 있는 ‘정책중요성’, ‘정책기여도’에 대한 외국인정책담당자의 의견 조사, 그리고 개별 추진과제에 대한 ‘정책대상’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하고 있다. 비예산과제의 경우에는 ‘목표달성률’에 배점이 포함되게 하여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행계획과제의 ‘성과목표달성도(목표달성률, 예산집행률)’에 대한 자체 평가를 중심으로 ‘2017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평가했다.

<표 3-2>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자체 평가표

항 목	평가척도	내용	예산과제 배점 (합계: 100)	비예산 과제 배점 (합계: 100)	
1. 성과 목표 달성도	목 표 달 성 률	110% 이상 100% ~ 110% 미만 90% ~ 100% 미만 80% ~ 90% 미만 80% 미만	○ 목표 대비 달성 비율 - 평가 척도는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의 등급으로 적용할 수 있다.	20	40
	예 산 집 행 률	100%, 예산절감 90% ~ 100% 미만 80% ~ 90% 미만 70% ~ 80% 미만 70% 미만	○ 계획 대비 집행 비율	20	0

##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평가 및 추진과제 발굴 연구」

항 목	평가척도	내용	예산과제 배점 (합계: 100)	비예산 과제 배점 (합계: 100)
2. 정책 중요성	매우 중요 중요 보통 별로 중요치 않음 전혀 중요치 않음	○ 관련 과제가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목표 달성을 있어서의 중요성	30	30
3. 정책 기여도	매우 중요 중요 보통 별로 중요치 않음 전혀 중요치 않음	○ 관련 과제를 1년간 시행한 결과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목표 달성을 기여한 정도	30	30
4. 정책 대상	'외국인전체, 관광객(외래관광객, 의료관광객), 전문외국인력, 단순노무인력(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 유학생, 결혼이민자, 이민배경자녀, 재외동포, 난민, 국민전체, 국민성인, 국민 청소년' 중 복수 선택 가능			

※ 자료: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자체 평가표'에서 발췌, 수정(법무부 내부자료).

2017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은 총 1,122개의 세부추진과제가 추진되었다.<sup>1)</sup> 정책 목표별로 [개방] 129개(10.6%), [통합] 666개(54.5%), [인권] 335개(27.4%), [안전] 45 개(3.7%), [협력] 47개(3.8%)의 과제가 추진되었다. 목표달성을 '110% 이상'인 과제는 407개(33.8%), '100~110% 미만' 573개(46.9%), '90~100% 미만' 58개(4.7%), '80~90% 미만' 51개(4.2%), '80% 미만' 133개(10.9%)로 나타났다.

목표달성을 '110% 이상'인 과제들을 정책목표별로 구분해보니, [개방] 33개(정책목표 내 과제 대비 25.6%), [통합] 229개(정책목표 내 과제 대비 34.4%), [인권] 119개(정책목표 내 과제 대비 35.5%), [안전] 20개(정책목표 내 과제 대비 44.4%), [협력] 6개(정책목표 내 과제 대비 12.8%)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의 총 184개 과제 중 목표달성을 '110% 이상'인 과제는 59개로

1) 18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시행 계획 담당자의 자체평가를 수집한 결과, 총 1,241개(중앙행정기관 184개, 지방자치단체 1,057개)의 과제에 대한 평가가 제출되었다. 연구진의 자체 평가 검토 결과, 정상 추진 과제로 인정하기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19개 과제들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19개 과제의 분석 제외 사유는 사업종료 10건, 기입누락 3건, 사업폐지 2건, 사업중단 1건, 사업전환 1건, 사업대체 1건, 차년도 이관 1건 이었다.

서 총 과제 수의 32.1%이며, '100~110% 미만' 88개(44.7%), '90~100% 미만' 7개(3.8%), '80~90% 미만' 7개(3.8%), '80% 미만' 23개(12.5%)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총 1,038개 과제 중 목표달성을 '110% 이상'인 과제는 348개로서 총 과제 수의 33.5%이며, '100~110% 미만' 485개(46.7%), '90~100% 미만' 51개(4.9%), '80~90% 미만' 44개(4.2%), '80% 미만' 110개(10.6%)로 평가되었다.

〈표 3-3〉 정책목표별 목표달성을 평가 결과

(단위: 개, %)

구분	계	세부추진과제 목표달성을 평가 결과											
		110% 이상		100~110% 미만		90~100% 미만		80~90% 미만		80% 미만			
계	1,222	100.0	407	33.3%	573	46.9%	58	4.7%	51	4.2%	133	10.9%	
정책 목표	개방	129	10.6	33	25.6	53	41.1	8	6.2	11	8.5	24	18.6
	통합	666	54.5	229	34.4	309	46.4	35	5.3	26	3.9	67	10.1
	인권	335	27.4	119	35.5	158	47.2	15	4.5	12	3.6	31	9.3
	안전	45	3.7	20	44.4	19	42.2	0	0.0	1	2.2	5	11.1
	협력	47	3.8	6	12.8	34	72.3	0	0.0	1	2.1	6	12.8

2017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1,122개의 추진과제 중, 목표를 달성한 과제(자체 평가 결과 당초 목표의 100% 이상을 달성한 경우)는 980개로서 전체의 80.2%였다. 정책목표별로는 [개방] 86개(정책목표과제 대비 66.7%), [통합] 528개(정책목표 내 과제대비 80.9%), [인권] 277개(정책목표 내 과제대비 82.7%), [안전] 39개(정책목표 내 과제대비 86.7%), [협력] 40개(정책목표 내 과제대비 85.1%)의 과제가 목표를 달성했다.

예산이 투입되는 과제는 1,019개(83.4%), 비예산 과제는 203개(16.6%)로 예산이 투입된 과제가 절대적으로 많았다. 예산이 투입된 1,019개 과제의 예산총액은 6878.5억원이며, 예산 집행액은 6757.9억원으로 98.2%의 집행률을 보였다.

18개의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한 184개 과제 중 147개의 과제가 목표를 달성(목표 달성을 79.9%)<sup>2)</sup>하였고, 4568.3억 원의 책정 예산 중 4489.1억 원이 집행되었다(예산집행률 98.2%).

17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1,038개 과제 중 833개의 과제가 목표를 달성(목표 달성을 80.3%)<sup>3)</sup>하였고, 2350.3억 원의 책정 예산 중 2308.9억 원이 집행되었다(예산집행률 98.2%).

성과목표달성도(목표달성을 및 예산집행률)를 기준으로 2017년 외국인정책 시행 계획은 정상 추진된 것으로 평가된다.

〈표 3-4〉 정책목표별 성과목표달성도 평가 결과

(단위: 개, %, 억원)

정책목표 구분	목표달성			예산집행		
	과제 총수	달성 과제수	달성률 (%)	예산 총액	예산 집행액	집행률 (%)
계	1,222	980	80.2	6878.5	6757.9	98.2
[개방] 경제 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	129	86	66.7	2824.1	2794.3	98.9
[통합]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	666	538	80.9	1657.7	1626.3	98.1
[인권] 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존중	335	277	82.7	755.6	740.7	98.0
[안전]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구현	45	39	86.7	189.8	181.5	95.6
[협력]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	47	40	85.1	1451.1	1414.9	97.5

2) 중앙행정기관 184개의 세부추진과제 중 목표달성을 0%인 과제는 총 11개로 분석되었고 미달성 과제 수에 포함하였다.

3) 지방자치단체 1,038개의 세부추진과제 중 목표달성을 0%인 과제는 총 14개로 분석되었고, 미달성 과제수에 포함하였다.

## 제2절 중앙행정기관 평가 결과

### 1. 정책목표별 평가 결과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소속된 18개 중앙행정기관에서는 2017년 총 184개의 세부 추진과제 중 정책목표별로 [개방] 45개(24.5%), [통합] 49개(26.6%), [인권] 35개, [안전] 28개, [협력] 27개의 과제가 추진되었다. 목표달성을 ‘110% 이상’인 과제는 59개(32.1%), ‘100~110% 미만’ 88개(44.7%), ‘90~100% 미만’ 7개(3.8%), ‘80~90% 미만’ 7개(3.8%), ‘80% 미만’ 23개(12.5%)로 나타났다.

목표달성을 ‘110% 이상’인 과제들을 정책목표별로 구분해보니, [개방] 15개(정책목표 내 과제 대비 33.3%), [통합] 19개(정책목표 내 과제 대비 38.8%), [인권] 9개(정책목표 내 과제 대비 25.7%), [안전] 13개(정책목표 내 과제 대비 46.4%), [협력] 3개(정책목표 내 과제 대비 11.1%)로 나타났다.

정책목표별 세부추진과제 분석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은 모두 공통과제(위임사업+공동사업)로서 정책목표별로 과제수가 비교적 잘 배분되어 추진되었다 볼 수 있다.

〈표 3-5〉 정책목표별 목표달성을 평가 결과

(단위: 개, %)

구분	계	세부추진과제 목표달성을 평가 결과											
		110% 이상		100~110% 미만		90~100% 미만		80~90% 미만		80% 미만			
계	184	100%	59	32.1%	88	47.8%	7	3.8%	7	3.8%	23	12.5%	
정책목표	개방	45	24.5	15	33.3	17	37.8	2	4.4	4	8.9	7	15.6
	통합	49	26.6	19	38.8	20	40.8	3	6.1	1	2.0	6	12.2
	인권	35	19.0	9	25.7	20	57.1	2	5.7	1	2.9	3	8.6
	안전	28	15.2	13	46.4	11	39.3	0	0.0	1	3.6	3	10.7
	협력	27	14.7	3	11.1	20	74.1	0	0.0	0	0.0	4	14.8

## 2. 중앙행정기관별 평가 결과

총 18개의 중앙행정기관 중 외국인정책의 주무부처라 할 수 있는 법무부가 83개(45.1%)의 과제를 추진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16개, 8.7%), 고용노동부(14개, 7.6%), 교육부(13개, 7.1%), 보건복지부(10개, 5.4%) 순이었다.

목표달성을 ‘110% 이상’인 세부추진과제의 비율이 높은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62.5%), 여성가족부(62.5%), 농림축산식품부(50%), 해양경찰청(50%), 교육부(46.2%) 순이었다.

〈표 3-6〉 중앙행정기관별 목표달성을 평가 결과

(단위: 개)

부처	계	세부추진과제 평가결과								
		110% 이상	100~110% 미만	90~100% 미만	80~90% 미만	80% 미만				
계	184	100.0%	59	32.1%	88	47.8%	7	3.8%	7	3.8%
교육부	13	7.1%	6	46.2%	7	53.8%	0	-	0	-
과기부	4	2.2%	1	25.0%	2	50.0%	1	25.0%	0	-
외교부	8	4.3%	1	12.5%	6	75.0%	0	-	0	-
법무부	83	45.1%	26	31.3%	39	47.0%	3	3.6%	2	2.4%
행안부	4	2.2%	0	-	4	100.0%	0	0.0%	0	0.0%
문체부	16	8.7%	6	37.5%	6	37.5%	1	6.3%	1	6.3%
농식품부	2	1.1%	1	50.0%	1	50.0%	0	-	0	0.0%
산업부	8	4.3%	5	62.5%	2	25.0%	0	-	0	0.0%
복지부	10	5.4%	0	-	6	60.0%	0	-	3	30.0%
고용부	14	7.6%	6	42.9%	3	21.4%	2	14.3%	0	-
여가부	8	4.3%	5	62.5%	3	37.5%	0	-	0	-
국토부	1	0.5%	0	-	1	100.0%	0	-	0	-
해수부	3	1.6%	0	-	2	66.7%	0	-	0	-
벤처부	1	0.5%	0	-	0	-	0	-	1	100.0%

방통위	2	1.1%	0	-	2	100.0%	0	-	0	-	0	-
통계청	1	0.5%	0	-	1	100.0%	0	-	0	-	0	-
경찰청	4	2.2%	1	25.0%	3	75.0%	0	-	0	-	0	-
해경청	2	1.1%	1	50.0%	0	-	0	-	0	-	1	50.0%

### 3. 정책목표별 성과목표달성도 평가 결과

전체 184개의 추진과제 중, 목표를 달성한 과제는 147개로서 전체의 79.9%였다. 정책목표별로는 [개방] 32개(정책목표과제 대비 71.1%), [통합] 39개(정책목표 내 과제대비 79.6%), [인권] 29개(정책목표 내 과제대비 82.9%), [안전] 24개(정책목표 내 과제대비 85.7%), [협력] 23개(정책목표 내 과제대비 85.2%)의 과제가 목표를 달성했다.

예산이 투입되는 과제는 99개(53.8%), 비예산 과제는 85개(46.2%)로 예산과 비예산 과제의 비율에 큰 차이가 없었다. 예산이 투입되는 99개 과제의 예산총액은 4568.3억 원이며, 예산 집행액은 4489.1억 원으로 98.2%의 집행률을 보여 중앙행정기관의 세부추진과제 예산집행은 적절하였다고 평가된다.

〈표 3-7〉 정책목표별 성과목표달성도 평가 결과

(단위: 개, %, 억원)

정책목표 구분	목표달성			예산집행		
	과제 총수	달성 과제수	달성률 (%)	예산 총액	예산 집행액	집행률 (%)
계	184	147	79.9	4568.3	4489.1	98.2
[개방] 경제 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	45	32	71.1	1885.9	1874.2	99.3
[통합]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	49	39	79.6	610.1	593.9	97.3
[인권] 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존중	35	29	82.9	404.3	397.7	98.3

[안전]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구현	28	24	85.7	189.5	181.2	95.6
[협력]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	27	23	85.2	1478.3	1441.9	97.5

## 4. 중점과제별 평가 결과

### 1) 개방: 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

정책목표 ‘[개방] 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는 4개의 중점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총 45개 세부추진과제 중 예산이 투입된 과제는 26개(57.8%)로 총 1885.9억 원 중 1874.2억 원(집행률 99.3%)을 집행했다. 목표를 달성한 과제는 총 32개로써 중점과제별로 ‘내수활성화 기여 외래관광객 유치’ 9개, ‘국가와 기업이 필요한 해외인적자원 확보’ 10개,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유학생 유치’ 9개,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외국인 투자유치’ 4개였다.

〈표 3-8〉 [개방] 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

(단위: 개, %, 억원)

구 분	목표달성			예산집행		
	과제 총수	달성 과제수	달성을 (%)	예산 총액	예산 집행액	집행률 (%)
계	45	32	71.1	1885.9	1874.2	99.3
1-1 내수활성화 기여 외래관광객 유치	18	9	50.0	718.4	718.3	*100.0
• 출입국심사 서비스 고도화	7	4	57.1	607.6	607.4	*100.0
• 비자제도 개선을 통한 외국인 유입 촉진	5	4	80.0	—	—	—
•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 지원	6	1	1637	110.8	110.8	100.0
1-2 국가와 기업이 필요한 해외인적자원 확보	12	10	83.3	84.4	84.2	99.6
• 해외 전문인력 유치 지원	9	7	77.8	78.8	79.5	99.6
• 중소기업 외국인력 도입 합리화	3	3	100.0	4.6	4.6	100.0

1-3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유학생 유치	9	9	100.0	646.6	636.1	98.3
•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기반 조성	4	4	100.0	641.3	630.8	98.3
• 유학생 관리 및 활용 강화를 위한 기반 확충	5	5	100.0	5.2	5.2	100.0
1-4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외국인 투자유치	6	4	66.7	436.3	435.6	99.8
• 투자이민제도 확대	2	2	100.0	1.6	1.6	100.0
• 외국인 투자여건 개선	4	2	50.0	434.7	434.0	99.8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 2) 통합: 대한민국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

정책목표 ‘[통합] 대한민국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은 5개의 중점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총 49개 세부추진과제 중 예산이 투입된 과제는 23개(47.9%)로 총 610.1억원 중 593.9억원(집행률 97.3%)을 집행했다. 목표를 달성한 과제는 총 39개로써 중점과제별로 ‘자립과 통합을 고려한 국적 및 영주제도 개선’ 9개, ‘체계적인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6개, ‘국제결혼 피해 방지 및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8개, ‘이민배경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9개, ‘사회통합을 위한 통합기금 등 인프라 구축’ 7개였다.

〈표 3-9〉 [통합] 대한민국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

(단위: 개, %, 억원)

구분	목표달성			예산집행		
	과제 총수	달성 과제수	달성률 (%)	예산 총액	예산 집행액	집행률 (%)
계	49	39	79.6	610.1	593.9	97.3
2-1 자립과 통합을 고려한 국적 및 영주제도 개선	12	9	75.0	3.5	3.9	112.5
• 국적취득 시 기본소양 등 자격요건 강화	3	3	100.0	—	—	—
• 국적절차와 사회통합프로그램 연계 강화	1	1	100.0	—	—	—
• 국적 수요자에 대한 서비스 제고	8	5	62.5	3.5	3.9	112.5
2-2 체계적인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6	6	100.0	72.7	72.4	99.6

• 이민 유형별 사회통합프로그램 개발·운영	2	2	100.0	69.1	69.0	99.7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반 확충	3	3	100.0	2.4	2.3	98.7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관리 종합시스템 구축	1	1	100.0	1.1	1.0	91.4
<b>2-3 국제결혼 피해 방지 및 결혼이민자 정착지원</b>	<b>12</b>	<b>8</b>	<b>66.7</b>	<b>430.4</b>	<b>414.2</b>	<b>96.2</b>
• 비자심사 강화 및 결혼중개업체 관리강화	3	2	66.7	0.04	0.04	100.0
•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초기 적응 지원	2	2	100.0	178.1	173.7	97.5
• 결혼이민자의 경제자립 역량 강화 지원	7	4	57.1	252.3	240.4	95.3
<b>2-4 이민배경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b>	<b>10</b>	<b>9</b>	<b>90.0</b>	<b>101.8</b>	<b>101.8</b>	<b>*100.0</b>
• 이민배경 자녀의 초기 적응 지원	2	2	100.0	4.7	4.7	99.8
• 이민배경 청소년의 진로·진학지도 강화	4	3	75.0	31.2	31.2	100.0
• 다문화 친화적 교육환경 구축	4	4	100.0	22.8	22.8	100.0
<b>2-5 사회통합을 위한 통합기금 등 인프라 구축</b>	<b>9</b>	<b>7</b>	<b>77.8</b>	<b>1.5</b>	<b>1.3</b>	<b>91.3</b>
• 사회통합 관련 재원 마련	1	0	0.0	—	—	—
• 이민자 사회참여 기반 확대	5	5	100.0	1.5	1.3	91.3
• 지역사회 주민으로서의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	3	2	66.7	—	—	—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 3) 인권: 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존중

정책목표 ‘[인권] 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존중’은 3개의 중점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총 35개 세부추진과제 중 예산이 투입된 과제는 23개(65.7%)로 총 404.3억원 중 397.7억원(집행률 98.3%)을 집행했다. 목표를 달성한 과제는 총 29개로써 중점과제별로 ‘이민자 인권존중 및 차별방지 제도화’ 16개, ‘다양한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용성 확대’ 9개, ‘국민과 외국인이 소통하는 글로벌 환경조성’ 4개였다.

〈표 3-10〉 [인권] 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존중

(단위: 개, %, 억원)

구분	목표달성			예산집행		
	과제 총수	달성 과제수	달성을 (%)	예산 총액	예산 집행액	집행률 (%)
계	35	29	82.9	404.3	397.7	98.3
3-1 이민자 인권존중 및 차별방지 제도화	19	16	84.2	302.4	295.8	97.8
• 이민자 차별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2	2	100.0	—	—	—
• 이민자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 절차 강화	10	8	80.0	144.3	139.5	96.6
• 인도주의적 지원 확대	7	6	85.7	*158.1	156.3	98.8
3-2 다양한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용성 확대	10	9	90.0	*41.6	41.5	99.8
• 문화다양성 이해 제고	7	6	85.7	37.5	37.5	99.8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세계인의 날' 활성화	1	1	100.0	3.3	3.3	100.0
• 문화다양성 콘텐츠 개발·활용 지원	2	2	100.0	0.6	0.6	100.0
3-3 국민과 외국인이 소통하는 글로벌 환경 조성	6	4	66.7	60.4	60.4	100.0
• 외국인 집중 거주지 생활환경 개선	1	1	100.0	—	—	—
• 외국인 생활편의 제공을 위한 민원제도 개선	2	1	50.0	3.6	3.6	100.0
• 외국인 친화적 온라인·미디어 환경 구축	3	2	66.7	24.4	24.4	100.0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 4) 안전: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 구현

정책목표 '[안전]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구현'은 4개의 중점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총 28개 세부추진과제 중 예산이 투입된 과제는 7개(25.0%)로 총 189.5억원 중 181.2억원(집행률 95.6%)을 집행했다. 목표를 달성한 과제는 총 24개로써 중점과제별로 '안전하고 신뢰받는 국경관리' 5개, '질서위반 외국인에 대한 실효적 체류관리' 7개, '불법체류자 단속 패러다임 다변화' 7개, '외국인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관리 역량 제고' 5개였다.

〈표 3-11〉 [안전]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구현

(단위: 개, %, 억원)

구분	목표달성			예산집행		
	과제 총수	달성 과제수	달성률 (%)	예산 총액	예산 집행액	집행률 (%)
계	28	24	85.7	189.5	181.2	95.6
4-1 안전하고 신뢰받는 국경관리	6	5	83.3	159.9	151.8	94.9
• 공항 출입국관리 강화	2	2	100.0	—	—	—
• 항만 출입국관리 강화	4	3	75.0	159.9	151.8	94.9
4-2 질서위반 외국인에 대한 실효적 체류관리	8	7	87.5	82.7	82.7	100.0
• 질서위반 외국인의 실효적 제재를 위한 기반 구축	3	2	66.7	—	—	—
• 외국인대상 법질서 교육 강화	1	1	100.0	*5.1	*5.1	100.0
• 외국인집중거주지에 대한 질서 확보	4	4	100.0	3.2	3.2	100.0
4-3 불법체류자 단속 폐리다임 다변화	9	7	77.8	—	—	—
• 불법체류자 단속역량 강화	3	3	100.0	—	—	—
• 불법고용 근절 기반 조성	4	2	50.0	—	—	—
• 외국인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조사 강화	2	2	100.0	—	—	—
4-4 외국인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관리 역량 제고	5	5	100.0	21.3	21.1	99.3
• 외국인주민 현황(통계) 관리 정확성 제고	3	3	100.0	16.3	16.1	99.1
• 통합이민정보시스템 구축 등 외국인 정보의 체계화	2	2	100.0	5.0	5.0	100.0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 5) 협력: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

정책목표 ‘[협력]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은 3개의 중점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총 27개 세부추진과제 중 예산이 투입된 과제는 19개(70.4%)이고, 총 1478.3억 원 중 1441.9억원(집행률 97.5%)을 집행했다. 목표를 달성한 과제는 총 23개로써 중점과제별로 ‘이민자 출신국,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협력 강화’ 9개, 국가위상에

부합하는 난민정책 추진‘7개,‘동포사회와의 교류, 협력 확대’7개였다.

〈표 3-12〉 [협력]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

(단위: 개, %, 억원)

구분	목표달성			예산집행		
	과제 총수	달성 과제수	달성률 (%)	예산 총액	예산 집행액	집행률 (%)
계	27	23	85.2	1478.3	1441.9	97.5
5-1 이민자 출신국,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협력 강화	10	9	90.0	1178.4	1147.9	97.4
• 이민관련 국제 협의체 참여 확대	2	2	100.0	5.0	4.7	94.4
• 귀환 이민자의 성공적 본국 재정착 지원체계 구축	2	2	100.0	*4.6	4.5	98.6
• 개발도상국 우수인재 양성 지원	6	5	83.3	1168.8	1138.6	97.4
5-2 국가 위상에 부합하는 난민정책 추진	10	7	70.0	30.8	28.4	92.3
• 재정착희망난민제도 도입	2	1	50.0	2.2	2.0	91.1
• 체계적 난민심사 시스템 구축	4	2	50.0	9.5	8.2	86.4
•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국내 정착 지원	4	4	100.0	18.9	18.1	95.4
5-3 동포사회와의 교류, 협력 확대	7	7	100.0	*269.1	265.6	98.7
• 외국국적동포의 자유로운 출입국과 귀환 지원	3	3	100.0	42.0	42.7	101.7
• 국내와 재외동포 사회와의 교류확대 지원	4	4	100.0	227.0	222.8	98.1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 제3절 지방자치단체 평가 결과

### 1. 정책목표별 평가 결과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총 1,038개의 세부추진과제 중 정책목표별로 [개방] 84개(8.1%), [통합] 617개(59.4%), [인권] 300개(28.9%), [안전] 17개(1.6%), [협력] 20개(1.9%)의 과제가 각각 추진되었다.

목표달성을 ‘110% 이상’인 과제는 348개로서 총 과제 수의 33.5%이며, ‘100~110% 미만’ 485개(46.7%), ‘90~100% 미만’ 51개(4.9%), ‘80~90% 미만’ 44개(4.2%), ‘80% 미만’ 110개(10.6%)로 평가되었다.

목표달성을 ‘110% 이상’인 과제들을 정책목표별로 구분해보니, [개방] 18개(정책목표 내 과제 대비 21.4%), [통합] 210개(정책목표 내 과제 대비 34.0%), [인권] 110개(정책목표 내 과제 대비 36.7%), [안전] 7개(정책목표 내 과제 대비 41.7%), [협력] 3개(정책목표 내 과제 대비 15%)로 나타났다. 정책목표별 세부추진과제 분석 결과, [통합]과 [인권]에 해당하는 과제가 917개로써 외국인정책 추진과제의 8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과 [인권]은 세부 추진 과제 수도 많지만 그에 대비하여 목표달성을 ‘매우 우수’한 과제의 비율도 각각 34%와 36.7%로 양호하였다. [안전]은 비록 과제수는 적었지만, ‘매우 우수’한 과제 비율이 41.7%로 평가되었다.

〈표 3-13〉 정책목표별 평가 결과

(단위: 개, %)

구분	계	세부추진과제 목표달성을 평가결과											
		110% 이상		100%~110% 미만		90%~100% 미만		80%~90% 미만					
계	1,038	100%	348	33.5%	485	46.7%	51	4.9%	44	4.2%	110	10.6%	
정책목표	개방	84	8.1	18	21.4	36	42.9	6	7.1	7	8.3	17	20.2
	통합	617	59.4	210	34.0	289	46.8	32	5.2	25	4.1	61	9.9
	인권	300	28.9	110	36.7	138	46.0	13	4.3	11	3.7	28	9.3
	안전	17	1.6	7	41.7	8	47.1	0	0.0	0	0.0	2	11.8
	협력	20	1.9	3	15.0	14	70.0	0	0.0	1	5.0	2	10.0

## 2. 지자체별 평가 결과

전국 17개 지자체 중 부산광역시가 121개(11.7%)의 과제를 추진하였고, 서울특별시가 104개(10.0%)의 과제를 추진하였다. 이어서 충남(103개, 9.9%), 경기(85개, 8.2%), 경남(84개, 8.1%)의 순으로 많은 과제를 추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목표달성을 ‘110% 이상’인 세부추진과제 수가 많은 지자체는 서울(42개), 경기(38개), 충남(24개) 순이었고, 그 뒤로 부산, 대구, 경남이 각 23개로 동률을 이루었다. 목표달성을 ‘110% 이상’인 세부추진과제 비율이 높은 지자체는 인천(48%), 제주(45.9%), 경기(44.7%) 순이었고, 울산(41.7%)과 광주(41.5%)가 그 뒤를 따랐다.

〈표 3-14〉 지자체별 목표달성을 평가결과

(단위: 개)

구분	계	세부추진과제 평가결과								
		110% 이상		100%~110% 미만		90%~100% 미만		80%~90% 미만		80% 미만
서울	104	10.0%	42	40.4%	32	30.8%	6	5.8%	6	5.8%
부산	121	11.7%	23	19.0%	75	62.0%	4	3.3%	7	5.8%
대구	59	5.7%	23	39.0%	25	42.4%	5	8.5%	4	6.8%
인천	43	4.1%	21	48.8%	15	34.9%	2	4.7%	0	0.0%
광주	41	3.9%	17	41.5%	17	41.5%	0	0.0%	1	2.4%
대전	57	5.5%	20	35.1%	25	43.9%	1	1.8%	4	7.0%
울산	48	4.6%	20	41.7%	16	33.3%	1	2.1%	1	2.1%
세종	16	1.5%	6	37.5%	6	37.5%	1	6.3%	1	6.3%
경기	85	8.2%	38	44.7%	31	36.5%	8	9.4%	5	5.9%
강원	38	3.7%	12	31.6%	19	50.0%	3	7.9%	0	0.0%
충북	45	4.3%	10	22.2%	29	64.4%	2	4.4%	0	0.0%
충남	103	9.9%	24	23.3%	66	64.1%	3	2.9%	2	1.9%
									8	7.8%

전북	49	4.7%	16	32.7%	31	63.3%	0	0.0%	2	4.1%	0	0.0%
전남	62	6.0%	18	29.0%	28	45.2%	3	4.8%	5	8.1%	8	12.9%
경북	46	4.4%	18	39.1%	14	30.4%	2	4.3%	1	2.2%	11	23.9%
경남	84	8.1%	23	27.4%	44	52.4%	8	9.5%	4	4.8%	5	6.0%
제주	37	3.6%	17	45.9%	12	32.4%	2	5.4%	1	2.7%	5	13.5%

### 3. 정책목표별 성과목표달성을 평가 결과

전체 1,038개의 추진과제 중, 목표를 달성한 과제는 833개로서 전체의 80.3%였다. 정책목표별로는 [개방] 54개(정책목표과제 대비 64.3%), [통합] 499개(정책목표과제 대비 80.8%), [인권] 248개(정책목표과제 대비 82.6%), [안전] 15개(정책목표대비 88.2%), [협력] 17개(목표과제대비 85%)의 과제가 목표를 달성했다.

예산이 투입되는 과제는 920개(88.6%), 비예산과제는 118개(11.4%)로 예산이 투입되는 과제수가 절대적으로 많았다. 예산이 투입되는 920개 과제의 예산총액은 2,350.3억원이며, 예산 집행액은 2308.9억원으로 98.2%의 집행률을 보여 지방자치단체의 세부추진과제 예산집행은 적절하였다고 평가된다.

〈표 3-15〉 정책목표별 성과목표달성을 평가 결과

(단위: 개, %, 억원)

구분	목표달성			예산집행		
	과제 총수	달성 과제수	달성률 (%)	예산 총액	예산 집행액	집행률 (%)
계	1,038	833	80.3	2350.3	2308.9	98.2
[개방] 경제 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	84	54	64.3	938.1.	920.1	98.1
[통합]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	617	499	80.8	1,047.6	1,032.4	98.5

[인권] 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존중	300	248	82.6	351.2	342.9	97.6
[안전]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구현	17	15	88.2	0.29	0.25	86.2
[협력]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	20	17	85.0	12.9	13.1	101.2

## 4. 과제유형별 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 세부추진과제 전체 1,038개 중 공통과제(위임사업+공동사업)은 219개(21.1%), 자체과제는 819개(78.9%)였다.

공통과제 219개 중 목표달성을률이 ‘110% 이상’인 세부추진과제는 64개(29.2%)이고, 자체과제 819개 중 목표달성을률이 ‘110% 이상’인 세부추진과제는 284개(34.7%)로 나타났다.

공통과제 중 목표달성을률 ‘110% 이상’인 세부추진과제 수가 많은 지역은 부산(9개), 인천(8개), 대전(6개)의 순이었다. 목표달성을률 ‘110% 이상’인 세부추진과제의 과제대비 비율이 높은 지자체는 서울(66.7%), 경기(55.6%), 대전(54.5%) 순이었다.

자체과제 중 목표달성을률 ‘110% 이상’인 세부추진과제 수가 많은 지역은 서울(38개), 경기(33개), 경남(23개)의 순이었다. 목표달성을률 ‘110% 이상’인 세부추진과제의 과제대비 비율이 높은 지자체는 제주(52.0%), 인천(48.1%), 광주(44.1%) 순이었다.

〈표 3-16〉 과제유형별 평가결과

(단위: 개, %)

구분		계	세부추진과제 평가결과				
			110% 이상	100%~110% 미만	90%~100% 미만	80%~90% 미만	80% 미만
계	공통	219 100.0%	64 29.2%	126 57.5%	3 1.4%	8 3.7%	18 8.2%
	자체	819 100.0%	284 34.7%	359 43.8%	48 5.9%	36 4.4%	92 11.2%
서울	공통	6 100	4 66.7	2 33.3	0 0.0	0 0.0	0 0.0
	자체	98 100	38 38.8	30 30.6	6 6.1	6 6.1	18 18.4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평가 및 추진과제 발굴 연구』

부산	공통	35	100	9	25.7	21	60.0	0	0.0	1	2.9	4	11.4
	자체	86	100	14	16.3	54	62.8	4	4.7	6	7.0	8	9.3
대구	공통	9	100	2	22.2	7	77.8	0	0.0	0	0.0	0	0.0
	자체	50	100	21	42.0	18	36.0	5	10.0	4	8.0	2	4.0
인천	공통	16	100	8	50.0	8	50.	0	0.0	0	0.0	0	0.0
	자체	27	100	13	48.1	7	25.9	2	7.4	0	0.0	5	18.5
광주	공통	7	100	2	28.6	4	57.1	0	0.0	1	14.3	0	0
	자체	34	100	15	44.1	13	38.2	0	0.0	0	0.0	6	14.6
대전	공통	11	100	6	54.5	2	18.2	1	9.1	0	0.0	2	18.2
	자체	46	100	14	30.4	23	50.0	0	0.0	4	8.7	5	10.9
울산	공통	10	100	5	50.0	2	20.0	0	0.0	1	10.0	2	20.0
	자체	38	100	15	39.5	14	36.8	1	2.6	0	0.0	8	21.1
세종	공통	10	100	4	40.0	5	50.0	0	0.0	1	10.0	0	0.0
	자체	6	100	2	33.3	1	16.7	1	16.7	0	0.0	2	33.3
경기	공통	9	100	5	55.6	3	33.3	1	11.1	0	0.0	0	0.0
	자체	76	100	33	43.4	28	36.8	7	9.2	5	6.6	3	3.9
강원	공통	10	100	0	0.0	10	100.0	0	0.0	0	0.0	0	0.0
	자체	28	100	12	42.9	9	32.1	3	10.7	0	0.0	4	14.3
충북	공통	14	100	2	14.3	12	85.7	0	0.0	0	0.0	0	0.0
	자체	31	100	8	25.8	17	54.8	2	6.5	0	0.0	4	12.9
충남	공통	32	100	5	15.6	24	75.0	1	3.1	1	3.1	1	3.1
	자체	71	100	19	26.8	42	59.2	2	2.8	1	1.4	7	9.9
전북	공통	13	100	3	23.1	9	69.2	0	0.0	1	7.7	0	0.0
	자체	36	100	13	36.1	22	61.1	0	0.0	1	2.8	0	0.0
전남	공통	17	100	5	29.4	9	52.9	0	0.0	1	5.9	2	11.8
	자체	45	100	13	28.9	19	42.2	3	6.7	4	8.9	6	13.3
경북	공통	2	100	0	0.0	0	0.0	0	0.0	0	0.0	2	100.0
	자체	44	100	18	40.9	14	31.8	2	4.5	1	2.3	9	20.5
경남	공통	6	100	0	0.0	5	83.3	0	0.0	0	0.0	1	16.7
	자체	78	100	23	29.5	39	50.0	8	10.3	4	5.1	4	5.1
제주	공통	12	100	4	33.3	3	25.0	0	0.0	1	8.3	4	33.3
	자체	25	100	13	52.0	9	36.0	2	8.0	0	0.0	1	4.0

## 5. 중점과제별 평가 결과

### 1) 개방: 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

정책목표 ‘[개방] 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는 4개의 중점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총 84개 세부추진과제 중 예산이 투입된 과제는 78개로 총 938.1억원 중 920.1억원(집행률 98.1%)을 집행했다. 목표를 달성한 과제는 총 54개로써 중점과제별로 ‘내수활성화 기여 외래관광객 유치’ 25개(공통 6, 자체 19), ‘국가와 기업이 필요한 해외인적자원 확보’ 3개(자체 3),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유학생 유치’ 15개(공통 1, 자체 14),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외국인 투자유치’ 11개(공통 4, 자체 7)였다.

<표 3-17> [개방] 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

(단위: 개, %, 억원)

구분	목표달성			예산집행		
	과제 총수	달성 과제수	달성률 (%)	예산 총액	예산 집행액	집행률 (%)
계	84	54	64.3	938.1	920.1	*98.1
■ 소계(공통과제)	15	11	73.3	135.5	135.5	100
1-1 내수활성화 기여 외래관광객 유치	7	6	85.7	49.2	49.2	100
• 출입국심사 서비스 고도화	5	5	100	47.1	47.1	100
• 비자제도 개선을 통한 외국인 유입 촉진	—	—	—	—	—	—
•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 지원	2	1	50	2.1	2.1	100
1-2 국가와 기업이 필요한 해외인적자원 확보	—	—	—	—	—	—
• 해외 전문인력 유치 지원	—	—	—	—	—	—
• 중소기업 외국인력 도입 합리화	—	—	—	—	—	—

1-3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유학생 유치	2	1	1	17.1	17.1	100
•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기반 조성	2	1	50	17.1	17.1	100
• 유학생 관리 및 활용 강화를 위한 기반 확충	—	—	—	—	—	—
1-4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외국인 투자유치	6	4	66.7	69.1	69.1	69.1
• 투자이민제도 확대	—	—	—	—	—	—
• 외국인 투자여건 개선	6	4	66.7	69.1	69.1	100
■ 소계(자체과제)	69	43	62.3	802.5	784.5	*97.8
1-1 내수활성화 기여 외래관광객 유치	36	19	52.8	497.3	480.9	96.7
1-2 국가와 기업이 필요한 해외인적자원 확보	3	3	100	223.2	223.2	100
1-3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유학생 유치	19	14	73.7	8.1	7.7	*95.2
1-4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외국인 투자유치	11	7	63.6	73.9	72.6	98.2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 2) 통합: 대한민국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

정책목표 ‘[통합] 대한민국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은 5개의 중점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총 617개 세부추진과제 중 예산이 투입된 과제는 550개(89.1%)로 총 1,047.6억원 중 1,032.4억원(집행률 98.5%)을 집행했다. 목표를 달성한 과제는 총 499개로써 중점과제별로 ‘자립과 통합을 고려한 국적 및 영주제도 개선’2개(자체 2), ‘체계적인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2개(공통 1, 자체 1), ‘국제결혼 피해 방지 및 결혼이민자 정착지원’321개(공통 87, 자체 234), ‘이민배경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110개(공통 38, 자체 72), ‘사회통합을 위한 통합기금 등 인프라 구축’64개(공통 9, 자체 55)였다.

〈표 3-18〉 [통합] 대한민국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

(단위: 개, %, 억원)

구분	목표달성			예산집행		
	과제 총수	달성 과제수	달성을 (%)	예산 총액	예산 집행액	집행률 (%)
계	617	499	80.8	1,047.6	1032.4	98.5
■ 소계(공통과제)	154	135	87.6	803.6	792.3	98.5
2-1 자립과 통합을 고려한 국적 및 영주제도 개선	—	—	—	—	—	—
• 국적취득 시 기본소양 등 자격요건 강화	—	—	—	—	—	—
• 국적절차와 사회통합프로그램 연계 강화	—	—	—	—	—	—
• 국적 수요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	—	—	—	—	—
2-2 체계적인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1	1	100	85	120	141.2
• 이민 유형별 사회통합프로그램 개발·운영	—	—	—	—	—	—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반 확충	1	1	100	85	120	141.2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관리 종합시스템 구축	—	—	—	—	—	—
2-3 국제결혼 피해 방지 및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100	87	87.0	586.6	572.1	97.5
• 비자심사 강화 및 결혼중개업체 관리강화	13	1	84.6	—	—	—
•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초기 적응 지원	72	62	86.1	574.1	559.3	97.4
• 결혼이민자의 경제자립 역량 강화 지원	15	14	93.3	12.4	12.8	103.0
2-4 이민배경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42	38	90.5	181.9	184.7	*101.6
• 이민배경 자녀의 초기 적응 지원	19	17	89.5	133.2	132.5	99.5
• 이민배경 청소년의 진로·진학지도 강화	1	1	100	15	15	100
• 다문화 친화적 교육환경 구축	22	20	90	48.5	51.9	107.1
2-5 사회통합을 위한 통합기금 등 인프라 구축	11	9	81.8	34.2	34.2	**100
• 사회통합 관련 재원 마련	—	—	—	—	—	—
• 이민자 사회참여 기반 확대	10	9	90	34.2	34.2	**100
• 지역사회 주민으로서의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	1	0	0	—	—	—
■ 소계(자체과제)	463	364	78.6	244.0	240.1	98.3
2-1 자립과 통합을 고려한 국적 및 영주제도 개선	2	2	100	—	—	—

2-2 체계적인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1	1	100	0.05	0.05	100
2-3 국제결혼 피해 방지 및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306	234	76.5	2.8	2.5	89.2
2-4 이민배경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91	72	79.1	61.1	59.3	97.0
2-5 사회통합을 위한 통합기금 등 인프라 구축	63	55	87.3	12.9	12.6	97.8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 3) 인권: 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존중

정책목표 ‘[인권] 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존중’은 3개의 중점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총 300개 세부추진과제 중 예산이 투입된 과제는 266개(88.7%)로 총 351.2억 원 중 342.9억원(집행률 97.6%)을 집행했다. 목표를 달성한 과제는 총 248개로써 중점과제별로 ‘이민자 인권존중 및 차별방지 제도화’ 50개(공통 27, 자체 23), ‘다양한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용성 확대’ 134개(공통 3, 자체 131), ‘국민과 외국인이 소통하는 글로벌 환경조성’ 64개(공통 7, 자체 57)였다.

<표 3-19> [인권] 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존중

(단위: 개, %, 억원)

구분	목표달성			예산집행		
	과제 총수	달성 과제수	달성률 (%)	예산 총액	예산 집행액	집행률 (%)
계	300	248	82.6	351.2	342.9	97.6
■ 소계(공통과제)	43	37	86	110.4	111.7	101.1
3-1 이민자 인권존중 및 차별방지 제도화	33	27	81.8	85.0	86.3	101.5
• 이민자 차별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2	2	100	0.07	0.07	100.0
• 이민자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 절차 강화	16	11	68.8	53.2	53.8	101.0
• 인도주의적 지원 확대	15	14	93.3	31.7	32.4	102.3

<b>3-2 다양한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용성 확대</b>	<b>3</b>	<b>3</b>	<b>100</b>	<b>3.5</b>	<b>3.5</b>	<b>100.5</b>
• 문화다양성 이해 제고	3	3	100	3.5	3.5	100.5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세계인의 날’ 활성화	—	—	—	—	—	—
• 문화다양성 콘텐츠 개발·활용 지원	—	—	—	—	—	—
<b>3-3 국민과 외국인이 소통하는 글로벌 환경 조성</b>	<b>7</b>	<b>7</b>	<b>100</b>	<b>21.9</b>	<b>21.8</b>	<b>99.8</b>
• 외국인 집중 거주지 생활환경 개선	2	2	100	17.3	17.3	100
• 외국인 생활편의 제공을 위한 민원제도 개선	5	5	100	4.5	4.5	99.1
• 외국인 친화적 온라인·미디어 환경 구축	—	—	—	—	—	—
<b>▣ 소계(자체과제)</b>	<b>257</b>	<b>211</b>	<b>82.1</b>	<b>240.8</b>	<b>231.2</b>	<b>96.0</b>
<b>3-1 이민자 인권존중 및 차별방지 제도화</b>	<b>36</b>	<b>23</b>	<b>63.9</b>	<b>36.9</b>	<b>36.5</b>	<b>98.7</b>
<b>3-2 다양한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용성 확대</b>	<b>154</b>	<b>131</b>	<b>85.1</b>	<b>77.4</b>	<b>74.6</b>	<b>96.4</b>
<b>3-3 국민과 외국인이 소통하는 글로벌 환경 조성</b>	<b>67</b>	<b>57</b>	<b>85.1</b>	<b>126.4</b>	<b>120.0</b>	<b>94.9</b>

#### 4) 안전: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 구현

정책목표 ‘[안전]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구현’은 4개의 중점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총 17개 세부추진과제 중 예산이 투입된 과제는 6개(35.3%)로 총 0.29 억원 중 0.25억원(집행률 86.2%)을 집행했다. 목표를 달성한 과제는 총 15개로써 중점과제별로 ‘질서위반 외국인에 대한 실효적 체류관리’ 10개(공통 2, 자체 8), ‘외국인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관리 역량 제고’ 5개(공통 5)였다.

〈표 3-20〉 [안전]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구현

(단위: 개, %, 억원)

구분	목표달성			예산집행		
	과제 총수	달성 과제수	달성을 (%)	예산 총액	예산 집행액	집행률 (%)
계	17	15	88.2	0.29	0.25	86.2
■ 소계(공통과제)	7	7	100	—	—	—
4-1 안전하고 신뢰받는 국경관리	—	—	—	—	—	—
• 공항 출입국관리 강화	—	—	—	—	—	—
• 항만 출입국관리 강화	—	—	—	—	—	—
4-2 질서위반 외국인에 대한 실효적 체류관리	2	2	100	—	—	—
• 질서위반 외국인의 실효적 제재를 위한 기반 구축	—	—	—	—	—	—
• 외국인대상 법질서 교육 강화	—	—	—	—	—	—
• 외국인집중거주지에 대한 질서 확보	2	2	100	—	—	—
4-3 불법체류자 단속 폐리다임 다변화	—	—	—	—	—	—
• 불법체류자 단속역량 강화	—	—	—	—	—	—
• 불법고용 근절 기반 조성	—	—	—	—	—	—
• 외국인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조사 강화	—	—	—	—	—	—
4-4 외국인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관리 역량 제고	5	5	100	—	—	—
• 외국인주민 현황(통계) 관리 정확성 제고	5	5	100	—	—	—
• 통합이민정보시스템 구축 등 외국인 정보의 체계화	—	—	—	—	—	—
■ 소계(자체과제)	10	8	80	0.29	0.25	86.2
4-1 안전하고 신뢰받는 국경관리	—	—	—	—	—	—
4-2 질서위반 외국인에 대한 실효적 체류관리	10	8	80	0.29	0.25	86.2
4-3 불법체류자 단속 폐리다임 다변화	—	—	—	—	—	—
4-4 외국인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관리 역량 제고	—	—	—	—	—	—

## 5) 협력: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

정책목표 ‘[협력]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은 3개의 중점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총 20개 세부추진과제에는 예산이 모두 투입되었고, 총 12.9억원 중 13.1억원(집행률 101.2%)을 집행했다. 목표를 달성한 과제는 총 17개로써 중점과제별로 ‘이민자 출신국,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협력 강화’ 13개(자체 13), ‘동포사회와의 교류, 협력 확대’ 4개(자체 4)였다.

〈표 3-21〉 [협력]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

(단위: 개, %, 억원)

구분	목표달성			예산집행		
	과제 총수	달성 과제수	달성률 (%)	예산 총액	예산 집행액	집행률 (%)
계	20	17	85.0	12.9	13.1	101.2
■ 소계(공통과제)	—	—	—	—	—	—
5-1 이민자 출신국,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협력 강화	—	—	—	—	—	—
• 이민관련 국제 협의체 참여 확대	—	—	—	—	—	—
• 귀환 이민자의 성공적 본국 재정착 지원체계 구축	—	—	—	—	—	—
• 개발도상국 우수인재 양성 지원	—	—	—	—	—	—
5-2 국가 위상에 부합하는 난민정책 추진	—	—	—	—	—	—
• 재정착희망난민제도 도입	—	—	—	—	—	—
• 체계적 난민심사 시스템 구축	—	—	—	—	—	—
•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국내 정착 지원	—	—	—	—	—	—
5-3 동포사회와의 교류, 협력 확대	—	—	—	—	—	—
• 외국국적동포의 자유로운 출입국과 귀환 지원	—	—	—	—	—	—
• 국내와 재외동포 사회와의 교류확대 지원	—	—	—	—	—	—
■ 소계(자체과제)	20	17	85.0	12.9	13.1	101.2
5-1 이민자 출신국,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협력 강화	16	13	81.3	11.6	11.8	101.6
5-2 국가 위상에 부합하는 난민정책 추진	—	—	—	—	—	—
5-3 동포사회와의 교류, 협력 확대	4	4	100	1.3	1.3	97.8

## 제4장 과제별 유사중복과제 평가

### 제1절 중복유사성 논의의 기초

#### 1. 정책 중복 · 유사성의 개념

미국 연방감사원(GAO;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은 1980년대부터 유사 중복에 대해 감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유사중복과 관련하여 duplication과 overlap이라는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중복(Duplication)은 둘 이상의 부처나 프로그램이 동일한(same) 활동을 하거나, 동일한 수혜자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유사(Overlap)은 여러 부처나 프로그램이 유사한(similar) 목표를 갖거나, 유사한 활동이나 전략을 구사하거나, 유사한 수혜자를 대상으로 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sup>4)</sup>.

#### 2. 정책 중복 · 유사성의 효과

전통적으로 유사중복은 뭔가가 초과되거나 과잉인 것(excess or superfluity of anything)으로, 정상적인 것, 필요한 것, 일상적인 것, 규정된 것을 넘는 불필요하거나 쓸모없는 것으로, 제거되어져야 하는 비효율적인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구체적으로 유사중복은 개별 조직은 효율적일 수 있지만 전체적 관점에서는 비용낭비, 성과미흡, 수혜자 접근성 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GAO, 1994, 1995, 2000, 2002).

반면, Landau(1969)에서 시작된 유사중복의 긍정적 효과를 주장하는 이른바 가

---

4) We considered "duplication" to occur when two or more agencies or programs are engaged in the same activities or provide the same services to the same beneficiaries. We used the term "overlap" when multiple agencies or programs have similar goals, engage in similar activities or strategies to achieve them, or target similar beneficiaries

외성 이론가(redundancy theorist)들은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유사중복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sup>5)</sup>

첫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유사중복은 전체 시스템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둘째, 유사중복은 경쟁을 촉발하여 장기적으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셋째, 유사중복은 해당 활동이나 서비스의 목적을 보다 확실하게 달성할 수 있게 해준다.

## 제2절 중복 유사성 평가틀

### 1. 정책의 중복 · 유사성의 식별

일반적으로 유사중복의 유형은 ‘전달체계’가 복수 혹은 단일한지, ‘대상자’가 동일 혹은 상이한지로 구분하여 분류할 수 있으나(김찬수·오윤섭, 2013), 가장 큰 유사중복을 가지는 것은 전달체계 간의 중복과 대상자 중복이 나타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실제 정부정책의 유사중복을 평가하는 사례로는 정부의 재정사업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일반재정, 정보화)가 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는 사업이 공공 및 민간부문의 타사업과 불필요하게 중복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라는 유사중복 관련 평가지표를 포함하고 있으며,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는 3점, ‘아니요’는 0점이다.

이 질문에 대해 ‘예’라는 응답할 수 있는 판단기준은 사업목적이 서로 다르거나, 목적이 유사하더라도 수혜대상이 다르거나, 사업목적이 유사하더라도 유사사업간 협력·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실적이 있는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이다. 반면 사업목적과 수혜대상이 다른 사업과 유사성이 있거나, 유사사업간 통

5) 일찍이 Hayek가 살펴하였듯이 시장(market)과 같이 복잡한 세계에서 계획경제와 같은 전체적인 계획(planning)이 비효율적이고 불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공공부문 또한 복잡성이 커짐에 따라 유사중복이 없는(streamlined) 기관이나 프로그램으로 공공활동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반드시 효율적이고 실행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다.

합추진이 가능함에도 불가피한 사유없이 상이한 수행주체에 의해 사업이 추진된 경우, 그리고 외부기관 및 내부평가에서 유사성이 지적된 사업에 대해 협의 등 조정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경우는 ‘아니요’라고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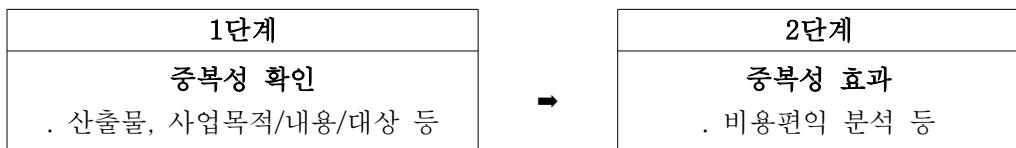
〈표 4-1〉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 유사증복 관련 평가지표 및 판단기준

		재정사업 자율평가 (일반재정, 정보화)
평가지표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증복되지 않는가? (3점)
측정방법		사업이 공공 및 민간부문의 타사업과 불필요하게 중복되는지 확인(세부사업별로 모두 검토)
판단기준	‘예’	<p>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목적이 다른 경우</li> <li>. 사업목적이 유사하더라도 수혜대상이 다른 경우</li> <li>. 사업목적이 유사하더라도 유사사업간 협력·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실적이 있는 경우</li> </ul>
	‘아니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목적, 수혜대상 유사</li> <li>. 유사사업간 통합추진이 가능함에도 불가피한 사유없이 상이한 수행주체에 의해 추진된 경우</li> <li>. 외부기관, 내부평가에서 유사성 지적에도 조정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경우</li> </ul>

## 2. 정책 중복·유사성의 효과분석

### 1) (유사증복 식별방법) 증복성 확인과 효과분석이라는 2단계 절차

〈표 4-2〉 정책 중복·유사성 확인 절차



- 1단계: 둘 이상의 사업간 유사중복성의 정도 확인
- 2단계: 유사중복에 따른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비교

## 2) (효과분석) 유사중복에 대한 가치판단의 기준

- 충분성(sufficiency), 효율성(efficiency), 형평성(equality)

〈표 4-3〉 정책 중복·유사성에 대한 가치판단 기준

기준	내용	예시
충분성	·(전체적 관점에서) 적정수준 이상의 여분(redundancy)이 아닌지	수요대비 과잉
효율성	·단기적 비효율이 장기적 효율(가능성) 보다 더 큰지	경쟁·보완 효과
형평성	·사회적으로 설정된(예산 등) 형평성 기준을 침해하는지	급여 중복수급

## 제3절 2017년도 외국인정책 중복 유사성 분석

### 1. 2017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개요

「2017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은 내수활성화에 기여하는 외래 관광객 유치, 해외인적자본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19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자체가 5대 부문 1,248개 과제를 협업하여 추진하였다.

- 과제 : 1,248개 (중앙부처 189개, 지자체 1,059개)
- 예산 : 6,772억 원 (중앙부처 4,372억 원, 지자체 2,400억 원)

〈표 4-4〉 「2017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전체

(단위: 개, 백만원)

연도별 정책목표	'17년 추진과제		신규과제		'16년 추진과제		종료과제	
	과제수	예산	과제수	예산	과제수	예산	과제수	예산
합 계	1,248	677,196	146	12,612	1,227	665,872	125	15,300
1. 【개 방】	134	292,078	5	4,517	137	286,140	8	13,353
2. 【통 합】	685	141,629	105	7,048	645	134,554	65	1,072
3. 【인 권】	337	65,687	31	860	343	66,110	37	822
4. 【안 전】	46	33,734	1	5	56	25,088	11	10
5. 【협 력】	46	144,068	4	182	46	153,980	4	43

※ 전년대비 예산 113억(1.7%) 증가, 과제 21개(1.7%) 증가

〈표 4-5〉 「2017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중앙부처와 지자체

(단위: 개, 백만원)

'17년 정책목표	합 계		중앙부처		지자체	
	과 제 수	예 산	과 제 수	예 산	과 제 수	예 산
합 계	1,248	677,196	189	437,151	1,059	240,045
1. [개 방]	134	292,078	48	192,919	86	99,159
2. [통 합]	685	141,629	50	38,881	635	102,748
3. [인 권]	337	65,687	38	30,574	299	35,113
4. [안 전]	46	33,734	27	33,695	19	39
5. [협 력]	46	144,068	26	141,082	20	2,986

○ (예산증가 과제) 통합이민정보시스템 구축(147억원), 국제장학프로그램(GKS) 장학생 지원(29.9억원), 자동출입국심사대 추가 설치(25.5억원) 등 414개 과제 (중앙부처 22개, 지자체 392개)

○ (예산감소 과제) 개도국 인재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단계적 개발(164.1억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83.5억원), 항만보안 시설·장비 확충(59.7억원) 등 152개 과제 (중앙부처 14개, 지자체 138개)

〈표 4-6〉 「2017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상의 중앙행정기관 사업규모 및 예산 현황

(단위: 개, 백만원)

연 도	2016년		2017년	
	과 제 수	예 산	과 제 수	예 산
기 관				
합 계	201	439,066	189	437,151
기획재정부	0	0	0	0
교육부	15	70,974	13	76,326
미래창조과학부	6	14,638	4	16,009
외교부	8	141,076	8	129,528
법무부	91	16,448	84	34,908
행정자치부	4	11	4	11
문화체육관광부	19	65,940	19	64,763
농림축산식품부	2	1,666	2	1,666
산업통상자원부	8	44,903	8	36,140
보건복지부	10	9,574	10	8,971
고용노동부	15	24,429	14	22,988
여성가족부	9	16,442	9	17,493
국토교통부	1	1,658	1	1,687
해양수산부	3	25,021	3	20,544
국민안전처	2	219	2	183
방송통신위원회	2	2,150	2	2,150
경찰청	4	321	4	321
중소기업청	1	2,000	1	2,000
통계청	1	1,596	1	1,463

〈표 4-7〉 「2017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상의 지방자치단체 사업규모 및 예산 현황

(단위: 개,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기관	과제 수	예산	과제 수
합계	1,026	226,851	1,059	240,045
서울특별시	111	32,617	103	33,447
부산광역시	100	20,551	123	34,947
대구광역시	60	26,354	61	12,960
인천광역시	56	19,366	51	19,764
광주광역시	41	2,607	42	2,851
대전광역시	63	3,729	60	3,879
울산광역시	51	3,986	50	4,106
세종특별자치시	22	654	18	746
경기도	80	18,506	85	18,386
강원도	40	7,541	38	7,063
충청북도	41	6,041	45	6,493
충청남도	88	9,465	103	10,448
전라북도	53	11,363	49	11,394
전라남도	49	9,714	62	16,085
경상북도	51	9,649	46	12,136
경상남도	80	10,272	86	9,064
제주도	40	34,436	37	36,276

## 1) [개방] 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

### (1) 내수활성화에 기여하는 외래관광객 유치

○ 비자제도 개선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 단체관광객 전자비자제도 확대 적용(중국→동남아 3개국\*), 단체비자 수수료

### 면제기간 연장('16년→'17년) 등 단체관광객 시장 다변화 (법무부)

- \*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 한국의 대외이미지 및 고객편의 제고, 공관 업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비자신청 센터 운영성과 분석 및 평가 (법무부·외교부)
- ※ 현재 비자신청센터 : 2개소(광저우·칭다오 총영사관 관할)
- 제주 단체 환승객 및 일본 단체사증 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여행사의 명단 제출기한을 입국전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완화 (법무부)
- 환승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주환승 무비자입국제도를 이용하는 외국인에 대한 만족도 조사 추진 (법무부)

### ○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 의료관광객 35만명 유치 및 의료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시장별 홍보마케팅 확대, 의료관광 상품 개발 및 판촉 (문체부)
- 국제의료 컨퍼런스 및 한국의료 현지홍보, 외국의료인 국내연수 확대 및 한국 병원 체험행사 등을 통한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 (복지부)
- 증가하는 외국인환자 응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인력 (의료통역사, 외국인 의료코디네이터)을 양성 (복지부)
-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통해 진료수입 및 관광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의료관광 상품개발 및 품질보증 추진 (대구시)
- 지역 외국인 유학생 및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투어 체험행사를 개최,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마케팅 지원 (대전시)

### ○ 관광상품 개발 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 인천공항 인근 복합리조트와 연계한 환승객 숙박관광 프로그램 개발, 환승투어 차량지원 등 항공-관광 융복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국토부·문체부)
-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원\*, 관광상품 개발에 대한 동기부여 및 관광객 유치 확대 (대구·울산시, 전남도)

- \* 숙박비, 전세기, 전세버스, 체험비 등에 대해 일정 금액을 지급
- 최정상급 K-POP 20개팀 공연 등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해외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외래관광객 1.5만명 유치 추진 (인천시)
- 크루즈관광산업의 다국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주국제크루즈포럼 개최 및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ACLN) 운영 (제주도)
- 영종지역(미단시티)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복합리조트·외국인전용카지노·쇼핑몰 등 관광인프라 조성 지속 추진 (인천시)

○ 신속·편리한 출입국심사 서비스 기반 확충

- '17년 10월 운영 예정인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신형 자동출입국심사대 32대 설치 (법무부·문체부)
  - 한국-네덜란드 국민이 상대국의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양국 정부간 협의 추진 (법무부)
- ※ 현재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 시행국가(도시) : 미국, 홍콩, 마카오

## (2) 해외인적자본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우수인력 유치 지원

- 산학연의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195개 과제에 대한 해외우수 신진연구자 유치사업 등 추진 (미래부)
  - 고급인재가 부족한 ICT 중소·중견기업 및 대학의 경쟁력 제고 및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인재 유치·활용 지원 (미래부)
  -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근로자(E-9) 중 숙련기능공이 장기체류 할 수 있도록 하는 숙련기능인력 접수제\* 도입 추진 (법무부)
- \* 외국인근로자(E-9) 중 숙련기능인력의 장기 비자(E-7) 전환 요건인 전문성, 숙련도, 학력 등을 수준별로 객관화한 접수제를 도입하여 진입요건을 완화
- 해외 거점지역 재외 한국교육원을 해외유학생 유치센터로 지정\*, 주재국 유학

### 수요와 국내 대학 연계 확대 (교육부)

- \* ('16년 시범지정) 태국, 우즈베키스탄 → ('17년) 5개
- 우수 이공계 대학생에 대한 단기초청 연수를 기준 ASEAN 국가에서 아프리카·중남미 국가로 확대 추진 (교육부)

### ○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외국인 투자 유치

- 첨단고도기술 등을 보유한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서울 등 8개 외국인 투자지역을 추가 지정 (산업부·지자체)
  - ※ '16년 현재 외국인투자지역 106개 지정 및 운영 중
-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마리나항만 개발절차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법령 개정 추진 (산업부)
- 외국 자본의 적극적 유치를 위해 공익사업 투자이민\* 해외설명회 2회 개최 (법무부)
  - \* 낙후지역 개발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일정 자금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자격 부여 등으로 비자 우대
  - 글로벌비즈니스센터에서 외국인주민 무역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해 외국인주민의 창업·투자 등 경제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 (서울시)

## 2) [통합]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

### (1) 자립과 통합을 위한 국적제도 및 사회통합교육

- 건전한 국가구성원 확보를 위한 귀화 요건 강화
  - 영주(F-5)자격으로 국내에 일정기간 체류한 경우만 일반귀화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 (법무부)
  - 귀화 면접심사의 내실화 및 귀화 민간면접관\*의 전문성·청렴도 등 제고를 위한 면접관 인력 확충 및 직무교육 실시 (법무부)

\* 공직경력자나 사회통합교육 관련 민간 전문가를 귀화 면접관으로 활용  
중

○ 체계적인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 귀화신청자의 기본소양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귀화 필기시험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일원화하는 방안 마련 (법무부)
-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제고를 위해 야간·주말반, 화상교육반 확대 및 이민자 유형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법무부)
  - \* 한국소비자원과 협업,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권리구제 방법 등 소비자교육
- 인권침해 예방 등을 위해 유통업소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 연예인(E-6-2)을 대상으로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법무부)
- 한국어교원 자질 향상을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강사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한국어강사를 대상으로 재교육 실시 (법무부·문체부·여가부)

## (2) 이민자의 자립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

○ 이민배경 자녀의 사회적응 지원 강화

- 이민배경 자녀의 공교육 진입 유도, 조기적응을 위한 한국어 및 진로·직업 교육 등 성장배경에 따른 맞춤형 교육 강화 (교육부·고용부)
  - ※ 다문화 예비학교(160학급), 다문화 중점학교(200개교), 기술대안교육학교(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 운영 등
- 중도입국 자녀(만7세~17세)의 공교육 진입 유도에 활용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 사무소가 보유한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교육청과 공유(법무부·교육부)
  -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결정에 따라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을 제공
- 이주배경 학생의 이중언어 재능을 조기에 발굴·육성하기 위한 전국 이중언어

### 말하기 대회 개최 및 이중언어교재 교재 8종\* 보급 (교육부)

- \*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태국어, 몽골어, 캄보디아어 등
- 청소년 관련 정책·사업에 청소년들이 의견을 제안하는 청소년참여기구 구성 시 이주배경 청소년 등 참여 유도 (여가부)
- 중도입국 청소년(9세~24세) 초기적응 및 문화통합을 위한 Rainbow school을 운영, 한국어·특기적성·맞춤형 정보·개별상담 등 제공 (여가부)
- 이주배경청소년의 맞춤형사례관리를 통한 진로지도, 교육,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운영 (경기도)

### ○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등 자립 지원

- 한국어 등 기초적응훈련을 마친 결혼이민여성에게 농업 이론 및 농기계 사용법, 현장체험 및 실습 등 기초농업교육 실시 (농식품부)
- 실제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1:1 맞춤형 농업교육(1,500명) 및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과정(980명) 운영 (농식품부)
- 여성 결혼이민자 503명에 대한 지역 내 일자리 인턴십 지원을 통해 직장적응 기회 제공 및 취업 지원 (여가부·지자체)
- 결혼이민자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월 60만원 한도)를 1년간 지원 (고용부)
- 결혼이민자에게 자녀 양육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찾아가는 부모교육서비스' 지원 (여가부·지자체)

### ○ 사회통합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지자체의 외국인주민 전담부서(현재 73개) 확충 권고 등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 추진체계 일원화 추진 (행자부)  
※ 전담부서 설치 대상 지자체(외국인주민 1만명 이상 등): 총 76개
- 사회갈등 최소화 및 사회통합정책 수행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출입국관리 수수료·범칙금 등 외국인 부담 재원으로 외국인 사회통합기금 설치근거(재한 외국

인처우기본법 개정) 마련 추진 (법무부)

- 사회통합 교육 시 이민자 네트워크 가입을 유도하여 출신국별 자발적 네트워크 형성 및 쌍방향 사회통합 촉진 (법무부)
- 외국인의 법률·행정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근로자·복지·안전·지방세 등 일상 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의 영문화 확대 (대전시)
- 시정 자료의 외국어 통번역 지원 등을 위해 외국인 전문인력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 (울산시)

### 3) [인권] 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존중

#### (1) 이민자 인권존중 및 차별방지 제도화

○ 이민자 차별방지 및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 체류 외국인 증가 및 체류유형 다양화 등 이민정책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 개편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추진 (법무부)

※ 체류자격 구분의 원칙과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법률에 명문화

-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등 보호시설 30개소를 운영하여 가정폭력, 성매매 등 각종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 보호 강화 (여가부)

-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후에는 안전보건교육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 취업 전후 3단계 안전보건교육 지원시스템 운영 (고용부)

※ 입국 전(해당국가에 교육자료 지원), 취업 전(실습, 사례), 취업 후(방문 교육)

- 외국인주민의 인권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한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운영으로 외국인 2,000명에 대한 상담·교육 실시 (경기도)

○ 이민자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절차 강화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3,000개소를 대상으로 근로조건 위반여부 등 노동관계법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외국인 권리 보호 (고용부)
-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144명을 추가 위촉, 법률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에게 다국어 무료법률상담 지원을 강화 (법무부·행자부)
- 외국인 선원 혼승 선박 내의 소통 강화 및 외국인 선원의 권리의식 향상을 위해 선주단체가 외국인 선원 관리지침서를 제작·배부 (해수부)
- 의료보장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는 외국인에게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수술비 지원 등 의료서비스 제공 (복지부·지자체)

※ 사업수행 의료기관 전국 102개소

- 해상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실태점검(5회) 실시, 불법조업 중국 어선 피의자에게만 지원되는 구료비 지원범위를 모든 외국인 피의자로 확대 시행 (안전처)

## **(2) 문화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확대**

### ○ 국민과 이민자의 상호이해 증진

- 이민자 밀집지역의 공공도서관 및 관련기관에 다문화 자료실(1개관 이상) 조성 및 문화프로그램(100개관) 운영 지원 (문체부·지자체)
  - 다양한 문화의 소통·교류 확산을 위해 20개 내외의 지역 문화재단을 무지개 다리사업\* 주관단체로 선정 및 지원 (문체부)
- \* 이민자와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자체 중심의 세계인의 날(5월 20일) 운영 (법무부·지자체)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글로벌빌리지센터, 외국인근로자센터, 서울글로벌센터 등 42개 외국인 지원시설 운영 (서울시)
  - 다문화가족을 위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작가초청 강연, 동화구연 등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확충 (광주시)
  - 다문화가족과 각 시·군 지역민이 함께하는 문화·예술·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 다문화 어울림 문화지원사업 추진 (전북도)

- 다문화가족지원센터(19개소) 및 외국인력지원센터(2개소)를 활용하여 문화다양성 이해 및 지역적응을 위한 한글교실 추진 (경남도)

#### ○ 초 · 중 · 고 및 대학의 문화다양성 이해 역량 강화

- 다문화교육 이해 제고 및 교원의 지도 역량강화를 위한 다문화교육 연수과정,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추진 (교육부·지자체)
- 초·중학생 대상 다문화이해교육 교육과정을 10차시 편성 및 찾아가는 다문화 교실 1,000학급 운영 (울산시)

### **(3) 국민과 외국인이 소통하는 환경조성**

#### ○ 외국인이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 온라인 민원처리 전담기구인 '전자비자센터'의 기능 확대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현 (법무부)

※ (기존) 수도권 4개 사무소(서울·남부·세종로·수원) 체류전자민원 처리 → (확대) 인력 부족한 5개 출장소(안산·천안·목포·고양·평택) 체류전자민원

-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표준사업모델 개발 및 지자체별 거주 실태 등을 감안한 사례별 사업모델 검토 (행자부)
- 외국인주민 생활안내 책자를 다국어로 발간·배포하여 외국인의 체류·교육· 의료 등 필수 생활정보 제공 (부산·대구·대전시, 경기·충남·경북도)
-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가 수록된 종합매거진을 계간지 형식으로 발행하여 안정적인 조기정착 지원 (충북·전북도)

#### ○ 외국인 친화적 온라인 · 미디어 서비스

- 외국인 관련 대표 홈페이지인 '하이코리아' 화면 개선 및 온라인 민원처리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민원편의 제고 (법무부)

- 외국인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및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 제주영어 FM 방송프로그램 4,366편 방송 지원 (방통위)
- 재한외국인의 방송통신서비스 활용도 제고 및 불편·피해 최소화를 위한 서울권역 방송통신서비스 이동상담 실시 (방통위·서울시)
- 서울·수도권 거주 외국인과 관광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종합편성 라디오 방송(FM101.3MHz) 제작·운영 (방통위·서울시)
- 해운대신문의 외국어판 추가 제작 및 인터넷 게시로 외국인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지역사회 참여 기회 제공 (부산시)

#### 4) [안전]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 구현

##### (1) 안전한 국경관리 및 외국인 정보관리 역량 제고

###### ○ 국가 안전을 위한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국경관리

- 테러방지 등을 위해 탑승불가 통보자에 대한 운수업자의 탑승방지의무를 규정하는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전면 시행 (법무부)
- 출입국심사장 불법입국 예방 및 불법입국자 검거를 위해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내 보안관리 전담조직 신설·운영 (법무부)

###### ○ 외국인에 대한 현황·통계 관리의 정확성 제고

- 이민자 유입과 체류관리 및 통합정책 수립과 관련, 신뢰성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 조사’ 실시 (법무부·통계청)
- 중앙부처·지자체의 외국인 관련 정책수립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자체별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실시 (행자부·통계청)
- 외국인을 포함한 신뢰도 높은 장래인구통계 생산 및 외국인 밀집거주지의 지역별 특화된 외국인 통계 산출 (통계청)

## (2) 질서위반 외국인에 대한 실효적 관리

### ○ 엄정한 체류관리 및 불법고용 근절 기반 조성

- 지방세 체납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제한조치를 국세 등을 체납한 외국인에게도 확대 적용 (법무부·행자부·국세청·지자체)
- 공·항만 자진출국자에 대해 자진출국 이유, 불법체류 사유 등을 설문조사 및 결과를 반영한 자진출국 유도방안 마련 (법무부)
- 불법체류자 단속 효율성 제고를 위해 권역별 광역단속팀을 기준 2개(수도권·영남권)에서 4개(중부권·호남권 추가)로 확대 구축 (법무부)
- 고용허가제 송출국 책임강화를 위해 도입인력 상한 결정 시 불법체류율 반영, MOU 갱신 시 송출국의 불법체류 방지 노력 조항 명시 (고용부)

### ○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대한 치안·질서 유지 강화

- 51개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계도 및 국제범죄 수사대·기동순찰대 등을 투입하여 특별치안활동 실시 (법무부·경찰청)  
\* 외국인 5천명 이상 또는 총인구 대비 외국인이 20% 이상인 읍·면·동으로 서울 19개, 인천·경기 19개 등

- 112 신고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외국인 체류정보 모바일 조회시스템'을 운영, 사진·체류기간·수배여부 등 실시간 확인 (경찰청·법무부)
- 외국인범죄 수사 인프라 및 현장 치안력 강화를 위해 지방청의 국제범죄수사대 확대(13개→17개) 설치 (경찰청)

※ 국제범죄수사대 33명 증원(광주·대전·강원·충남지방청에 신설), 제주지방청 외사과 신설

- 외국인의 정착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다문화 치안활동 전개 (경찰청)
- 불법투기행위 방지 등으로 깨끗한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 및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클린데이(Clean Day) 운영 (경기도)
- 외국인 밀집지역 합동순찰, 기초질서 홍보활동 등을 수행하는 외국인 유학생

치안 자원봉사대에 대한 사업지원 (경북도)

## 5) [협력]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

### (1) 국제위상에 부합하는 난민정책 추진

#### ○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정착지원 강화

– 재정착난민 선발(34명 이내) 및 기존 입국한 재정착난민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정착·교육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 (1단계) 초기적응 → (2단계) 한국어 집중교육 → (3단계)취업 및 정착지원

– 난민신청자 중 생계비 지원대상 선정 및 난민인정자 중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의 저소득자에게 필요한 생계급여 등 실시 (법무부·복지부)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활용하여 난민신청자의 초기 정착, 한국어, 심리치료, 지역주민과 소통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 ○ 난민 등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

– 난민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 지원을 위해 법무부가 추천한 난민인정자(자녀)의 신청이 있는 경우 교육비 지원 (법무부·교육부)

– 기타(G-1)자격에 속해 있는 인도적체류자의 체류자격 개편을 통해 건강권 보장 등 실질적 처우 개선 추진 (법무부)

### (2) 국제사회와의 교류 및 협력 강화

#### ○ 국제기구 및 개도국과의 국제협력 사업 강화

– 수원국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선도대학 지원 확대\* 및 수원국의 전

### 문가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연수 실시 (교육부)

- \* 국제협력선도대학 사업단(영남대 등) '16년(7개)→ '17년(9개)
  - 개도국 인재양성, 경제성장 및 빈곤감소에 기여하기 위한 교육분야 프로젝트 사업 추진 (외교부)
  - 개도국의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전문가 초청연수 운영 및 공동창작활동 등을 통한 국제문화네트워크 구축 (문체부)
  - 對 아시아 통상 활성화를 위한 경제교류, 마케팅 활동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한·아시아 지방정부 경제협력 컨퍼런스 개최 (경남도)
    - ※ 경제협력포럼, 수출 상담회, 산업·문화시찰 등 추진
  - 국제자매·우호도시, 저개발국가 등을 대상으로 의료봉사 활동, 생필품 및 비상약품 전달, 문화교류 사업 추진 (전남·경남도)

### ○ 재외동포 사회와의 교류·협력 강화

- 입양인의 친부모 등 뿌리찾기를 위한 입양정보(입양기관의 입양기록 23만여 건)에 대한 DB 구축(73.5%) 및 모국방문, 한국문화 체험활동 지원 (복지부)
- 세계한인회장대회, 세계한상대회, 세계한인 차세대대회, 재외동포 청소년 교류사업 등을 통한 모국과 재외동포 사회, 재외동포사회 간의 네트워크 강화 (외교부)
-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 확대, 해외거주 재외동포 청소년과 한글학교 교사를 위한 온라인 학습사이트 운영, 교사 연수 지원, 중국·CIS 지역 맞춤형 민족교육 육성 등 지원을 통한 한민족 정체성 강화 (외교부)
- 재외동포 온라인 네트워크 활성화, 재외동포 민원서비스 '재외동포 신문고' 운영 및 확대, 신규 재외동포 전문가 네트워킹 사이트\* 구축·운영 등을 통한 재외동포 우수인력 DB 활용 (외교부)
  - \* 연구자 DB 구축, 세미나 논문 등 연구자료 공유, 소식 공유 기능 등
- 재외동포에 대한 한국어·한국문화 확산을 위해 북미, 중앙·서남아시아 지역의 한국어 교육 관계자를 대상으로 워크숍 개최 (문체부)
- 해외 거주 국제교류자문관(29개국 71명) 및 해외향우회(10개국 26단체)를 통해

- 새만금 투자유치 등 도정 홍보 및 국제교류 활성화 (전북도)
-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강화 및 국가간 우호협력증진을 위한 국제자매도시 (함안군 ⇔ 몽골 향올구)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경남도)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국내정착 지원

- 구 소련지역(CIS)의 고려인동포에 대한 방문취업(H-2) 사증발급 배정인원을 1.1만명에서 1.2만명으로 확대 (법무부)
- 국내에서 방문취업(H-2) 자격으로 4년10월 만기 체류후 재입국하는 중국동포의 재입국 가능 기간을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 (법무부)

## 2. 2017년도 외국인정책의 중복유사성 분석 및 결과

앞서 「2017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세부사업들과 예산을 분석하였다.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세부사업의 세부내용들을 코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은 MS EXCELL과 SPSS 22.0으로 실시하였다.

### 1) 중앙행정기관

#### (1) 개요

##### ① 부처별 프로그램 분포

법무부가 107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 전체 중 46.5%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다. 그 외 문광부 22개(9.6%), 교육부 19개(8.3%), 고용노동부 13개(5.7%) 등이었다.

〈표 4-8〉 부처별 프로그램 개수: 중앙행정기관

기관별 프로그램 분포	빈도(건)	비율(%)
	교육부	19
	미래창조과학부	7
	외교부	9
	법무부	107
	행정자치부	5
	문화체육관광부	22
	농림축산식품부	2
	산업통산자원부	11
	보건복지부	10
	고용노동부	13
	여성가족부	9
	국토교통부	2
	해양수산부	3
	국민안전처	2
	방송통신위원회	2
	경찰청	4
	중소기업청	2
	통계청	1
	합계	230
		100.0

## ② 분야별 프로그램 분포

5개 분야 중에서 통합분야 59개(25.7%), 개방분야 56개(24.3%)로 나타난다. 반면 협력분야는 28개(12.2%)로 다섯분야 중에서 가장 적은 과제수를 가지고 있었다.

〈표 4-9〉 분야별 프로그램 개수: 중앙행정기관

분야별 프로그램 분포	빈도(건)	비율(%)
	개방	56
	통합	59
	인권	45
	안전	42
	협력	28
	합계	230
		100.0

### ③ 대상집단별 분포

전체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109개(47.4%)였다. 그리고 특정집단에 특화된 프로그램으로는 결혼이민자 및 가족(17건, 7.4%), 외국인노동자(19건, 8.3%) 등이 운영되고 있었다. 특히 외국인 고급인력 및 유학생(27건, 11.7%), 외국인 관광객 및 투자자(19건, 8.3%) 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많았다.

〈표 4-10〉 대상집단별 프로그램 개수: 중앙행정기관

		빈도(건)	비율(%)
대상집단별 분포	결혼이민자 및 가족	17	7.4
	외국인노동자	19	8.3
	외국인 고급인력 및 유학생	27	11.7
	외국적 동포	14	6.1
	난민	8	3.5
	이주자 아동	13	5.7
	외국인 관광객 및 투자자	19	8.3
	전체외국인	109	47.4
	내국인	4	1.7
	합계	230	100.0

## (2) 유사종복성 분석

### ① 프로그램별 분포

이주민 관리(단속, 통계 등)가 63개(27.4%), 국적(출입국 등)이 33개(14.3%), 채용 및 일자리 33건(14.3%), 복리 및 처우개선 27개(11.7%) 등으로 나타났다.

〈표 4-11〉 프로그램별 분포: 중앙행정기관

프로그램별 분포	빈도(건)	비율(%)
	한국어 및 언어교육	4
	교육일반	5
	채용 및 일자리	33
	사회통합	14
	국적(출입국 등)	41
	이주민 관리(단속, 통계 등)	63
	복리 및 처우개선	27
	외국인관광 및 의료	12
	외국인 투자	6
	다문화 미디어	9
	다문화 거버넌스	16
	합계	230
		100.0

## ② 분야별 프로그램 개수

분야별 프로그램 유형의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 한국어 및 언어교육은 교육부(3개), 문광부(1개) 두 개 부처가 담당하고 있다. 이는 종전에 한국어 교육이 여러 부처에서 담당한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부 중심으로 프로그램 재편된 결과로 보여진다.

두번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및 언어 교육 외의 적응교육, 직업교육 등과 같은 교육일반 프로그램은 교육부(1), 미래창조과학부(1), 농림축산식품부(1), 법무부(1), 고용노동부(1) 4개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다. 교육분야가 상이하기 때문에 유사 및 중복의 개연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세번째, 외국인을 대상으로 채용 및 일자리관련 프로그램은 교육부(8), 미래창조과학부(4), 외교부(3), 법무부(4), 문광부(2), 산업통산자원부(4), 보건복지부(2), 고용노동부(4) 여성가족부(1), 중소기업청(1) 등 10개 부처에 33개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 이는 채용 및 일자리관련 프로그램은 근래 전정부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앞으로 일자리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유사 및 중복 채용 및 일자리 관련 프로그램의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네번째, 외국인 대상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교육부(1), 외교부(2), 법무부(5), 문광부(4), 여성가족부(2)의 4개 부처를 통해 이루어졌다. 종래 이 분야도 정부기관간의 유사 및 중복이 심한 분야였으나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중심으로 프로그램 재편으로 유사 및 중복의 문제가 상당히 해소된 것으로 파악된다.

다섯번째, 국적(출입국 등) 관련 프로그램은 외교부(1), 법무부(34), 행정자치부(1), 산업통상자원부(2), 국토교통부(1), 경찰청(1) 등 6개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국적관련 업무를 담당으로 하는 법무부 프로그램으로 유사 및 중복의 문제가 크지 않았다.

여섯번째, 이주민 관리(단속, 통계 등) 프로그램은 교육부(3), 외교부(1), 법무부(37), 행정자치부(2), 문광부(3), 보건복지부(1), 고용노동부(7), 여성가족부(2), 해양수산부(2), 국민안전처(2), 경찰청(3) 등 11개 부처가 관련되어 있었다. 실제로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의 실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통계 기반을 제대로 구축하고 있지 못하다. 출입국통계나 비자관련 통계는 법무부가, 외국인 노동자관련 통계는 고용노동부가, 외국주민관련 통계는 행정안전부가, 결혼이주자 여성과 관련된 통계는 여성가족부가, 유학생관련 통계는 교육부 등에서 분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외국인 관련된 행정통계 구축 및 연계를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력이 요망된다.<sup>6)</sup> 요약하면, 외국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앞으로 더 중요해 질 것인데, 지나치게 많은 부처들이 관련하고 있어 유사 및 중복의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이주민 관리 관련 프로그램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

일곱번째, 복리 및 처우개선 관련 프로그램은 교육부(2), 법무부(14), 행정자치부(1), 문화체육관광부(1), 산업통산자원부(1), 보건복지부(4), 여성가족부(4) 등 7개 부처에서 실시되고 있다. 복지서비스의 성격상 다양한 부처들이 관여하는 것은 당연하나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복지서비스의 중복급여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감독하여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의 소지를 없앨 필요가 있다.

여덟번째, 외국인관광 및 의료 관련 프로그램은 법무부(2), 문화체육관광부(5), 보건복지부(3), 국토교통부(1), 해양수산부(1) 등 5개 부처에서 실시되고 있다. 유사

6) 통계청(2010). 외국인 고용통계 개선방안.

및 중복의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앞으로 문광부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관련 프로그램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

아홉번째, 외국인 투자 관련 프로그램은 법무부(1), 산업통산자원부(4), 중소기업청(1) 등 3개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다. 유사 및 중복의 가능성이 크지 않다.

열번째, 다문화 미디어 관련 프로그램은 미래창조과학부(2), 법무부(1), 문화체육관광부(3), 농림축산식품부(1), 방송통신위원회(2) 등 6개 부처에서 실시되고 있다. 앞으로 문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프로그램의 정비 여지가 있다.

열한번째, 다문화 거버넌스 관련 프로그램은 교육부(1), 외교부(2), 법무부(8), 행정자치부(1), 문화체육관광부(3), 고용노동부(1) 등 5개 부처에서 실시되고 있다. 현재는 법무부와 문광부가 다문화 거버넌스 관련 프로그램을 다수 운용 중에 있다. 앞으로 외국인정책의 거버넌스가 중요시될텐데 어디를 핵심기능을 담당하게 할 것인가 하는 외국인정책 추진체계에 대한 명확한 방향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표 4-12〉 부처별 프로그램별 분포: 중앙행정기관

		부처	유사중복 개선 필요성
프로그램 유형	한국어 및 언어교육	교육부(3), 문광부(1)	낮음
	교육일반	교육부(1), 미래창조과학부(1), 농림축산식품부(1), 법무부(1), 고용노동부(1)	낮음
	채용 및 일자리	교육부(8), 미래창조과학부(4), 외교부(3), 법무부(4), 문광부(2), 산업통산자원부(4), 보건복지부(2), 고용노동부(4) 여성가족부(1), 중소기업청(1)	높음
	사회통합	교육부(1), 외교부(2), 법무부(5), 문광부(4), 여성가족부(2)	낮음
	국적 (출입국 등)	외교부(1), 법무부(34), 행정자치부(1), 산업통상자원부(2), 국토교통부(1), 경찰청(1)	중간
	이주민 관리 (단속, 통계 등)	교육부(3), 외교부(1), 법무부(37), 행정자치부(2), 문광부(3), 보건복지부(1), 고용노동부(7), 여성가족부(2), 해양수산부(2), 국민안전처(2), 경찰청(3)	높음
	복리 및 처우개선	교육부(2), 법무부(14), 행정자치부(1), 문화체육관광부(1), 산업통산자원부(1), 보건복지부(4), 여성가족부(4)	높음

외국인관광 및 의료	법무부(2), 문화체육관광부(5), 보건복지부(3), 국토교통부(1), 해양수산부(1)	중간
외국인 투자	법무부(1), 산업통산자원부(4), 중소기업청(1)	낮음
다문화 미디어	미래창조과학부(2), 법무부(1), 문화체육관광부(3), 농림축산식품부(1), 방송통신위원회(2)	중간
다문화 거버넌스	교육부(1), 외교부(2), 법무부(8), 행정자치부(1), 문화체육관광부(3), 고용노동부(1)	중간
합계	230	

### ③ 분야별 예산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분석은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무예산 사업을 제외하고 예산이 배정된 사업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2017년도 총 4,337.96억원 정도 배정이 되었다. 그 중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했던 프로그램으로 전체 관련예산 중 46.1%에 달했고, 외국인 관광 및 의료 15.8%, 이주민 관리(단속, 통계 등) 11.3%, 외국인 투자 8.7%에 달했다. 반면, 사회통합 6.4%, 외국인 복리 및 체우개선에는 5.1%, 다문화거버넌스 1.6%에 불과하였다.

〈표 4-13〉 분야별 예산 분포: 중앙행정기관

프로그램 유형	분야	예산(백만원)		전체대비 비중
		예산(백만원)	전체대비 비중	
	한국어 및 언어교육	2,285	0.5%	
	교육일반	10,572	2.4%	
	채용 및 일자리	199,876	46.1%	
	사회통합	27,832	6.4%	
	국적(출입국 등)	5,964	1.4%	
	이주민 관리(단속, 통계 등)	49,088	11.3%	
	복리 및 체우개선	22,265	5.1%	
	외국인관광 및 의료	68,426.7	15.8%	
	외국인 투자	37,600	8.7%	
	다문화 미디어	2,741	0.6%	
	다문화 거버넌스	7,146	1.6%	
	합계	433,795.7	100.0%	

## 2) 지방자치단체

### (1) 개요

#### ○ 지자체별 프로그램 개수

경기도 165개, 충남 155개, 서울 151개, 부산 149개 등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반면, 제주 48개, 강원 54개, 충북 63개, 전북 73개, 울산 75개, 전북 76개의 비교적 적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별 프로그램의 개수 차이는 전반적으로 외국인관련 프로그램의 수가 인구수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으나, 충남의 경우 155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 서울이나 부산보다도 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아 지역의 특성이나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 등도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4〉 자치단체별 프로그램 개수: 지방자치단체

프로그램 개수	번호(건)	비율(%)
	서울	151
	부산	149
	대구	104
	인천	108
	광주	71
	대전	94
	울산	75
	세종	52
	경기	165
	강원	54
	충북	63
	충남	155
	전북	73
	전북	76

	경북	128	7.6
	경남	117	7.0
	제주	48	2.9
	합계	1683	100.0

### ○ 분야별 프로그램 분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통합분야가 58.4%, 인권분야가 28.2%로 이 두분야의 비중이 절대 다수를 차지고 있었다. 이는 중앙정부의 분야별 프로그램 분포와는 사뭇 다른 것이었다. 중앙정부의 경우 통합분야와 개방분야의 비중이 약 절반이었고, 나머지 세 개분야도 상당한 비중을 점유하고 있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주민이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선 행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통합분야와 인권분야의 업무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5〉 분야별 프로그램 개수: 지방자치단체

		빈도(건)	비율(%)
분야별 프로그램 개수	개방	158	9.4
	통합	983	58.4
	인권	474	28.2
	안전	26	1.5
	협력	42	2.5
	합계	1683	100.0

### ○ 대상집단별 분포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상집단별 프로그램의 분포로는 결혼이민자 및 가족 823개(48.9%)와 이주자 아동 178개(10.6%)였고,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374개(22.2%)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중앙정부의 분포하고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경우는 전체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용 프로그램이 거의 전반을 차지하였다. 요컨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외국인정책의 주요 정책고객은 결혼이민

자와 그 가족인 것이 프로그램 수에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표 4-16〉 대상집단별 프로그램 개수: 지방자치단체

		빈도(건)	비율(%)
대상 집단별	결혼이민자 및 가족	823	48.9
	외국인노동자	69	4.1
	외국인 고급인력 및 유학생	57	3.4
	외국적 동포	5	.3
	난민	2	.1
	이주자 아동	178	10.6
	외국인 관광객 및 투자자	93	5.5
	전체외국인	374	22.2
	내국인	82	4.9
합계		1683	100.0

## (2) 유사중복성 분석

중앙정부의 경우에는 상이한 부처간의 프로그램을 분석하기 때문에 유사중복성을 평가하기가 한결 쉬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일단 그 규모가 작아 유사중복 업무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원천적으로 낮다. 그리고 현재처럼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취합되는 시행계획의 자료의 성격상 어떤 분야의 프로그램의 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집행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를 유사 및 중복사업이라 하기 어려운 점이 감안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 관련 프로그램 현황을 분석하여 전반적인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관련 프로그램의 특성 정도만 분석하고자 한다.

### ① 프로그램별 분포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 관련 프로그램의 분포는 복리 및 처우 개선이 26.3%, 사회통합 21.7%, 교육일반 12.0%, 한국어 및 언어교육 7.7%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포는 중앙정부와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고객이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 그리고 외국인노동자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7〉 프로그램별 분포: 지방자치단체

		빈도(건)	비율(%)
프로그램 유형	한국어 및 언어교육	129	7.7
	교육일반	202	12.0
	채용 및 일자리	81	4.8
	사회통합	366	21.7
	국적(출입국 등)	5	.3
	이주민 관리(단속, 통계 등)	110	6.5
	복리 및 처우개선	442	26.3
	외국인관광 및 의료	81	4.8
	외국인 투자	37	2.2
	다문화 미디어	35	2.1
	다문화 거버넌스	193	11.5
합계		1683	100.0

## ② 지자체별 프로그램 개수

지방자치단체별로 분야별 외국인 관련 프로그램의 분포가 상이했다. 전체적으로는 “복리 및 처우개선”분야(442건)와 “사회통합” 분야(366건), “교육일반” 분야(202건), “다문화 거버넌스”(193건), “한국어 및 언어교육”분야(129건), “이주민 관리(단속, 통계 등)”(110건) 등이었다. 하지만 개별적인 지방자치단체별로 들어가면 분야별 프로그램의 수의 분포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간에 외국인정책 관련 정책 이니셔티브가 상이함을 의미한다.

〈표 4-18〉 지자체별 프로그램별 분포: 지방자치단체

프로그램 유형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한국어 및 언어교육	7	21	6	8	2	5	7	6	10	4	7	11	5	6	12	7	5	129
교육일반	11	17	16	11	5	2	4	9	20	9	8	31	21	8	14	10	6	202
체육 및 일자리	6	10	4	10	1	3	10	4	4	1	3	9	2	8	1	0	5	81
사회통합	56	28	34	18	14	23	15	9	42	8	10	21	11	14	18	36	9	366
국적(출입 국통)	0	0	1	1	0	0	0	0	0	0	1	0	0	1	0	1	0	5
이주민 관리(단속, 통계 등)	5	6	8	5	5	10	8	2	11	4	3	20	3	7	7	3	3	110
복지 및 체우개선	48	32	17	17	29	20	17	13	61	22	13	31	17	16	48	35	6	442
외국인관광 및 의료	1	11	5	6	3	6	2	1	2	0	3	3	2	6	17	7	6	81
외국인 투자	2	3	1	12	2	0	0	0	0	0	5	5	0	0	3	4	0	37
다문화 미디어	3	4	1	4	2	0	0	0	1	1	3	8	2	2	0	2	2	35
다문화 거버넌스	12	17	11	16	8	25	11	8	14	5	6	16	10	8	8	12	6	193
기타	0	0	0	0	0	0	1	0	0	0	1	0	0	0	0	0	0	2
전체	151	149	104	108	71	94	75	52	165	54	63	155	73	76	128	117	48	1,683

\* 주: 음영처리한 셀은 1-3순위이며, 보다 짙은 음영처리한 셀은 1순위임

## 제5장 우수사례 발굴

### 제1절 우수사례 및 모범사례 발굴의 정책적 의의

우수사례 및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선정하고 발굴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정책참여’와 ‘정책학습’ 그리고 ‘정책확산’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우수사례 및 모범사례 발굴의 편의은 다음과 같다(김대진, 2010).

첫째, 주기적으로 수행되는 정책수립과정은 체계적으로 모니터링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반영되어 보다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계층의 정부조직의 상호조정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이해관계집단이 이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둘째, 정책확산이란 일정지역에서 어떤 정부에 의하여 새롭게 개발 또는 도입된 정책이 다른 정부 단위들에 의하여 받아들여져서 정책을 채택한 정부의 수가 늘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김대진, 2010: 77). 정책확산은 확산의 방향에 따라 수직적 확산과 수평적 확산으로 구분된다.

수직적 확산은 권력구조상 수준이 다른 정부간에 정책이 확산되는 경우이고, 수평적인 확산은 같은 수준의 정부간에 정책이 확산되는 경우이다. 수직적 확산에는 상위정부로부터 하위정부로 정책이 전파되는 경우(Top Down)와 하위정부에서 상위정부로 정책이 확산되는 경우(Bottom Up)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수평적 확산은 비슷한 수준의 정부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리적으로 이웃한 정부로부터 확산되거나 지리적으로 인접하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사회경제적 조건을 가진 정부간에 정책이 확산되는 경우가 있다(김대진·Berry, 2010: 80).

셋째, 정책학습은 다른 기관이 도입한 정책의 성공·실패에 대한 정보에 근거하여 정책 결정자들이 당면한 정책문제를 해결하는 메커니즘으로 이해된다(조일형, 2014). 정책학습은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검색하여 최선의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완전한 합리성에 의한 학습(rational learning)과 적절한 정보를 활용하여 만족할 만한 정책을 채택하는 제한된 합리성에 의한 학습(bounded learning)으로 구분되기

도 한다(Meseguer, 2005; 조일형, 2014). 일반적으로 정책확산은 인지적 제약 하에 수집가능한 다른 기관의 정보를 바탕으로 만족할만한 정책을 채택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 제2절 외국인정책 관련 우수사례 발굴

외국인정책 관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 및 모범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두 가지 과정을 거쳤다. 먼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담당자 설문조사 과정에서 외국인정책 우수사례를 추천을 요청하였다. 다음으로, 법무부의 2017년 외국정책 시행계획 자체평가 과정에서 몇몇 기관에서 우수사례로 제시하였던 것을 참고하였다.

### 1. 중앙부처의 외국인정책 관련 우수사례

#### 1) 외국인 관련 시책 우수사례

〈표 5-1〉 중앙부처 외국인정책 관련 시책 우수사례

연번	부처	우수사례명	추천사유	추천기준
1	교육부	국제장학프로그램(GKS)의 전략적 추진	국제장학프로그램(GKS)의 전략적 추진을 통한 장학생 선발·관리로 해외 우수 인적 자원 활용 및 친한·지한 인사 양성	참여, 확산가능성
2	행안부	다문화 이주민+센터 설치	부처간 협업 및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창의성, 고난도, 확산가능성, 협력

3	문화체육관광부	이민자와 국민간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 (무지개다리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기에는 대부분 이민자들로 구성된 자발적 모임 정도의 수준이었으나 점차 국민참여가 증가하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 어떤 다른 주민참여 프로그램 보다 더 활발한 내외국인 공동참여 프로그램으로 성장</li> <li>- 이주민의 문화표현 기회 확대 뿐 아니라 문화 간 교류 및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적 공감대 확대 및 지역 내 이주민-원주민 간 문화적 갈등 해소에 기여</li> </ul>	참여, 협력, 확산 가능성, 국민공감성, 협력
		외국인 환승관광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공항 환승투어 지원(환승투어 차량, 공항 및 해외 홍보 마케팅, 특별환승관광투어 프로모션 지원 등)으로 환승관광 이용객 69,681명 유치, 만족도 88.1% 달성(목표치의 113% 달성),</li> <li>- 사드 등 외부요인에 취약한 방한관광시장 구조를 안정화하기 위해 전략적인 시장 다변화 정책 추진</li> </ul>	참여, 협력, 확산 가능성
4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국내기업의 외국인 유학생 채용수요를 기반으로 개최하는 채용박람회로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글로벌 인재 고용난 해소 지원	협력
5	해양경찰청	밀수밀입국대책협의회 운영	참여기관 확대 및 운영 정례화	협력

## 2) 제3차 외국인정책 기반 시행계획 사업

〈표 5-2〉 중앙부처 외국인정책 기반 시행계획 사업

연번	부처	분야	세부추진과제	사유
1	산업통상자원부	우수인재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인재에 대한 온라인비자발급</li> <li>- 해외전문인력 유치활동</li> <li>- 유학생 채용박람회 개최</li> </ul>	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경제성장 동력 확보
		기능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뿌리산업 발전을 위한 유학생 취업 연계</li> <li>- 뿌리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기량검증 제도 시행</li> </ul>	기능인력 인력난 해소

		외국인투자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수준에 맞는 규제완화 지속 추진</li> <li>- 성과중심의 외국인투자개발 활성화</li> <li>-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li> </ul>	국가경제 활성화
--	--	-----------	--	----------

## 2.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정책 관련 우수사례

### 1) 외국인 관련 시책 우수사례

〈표 5-3〉 지자체 외국인정책 관련 시책 우수사례

연번	지자체	우수사례명	추천사유	추천기준
1	대구	소통도우미 파견	가정·사회 소통에 문제가 있는 다문화가정에 내·외국인 2인 1조의 소통도우미 파견·상담·정보제공을 통해 지역사회 소통 및 교류강화	참여, 확산 가능성
2	충북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최대 관광시장인 중국을 타깃으로 중국인 관광객 유치 및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도모	참여
3	경북	결혼이민 여성 이중언어강사 일자리창출사업	결혼이민여성들의 강점인 이중언어강사를 양성하여 맞춤형 일자리제공으로 참여도 및 만족도가 높고 지역주민들도 외국어를 접할 기회가 높아 호응도가 높음.	참여, 확산 가능성, 국민 공감성
4	경남	외국인주민 문화행사 (MAMF) 지원	전국 최대 규모의 다문화 시대 국민 통합 축제로서 이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내국인의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 m 이주민과 내국인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등 사회통합과 소통에 기여	참여, 확산 가능성
5	제주	거주 외국인 등 대상 제주화교육	한국문화학교 운영과 원거리 읍·면 지역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으로 정착지원이 이루어짐.	참여, 확산 가능성
6	서울	우수 인재 유치 및 성장 지원강화	프로그램의 지원 인원이 많으며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음.	참여

## 2) 제3차 외국인정책 기반 시행계획 사업

〈표 5-4〉 지자체 외국인정책 기반 시행계획 사업

연번	지자체	세부 추진과제	사유
1	충북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한중대학생 참여행사(중국인유학생 페스티벌)로 유학생 여가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2	경북	외국인투자지역지정 중화권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추진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및 외국인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결혼이민자통역서비스지원 다문화가족 공부방운영 다문화가족이중언어대회 등	외국인주민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안정적인 생활지원,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자립기반 조성 등
		외국인 유학생 치안·봉사대 지원	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른 외국인 및 자국민 보호, 외국인범죄 발생시 등 소통도우미 활동
		외국인주민생활안내 책자발간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운영 다문화이해교육 등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정착, 외국인근로자들의 고충상담 및 사회 적응교육으로 사기진작 및 근로의욕 고취 등 가족화합과 사회통합 도모
3	경남	결혼이민자 경제적 자립 지원	맞춤형 직업교육 훈련 및 다양한 일자리 발굴로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 참여 지원 및 경제적 자립 여건 조성으로 사회통합 기여
		다문화 인식개선을 통한 사회통합	획일적 다문화정책에서 벗어나, 도시와 농촌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시군별 다문화 시책 개발
		외국인근로자 지역 사회 적응 지원	외국인 근로자의 경남생활 적응지원으로 각종 사회 문제 사전예방 및 산업현장에서의 생산성 제고
4	제주	다문화이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 내 교육대학에 다문화 이해 교직 필수과목을 개설함으로써 학교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인 문화 다양성 교육이 확산될 수 있는 사업임.

### 3. 지방자치단체 추천 외국인정책 우수사례

#### 1) 충청북도

##### (1) 사업명: 결혼이민자 한글문해력 강사 양성교육 및 다문화 자녀

###### 한글문해력 교육

□ 주관기관 : 청주시 여성가족과

□ 추진배경

- 취업 교육을 통한 일자리 연계 서비스 제공으로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 필요
-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방문 교육을 통한 맞춤 언어 교육과 학습 지원 필요

□ 주요내용

- 결혼이민자 한글문해력 강사 양성교육
  - 한국어 교습법 활용 및 실제 실습을 포함한 100시간 양성교육 실시
- 다문화 자녀 한글문해력 교육
  - 주 2회, 1회 2시간, 총 50시간의 한글문해력 교육 제공
  - 다문화 부모에게 자녀 대상 정보 및 코칭 제공

□ 성과 및 기대효과

- 결혼이민자 한글문해력 강사 양성교육 성과
  - 실습 포함 100시간의 교육과정 운영
  - 19명의 강사 배출
- 다문화 자녀 한글문해력 교육 성과

- 18명의 강사 활동, 51명의 학생에게 서비스 제공
- 전체 평균 만족도 4.83점 달성
- 문제행동증후군 소척도 9개 문항 중 8개 영역 감소
- 가정 별 월 평균 8건, 총 52건의 코칭 및 정보 제공
- 학습자의 성취도 평가 분석 결과 평균 16.4점 향상

## (2) 사업명: 찾아가는 다문화교실

□ 주관기관 : 청주시 여성가족과

□ 추진배경

- 거리가 멀어 접근성의 어려움이 있는 소외된 지역의 다문화 가족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한 경험과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함
- 신규회원 발굴 및 다문화사업에 대한 홍보, 결혼이민자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족이 함께 만드는 체험을 통해 가족간의 협동심을 기르고 가족애를 고취시킴

□ 주요내용

○ 체험

- 가족이 함께하는 만들기 체험(에코백 꾸미기, 냅킨아트)

○ 다양한 정보공유 및 정보제공

- 결혼이민자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법률, 경제, 생활지식 등 정보제공

□ 성과 및 기대효과

○ 접근성의 이유로 센터 이용이 어려운 다문화가족들에게 프로그램의 참여를 제공하고 신규회원 발굴 및 센터 홍보의 극대화

○ 가족이 함께하는 만들기 체험으로 가족 간의 관계증진 및 친밀감 향상

○ 다문화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공감대와 친밀감을 형성하고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며 지역사회 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얻는 소통공간으로 활

용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적응을 도움

- 체험활동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경험의 폭을 넓히고 정서적 안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줌

### **(3) 사업명: 결혼이민여성 생활요리교육**

주관기관 : 제천시 여성가족과

추진배경

- 생활요리 교육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한국의 음식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과 오해를 해소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교류의 장을 제공하여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함.

주요내용

- 밑반찬 및 계절음식의 다양한 요리 실습 (2017.3.~2017.11.)

– 매주 2가지씩 총 56가지의 밑반찬 및 계절음식 실습하며 한국요리를 배우며 완성된 요리를 가족과 함께 나누고, 특히 ‘김장나눔’행사에 동참하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여 한국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의 소속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었음.

- 건강한 식단으로 건강한 가정 만들기

– 요리 실습과 함께 요리에 들어가는 재료의 특성 및 효능, 건강한 식생활습관, 한국음식에 대한 이해 등 요리교육과 영양교육을 실시하여 균형 잡힌 식단으로 건강한 가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완성된 요리를 가족과 함께 나눔으로 가족 간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었음.

성과 및 기대효과

- 매주 1회기 씩, 총 28회기 진행하였으며 정원40명을 목표로 시작하여 실인원 81명으로 종결하였음.

- 요리교육 참여자 대상 만족도 실시 결과 4.83점으로 목표점수 4.5점보다 높

게 나타나, 만족도 높은 내실있는 교육으로 마무리되었음.

○ 입국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결혼이민자들에게 한국 음식에 대한 정보제공 및 기초요리교육을 하므로서 한국생활 및 음식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으며 다문화가정의 영양있고 균형잡인 식단으로 건강한 가정 만들기에 도움이 되었음.

## 2) 충청남도

### (1) 사업명: 아산시 특성화지역 맞춤형 프로젝트

□ 사업비 : 150백만 원(시비 14백만원, 후원금 136백만원)

□ 주관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여성가족과

□ 추진배경

○ 아산시 외국인주민수는 인구대비 6.9%, 신창면 인구대비 19.5%로 외국인 집단유입으로 인한 지역문제 발생

○ 외국인가정 부모의 한국어능력부족 및 문화적 차이로 학습이해력 저하로 학교생활 부적응 초래

□ 주요내용

○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한국어 교육

– 외국인 근로자 120여명 매주1회(일) 한국어 교육 및 한국문화 적응프로그램 실시

○ 찾아가는 언어치료 지원사업

– 다문화 중도입국자녀 399명 이동식 차량을 이용 언어치료 서비스 제공

○ 예비초등학급 기초언어학습 지원

– 초등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중도입국자녀 1,091명, 기초 한국어 학습 지도로 일반학급으로 환급

○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 “오후나눔교실”

– 중도입국자녀 및 요보호아동 3,232명, 주5회 알림장 번역 및 숙제지도, 재능개발프로그램 지원

○ 글로벌 공존플랜

– 다문화자녀 및 중도입국자녀 1,968명, 심리정서지원, 기초언어학습, 상호 이해교육 등 실시

○ 지역사회 환경개선 및 안전마을 만들기

– 외국인 밀집지역 횡단보로정비, 로고제작 10개소 설치, 우편지역 벽화

– 외국인주민과 자율방범대 구성 매월 1회 야간 순찰활동 실시

□ 성과 및 기대효과

○ 중도입국자녀에게 기초언어학습을 제공함으로써 한국어능력 향상

○ 의사소통 향상으로 학교 부적응 방지 및 학업중도탈락 사전 예방

○ 위기아동에게 심리정서적 개입으로 사례관리 발굴 및 관리

○ 비다문화 자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진행으로 다문화수용성 향상

○ 외국인밀집지역 순찰활동을 통한 기초질서 캠페인 실시 및 거리청소, 쓰레기분리수거 안내로 원주민과의 갈등해소

## (2) 사업명: 논산시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사업 “다(多)재다능”

□ 추진배경

○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단계에서 경험하는 일반가정 아동의 어려움에 비해 다문화가족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어려움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 일반가정의 아동보다 많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일반가정 자녀들과 다른 언어, 문화, 가치관, 외모의 차이 등으로 인해 학습활동, 대인관계 형성과 또래집단 내 상호작용의 어려움 및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게 됨에 따라 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 주요내용

○ 행복한 家

- 가족과 함께하는 미술관 관람, 자녀 숨체험하기, 부모대상 영화 및 심리치료, 자녀대상 영화 및 미술 심리치료 실시

○ 우리 놀자 ~

- 또래집단과의 신체활동(게임 및 단체놀이), 토탈공예, 요리교실 및 놀이미술 실시

○ 두근두근, 진로 !

- 미래진로설정을 위한 진로교육, 탐색 및 직업체험, 과학교실 및 키자니아 등 기관 탐방 실시

□ 성과 및 기대효과

- 다문화 자녀와 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가족관계 증진 향상
- 다양한 활동을 통한 다문화 자녀의 역량 강화

**(3) 사업명: 「행복한 변화! 책속으로 풍덩」**

□ 주관기관 : 금산군 주민복지지원실 여성가족팀(금산군가족통합지원센터)

□ 추진배경

- 유아기의 정상적인 발달과정(자율성, 호기심과 탐색기능, 자기주도성)을 도모하고 결혼이민가정 자녀의 소통 불균형 및 정서적 불안 등을 해결

□ 주요내용

- 부모교육특강, 독서지도 및 독후 활동, 도서관 견학

□ 성과 및 기대효과

-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및 한국어 능력 향상  
⇒ 함께하는 시간 32시간
-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발달의 도움

⇒ 상호교류 10가정 22명

○ 아빠의 참여를 통한 올바른 부모역할 정립

⇒ 아빠 인식 개선

#### **(4) 사업명: 결혼이민자가정 모국방문 지원 사업**

□ 주관기관 : 청양군청 주민복지실 여성다문화팀

□ 추진배경

○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지역생활 정착을 위한 지원 필요

○ 경제적 부담 등으로 모국 방문이 어려운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모국 방문의 기회 제공

○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어머니의 나라에 대한 정보 습득 기회 제공

□ 주요내용

○ 입국 후 3년 이상 된 청양군 거주 결혼이민자 가정에 모국 방문 기회 제공

– 1가정 당 왕복 항공권 3,000천원 이내, 체재비 500천원 지원

※ 기 수혜자는 제외, 경제적 사유 및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가정 등 고려하여 선정

○ 선정기준 점수표에 의거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신청 가정 중 10가정 선정

※ 중도 포기자 발생이나 예산 남을 시 대상자 추가 선정

□ 성과 및 기대효과

– 2017년도 모국방문 지원 사업 13가구 49명 지원

○ 결혼이주여성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여 긍정적인 가치관 함양

○ 안정적인 가족생활 환경을 조성하여 한국생활 조기정착에 도움

### **3) 전라남도**

## (1) 사업명: 토요시장 다문화 전통 음식거리 운영

□ 주관기관 : 장흥군청 주민복지과

□ 추진배경

○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의 사회활동(일자리 제공)참여로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 다문화 음식을 시연, 판매함으로 이국적인 볼거리, 먹거리 제공을 통해 정남진 토요시장의 특색화 기여

□ 주요내용

○ 토요시장 다문화전통음식거리

- 사업내용 : 정남진 토요시장 활성화에 따른 다문화전통음식 홍보 및 판매
- 사업방법 : 연중(매주 토요일, 단 장날인 토요일은 휴무)

○ 다문화전통음식체험교실

– 사업내용 :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다문화전통음식을 직접 만들고 맛보는 체험

- 사업방법 : 4월 ~ 10월중 실시(4회기)

○ 정남진 물축제 다문화세계음식관

– 사업내용 : 물축제 시, 전국의 관광객과 지역민들에게 세계각국의 전통음식과 한국의 전통음식을 시연, 판매함으로 이국적인 볼거리, 먹거리를 제공

- 사업방법 : 7월 ~ 8월중 실시 탐진천변 무지개 다리(7회기)

□ 성과 및 기대효과

○ 예산액 : 92백만원(군비) /특색 있는 일자리 창출

○ 토요시장 다문화전통음식거리

- 토요시장 다문화 전통음식거리(50회, 토) : 18명 / 1회당 인건비 5만원 지급
- 물축제 다문화 세계음식관 (7회) : 27명 / 1회당 인건비 5만원지급

○ 다문화가족인식개선사업

- 대상 : 학생 및 아동, 학부모, 교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 주요내용 : 다문화전통음식체험교실 운영
  - 추진실적 : 2017년 4회기 운영, 1,464명 참여(어린이·청소년)
- 기대효과
- 이주여성들의 운영으로 자기능력개발 기회부여
  - 지역사회 및 경제활동 참여 기회 제공으로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
  -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이 이루어져서 다문화가정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소통의장 마련

## (2) 사업명: 세계인의 날 운영

□ 주관기관 : 전라남도 목포시 여성가족과

□ 추진배경

○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문화 체험을 통해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문화 조성과 “활기찬 다문화가족, 미래를 열어가는 동반자”로 인식되는 화합과 소통의 축제로 추진

○ 민선6기 시장 공약사업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확대’ 세부 이행사업으로 추진

□ 주요내용

○ 행사 개요

- 행 사 명 : 2017 서남권 다문화가족 축제
- 행사주제 : “多가치(다같이). 어울리는 우리”
- 일 시 : 2017. 10. 28(토) 19:00~23:30
- 장 소 : 삼학도 주무대
- 주최/주관 : 목포시/목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주요행사 : 개막식 및 본행사(어울림마당), 부대행사
  - ♦ 어울림 마당 : 12개팀 (다문화, 이주여성,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 시민 등)

- ♦ 부스운영 : 4개 분야 9가지 체험(문화, 놀이 )

성과 및 기대효과

○ 2017년도 축제는 “다가치(다같이) 어울리는 우리”이라는 주제에 부응 결혼이주여성,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 시민이 함께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춤, 외국인근로자 밴드, 사물놀이, 탈북민의난타, 어린이 율동 등 다양하고 다색한 공연이 펼쳐져 풍성한 축제가 되었고,

○ 특히 진도, 무안등 서남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참여로 “서남권 다문화가족 축제” 명칭에 걸 맞는 축제를 만들어 냈으며,

○ 12개팀 100여명의 공연팀이 참여한 어울림마당은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없이 짜임새 있게 진행됨으로써 2,500여명의 관객이 함께 웃고 즐기는 무대가 되었음

### **(3) 사업명: 다문화가족 자녀 멘토링사업**

주관기관 : 전라남도 무안군 주민복지실

추진배경

○ 취학 전·후의 다문화자녀에 멘토를 지정하여 학습 및 생활지도를 통해 학교 등 사회적응을 돋고 역량 있는 지역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주요내용

○ 초당대학교 간호봉사단과 연계하여 멘토링 프로그램 추진

- 사업대상 : 다문화가정 15세대

- 추진방법 : 매주 1회(2시간) 방문교육

· 교과학습을 중심으로 한 학습지도, 체육활동, 예체능 활동,

· 예습, 복습 및 과제 및 준비물 점검 지도, 고민상담 등

- 예산액 : 4,000천원

성과 및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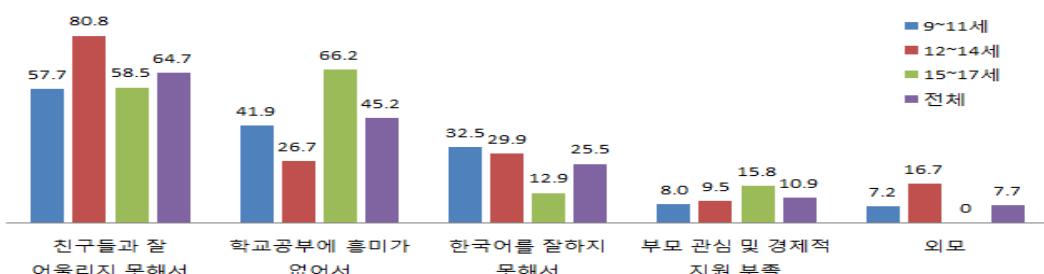
- 다문화가정 자녀와 멘토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실생활에 밀접한 문제에 대해 도움을 줌으로써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향상

#### (4) 사업명: 글로벌 인재육성(한국의 오바마 만들기 프로젝트)

- 주관기관 : 순천시 여성가족과

- 추진배경

- 결혼이주여성의 상당수가 언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가정통신문 등 알림장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이 절실함.
-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학업 중도 이탈률이 일반 가정보다 네 배 이상 높으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그림 5-1〉 다문화가정 자녀가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

- 추진개요

목표	글로벌 인재육성(한국의 오바마 만들기)		
주요 시책	(자녀지원)	학습도우미 운영, 모국어 아카데미, 책 읽어주기, 다재다능 사업(멘토-멘티), 인식개선 체험 프로그램	
	(부모지원)	찾아가는 부모학교, 자격 기술 취득비용지원	
	(가족통합지원)	다문화 가족사랑 캠프, 한마음 축제	

〈그림 5-2〉 글로벌 인재육성(한국의 오바마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개요

주요내용

1 다문화 가족 지원-편결없는 글로벌인재 육성

- 대상 : 예비초등~초등학생 자녀 120명 (75명→120명 확대)
- 내용 : 학습능력 배양 및 학교 적응지원, 사례관리
- 사업비 : 277백만

학습도우미  
운영(확대)



- 대상 : 초등학생 70명
- 강사 : 결혼이주여성 7명
- 내용 : 다문화 가정 자녀에 엄마 나라말 언어 교육, 이중언어 환경 조성
- 사업비 : 104백만원

한국어 아카데미  
특특선생님 운영  
(신규)



다문화인식개선  
체험프로그램



- 대상 : 어린이집, 아동센터
- 강사 : 결혼이주여성 10명
- 내용 : 결혼 이주여성이 자국의 문화·놀이 체험 소개로 다문화수용성향상
- 사업비 : 95백만원

다재多能  
(멘토-멘티)



- (멘토) 순천여고생 40명
- (멘티) 다문화 초등 12명
- 내용 : 고등학생봉사자 2명이 멘티 1명을 학습 지도 및 진로상담
- 운영 : 통합센터 운영

다문화가정  
책 읽어주기



- 대상 : 다문화가정 미취학 아동 30명
- 내용 : 사자가 다문화 가정을 방문, 아동대상 책읽어주기와 결혼이주 여성 상담

<그림 5-3> 글로벌 인재육성(한국의 오바마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내용

2 다문화 가족 부모 지원-경쟁력있는 부모

- 대상 : 결혼이주여성, 배우자, 시부모 471명/4개권역  
내용 : 가족내 역할교육, 아이 양육 방법, 나의가족 표현하기 등  
사업비 : 10백만원

찾아가는 부모  
학교



- 대상 : 결혼이주여성 30명  
내용 :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  
비용지원  
지원금액 : 25만원(상한액)  
사업비 : 7.5백만원

외국인주민  
tier전마련 지원



### 3 다문화 가족 통합 지원 - 이해와 소통으로 건강한 가족 회복

다문화 가족사랑  
캠프



- 대상 : 다문화 10가족
- 내용 : 가족캠프를 통해 가족간 이해와 소통 지원
- 사업비 : 5백만

다문화 한마음  
축제



- 대상 : 다문화 가정 800명
- 내용 : 다문화 가정 가족 장기자랑 및 가족 체육대회
- 사업비 : 12백만원



〈그림 5-4〉 글로벌 인재육성(한국의 오바마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실적

#### 성과 및 기대효과

- 다문화 가정 자녀의 장점을 극대화 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글로벌 인재 육성
- 다문화 가정의 화합·소통의 기회 제공으로 건강한 가정의 회복 지원 및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지원

III 편

## 2019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추진 방향 정립



2000년 이후 급속한 이민자 유입은 이민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 정부는 이민 정책 총괄 부서로 법무부 산하 외국인정책본부를 설치하였고, 체류 외국인 대상의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법률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는 외국인정책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 및 수행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 제정되면서 5년 단위로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관련 부처가 개별적으로 진행하였던 이민 정책이 외국인정책본부 총괄에 입각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이 수립, 실행되는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외국인정책이 수행되고 있다. 사실상, 한국의 이민정책의 추진방향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이민 정책이 수립 및 수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외국인정책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수립 및 수행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지방 정부 역할이 점점 더 확대되고, 반대로 중앙정부의 역할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 의하면(법무부, 2018), 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중앙행정기관 차원에서의 추진 과제 수는 190개에서 149개로 감소하였다. 반대로, 지방자치단체의 년도 별 추진 과제 수는 2009년 588개에서 2012년 804개로 증가하였다. 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또한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는데, 중앙행정기관의 연도 별 추진과제 수는 2013년 194개에서 2017년 189개로 감소하였다. 그에 반해, 지방자치단체의 년도 별 과제 수는 2013년 948개에서 2017년 1,059개로 증가하였다. 이는 중앙정부차원에서 이민정책이 수립되지만 실질적인 이민정책의 수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서구에서의 기존연구들에 의하면 지속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보다는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이민정책 수립 및 수행에서의 역할이 확대되는 현상을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논의하고 있다(Sumption, 2014). 먼저 수요 측면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되는데,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성장 동력이 부족한 지역은 이민자 유입 증진을 희망하게 되는 지방정부가 나타날 수 있다 (Filomeno, 2015). 이러한 수요에 의해 지방정부는 우호적인 이민정책을 수행하여

지역으로 유입을 장려하며,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정착 관련 교육, 의료, 사회복지 등과 같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거나 경제적으로 지역 노동시장 참여를 증진 할 수 있는 이민정책을 수립 할 수 있다(Filomeno, 2015). 공급적 측면은 이민자를 중심으로 논의가 되는데, 이민자는 본국 출신 이민자 중심의 사회관계망이 활발히 작동되는 지역, 또는 경제적으로 노동시장 참여가 유리한 지역을 선호하게 된다 (Portes and Rumbaut, 2006). 그러나 기대하지 않은 이민자가 지역사회에 급속하게 유입하게 되면 지방정부는 이민자 유입을 억제하거나 조례를 통해 이민자만을 위한 정착과 관련된 특별한 혜택 제공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인 이민정책의 일환으로 시장경제에 의해 노동시장이 작동되는 방법의 이민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 (Sumption, 2014). 결국 지역마다 이민자들과 관련된 다양한 수요와 공급이 존재하며, 이러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이민정책이 지역마다 상이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한국에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민정책 수립 및 수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서구와 다르게 중앙행정기관에서 수립된 이민정책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감독 하에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지역마다 이민과 관련된 수요와 공급이 다르지만 그러한 지역에 따른 수요와 공급을 반영하지 못한 이민정책이 수립되거나 실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한국도 서구 이민국가처럼 지역마다 동일한 이민자가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이민 관련 수요와 공급에 의해 다양한 이민자 유형이 정착하고 있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이민자 유형과 특성에 따라 선호하는 이민정책에 대한 욕구, 필요 또한 차이가 발생 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을 조사하기 위해 본 보고서는 3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시도하였다. 첫째,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특징 및 주요 추진 방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의 범위 및 협력 수준에 대해 파악하였다. 둘째, 서구 이민국가에서의 이민정책 흐름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즉, 최근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이민정책 수립 및 수행의 구체적인 서구의 사례들을 탐색하였다. 셋째, 정책 대상 집단의 수요를 파악하였다. 이민정책을 수립 또는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간의 이민정책의 인식차이를 조사, 지역에 따른 이민자 유형이나 특성의 차이를 분석, 이민자 유형 또는 특성에 따라 이민정책

욕구 또는 필요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접근을 바탕으로 어떻게 중앙행정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수요와 공급)을 고려한 이민정책(외국인정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지 논의를 시도하려 하였다. 더 나아가 외국인정책 시행에 있어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려 한다.

## 제6장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특징 및 주요 추진 방향

### 제1절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의의

#### 1. 외국인정책의 개념

‘외국인 정책’<sup>7)</sup>은 국경 및 출입국관리, 국적부여 정책과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을 포괄

하는 개념으로 이민정책(Immigration Policy)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외국인과 그 자녀 등에 대해 영구적 또는 일시적 사회구성원 자격을 부여하거나, 국내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제반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루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정책은 우수인재 유치, 이민자와 2세의 사회통합, 다문화가족 지원, 문화다양성 제고, 재외동포 교류지원 등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는 이민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외국인정책위원회’를 통해 심의·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 2.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법적 근거와 절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5년마다 관계부처의 기본계획(안)을 종합하고,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있다.<sup>8)</sup>

7)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당시 ‘이민’이라는 용어에 대해 국민이 ‘해외 이민’과 혼동할 우려가 있어 ‘이민정책’ 대신 「외국인정책」으로 호칭하기로 정부 내에서 합의하여 사용(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7면)

8)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5조(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①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의하여 5년마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외국인정책의 추진과제, 그 추진방법 및 추진시기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대한민국 이민정책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국가계획이자, 정책지침서이며, 향후 5년간의 정책추진에 관한 기본설계도라 할 수 있다.<sup>9)</sup> 그리고 외국인정책은

그 특성상 관련분야가 많고 정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므로 소관 부처별 개별적인 정책추진보다는 국가차원에서 중장기 정책 방향을 미리 설정하고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으로 인해 정부합동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게 되었다.



<그림 6-1>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참여 부처

※ 자료: 서울대학교(2017)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밖에 외국인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9) 외국인정책위원회 위원부처: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간사),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통계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 제2절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발전과정

### 1.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4대 정책목표(적극적인 이민 허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질높은 사회통합, 질서 있는 이민행정 구현, 외국인 인권 옹호) 및 169개 세부 추진과제에 따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하였고, 총 1조 3천 364억원(중앙 6천 406억원, 지방 6천 95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다.

비 전	외국인과 함께하는 세계 일류국가
정책 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적극적인 이민 허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li><li>2. 질 높은 사회통합</li><li>3. 질서 있는 이민행정 구현</li><li>4. 외국인 인권 옹호</li></ol>
증점 과제	<p>1-1. 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1-2.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한 인력 도입 1-3. 외국인에게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p> <p>2-1.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2-2.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2-3. 이민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2-4. 동포의 역량 발휘를 위한 환경 조성</p> <p>3-1.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3-2. 국가안보 차원의 국경관리 및 외국인정보 관리 3-3. 건전한 국민확보를 위한 국적업무 수행</p> <p>4-1. 외국인 차별 방지 및 권리보호 4-2. 보호 과정의 외국인 인권 보장 4-3. 선진적 난민 인정·지원 시스템 구축</p>

〈그림 6-2〉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 중앙행정기관 연도별 추진 과제수는 '10년 190개에서 '12년 149개로 감소한 반면에, 지방자치단체 연도별 추진 과제수는 '09년 588개에서 '12년 804개로 점차 증가하였다. 예를 들면, 중앙행정기관 연도별 추진 과제 수는 '09년 190건 → '10년 173건 → '11년 165건 → '12년 149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던 반면, 지방자치단체 연도별 추진 과제 수는 '09년 588건 → '10년 734건 → '11년 858건 → '12년 804건으로 점차 증가하였다.

## 2.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5대 정책목표(개방, 통합, 인권, 안전, 협력) 및 146개 세부추진과제에 따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하였고, 총 3조 3천 945억원(중앙 2조 1천 971억원, 지방 1조 1천 97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다.

비전		세계인과 더불어 성장하는 활기찬 대한민국	
정책 목표 및 종점과제	정책목표	종점과제	
	<b>1. 개방</b> 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	1. 내수 활성화 기여 외래관광객 유치 2. 국가와 기업이 필요한 해외 인적자원 확보 3.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유학생 유치 4.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외국인 투자 유치	
	<b>2. 통합</b>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재되는 사회통합	1. 자립과 통합을 고려한 국적 및 영주제도 개선 2. 체계적인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3. 국제결혼 피해방지 및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4. 이민배경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5.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인프라 구축	
	<b>3. 인권</b> 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존중	1. 이민자 인권존중 및 차별방지 제도화 2. 다양한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용성 확대 3. 국민과 이민자가 소통하는 글로벌 환경조성	
	<b>4. 안전</b>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구현	1. 안전하고 신뢰받는 국경관리 2. 질서 위반 외국인에 대한 실효적 체류관리 3. 불법체류 단속의 패러다임 다변화 4. 외국인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관리 역량 제고	
	<b>5. 협력</b>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	1. 이민자 출신국,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협력 강화 2. 국가 위상에 부합하는 난민정책 추진 3. 동포사회와의 교류, 협력 확산	

〈그림 6-3〉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중앙행정기관 연도별 추진 과제수는 '13년 194개에서 '17년 189개로 소폭 감소한 반면에, 지방자치단체 연도별 추진 과제수는 '13년 948개에서 '17년 1,059개로 증가하였다. 예를 들면, 중앙행정기관 연도별 추진 과제 수 '13년 194건에서 → '14년 207건 → '15년 201건 → '16년 201건 → '17년 189건이었던 반면, 지방자치단체 연도별 추진 과제 수는 '13년 948건에서 → '14년 1,065건 → '15년 965건 → '16년 1,026건 → '17년 1,059건으로 증가하였다.

### 3.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 1) 종전 외국인정책의 평가

제1, 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 시행에서 한계로 지적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7).

##### (1) 우수 외국인재 유치 미흡 및 단순 기능인력의 장기 거주 진행

우수 외국인재 유치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자격을 보유한 외국인 대비 전문직 종사자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전문직이라 할 수 있는 체류자격자(E-1(교수) ~ E-7(특정활동) 등)의 전체 취업자격 외국인 중에 8%(48,334명)에 불과하며, 비전문직 체류자격자(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2(방문취업) 등)은 92%(549,44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6년 기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이는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입국한 비전문직 외국인근로자들의 국내 장기 체류가 진행되어 가족동반 요구 등 정주화에 수반되는 사회적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 (2) 외국인 유입 증가에 따른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

국내 체류외국인의 수는 2016년 현재 200만 명을 넘어서 전체 인구의 3.9%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 등 단순 기능인력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근로자 증가에 따른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sup>10)</sup>

### **(3) 결혼이민자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그 이외의 재한외국인 지원 과의 형평성 문제제기**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사회통합 사업이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지원에 편중됨에 따라 그 이외 이민자(우수인재, 영주자격자, 국내 체류 동포 등)<sup>11)</sup>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문제가 있다.

### **(4)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한 구체적 실행 체계 부족**

현재 재한외국인 차별 및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정의, 판단기준, 구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농축산어업과 예술홍행분야 등 취약분야 인권 실태의 지속적 모니터링 및 보호 체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 **(5) 이민자 증가 등에 따른 사회불안 요인에 대한 체계적 대비 부족**

정부의 사회통합 정책 및 문화다양성 제고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민자의 지속적 증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존재하고,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표출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sup>12)</sup> 특히 외국인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증대하고

10) “외국인 노동자는 건설현장에서 우리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외국인이 없으면 건설현장은 돌아 가지 않을 지경이 되었다.” (17. 9. 18. 조선일보)

11) “다문화가족을 시혜적 정책의 대상자로 범주화하는 것은 일반 국민에게도 거부감을 심어주고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16. 8. 22. 연합뉴스)

12) “이민자 증감에 대한 국민적 태도의 변화를 보면, 현재 수준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2003년에 비해 2015년 조사에서 15% 정도 증가하고,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늘여야 한다는 의견보다 많은 편임. 따라서 이민자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읽을 수 있음” (16. 12. IOM이민정책연구원)

있고 불법체류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인프라의 구축은 미흡한 실정이다.<sup>13)</sup>

## (6) 이민정책 관련 위원회 및 중앙·지자체·민간 협력 부족

현재 다양한 이민정책 관련 정부위원회가 존재한다. 따라서 외국인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문화다양성위원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등 이민정책 관련 위원회간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실효적 이민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의 현장 밀착형 사회통합 정책 추진이 중요하나 중앙·지방·시민사회의 협업 및 연계 시스템 구축이 미흡하다.

또한, 외국인정책의 주요 사업에 대해 지자체 및 시민사회와 함께 심층분석 및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차년도 정책 형성에 반영할 수 있는 평가 및 환류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

## 2)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내용과 차별성

2018년 2월 12일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의결을 통해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18~'22)」 확정하였다.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5대 정책목표(국민이 공감하는 질서있는 개방,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협력에 바탕한 미래지향적 거버넌스)개방, 통합, 인권, 안전, 협력) 및 세부추진과제에 따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 계획에 있다.

---

13) “외국인 범죄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불법체류자들의 범행 역시 날로 흥포화·다양화하는 추세, 불법체류자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 ('15. 10. 15. 헤럴드경제)

비  
전

## 국민공감!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

핵  
심  
기  
자

&lt;상생&gt; &lt;통합&gt; &lt;안전&gt; &lt;인권&gt; &lt;협력&gt;

정  
책  
목  
표  
 및  
중  
점  
과  
제국민이 공감하는  
질서있는 개방

- ① 우수인재 유치 및 성장지원 강화
- ②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취업이민자 유치·활용
- ③ 관광객 및 투자자 등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 ④ 유입 체계 고도화 및 체류·국적 제도 개선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 ① 이민단계별 정착 지원 및 사회통합 촉진
- ② 이민배경 자녀 역량 강화
- ③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지원 내실
- ④ 이민자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 ① 안전하고 신속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
- ② 체류외국인 관리 체계 선진화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 ① 이민자 인권보호 체계 강화
- ② 여성·아동 등 취약 이민자 인권증진
- ③ 문화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 제고
- ④ 동포와 함께 공존·발전하는 환경 조성
- ⑤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선진 난민정책 추진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 ① 이민관련 국제협력 증진
- ② 중앙부처·지자체·시민사회 협력 강화
- ③ 이민정책 및 연구기반 구축

&lt;그림 6-4&gt;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 이전 기본계획과는 구분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1)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있는 외국인정책’을 통해 정책의 국민**

#### **수용성 제고 및 지속 발전가능한 체계 구축**

지금까지 이민정책은 적극적 이민의 허용이라는 양적인 측면에 치우쳐 있어 외국인 지원 관련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국민 일자리 등의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에 따라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우선적인 정책목표는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있는” 외국인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우수하고 발전가능성 있는 외국인을 선별적으로 유입하고, 외국인 유입으로부터 국민 일자리 보호를 강화한다. 둘째, 이민자 유입의 경제·고용·사회·문화적 영향을 분석하고 유입 원칙과 우선 순위를 설정하는 등 종합적 이민자 선별·유입체계의 고도화를 도모한다. 셋째, 사회통합 체계과 체류, 영주, 국적의 연계를 강화하여 재한외국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한다. 넷째, 외국인이 낸 재원으로 외국인을 지원하는 수익자부담형 이민통합기금을 도입하여 국민 역차별 논란을 해소한다. 다섯째,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상응하는 국적·체류제도를 개선한다. 여섯째, 귀화자 병역의무 부여 여부 및 현실적 이행방안 등 장기적으로 검토한다.

### **(2) ‘재한외국인의 자립’을 촉진하는 미래 지향적 외국인정책 추진**

지금까지 외국인의 유입에 초점을 두다 보니 유입이후의 관리에 소홀한 점이 많았다. 따라서 제3차 기본계획은 유입뿐만 아니라 유입이후 【유입 → 자립 → 성장 → 기여】의 관점에서 미래지향적 외국인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유학생의 학습 및 적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 연수 및 유학을 취업과 창업으로 연계하여 재한외국인의 성장을 촉진한다. 둘째, 이민배경 아동의 이중언어 교육 체계를 고도화하고 유아·학령기 등 성장주기별 지원을 강화한다.

### **(3) ‘체계적 인권증진 및 차별방지’ 정책 추진**

지금까지 외국인 인권보호는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성격이 강하였고, 아동 등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외국인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했다.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인권보호제도를 마련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핵심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한다. 그리고 아동 등 취약한 상황에 있는 외국인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차별방지를 위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고 외국인 권리 옴부즈만 도입, 인권증진 및 권리보호 협의회 강화, 난민심판 전문기관 설치 추진을 검토한다. 둘째, 취약한 상황에 있는 외국인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 보호방안 강구 등 종합적 인권증진 방안을 마련한다. 셋째, 농축산어업, 예술홍행분야 등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는 이민자에 대한 적극적인 인권보호를 추진한다.

#### **(4)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시민사회’의 협업 증진**

지금까지 외국인정책의 거버넌스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중앙차원에서는 이민정책 관련 정부위원회간의 협력체계가 부족하고, 지역차원에서는 지자체 및 시민단체 등과 같은 이민정책 거버넌스에서 핵심적인 참여자들의 참여가 부족하였다.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외국인정책 거버넌스 체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정책의지가 인상적이다. 구체적으로 중앙차원에서 이민정책관련 정부위원회간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차원에서 지자체와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중앙간 지자체간 혹은 지자체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시민단체와 외국인 당사자 등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정책수요자 참여형 외국인정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부처별 분산 운영되어온 이민관련 위원회간 연계를 강화한다. 둘째, 중앙·지자체 협의체 구성, 컨설팅 제공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체계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이민정책 인프라를 강화한다. 셋째, 외국인정책 기본·시행계획 수립 시 정책수요자 의견 수렴을 정례화하는 등 시민사회와 함께 이민정책을 만들어가는 체계를 구축한다.

### **(5) ‘체계적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

지금까지 이민관련 통계와 연구기반이 미흡하였다. 그리고 이민관계를 체계적인 법제 정비가 미진하였다.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체계적인 이민정책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이민관련 통계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이민기록정보원 등을 신설하는 등 기반 확충을 하고, 이민관련 법제를 점검하여 고도화하고자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증가하는 이민자의 현황 및 경제·사회적 영향 파악하고 이를 통해 국민과 재한외국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통계·연구기반 구축하기 위하여 이민기록정보원을 설치한다. 둘째, 체류외국인 증가와 다양화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출입국관리법’ 등 이민관련 법제 고도화를 추진한다.

## 제7장 주요국 이민정책동향분석 및 이민정책환경 분석

선진 이민국가의 이민자 유입(입국 허가, 선발 제도)은 중앙정부 또는 연방정부가 수립한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캐나다와 호주에서는 ‘지역추천 이민자 선발제도’를 개발하였다. 이는 지역의 수요에 따라 주정부나 지방정부에 선발 방식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선발방식의 부합한 이민자를 연방정부나 중앙정부에 추천하여 최종적으로 선발하게 되는 방식이다. 주정부나 지방정부에 의한 지역추천 이민자 선발제도는 새롭게 이주하는 이민자들이 대도시에 집중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도시화 문제를 해결하고 각 지방정부의 경제발전과 인구 부족 현상을 이민자 유입과 함께 고려하는 이민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추천 이민자 선발제도와 더불어 중앙정부는 이민자의 수월한 정착을 돋기 위하여 정착서비스를 고안하였고, 일선 현장에서 지방을 기반으로 설립되어진 다양한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각 지방의 환경과 정착 이민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착서비스를 전달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다문화공생’이라는 이민정책을 중앙정부 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단체 중심의 이민정책이 실행되고 있다. 결국 각 지방정부는 지역의 수요에 맞게 지역추천 이민자를 선발하고 있으며, 이들의 정착을 돋기 위해 지역의 네트워크를 통한 비영리 민간단체의 참여를 장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이민정책에서 지역 거버넌스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현재 한국도 이민자의 다수가 대도시에 집중되고 있으며, 특정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부족과 생산인력 부족을 경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캐나다, 호주, 일본의 지역추천 이민자 선발제도와 지역 중심의 정착서비스 전달에 대해 살펴보면서, 국내 이민정책 계획과 시행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려 한다.

## 제1절 캐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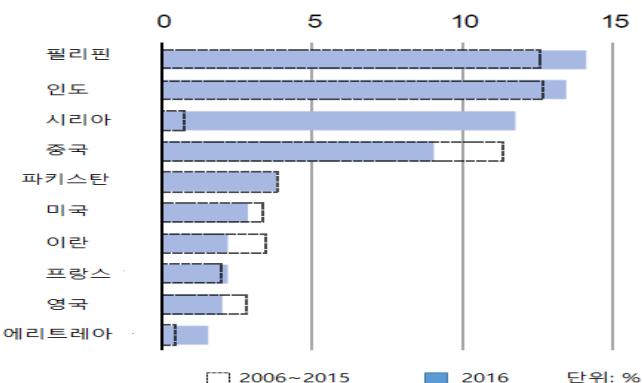
### 1. 역사적 접근

현재 캐나다는 이민자 유입에 적극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국가는 아니었으며, 1960년대 이후부터 이민자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실시하여 이민자의 비율이 높아진 나라로 볼 수 있다. 1910년까지는 이민자 유입 자체를 거부하는 정책이 실시되었고, 유입을 허용하더라도 인종을 차별하는 이민정책이 만연하였다. 더 나아가 1931년부터 1945년까지 이민 자체를 거부하는 정책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경제는 호황이지만 부족한 인력과, 이와 더불어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미래 인력 부족에 대한 우려로 이민자 유입에 호의적인 이민정책으로 입장이 선회하였다. 1962년 개정된 이민규정을 통해 인종 제한적인 이민 유입에서 인종차별 없이 이민자의 기술력 평가만으로 이민유입을 허용하게 되었다. 1967년에는 전 세계 최초로 이민유입에 있어 점수제를 개발하여 이민자의 유입을 허용하였다. 점수제에는 인적자본(교육, 언어, 연령, 기술) 수준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이민자를 선발하게 되었다. 1971년 이민정책에 다문화주의를 채택하였다. 1976년 이민법이 개정되어 지금의 이민정책의 기반이 되었다. 1976년의 이민법에는 연방정부가 이민자 유입 수준에 대해 연도별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으며, 주 정부에게 이민자 유입과 관련하여 서로 협의해야 함을 또한 명시하였다. 1985년 다문화법이 제정되면서 문화의 다양성 존중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 2. 이민자 현황

캐나다는 자국 이외에서 출생한 경우 이민자로 간주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캐나다 국민의 20% 이상이 외국에서 출생하였다(OECD, 2018).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출신국가별 이민자 유입을 살펴보면, 필리핀 출신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인도, 중국이다. 2016년에는 필리핀, 인도, 시리아 순이었

다. 시리아 출신이 높아진 이유는 세계적으로 시리아 난민 문제가 경각심이 커지면서 캐나다가 일정 시리아 난민 입국을 허용하였기 때문이다. 캐나다의 영주이민은 경제이민(전문인력이민, 숙련인력이민, 캐나다 경험 이민, 사업/투자 이민, 지역추천이민), 가족이민, 인도적(난민)으로 구분된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의 장(영주)·단기 체류 관련 이민자 통계를 살펴보면, 영주 이민자 중 가족이민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취업 이민이다. 단기 체류 이민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은 유학이며, 다음으로는 워킹홀리데이였다.



〈그림 7-1〉 상위 10개국 출신 이민자 유입 비율(2006~2016, 캐나다)

※ 자료: OECD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18

〈표 7-1〉 2015~2016 장기 이민 통계(캐나다)

구분	인원수(1,000명)		비중(%)		
	2015년	2016년	2015년	2016년	
장기이민	취업	76.7	69.7	27.8	23.5
	가족이민	163.2	164.3	59.2	55.4
	인도주의	32.1	58.9	11.6	19.9
	자유이동	–	–	–	–
	기타	3.8	3.4	1.4	1.2
	총합계	275.9	296.4	100	100

※ 자료: OECD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18

〈표 7-2〉 2015–2016 단기 이민 통계(캐나다)

구분	인원수(1,000명)		평균 2011–2015
	2015년	2016년	
단기이민	유학생	83.5	74.2
	연수생	–	–
	워킹 홀리데이	39.4	43.4
	계절 노동자	30.8	27.9
	기업주재원	9.8	11.1
	기타	54	68.2

※ 자료: OECD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18

### 3. 연방정부 이민정책 추진체계

연방정부는 이민자 유입 정도에 대해 매년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이민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연방정부가 정착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이민정책은 이민–난민–시민권 부처, 국경서비스청, 이민난민위원회, 고용사회개발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첫째, 연방정부의 이민정책의 주요 주체는 이민–난민–시민권 부처(The Department of Immigration, Refugee, and Citizenship)이다. 과거 시민권–이민 부처(The Department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가 1994년 설립되었고, 2015년 트루도 정부가 들어오면서 난민 용어가 새롭게 첨가된 이민–난민–시민권 부서가 설립되었다. 이민–난민–시민권 부처는 외국인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담당하는 주요 부처라 할 수 있다. 부처에서 담당하는 세부적인 업무는 외국인의 비자, 체류, 난민, 국적, 사회통합(다문화사업)이다. 둘째, 국경서비스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은 이민법집행(enforcement)과 관련된 업무로써 강제추방 집행 및 보호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셋째, 이민난민위원회(Immigration and Refugee Board)는 다른 부처에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 부서이며, 난민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세부적으로 난민신청 심사, 입국/입국불허 심사, 보호 심사, 강제추방, 항소 등을 담당하고 있다. 넷째, 고용사회개발 부처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는 외국인 근로자 취업비자와 관련되어 노동시장확인서(Labor Market Opinion)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노동시장 확인서 유/무에 따라 취업비자의 형태가 달라진다. 캐나다 노동시장에 외국 인력 유입 시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확인서가 노동시장 확인서라 할 수 있다. 일반취업비자는 노동시장 확인서가 필요한 비자이다. 노동시장 확인서가 필요 없는 취업 비자는 투자, 주재원, 연구원, 교환교수, 종교인, 배우자, 난민에게 제공되는 취업비자이다.

## 4. 지역 거버넌스

캐나다 헌법에 의하면 연방의회와 주의회가 공동으로 이민정책에 관한 권한 행사에 대해 명문화 되어 있다. 이는 연방정부의 이민정책 주요 담당부서인 이민-난민-시민권 부처의 장관이 각 주와 의무적으로 이민정책 대해 협의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헌법을 기반으로 이민-난민-시민권 부처는 각 주와 협약을 맺고 있으며, 협약이 이루어진 주들은 외국인의 유입, 체류, 사회통합 관련 정책에 대하여 주 정부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주정부 이민 정책이 발달하게 되었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지역추천 이민자 선발제도(Provincial Nominee Program)와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에 대해 소개하려 한다.

### 1) 지역추천 이민자 선발제도

#### (1) 배경

캐나다의 이민자 유입은 새롭게 이주하는 이민자들이 대도시 중심으로 정착하게 되고, 이로 인해 대도시에는 출신국가 중심의 커뮤니티가 생성되는 특징이 발생되었다. 특히 이민자가 정착하는 도시는 벤쿠버, 토론토, 몬트리올로써, 이민자의 50% 이상이 이들 세 도시에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들 도시에 집중되는 이민자 유입을 방지하고 전국적으로 이민자 정착을 유도하면서 동시에

지방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역추천 이민자 선발제도가 시작되었다. 사실상, 이민-난민-시민권 부처와 협약이 되어있는 주 정부는 처음에는 경제이민자에 한정하여 연방정부 대신 지방정부가 각 지방의 경제 수준과 수요를 고려하여 경제이민자를 추천하고 선발하였다. 그러나 그 유형이 경제뿐만 아니라 각 지방 정부의 인구 수준까지도 고려한 제도로 확대되고 있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협약에 의해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주 정부의 역할, 내용 등은 상이하다. 구체적으로 연방정부는 2017년 기준으로 10개 주(provinces), 2개의 준주(territories) 정부와 협약을 맺었고, 이러한 협약을 기반으로 지역에 따른 이민자 추천 및 선발에 대한 논의가 년마다 이루어지고 있다(강동관 외, 2017). 1996년 매니토바주가 연방정부와 협약을 최초로 체결하여 지역추천 이민자 선발제도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1999년 매니토바주, 뉴브런스윅주, 뉴파운드랜드주에서 처음으로 지역추천 이민자 선발제도가 시행되었다. 지역추천 이민자 선발제도와 별도로 퀘벡주는 캐나다 내에서 과거 프랑스 식민지이면서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유일한 주이며 캐나다 정부와 퀘벡 협정(Canada–Quebec Accord)이 맺어지면서 주 정부 자체적으로 이민자를 선발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이민자 유입과 관련하여 매년 그 수를 할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추천 이민자 선발 제도로부터 유입된 이민자의 수는 연도별 할당 유입 수에서 포함하지 않고 있다(강동관 외, 2017). 지역추천 이민자 선발제도는 각 주정부와 준정부와 협의를 거쳐 선발하는 인원을 정하게 되어 있으며, 그 수는 협의에 따라 매년 변경이 가능하다(Baglay, 2012). 예를 들어, 브리티쉬 컬럼비아 주(1998–2003)는 1,000명, 매니토바 주(1998–2001)는 200명, 뉴브런스윅 주(1999–2004)는 200명, 뉴펀들랜드 주(1999–2004)는 300명,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주(2001–2006)는 200명, 사스캐처 주(2002–2007)는 200명, 알버타 주(2002–2004)는 400명, 노바스코시아 주(2002–2007)는 200명, 유콘 준주(2001–2003)는 25명, 노스웨스트 준주(2009–2011)는 350명이다(Baglay, 2012).

## (2) 유형

지역추천 이민자 선발제도는 경제 이민자 중 기술을 소지한 이민자의 유입과 정착을 장려하기 위해 개발된 제도인데 점차 경제에서 인구까지 고려하는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되었다. 대표적인 유형을 살펴보면 고용주(Employer Direct Stream), 유학생(International Student Stream), 가족초청(Family Support Stream), 공동체 후원(Community-Sponsored stream), 전략적 모집(Strategic Recruitment stream) 유형이 있다. 첫째, 고용주와 관련된 유형은 인력 수입에 대해 주정부에 요청하면 주정부가 연방정부에 추천하는 유형이다. 둘째, 주정부가 유학생을 추천하는 유형이다. 셋째, 이미 이주하여 지방정부에 정착하고 있는 이민자 중에서 가족초청을 희망하는 이민자를 주정부가 연방정부에 추천하는 유형이다. 넷째, 공동체 후원 유형은 주정부가 인구 부족으로 인하여 이민자 유입을 희망하는 경우 공동체 후원 유형을 사용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특정 기술 소지자를 주정부에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략적 모집 유형을 사용한다. 그러나 각 주 정부에 따라 세부적 유형이 다양하여 50개 이상의 유형에 따라 이민자 추천 및 선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7-3〉 캐나다 지역추천 이민자 선발 유형

유형	내용
고용주(Employer Direct Stream)	인력 수입에 대해 주정부에 요청하면 주정부가 연방정부에 추천
유학생(International Student Stream)	주정부가 유학생을 추천
가족초청(Family Support Stream)	가족초청을 희망하는 이민자를 주정부가 연방정부에 추천
공동체 후원(Community-Sponsored stream)	주정부가 인구 부족으로 인하여 이민자 유입을 희망
전략적 모집(Strategic Recruitment stream)	특정 기술 소지자를 주정부에 유치

### (3) 절차

지역추천 이민자 선발제도에서 주 정부에 의한 선발기준은 연방정부의 기준과

차이가 있다. 대표적으로 언어능력, 기술 숙련도, 가족 관계라 할 수 있다. 언어 능력은 연방정부에 비해 관대하여, 언어 실력이 낮더라도 기술 숙련도가 높은 경우 주 정부가 연방정부에 추천하게 된다. 다음으로 기술 숙련도의 경우 연방 정부에 비해 기술, 숙련 정도의 범위가 넓다. 마지막으로, 가족 관계인 경우 정착 이후 자립수준이 연방정부에 비해 높아야 하지만 가족 관계의 범위는 연방정부에 비해 관대하다고 볼 수 있다.

사실상, 주 정부는 연방정부에서 마련한 기준으로 이민자를 연방정부에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주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선발기준과 절차를 통해 이민자를 연방정부에 추천한다. 주 정부가 다양한 유형에 따라 이민자를 연방정부에 추천하면 연방정부는 범죄, 안보, 건강 관련 최소한의 사항들만을 검토하고 캐나다 도착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즉, 주 정부가 이민자를 추천하면 이민-난민-시민권 부처가 최소한의 사항들을 최종 심사하여 결정하는 제도가 이민자 추천 선발제도라 할 수 있다. 주 정부가 추천하는 경우 2010년에서 2015년까지 승인 비율은 약 94%부터 97%로 높은 승인 비율을 보여주는데, 이는 주 정부에 의한 추천 이민자의 거의 대부분이 캐나다 이민이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Immigration, Refugee and Citizenship, 2017). 또한 주 정부에 의해 추천된 이민자의 심사를 우선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기술(경제)이민 영주권 신청자 중 약 20%가 지역추천 이민자 선발제도에 의해 영주권을 획득하였다(Immigration, Refugee and Citizenship, 2017). 최종적으로 주 정부의 추천에 의해 연방정부가 승인한 경우 이민자는 우선적으로 추천된 주에서 정착하게 된다. 그러나 다른 주로 이동을 희망하는 경우 특별한 제약을 두지 않고 있다.

## 2)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

### (1) 정착 서비스(Settlement Service) 개요

캐나다에서의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은 이민자의 적응 및 정착 증진을 통해 캐나다의 다양한 영역인 사회, 문화, 경제, 정치 영역에 통합을 촉진하고 마지막으로 시민권 취득 이후 완전한 캐나다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

방정부는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해 예산을 수립하고 사회통합 정책 일환으로 정착 서비스(Settlement Service)를 운영하고 있다. 정착 서비스는 이민자가 교육 향상, 취업 촉진, 소득 증진 등의 목표 달성을 위해 의사소통 향상, 연방, 주 정부 등이 제공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접근을 증진, 사회적 자본(네트워크) 등을 형성 할 수 있도록 돋고 있다. 정착 서비스의 대표적인 세부 프로그램은 이민자 정착 및 적응 프로그램(Immigrant Settlement and Adaptation Program: ISAP), 신규 이민자 언어 교육(Language Instruction for Newcomers to Canada: LINC), 호스트 프로그램(Host Program)이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이민자 정착 및 적응 서비스는 새롭게 캐나다에 도착한 이민자의 정착을 돋기 위해 제공되는 광범위한 프로그램이다. 입국 전과 후 오리엔테이션, 통번역 서비스, 정착한 지역사회의 이용 가능한 자원 소개, 안내, 상담, 생활정보 제공, 취업지원(이력서, 자기소개서 쓰기, 취업 지원서 쓰기, 취업·노동시장 정보 조사, 취업 인터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라 할 수 있다. 둘째, 연방정부에 의해 1992년 처음 신규 이민자 언어교육이 시작되었으며 정착 서비스 세부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주 이후 빠르게 캐나다 사회에 적응을 돋기 위해 17세 이상의 시민권이 없는 이민자와 난민에게 영어와 불어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셋째, 호스트 프로그램은 새롭게 도착한 이민자와 캐나다 시민과의 매칭을 통하여 이민자가 캐나다 시민으로부터 적응 관련 도움을 받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캐나다 시민은 자원봉사자이며 이들은 매칭된 이민자에게 지역사회의 문화를 소개하는 것부터 영어나 프랑스어 연습 파트너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소개하여 사회적 네트워크가 확장되도록 도우며, 지역사회의 행사나 모임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돋는다. 최종적으로 지역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돋는다. 자원봉사자들을 통하여 이민자를 돋는 것이 목적이지만 자원봉사자들 또한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점이 있다.

## (2) 정착 서비스(Settlement Service) 전달체계

연방정부가 이러한 이민 정착 서비스에 대한 총괄을 하게 된다. 주로 연방정부는 정착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주 정부에게 교부금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주 정부들은 연방정부와 협약을 맺고 주 정부 자체적인 정착 서비스 또한 제공하고 있다. 그 이유는 지역에 따라 상황이나 환경이 상이하기 때문에 주 정부는 연방정부가 제시한 프로그램의 요구와 일치하지 않는 이민자에 대해 다른 정착 및 적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기본 틀은 연방정부가 수립하지만 시행에 있어 주 정부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연방정부는 정착 서비스에 대한 정책 수립과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틀을 확정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실행하는 주 정부에 교부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일선 현장에서 정착 서비스를 전달하는 주체는 이민자 서비스 단체 (Immigrant Service Organizations: ISO)이다. 지역사회에 설립되어 있는 다양한 민간단체들이 이에 해당한다. 즉, 다양한 민간단체가 정착 서비스의 각각의 프로그램별로 참여하며, 이들에게 주 정부가 운영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민간단체가 연방정부나 주 정부를 대신하여 정착 서비스를 전달하게 된 배경은 신속하게 이민자의 욕구를 파악해야 하며, 그러한 욕구에 정확하게 부응한 서비스 전달은 이민자가 정착한 지역사회의 민간단체들이 더 적합하기 때문이다. 즉,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설립된 민간단체들은 이민자들과 쉽게 접촉하고 있으며, 수월하게 이민자의 욕구를 파악 할 수 있어 민간단체들이 연방정부나 주 정부를 대신하여 정착 서비스를 일선현장에서 전달하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나 주 정부의 정착 서비스 이외에도 민간단체들은 이민자에게 유연하게 정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연방정부나 주 정부가 민간단체들의 참여를 선호하고 있다.

## 제2절 호주

### 1. 역사적 접근

호주는 영국 식민지로 출발하여 각 주가 영국으로 독립함으로써 연방국가가 탄생하였다. 1901년부터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호주 연방정부는 인종차별적인 이민정책으로 유색인종의 유입을 차단하는 이민제한법(Immigration Restriction Act)이 시행되었다. 즉, 백호주의(White Australia) 정책에 입각하여 유럽출신 또는 앵글로계 인종만을 이민자로 허용하였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을 위한 군사의 부족, 경제 부흥을 위한 인력의 부족을 절감하고 인구 증가 목적으로 이민자의 유입을 적극 허용하는 이민정책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유럽뿐만 아니라 1973년부터는 아시아 이민자까지 허용되었다. 또한 1976년부터는 캐나다의 점수제를 벤치마킹하여 영주 이민자 이주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점수제를 실시하고 있다. 점수제는 인적자본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주로 연령, 언어실력(영어), 학력, 과거 10년 동안 기술 경력, 호주에서의 학위 등을 평가하고 있다. 1980년대는 기술이민, 가족이민, 인도적(난민) 이민으로 세분화한 이민자 유입을 허용하였다. 2000년 이후 기술이민자에 대한 재평가가 들어가면서 이민이 허용되던 직업군을 400개에서 200개 수준으로 낮추어 기술이민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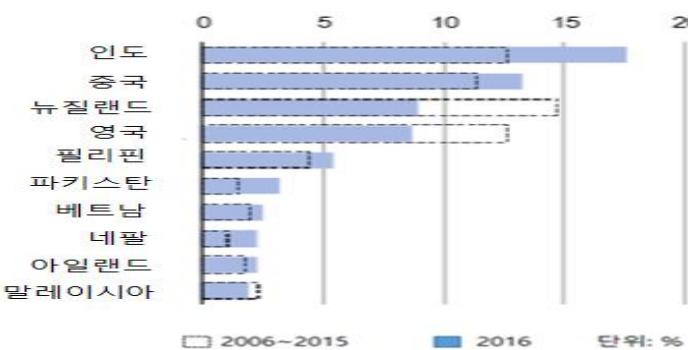
### 2. 이민자 현황

호주 이외에서 출생한 경우 호주에서는 이민자로 간주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호주 국민의 약 28%가 이민자이다(OECD, 2018).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출신국가별 이민자 유입을 살펴보면, 뉴질랜드 출신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며, 영국, 인도, 중국 순이었다. 2016년에는 인도, 중국 뉴질랜드, 영국 순이었다. 호주의 영주 이민은 경제(고용주 추천 기술이민, 일반기술 이민, 특별 인재 이민, 사업/투자 이민), 가족, 인도적 이민으로 구분된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의 장(영주)·

단기 체류 관련 이민자 통계를 살펴보면, 장기(영주) 이민자 중 가족이민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취업 이민이다. 단기 체류 이민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은 워킹홀리데이며, 다음으로는 유학생이었다.

### 3. 연방정부의 이민정책 추진체계

연방정부 2차 세계대전 이후 노동력 부족을 해소 하는 차원에서 이민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민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이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이민국경보호부(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가 종합적으로 이민정책을 담당하였고 2018년부터는 내무부로 흡수되었다([www.isana.org.au/dibp-is-now-department-of-home-affairs-dha](http://www.isana.org.au/dibp-is-now-department-of-home-affairs-dha)). 연방정부는 내무부 중심으로 매년 비자 발급 건수를 결정함으로써 이민자 유입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내무부는 이민과 관련된 종합적인 정책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에 입각한 난민 보호 프로그램, 시민권 및 비자, 무역 및 관세, 연안 및 해양 경비, 세입 징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경 관리와 관련하여 호주국경경비(Australian Border Force)가 2017년까지 담당하고 있었으나 이 또한 내무부로 흡수되었다([www.homeaffairs.gov.au/australian-border-force-abf](http://www.homeaffairs.gov.au/australian-border-force-abf)). 내무부 소속의 호주국경경비는 법적 교류 허용, 불법 교역 조사 및 강제집행, 구금 및 해제, 지원 등의 국경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림 7-2〉 상위 10개국 출신 이민자 유입 비율(2006~2016, 호주)

※자료: OECD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18

〈표 7-4〉 2015-2016 장기 이민 통계(호주)

구분	인원수(1,000명)		비중(%)	
	2015년	2016년	2015년	2016년
장기이민	취업	59.5	60.7	26.3
	가족이민	129.3	125.3	57.2
	인도주의	13.8	17.6	6.1
	자유이동	23.4	19.7	10.3
	기타	0.2	0.3	0.1
	총합계	226.2	223.5	100

※ 자료: OECD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18

〈표 7-5〉 2015-2016 단기 이민 통계(호주)

구분	인원수(1,000명)		평균
	2015년	2016년	
단기이민	유학생	125.4	136.8
	연수생	4.6	4.2
	워킹 휴리데이	226.8	214.6
	계절 노동자	3.2	4.5
	기업주재원	7.8	8.1
	기타	171.3	160.6

※ 자료: OECD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18

그러나 내무부에서 담당하는 이민정책은 연방정부의 다양한 부처와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계절노동 프로그램(Seasonal Worker Program)은 교육-고용-노사관계부(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가 운영하고 총괄책임은 내무부에 있다. 이와 더불어, 호주인력생산성(Australian Workforce and Productivity Agency) 기구는 호주 발전에 있어 중요한 직업군(Specialised Occupation List)을 선정하고 이러한 직업군 안에서 이민자 선발이 가능한 직업군(Skilled Occupation List)을 재공표하게 된다.

## 4. 지역 거버넌스

연방정부 대신 각 주는 독자적으로 주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입법, 행정, 사법부를 각 주는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주정부는 다문화정책 법제도가 있다. 그러나 모든 주 정부가 다문화정책 법제도가 없기 때문에 주정부에서 다문화정책 담당기구를 설립과 운영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주정부 이민 정책이 발달하게 되었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지역추천 이민자 선발제도(State Specific and Regional Migration)와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에 대해 소개하려 한다(<https://www.homeaffairs.gov.au/about/corporate/information/fact-sheets/26state>).

### 1) 지역추천 이민자 선발제도

#### (1) 배경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1990년대 중반부터 기술(경제)을 소지한 이민자의 유입을 선호하는 이민정책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기술 이민자의 유입은 증가하였다. 그러나 새롭게 호주로 도착하는 기술 이민자들의 다수가 대도시에 집중화 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기준에 정착한 이민자의 길을 따라가는 현상으로서 새롭게 도착한 기술 이민자들은 이주국가의 국민 또는 민족이 정착하고 있는 대도시에 정착하게 되었다. 그 결과 대도시에 다양한 민족의 마을 공동체가 발생하게 되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집값 상승, 교통체증 등과 같은 도시화의 문제점들이 발생하였다. 이와 반대로, 대도시가 아닌 지역들은 여전히 지방의 경제 증진을 위한 기술 이민자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이민자의 대도시 집중화 현상을 해소하는 차원과 지역 경제의 부흥이라는 일환으로 연방정부는 지방으로의 이민자 분산을 유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배경 아래 주정부의 이민자 유입에 있어 역할을 강조하는 지역추천 이민자 선발제도(State Specific and Regional Migration)가 고안되었다. 즉, 지역경제와 이민자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인지하고 지역경제를 부흥하기 위해 이민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이로 인해 주정부에 따른 경제 상황에 따라 이민자 유입의 차별성이 강조되는 지역추천 이민자 선발제도가 개발되었다.

이민자 선발과 관련하여 연방정부는 주 및 준 주정부 및 지방 정부와의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다. 이민자의 대도시 집중화 현상 때문에 1995년부터는 지방의 이민자 분산에 대한 정책이 시작되었다. 특정 지역에 수요가 많은 경제 기술, 해외 비즈니스 인력 유치를 위한 신규 또는 합작 회사 설립 시, 기술 이민자 지역 분산과 관련된 내용은 협의하게 되어 있다. 이는 지방의 경제성장과 이민자 인구 분산에 초점을 맞춘 이민자 선발제도라 할 수 있다. 연방정부가 최종 이민자 유입의 결정에 대한 권한이 있지만 주정부, 준 주정부는 더 나아가 특정 지역의 정부 기관에서 추천한 경우 이민자 유입이 가능한 제도가 지역추천 이민자 선발제도라 할 수 있다. 지역추천 이민자 선발제도에서 주정부, 준 주정부, 더 나아가 인구나 인구 성장률에 따른 특정 지역을 따로 구분하여 특정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 기관까지도 이민자를 연방정부에 추천할 수 있다.

## (2) 유형 및 절차

연방정부는 매년 영주 입국 허가 건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각 유형에 따른 입국 허가를 할당하고 있다. 2016–2017년 기준으로 183,603건의 영주 입국 허가가 허용되었다(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 2017). 그 중 기술 영역이 6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가족 영역이 31%의 비율을 보여준다. 전체 지역추천 선발제도에 의한 입국이 허가된 이민자는 36,494건이다. 이는 기술 이민자 중에서 29.5%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에서 추천된 이민자는 연방정부가 각각의 이민자를 선발할 때 사용하는 점수제의 기준보다 낮은 점수의 소유자도 호주 도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더불어 기술 이민자 중 연방정부에 의해 선발되는 경우보다 지역추천 선발 이민자의 비자 발급 속도가 더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지역이 선발할 수 있는 영역은 가족 재결합, 고용, 사업의 영역으로 제한되어져 있으며, 더 나아가 지역추천으로 이민자가 선발 될 경우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강제적으로 거주해야 하

는 단서 조항이 있다. 가족 재결합, 고용, 사업의 영역에서 크게 4개의 유형에 따라 지역에서 이민자를 선발하여 연방정부에 추천하고 있다.

첫째, 숙련기술 지역 비자(Skilled Regional(Provisional) Visa)가 있다. 숙련기술 지역 비자는 호주의 특정 지역에서 정착하고 취직하기 희망하는 이민자들에게 제공되는 비자이다. 지역 추천에 의해 숙련기술 지역 비자를 획득한 이민자는 특정 지역에서의 거주와 고용이 이루어 질 수 있는 4년 동안의 임시 비자를 허용한다. 적어도 2년 동안 반드시 추천된 지역에서 정착과 고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약 조건이 있다. 숙련기술 지역 비자를 소지하고 적어도 2년 동안 특정 지역에 거주하면서 적어도 1년 동안 정규직으로 고용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둘째, 지역후원(Regional Sponsored Migration Scheme) 비자가 있다. 지역 후원 비자는 대도시(브리즈번, 골드 코스트, 뉴캐슬, 시드니, 울릉콩, 맬버른)를 제외한 지역의 사업체의 고용주들이 숙련된 유급 직원이 필요할 때 이민자를 고용하기 위해 만든 비자이다. 이 비자는 고용주들이 추천하게 되면 최소 2년 동안 고용주가 추천한 사업체에서 일을 할 수 있다. 호주 이외의 지역 또는 영주권이 아닌 임시 비자로 호주에 체류 중인 이민자들이 지원이 가능하다. 연방정부가 시행하는 점수제에 의한 이민자 선발 기준이 아닌 자체적인 기준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50 세 미만이어야 하며, 영어권 나라에서 수학한 경우 영어 시험이 면제이며, 사업체에서 원하는 기술이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이민자가 비자를 획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기준들은 연방정부가 제시한 점수제보다 기준이 완화된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이때 지역 인증기관(Regional Certifying Bodies)들은 특정 지역에서 고용주가 이민자가 실제로 필요한지 조사를 하며 이민 유입을 담당하는 지역의 부서에게 지역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 인증기관들은 내무부에 소속되어 있으며, 각 지역에 배치되어 있다. 셋째, 비즈니스 혁신 및 투자 비자(State/territory nomination for Business Innovation and Investment Visa)는 주정부와 준 주정부에서 기업가와 투자가를 유치하여 지역의 특정 산업 분야를 발전하려는 목적으로 개설되었다. 최근에는 농촌 또는 인구가 적은 지역의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즉, 주정부와 준 주정부는 기업가를 추천하고 연방정부에서 승인을 하면 비즈니스 혁신 및 투자 비자를 획득할 수 있으며, 4년 동안 호주에서 거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4년 안에 비즈니스 영역에서

만족스러운 성과를 얻었다는 증명을 한 경우 영주권으로 전환이 가능한 비자이다. 비즈니스 혁신 및 투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연령은 55세 이하로 제한되어져 있다. 넷째, 지역추천 한시 입국 비자(Temporary Entry Initiatives)가 있다. 한시 입국 비자는 투자자 퇴직 비자(Investor Retirement Visa)와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분류되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투자자 퇴직 비자만을 다루도록 하겠다. 투자자 퇴직 비자는 은퇴 퇴직자들이 호주에 거주 할 수 있도록 주정부와 준 주정부가 보증과 함께 추천하는 방법이다. 55세 이상의 이민자이어야 하며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이 없어야 하며 일정 자산과 소득이 충족하여야 하며, 호주에서 재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 할 경우 획득할 수 있는 비자이다. 비자 획득을 위해서는 비자 신청비를 두 번 호주 정부에 지불해야 한다. 이때 지불해야 할 비용은 호주정부가 한명의 은퇴한 호주시민에게 제공해야 할 비용 수준에서 비자 신청비를 지불해야 한다. 투자자 퇴직 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으로의 전환은 어렵지만 호주에서 장시간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그러나 호주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누릴 수 있는 각종 사회보장 혜택에서 제외되게 된다.

〈표 7-6〉 호주 지역추천 이민자 선발 유형

유형	내용
숙련기술 지역 비자 (Skilled Regional (Provisional) Vis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숙련기술 지역 비자는 호주의 특정 지역에서 정착하고 취직하기 희망하는 이민자들에게 제공</li> <li>○ 적어도 2년 동안 반드시 추천된 지역에서 정착과 고용</li> </ul>
지역후원 (Regional Sponsored Migration Sche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의 사업체의 고용주들이 숙련된 유급 직원이 필요할 때 이민자를 고용</li> <li>○ 2년 동안 특정 지역에 거주하면서 적어도 1년 동안 정규직으로 고용</li> </ul>
비즈니스 혁신 및 투자 비자 (State/territory nomination for Business Innovation and Investment Vis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가와 투자가를 유치하여 지역의 특정 산업 분야를 발전</li> <li>○ 농촌 또는 인구가 적은 지역의 경제 성장을 도모</li> </ul>

지역추천 한시 입국 비자(Temporary Entry Initiatives)–투자자 퇴직 비자(Investor Retirement Visa)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은퇴 퇴직자들이 호주에 거주 할 수 있도록 주정부와 준주정부가 보증과 함께 추천하는 방법</li><li>○ 55세 이상의 이민자이어야 하며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이 없어야 하며 일정 자산과 소득이 충족하여야 하며, 호주에서 재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li></ul>
--	---

## 2)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

### (1) 정착서비스(Settlement Services)

연방정부 및 주정부 차원에서 이민정책의 일부분으로서 새롭게 도착한 이민자의 초기 정착을 돋기 위해 고안되었다. 정착서비스는 사회 참여, 경제 통합, 독립성, 삶의 만족도, 지역사회와의 연결이라는 5가지에 초점을 맞춰 고안되었다. 이민자가 정착서비스에 참여하면 사회, 문화적 삶의 증진, 교육과 고용, 자신감, 경제적 수준 증진을 기대할 수 있도록 고안하였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고, 이민자 스스로 삶의 만족감을 향상 할 수 있도록 정착서비스를 개발 하였다.

고안된 정착 서비스는 다양한 세부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성인영어교육프로그램(Adult Migrant English Program), 통번역 프로그램(Translation and Interpreting), 정착교부금(Settlement Grants) 등이 있다. 성인영어교육프로그램과 통번역 프로그램은 주로 합법적으로 호주로 이주한 이민자에게 제공되며, 영어 실력이 부족한 이민자에게 우선권이 있다. 반면에 정착교부금은 정착서비스 제공자에게 지원되는 교부금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성인영어교육프로그램은 합법적인 비자를 통해 입국한 이민자 중 영어수준이 낮은 이민자에게 510시간의 영어교육을 무료로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둘째, 통번역 프로그램은 무료로 전화통역, 공공기관 서비스 이용을 위한 통번역 프로그램이다. 개인적인 용무에 있어 통번역 프로그램은 일부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이 가능하다. 셋째, 정착교부금 프로그램은 일선 현장에서 연방정부나 주정부 대신 이민자를 위해 정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게 교부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 (2) 정착서비스 전달체계

정착서비스는 거버넌스의 한 유형으로서 연방정부 및 주정부가 지역수준의 비영리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실제 일선 현장에서 이들 기관이 정착서비스를 제공하면 교부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세부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지역 수준의 기관들을 이민자지원센터(Migrant Resource Centre)로 불린다. 이민자 지원센터에는 사회복지사들이 채용되어 이민자를 위한 정착서비스 제공에 있어 조정, 촉진, 실행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민자지원기관은 초기 정착 지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새롭게 도착한 이민자의 거주지 주변에 설립된 센터들은 이민자의 욕구에 부합할 수 있는 서비스 전달에 유리하다. 특히 지역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 제공과 자원 연결에 있어 유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택, 학교, 직업, 건강, 복지서비스 등과 같은 다양한 정보 및 자원 연결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지리적 제약 없이 영어나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행사나 모임을 소개 시켜 줄 수 있어 지역사회 소속감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장점들이 있다.

이민자지원센터에는 사회복지사들이 채용되어 있어 정착에 있어 다양하고 복잡한 욕구 완화, 해결, 더 나아가 예방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민자의 초기 정착 문제 또는 욕구는 하나가 아니며 다양하며 복합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또한 정착과 관련된 문제 또는 욕구가 개별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례로 접근이 필요하다. 복잡하고 다양하며 때로는 개별성을 나타내는 초기 정착 문제나 욕구를 사회복지사들은 사례관리를 통하여 이민자에게 적합한 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의 자원 연결,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제3절 일본

### 1. 역사적 접근

일본은 시대적 환경 변화에 따른 이민 정책의 변화가 뒤따르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식민지 국가에서 일본으로 유입된 외국인이 정주하고 있었고, 이들 대상의 차별과 배제의 외국인등록과 출입국관리체제가 1970년대까지 유지되고 있었다. 1980년대 일본 경제 성장과 맞물려 아시아 출신 외국인 노동자(주로 전문기술 인력 수입을 허용, 단순인력은 신중히 유입 허용)가 유입되었고, 유학생 수 또한 증가 하였다. 1990년대에는 아시아 출신의 필리핀, 한국, 중국 여성과 일본 남성과의 국제결혼을 통해 귀화 또는 정주하는 외국인들이 증가하였고, 페루, 브라질과 같은 남미 출신의 일본계 외국인들(닛케이)이 급속하게 일본으로 유입되었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들 외국인들의 관리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공생’이라는 이민정책을 수립하게 된다. 관리차원에서는 법무성을 중심으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단일 행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외국인을 관리하게 되었고, 체류자격 신청절차를 간소화시키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정착지원 차원에서는 총무성에 의해 다문화공생 수행을 위한 기본계획을 제시하고 각각의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세부 시행계획을 세우는 거버넌스 체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최근에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점수제 기반의 이민정책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점수제 기반의 전문인력 유입 정책은 점차 그 기준과 규제를 약화시켜 인력 유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또한 과거 단순인력에 매우 소극적이었지만 최근 생산인력이 필요한 특정 산업 분야로 인해 건설, 농업, 임업, 가사 등과 관련된 산업 분야에 단순인력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세계대전 이후의 식민지 출신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에서 점차 다양한 출신 국가의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외국인 관리와 정착지원 정책으로 전환되었고, 최근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이민의 문호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라 할 수 있다.

## 2. 이민자 현황

일본에서는 법적으로 체류자격이 부여되고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체류 외국인으로 간주하고 있다(행정통, 2018). 2016년 기준으로 체류외국인의 수는 약 238만 명이며, 전체 인구 중 1.9%가 체류외국인이다(OECD, 2018). 체류 외국인 중 중국 출신(696,000명, 29%)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음으로 한국(453,000명, 19%), 필리핀(244,000명, 10%) 순이었다(OECD, 2018). 2006년에서 2015년까지의 체류외국인 비율은 중국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음으로 한국, 베트남 순이었다. OECD 자료를 기반으로 2015년부터 2016년까지의 장·단기 체류 관련 이민자 통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OECD, 2018). 장기 체류 외국인 중 약 51%가 취업을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하고 있으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약 31%의 장기 체류자가 가족 재결합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하고 있다. 단기 체류 외국인 중 산업연수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9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며, 다음으로 유학생으로 약 72%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7-3〉 상위 10개국 출신 이민자 유입 비율(2006~2016, 일본)

※ 자료: OECD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18

〈표 7-7〉 2015–2016 장기 이민 통계(일본)

구분	인원수(1,000명)		비중(%)	
	2015년	2016년	2015년	2016년
장기이민	취업	41.3	49.1	50.4
	가족이민	26.1	29.5	31.9
	인도주의	0.1	0.1	0.2
	자유이주	–	–	–
	기타	14.3	16.4	17.5
	총합계	81.8	95.2	100.0
100				

※ 자료: OECD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18

〈표 7-8〉 2015–2016 단기 이민 통계(일본)

구분	인원수(1,000명)		평균
	2015년	2016년	
단기이민	유학생	99.6	108.1
	연수생	112.7	121.6
	워킹 휴리데이	10.4	10.9
	계절노동자	–	–
	기업주재원	5.8	7.2
	기타	38.4	48.6
44.2			

※ 자료: OECD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18

### 3. 이민정책 추진체계

일본의 이민정책의 추진체계는 외국인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독립된 부서가 없기 때문에 출입국 및 법적 체류, 정착지원이 다양한 내각의 부서가 업무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부처 간 연계 추진을 위해 정책협의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먼저 출입국 및 법적 체류와 정착지원으로 구분하여 논의 할 수 있다(강동관 외, 2017). 첫째, 출입국 및 법적 체류와 관련하여 법무성 산하 입국관리국에서 출입국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입국관리국은 입국심사, 체류자격시험, 강제퇴거, 난민 등

과 관련된 출입국 관리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총무과, 난민인정실, 입국관리기획관, 입국재류과, 재류관리사무소, 심사과, 경비과, 출입국관리정보관과 같은 하위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둘째, 정착지원과 관련된 이민정책은 총무성이 전담하고 있다. ‘다문화공생’이라는 명칭 하에 장기 체류 외국인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이민정책으로 총무성이 총괄책임을 지며, 지방자치단체가 일선에서 이민정책을 시행하는 역할을 주도하게 된다.

다음으로 별도의 외국인 전담 부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내각의 부서가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따라 관련된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강동관 외, 2017: 233). 첫째, 내각부는 재일외국인 관련 부처 간 업무연계를 추진을 담당하고 있다. 둘째, 외무성은 난민 정착지원과 외국인노동자 귀국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셋째, 경제산업성은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담당한다. 넷째, 후생노동성은 외국인고용대책 업무 총괄하고 있다. 다섯째, 문부과학성은 이민배경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규교육과정을 지원하며 유학생 제도를 관장하고 있다. 여섯째, 국토교통성은 외국인 거주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양한 내각의 부서가 외국인 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있어, 일본 내각에는 부처 간 정책협의기구가 설치되어 있다(강동관 외, 2017: 233-234). 대표적인 정책협의기구로 외국인노동자문제 관계성청 연락회의와 일본계(닛케이) 정주외국인 시책 추진회의를 소개하려 한다. 첫째, 외국인노동자문제 관계성청 연락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부처 간 외국인 정책의 모든 사항을 논의하는 대표적인 정책 협의 기구로써 1988년 내각관방에 설치되어 있다. 내각관방부 장관보를 의장으로 내각부, 경찰청, 총무성, 법무성, 외무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의 국장 및 심의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일본계(닛케이) 정주외국인 시책 추진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내각부 산하에 2009년 설치되었다. 내각부 특명담당대신을 의장으로 하며, 각 부처의 차관으로 구성하여 회의가 진행되며, 열악한 고용상황에 놓여있는 일본계(닛케이) 정주외국인에 대한 지원 검토 및 관련 시책을 추진하고 논의한다.

## 4. 지역 거버넌스<sup>14)</sup>

### 1) 역사적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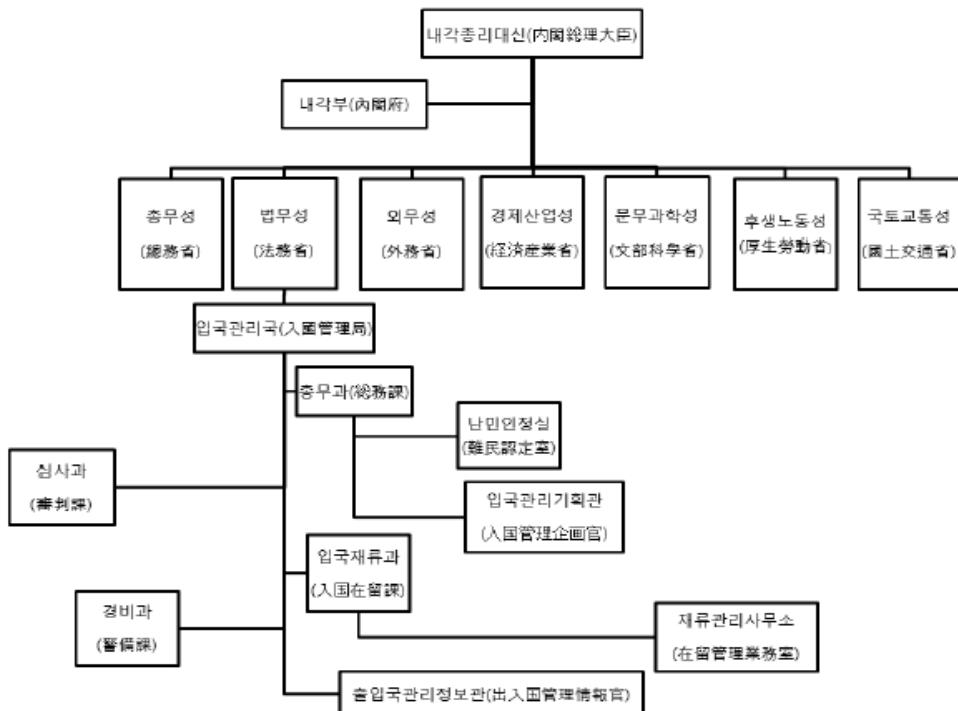
일본은 전통적으로 중앙집권국가에 속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활동 범위가 넓으며 1970년대 혁신지자체의 상과에서 보듯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변화를 선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에서 외국인 주민, 노동자가 거주하고 생활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에서 사회통합 정책의 주체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및 지자체와 연계된 관련 NGO라고 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의 정책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중반 이전에는 가와사키시와 오사카시와 같이 재일한국, 조선인 등 구식민지 국가 출신의 외국인 거주자가 밀집한 일부 도시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정책에 대한 관심은 많지 않았다. 그런데 1990년 출입국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브라질계 재외동포의 입국이 급증하면서 각 지자체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어떻게 지역사회에 정착시킬 것인가라는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른바 ‘뉴커머’들은 일본어 능력 및 일본문화, 관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자녀의 교육(부등교, 중도퇴학), 사회보장(미가입), 노동환경(고용의 불안정), 주거(민간임대 주택 입주제한)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를 방지할 경우 지역 사회의 불안과 갈등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크기에

각 지자체는 국제교류나 국제협력에서 그 정책방향을 체류 외국인의 정착을 지원하는 ‘내부의 국제화’라는 개념으로 나아가 ‘다문화공생’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1995년 고베대지진을 계기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피난소 안내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자원봉사 단체인 ‘외국인지진정보센터’가 설치되었다. 이후 동센터는 1999년 다언어 전화상담, 통역, 상담원 파견을 주업무로 하는 ‘다문화공생센터’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후 총무성은 2005년 다문화공생 추진에 관

14) 하정봉(2018) 자료를 요약 정리 하였음. 하정봉. 2018. 일본지방정부 다문화공생정책에 대한 연구: 추진 체계 및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이민정책학회 하계 학술대회.

한 연구회 설립하고 그 연구성과를 반영하여 2006년 ‘지역에 있어서의 다문화공생추진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그림 7-4> 일본 외국인정책 추진체계

※ 자료: 일본 전자 정부 홈페이지, 「組織・制度の概要案内 - 府省一覧」 참고.(접속일: 2017.10.30.); 강동관 외, 2017: 재인용

## 2) 다문화 공생

### (1) 주요내용

2006년 지역에 있어서의 다문화공생추진 프로그램은 외국인 정책의 지역 거버넌스의 대표적이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목적은 첫째, 외국인 주민의 인권보장인데 국제인권규약이나 인종차별 철폐조약등에 부합하려는 것이다. 둘째,

지역활성화인데 지역사회의 국제화를 통해 지역활성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셋째, 주민의 이문화 이해력 향상인데 이를 통해 다른 문화와의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난 젊은 세대를 키워낼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유니버설 디자인의 마을 만들기로 국적과 문화를 뛰어넘는 보편적 시점에서 지역사회를 디자인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문화공생 지원대상 분야는 다양한 언어, 다양한 미디어에 의한 행정 및 생활 정보 제공, 외국인 주민 상담원 배치를 주 내용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지원 사업분야, 입주차별의 해소, 외국인 주민 집주단지내 상담청구 개설, 일본어 학습지원, 취업지원, 의료 통역자 파견 등을 주 내용을 하는 생활지원 사업분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공생 교육, 다문화공생 거점 만들기, 외국인 주민의견의 반영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다문화공생지역만들기 사업분야, 다문화 공생 추진소관부서 설치 및 부서 횡단적 연계강화, 지역내 각 주체들간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다문화 공생 추진체계 정비 사업분야이다.

## (2) 전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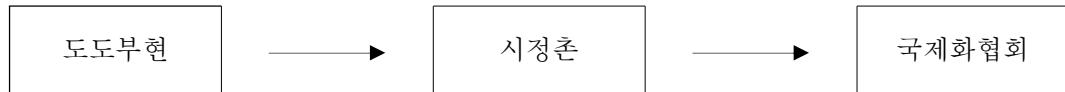
도도부현은 다문화공생 추진에 관한 지침 및 계획을 수립하여 시정총차원의 대응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시정총은 지역 실정을 고려하면서 지역내 다문화공생 추진 지침 및 계획을 수립은 물론 외국인 주민을 직접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주체로서 규정되어 있다.

광역자치체이거나 도시규모 클수록 다문화공생 관련 지침 및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비율이 높고 정촌 등 소규모 지자체일수록 지침이나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못한 경향이 나타났다. 즉, 인구 50만 이상인 지정도시의 경우 모든 시가 관련 지침 및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는데 반해 일반시의 경우에는 일반시 가운데 65%, 정촌의 경우 25%만이 지침이나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 각각 국제과 내지는 다문화공생과를 설치하고 있다. 기초자체 차원에서는 시민활동과, 구민과 등 커뮤니티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가 다문화 정책에 관여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주민이 밀집해 있는 지자체들의 협의체인 외국인집주도시회의가 구성되어 있다. 지

역사회수준에서 다문화공생정책 추진을 위해 민간비영리단체와 행정간의 다양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차원에서 국제협력 및 다문화공생정책 추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공익재단 형태로 설립되는 지역의 국제화협회이다. 국제화협회는 총무성의 ‘지역국제교류추진대강’에서 지역의 국제교류를 추진하는 공식 민간조직으로써 위상을 부여 받고 있으며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등으로부터 각종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화협회는 광역차원에서 거의 모든 도도부현에서 설립되어 있는 반면 기초차원에서는 외국인이 다수 거주하거나 규모가 큰 지정도시를 중심으로 설립되어 있다. 국제화협회의 명칭은 다양한데 가장 많은 명칭은 ‘국제교류협회’이며 국제교류재단, 국제교류협력센터라는 명칭도 사용되고 있다.

국제화협회는 다문화이해 촉진활동(만남의 장, 시민축제, 다문화 찻집 개최), 지역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상담, 아동대상 일본어 교실), 다문화 공생 활동 활성화(인재발굴 및 육성, 다문화 관련단체 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그림 7- 5〉 일본 외국인정책 전달체계

### (3) 다문화공생추진협의회

총무성 산하에 재단법인 자치국제화협회(Council of Local Authorities for International Relations)가 설치되어 있다. 자치국제화협회는 1988년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조직으로써 다문화공생 정책수립 및 집행에 관한 정보제공, 인재육성, 다문화공생연수 지원(해외 선진국 연수 프로그램),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실상, 다문화공생 추진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7년 이후 “다문화공생마을만들기사업”이 시작되어 지방공공단체, 지역국제화협회, 관련 민간단체에게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 제8장 정책대상 집단의 수요 분석

이민정책은 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립되고 수행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민자의 도착에서부터 체류 더 나아가 이들의 적응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이민정책이 선호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서구의 이민정책의 흐름은 중앙정부에 비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성장 동력이 부족한 지역은 이민자 유입 증진을 희망하게 되는 지방정부가 나타날 수 있다(Filomeno, 2015). 이때 지방정부의 이민정책 입안자들은 우호적인 이민정책을 개발하거나 수행하고 있다(Filomeno, 2015). 또한 이민자가 선호하는 지역은 기존의 이민자가 집중하여 사회관계망이 발달한 곳, 경제적으로 노동시장 참여가 수월한 지역으로의 정착을 선호하고 있다(Portes and Rumbaut, 2006). 이민자가 선호하는 지역은 전반적으로 대도시며, 이민자가 집중화 되어 있어 이민정책 입안자들은 소극적 또는 배타적인 이민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할 수 도 있다(Portes and Rumbaut, 2006). 이러한 지방정부가 처한 환경에 따라 이민정책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이민정책의 수립 및 수행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앙정부에 비해 확대되고 있다. 한국도 이와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 의하면 중앙정부의 행정기관들이 이민정책을 수립하는 과제의 수는 감소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할 과제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이민정책 수립 및 수행은 상당히 제약이 뒤따르고 있다.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 의하면(법무부, 2018), 중앙행정기관에서 수립한 이민정책을 중앙행정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감독 하에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어떻게 중앙행정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을 반영한 이민정책(외국인정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려 하였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시도하였다. 첫째, 중앙정부의 행정기관의 이민정책 담당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이민정책 담당자 간의 정책 인식차이

를 서베이를 통하여 분석하였다.<sup>15)</sup> 둘째, 17개 광역시도를 기준으로 어떤 이민자들이 정착하고 유입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17년 행정안전부와 2018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생산된 체류 외국인 통계<sup>16)</sup>를 탐색하여 지역별 이민자 유형 또는 특성을 분석하였다. 셋째, 2016년 법무부에서 발표된 “2015 외국인정책시행계획 평가 연구”<sup>17)</sup>의 원자료(raw data)를 사용하여 이민자 유형 또는 특성에 따른 이민정책 욕구와 필요의 차이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넷째, 17개 광역시도에서의 이민자 유형(특성)과 이민정책 욕구(필요)를 교차하여 지역별 이민자 유형에 따른 이민정책 욕구를 동시에 파악하였다.

## 제1절 실무자(외국인정책 담당자) 수요 분석

### 1. 중앙부처 외국인정책 담당자 인식조사

〈표 8-1〉 정책목표별 우선순위: 중앙부처 담당자

순위	정책목표
1순위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2순위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 있는 개방,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3순위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4순위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 있는 개방
5순위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중앙행정기관(부처) 소속의 이민정책 담당 공무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제3차 외

15)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총 19개의 외국인정책위원회 소속 부처 중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청, 해양경찰청’의 11개 부처의 인식조사지가 수거되었다. 총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의 11개의 조사지가 수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수거된 총 22개의 인식조사지를 모두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지는 부록1과 부록2 참조.

16) 지역별 체류 외국인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행정안전부, 2017)’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생산한 ‘2018년 3월 등록외국인현황, 외국국적동포 현황(2018b, 법무부)’의 원자료(raw data)를 활용하였다.

17) 정영태 외, 2016.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연구보고서 ‘2015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평가 연구’.

국인 정책 기본계획의 주요 정책목표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중앙행정기관(부처) 소속의 이민정책 담당공무원들은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의 정책목표 중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가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로 인식하고 있었다. 2순위는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 있는 개방”과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3순위는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4순위는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 있는 개방”, 5순위는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였다.

〈표 8-2〉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 있는 개방’ 중점과제 우선순위(중앙부처 담당자)

순위	기본계획	분류
1순위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 있는 개방	관광객 및 투자자 등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2순위		우수 인재 유치 및 성장 지원강화, 관광객 및 투자자 등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3순위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취업이민자 유치·활용
4순위		우수 인재 유치 및 성장 지원강화, 유입 체계 고도화 및 체류·국적제도 개선

중앙행정기관(부처) 소속의 이민정책 담당 공무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중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 있는 개방”과 관련된 세부 추진과제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중앙행정기관(부처) 소속의 이민정책 담당공무원들은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중 “관광객 및 투자자 등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을 가장 중요한 세부 추진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2순위는 “우수 인재 유치 및 성장 지원강화”와 “관광객 및 투자자 등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3순위는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취업이민자 유치·활용”, 4순위는 “우수 인재 유치 및 성장 지원강화”와 “유입 체계 고도화 및 체류·국적제도 개선”이었다.

〈표 8-3〉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 있는 개방’ 세부추진과제 우선순위(중앙부처 담당자)

분류	추진 과제	빈도					평균	표준 편차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	매우 중요		

1. 우수 인재 유치 및 성장 지원강화	① 유치 및 정주 인프라 강화	0	1	0	7	0	3.75	0.71
	② 유학생 등 교육기반 고도화	1	1	2	4	1	3.33	1.22
2.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취업이민자 유치·활용	① 새로운 취업이민 수요 적극 대응	0	0	5	2	1	3.50	0.76
	② 비전문직취업 이민자유입·활용체계고도화	0	1	3	3	1	3.50	0.93
3. 관광객 및 투자자 등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① 목표 그룹별 맞춤형 전략 수립	0	2	0	6	0	3.50	0.93
	② 외래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1	1	1	4	1	3.38	1.30
	③ 창업이민, 투자이민제도개선	1	0	4	3	0	3.13	0.99
4. 유입 체계 고도화 및 체류·국적제도 개선	① 유입계획 수립 및 효과 분석 체계 마련	1	0	1	4	2	3.75	1.28
	② 체류 제도 개선	0	1	2	3	2	3.75	1.04
	③ 국적 제도 개선 등	1	0	3	3	1	3.38	1.19

중앙행정기관(부처) 소속의 이민정책 담당 공무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중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 있는 개방”과 관련된 세부 추진 과제와 관련하여 우수 인재 유치 및 성장 지원강화 영역에서 “유치 및 정주 인프라 강화”, 유입 체계 고도화 및 체류·국적제도 개선 영역에서 “유입계획 수립 및 효과 분석 체계 마련”과 “체류 제도 개선”이 다른 세부 추진과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두 번째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취업이민자 유치·활용 영역에서 “새로운 취업이민 수요 적극 대응”과 “비전문직취업이민자유입·활용체계고도화”, 관광객 및 투자자 등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영역에서 “목표 그룹별 맞춤형 전략 수립”이었다.

〈표 8-4〉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중점과제 우선순위(중앙부처 담당자)

순위	기본계획	분류
1순위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이민배경 자녀 역량강화,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지원 내실화
2순위		이민배경 자녀 역량강화,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지원 내실화
3순위		이민자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
4순위		이민 단계별 정착지원 및 사회통합 촉진

중앙행정기관(부처) 소속의 이민정책 담당 공무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중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과 관련된 세부 추진 과제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중앙행정기관(부처) 소속의 이민정책 담당공무원들은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중 “이민배경 자녀 역량강화”,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지원 내실화”을 가장 중요한 세부 추진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2순위 또한 “이민배경 자녀 역량강화”,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지원 내실화”였다. 3순위는 “이민자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 4순위는 “이민 단계별 정착지원 및 사회통합 촉진”이었다.

〈표 8-5〉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세부추진과제 우선순위(중앙부처 담당자)

분류	추진 과제	빈도					평균	표준 편차
		전혀 중요 하지 않음	별로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중요	매우 중요		
1. 이민 단계별 정착지원 및 사회통합 촉진	① 안정적 정착을 위한 이민자 친화적 생활환경 개선	0	1	2	4	1	3.63	0.92
	② 이민의 전 단계를 고려한 유기적 사회통합 교육 실시	0	2	3	2	1	3.25	1.04
	③ 이민자 취업 및 직장생활 지원 강화	0	3	2	3	0	3.00	0.93
	④ 결혼이민제도 개선 및 피해자 보호 강화	1	0	4	3	0	3.13	0.99
2. 이민배경 자녀 역량강화	① 미래사회에 적합한 글로벌 인재육성	1	1	2	3	2	3.44	1.33
	② 성장주기별·대상 특성별 지원정책 강화	0	1	3	3	2	3.67	1.00
3.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지원 내실화	① 이민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지원	0	1	3	2	2	3.63	1.06
	② 거주 환경 및 의료 서비스 개선	0	1	4	1	2	3.50	1.07
4. 이민자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	① 적극적 참여 활성화 정책 시행	0	1	4	1	2	3.50	1.07
	② 지역 서비스 고도화	0	2	4	1	1	3.13	0.99

중앙행정기관(부처) 소속의 이민정책 담당 공무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중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과 관련된 세

부 추진 과제와 관련하여 이민배경 자녀 역량강화 영역에서 “성장주기별·대상 특성별 지원정책 강화”이 가장 중요한 세부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두 번째로 이민 단계별 정착지원 및 사회통합 촉진 영역에서 “안정적 정착을 위한 이민자 친화적 생활환경 개선”과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지원 내실화 영역에서 “이민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지원”이 중요한 세부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8-6〉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중점과제 우선순위(중앙부처 담당자)

순위	기본계획	분류
1순위		체류외국인 관리 체계 선진화
2순위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안전하고 신속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

중앙행정기관(부처) 소속의 이민정책 담당 공무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중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과 관련된 세부 추진 과제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중앙행정기관(부처) 소속의 이민정책 담당공무원들은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중 “체류외국인 관리 체계 선진화”을 가장 중요한 세부 추진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2순위는 “안전하고 신속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였다.

〈표 8-7〉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세부추진과제 우선순위(중앙부처 담당자)

분류	추진 과제	빈도					평균	표준 편차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	매우 중요		
1. 안전하고 신속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	① 대규모 출입국 시대에 맞는 출입국 시스템 구축	1	0	0	4	3	4.00	1.31
	② 국익위해 외국인 출입국 차단 시스템 구축	1	2	2	3	0	2.88	1.13
	③ 해상을 통한 출입국 관리 체계 강화	1	1	2	2	2	3.38	1.41
2. 체류외국인 관리 체계 선진화	① 불법체류 발생 억제 및 법질서 준수 촉진	0	0	3	4	1	3.75	0.71
	②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	0	0	1	6	1	4.00	0.53

중앙행정기관(부처) 소속의 이민정책 담당 공무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중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과 관련된 세부 추진 과제와 관련하여 체류외국인 관리 체계 선진화 영역에서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과 안전하고 신속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 영역에서 “대규모 출입국 시대에 맞는 출입국 시스템 구축”이 가장 중요한 세부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두 번 째로 체류외국인 관리 체계 선진화 영역에서 “불법체류 발생 억제 및 법질서 준수 촉진”이 중요한 세부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8-8〉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중점과제 우선순위(중앙부처 담당자)

순위	기본계획	분류
1순위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선진 난민 정책 추진
2순위		동포와 함께 공존·발전하는 환경 조성
3순위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선진 난민 정책 추진
4순위		여성·아동 등 취약 이민자 인권증진
5순위		이민자 인권보호 체계 강화

중앙행정기관(부처) 소속의 이민정책 담당 공무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중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과 관련된 세부 추진 과제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중앙행정기관(부처) 소속의 이민정책 담당공무원들은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중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선진 난민 정책 추진”을 가장 중요한 세부 추진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2순위는 “동포와 함께 공존·발전하는 환경 조성”, 3순위는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선진 난민 정책 추진”, 4순위는 “여성·아동 등 취약 이민자 인권증진”, 5순위는 “이민자 인권보호 체계 강화”였다.

〈표 8-9〉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세부추진과제 우선순위(중앙부처 담당자)

분류	추진 과제	빈도					평균	표준 편차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	매우 중요		
1. 이민자 인권보호 체계 강화	① 차별방지 제도 강화	0	0	4	2	2	3.75	0.89
	② 체계적 인권보호 시스템 구축	0	0	2	5	1	3.88	0.64
	③ 취업이민자 인권증진	0	0	4	3	1	3.63	0.74
2. 여성·아동 등 취약 이민자 인권증진	① 농축산어업 근로자에 대한 인권 침해 방지	0	1	3	2	2	3.63	1.06
	② 여성 및 아동 인권보호 강화	0	1	1	5	2	3.89	0.93
	③ 외국인보호·단속관련 인권보장	0	1	3		4	3.88	1.25
3. 문화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 제고	① 문화다양성 관련 프로그램 활성화 및 지표 관리	0	1	2	3	3	3.89	1.05
	② 문화다양성 이해 제고	0	1	2	3	3	3.89	1.05
4. 동포와 함께 공존·발전하는 환경 조성	① 동포 차세대 인재 양성 및 유대 강화	0	1	1	5	1	3.75	0.89
	② 고국방문·체류편의 증진 및 동포 에 대한 인식 개선	0	1	4	2	1	3.38	0.92
5.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선진 난민 정책 추진	① 난민의 한국사회 통합체계 구축	1	0	4	2	1	3.25	1.16
	② 난민심사 체계 고도화	1	0	1	5	1	3.63	1.19
	③ 난민위기에 대한 국제적 공조 강화	1	0	3	3	1	3.38	1.19

중앙행정기관(부처) 소속의 이민정책 담당 공무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중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과 관련된 세부 추진 과제와 관련하여 여성·아동 등 취약 이민자 인권증진 영역에서 “여성 및 아동 인권보호 강화”, 문화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 제고 영역에서 “문화다양성 관련 프로그램 활성화 및 지표 관리”와 “문화다양성 이해 제고”가 다른 세부 추진과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두 번째로 이민자 인권보호 체계 강화 영역에서 “체계적 인권보호 시스템 구축”과 여성·아동 등 취약 이민자 인권증진 영역에서 “외국인보호·단속관련 인권보장”이 중요한 세부 추진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8-10〉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중점과제 우선 순위(중앙부처 담당자)

순위	기본계획	분류
1순위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이민관련 국제협력 증진
2순위		중앙부처·지자체·시민사회 협력 강화, 이민정책 및 연구기반 구축
3순위		중앙부처·지자체·시민사회 협력 강화

중앙행정기관(부처) 소속의 이민정책 담당 공무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중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과 관련된 세부 추진 과제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중앙행정기관(부처) 소속의 이민정책 담당공무원들은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중 “이민관련 국제협력 증진”을 가장 중요한 세부 추진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2순위는 “중앙부처·지자체·시민사회 협력 강화”와 “이민정책 및 연구기반 구축”과 “중앙부처·지자체·시민사회 협력 강화”이었다. 3순위는 “중앙부처·지자체·시민사회 협력 강화”였다.

〈표 8-11〉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세부 추진과제 우선 순위(중앙부처 담당자)

분류	추진 과제	빈도					평균	표준 편차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	매우 중요		
1. 이민관련 국제협력 증진	① 자발적 귀환 및 인재 양성 관련 협력 강화	1	1	2	4	0	3.13	1.13
	② 국제 이민 거버넌스 참여 활성화	1	2	2	3	0	2.88	1.13
2. 중앙부처·지자체·시민사회 협력 강화	① 중앙부처 차원의 통합적 정책기능 고도화	0	2	1	3	2	3.63	1.19
	② 지자체 협력 증진	0	0	4	2	2	3.75	0.89
	③ 시민사회 협력 강화	0	0	3	4	1	3.75	0.71
3. 이민정책 및 연구기반 구축	① 이민정책 추진기반 고도화	0	1	1	4	2	3.88	0.99
	② 이민관련 연구기반 강화	1	1	2	1	3	3.50	1.51

중앙행정기관(부처) 소속의 이민정책 담당 공무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중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과 관련된 세부 추진 과제와 관련하여 이민정책 및 연구기반 구축 영역에서 “이민정책 추진기반 고도화”가 다른 세부 추진과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두 번째로 중앙부처·지자체·시민사회 협력 강화 영역에서 “지자체 협력 증진”과 “시민사회 협력 강화”가 중요한 세부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8-12〉 정책대상자별 중요도 분석(중앙부처 담당자)

정책대상자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	매우 중요		
외국인전체	0	0	0	8	1	4.11	0.33
관광객	0	4	2	3	0	2.89	0.93
전문외국인력	0	1	3	4	1	3.56	0.88
단순외국인력	0	0	4	3	2	3.78	0.83
유학생	0	1	3	4	1	3.56	0.88
결혼이민자	0	2	2	3	2	3.56	1.13
이민배경자녀	0	3	2	2	2	3.33	1.22
재외동포	0	2	2	5	0	3.33	0.87
난민	0	1	5	3	0	3.22	0.67
국민(전체)	0	0	3	4	2	3.89	0.78
국민(성인)	0	0	1	6	2	4.11	0.60
국민(청소년)	0	1	3	3	2	3.67	1.00

중앙행정기관(부처) 이민 정책 담당 공무원 시각에서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이 정책 대상자들 중 외국인 전체와 대한민국 국민 중 성인을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국민 전체, 단순외국인력 순이었다.

## 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인식조사

〈표 8-13〉 정책목표별 우선순위: 지자체 담당자

순위	정책목표	빈도
1순위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4
2순위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6
3순위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 있는 개방,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3
4순위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3
5순위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5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이민정책 담당 공무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의 주요 정책목표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이민정책 담당공무원들은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의 정책목표 중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가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로 인식하고 있었다. 2순위는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3순위는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 있는 개방”,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4순위는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5순위는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였다.

〈표 8-14〉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 있는 개방’ 중점과제 우선순위(지자체 담당자)

순위	기본계획	분류
1순위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 있는 개방	유입 체계 고도화 및 체류·국적제도 개선
2순위		우수 인재 유치 및 성장 지원강화
3순위		관광객 및 투자자 등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4순위		우수 인재 유치 및 성장 지원강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이민정책 담당 공무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중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 있는 개방”과 관련된 세부 추진 과제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이민정책 담당공무원들은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중 “유입 체계 고도화 및 체류·국적제도 개선”을 가장 중요한 세부 추진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2순위는 “우수 인재 유치 및 성장 지원 강화”, 3순위는 “관광객 및 투자자 등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4순위는 “우수 인재 유치 및 성장 지원강화”였다.

〈표 8-15〉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 있는 개방’ 세부추진과제 우선순위(지자체 담당자)

분류	추진 과제	빈도					평균	표준 편차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	매우 중요		
1. 우수 인재 유치 및 성장 지원강화	① 유치 및 정주 인프라 강화	1	0	2	7	1	3.64	1.03
	② 유학생 등 교육기반 고도화	0	0	1	7	2	4.10	0.57
2.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취업이민자 유치·활용	① 새로운 취업이민 수요 적극 대응	0	2	3	6	0	3.36	0.81
	② 비전문직취업이민자유입·활용체계고도화	0	2	7	2	0	3.00	0.64
3. 관광객 및 투자자 등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① 목표 그룹별 맞춤형 전략 수립	0	0	1	9	1	4.00	0.45
	② 외래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0	0	2	8	1	3.91	0.54
	③ 창업이민, 투자이민제도개선	0	0	4	5	1	3.70	0.67
4. 유입 체계 고도화 및 체류·국적제도 개선	① 유입계획 수립 및 효과 분석 체계 마련	0	0	7	4	0	3.36	0.50
	② 체류 제도 개선	1	0	7	3	0	3.09	0.83
	③ 국적 제도 개선 등	1	0	5	5	0	3.27	0.90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이민정책 담당 공무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중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 있는 개방”과 관련된 세부 추진 과제와 관련하여 우수 인재 유치 및 성장 지원강화 영역에서 “유학생 등 교육기반 고도

화”가 다른 세부 추진과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두 번 째로 관광객 및 투자자 등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영역에서 “목표 그룹 별 맞춤형 전략 수립” 세부 전략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세 번째로 관광객 및 투자자 등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영역에서 “외래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이 중요한 세부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8-16〉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중점과제 우선순위(지자체 담당자)

순위	기본계획	분류
1순위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이민자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
2순위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지원 내실화
3순위		이민배경 자녀 역량강화
4순위		이민 단계별 정착지원 및 사회통합 촉진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이민정책 담당 공무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중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과 관련된 세부 추진과제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이민정책 담당공무원들은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중 “이민자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을 가장 중요한 세부 추진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2순위는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지원 내실화”, 3순위는 “이민배경 자녀 역량강화”, 4순위는 “이민 단계별 정착지원 및 사회통합 촉진”였다.

〈표 8-17〉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세부 추진과제 우선순위(지자체 담당자)

분류	추진 과제	빈도					평균	표준 편차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	매우 중요		
1. 이민 단계별 정착지원 및 사회통합 촉진	① 안정적 정착을 위한 이민자 친화적 생활환경 개선	0	0	2	7	2	4.00	0.63
	② 이민의 전 단계를 고려한 유기적 사회통합교육 실시	0	0	3	7	1	3.82	0.60
	③ 이민자 취업 및 직장생활 지원 강화	0	0	5	4	2	3.73	0.79
	④ 결혼이민제도 개선 및 피해자 보호 강화	0	0	4	6	1	3.73	0.65

2. 이민배경 자녀 역량강화	① 미래사회에 적합한 글로벌 인재육성	0	0	2	7	2	4.00	0.63
	② 성장주기별·대상 특성별 지원정책 강화	0	0	4	6	1	3.73	0.65
3.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지원 내실화	① 이민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지원	0	0	4	6	1	3.73	0.65
	② 거주 환경 및 의료 서비스 개선	0	0	6	3	2	3.64	0.81
4. 이민자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	① 적극적 참여 활성화 정책 시행	0	0	4	5	2	3.82	0.75
	② 지역 서비스 고도화	0	0	5	5	1	3.64	0.67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이민정책 담당 공무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중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과 관련된 세부 추진 과제와 관련하여 이민 단계별 정착지원 및 사회통합 촉진 영역에서 “안정적 정착을 위한 이민자 친화적 생활환경 개선”과 이민배경 자녀 역량강화 영역에서 “미래사회에 적합한 글로벌 인재육성”이 다른 세부 추진과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두 번째로 이민 단계별 정착지원 및 사회통합 촉진 영역에서 “이민의 전 단계를 고려한 유기적 사회통합교육 실시”와 이민자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 영역에서 “적극적 참여 활성화 정책 시행”이 중요한 세부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8-18〉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중점과제 우선순위(지자체 담당자)

순위	기본계획	분류
1순위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안전하고 신속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
2순위		체류외국인 관리 체계 선진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이민정책 담당 공무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중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과 관련된 세부 추진 과제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이민정책 담당공무원들은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중 “안전하고 신속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을 가장 중요한 세부 추진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2순위는 “체류외국인 관리 체계 선진화”였다.

〈표 8-19〉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세부추진과제 우선순위(지자체 담당자)

분류	추진 과제	빈도					평균	표준 편차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	매우 중요		
1. 안전하고 신속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	① 대규모 출입국 시대에 맞는 출입국 시스템 구축	1	0	5	4	0	3.20	0.92
	② 국익위해 외국인 출입국 차단 시스템 구축	1	0	7	2	0	3.00	0.82
	③ 해상을 통한 출입국 관리 체계 강화	1	0	6	3	0	3.10	0.88
2. 체류외국인 관리 체계 선진화	① 불법체류 발생 억제 및 법질서 준수 촉진	0	1	4	3	2	3.60	0.97
	②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	0	0	2	7	1	3.90	0.57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이민정책 담당 공무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중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과 관련된 세부 추진 과제와 관련하여 체류외국인 관리 체계 선진화 영역에서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이 다른 세부 추진과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두 번 째로 체류외국인 관리 체계 선진화 영역에서 “불법체류 발생 억제 및 법질서 준수 촉진”이 중요한 세부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8-20〉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중점과제 우선순위(지자체 담당자)

순위	기본계획	분류
1순위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선진 난민 정책 추진
2순위		동포와 함께 공존·발전하는 환경 조성
3순위		문화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 제고
4순위		여성·아동 등 취약 이민자 인권증진
5순위		여성·아동 등 취약 이민자 인권증진, 문화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 제고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이민정책 담당 공무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중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과 관련된 세부 추진 과제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이민정책 담당공무원들은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중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선진 난민 정책 추진”을 가장 중요한 세부 추진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2순위는 “동포와 함께 공존·발전하는 환경 조성”, 3순위는 “문화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 제고”, 4순위는 “여성·아동 등 취약 이민자 인권증진”, 5순위는 “여성·아동 등 취약 이민자 인권증진, 문화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 제고”였다.

〈표 8-21〉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세부추진과제 우선순위(지자체 담당자)

분류	추진 과제	빈도					평균	표준 편차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	매우 중요		
1. 이민자 인권보호 체계 강화	① 차별방지 제도 강화	0	0	4	6	1	3.73	0.65
	② 체계적 인권보호 시스템 구축	0	0	4	7	0	3.64	0.50
	③ 취업이민자 인권증진	0	0	4	6	1	3.73	0.65
2. 여성·아동 등 취약 이민자 인권증진	① 농축산어업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	0	1	6	3	1	3.36	0.81
	② 여성 및 아동 인권보호 강화	0	0	3	8	0	3.73	0.47
	③ 외국인보호·단속관련 인권보장	0	0	7	4	0	3.36	0.50
3. 문화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 제고	① 문화다양성 관련 프로그램 활성화 및 지표 관리	0	0	4	7	0	3.64	0.50
	② 문화다양성 이해 제고	0	0	3	8	0	3.73	0.47
4. 동포와 함께 공존·발전하는 환경 조성	① 동포 차세대 인재 양성 및 유대 강화	0	0	6	5	0	3.45	0.52
	② 고국방문·체류편의 증진 및 동포에 대한 인식 개선	0	0	7	4	0	3.36	0.50
5.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선진 난민 정책 추진	① 난민의 한국사회 통합체계 구축	1	0	8	2	0	3.00	0.77
	② 난민심사 체계 고도화	1	0	5	4	1	3.36	1.03
	③ 난민위기에 대한 국제적 공조 강화	1	0	5	5	0	3.27	0.90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이민정책 담당 공무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중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과 관련된 세부 추진 과제와 관련하여 이민자 인권보호 체계 강화 영역에서 “차별방지 제도 강

화”, 여성·아동 등 취약 이민자 인권증진 영역에서 “여성 및 아동 인권보호 강화”, 문화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 제고 영역에서 “문화다양성 이해 제고”가 다른 세부 추진과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8-22〉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중점과제 우선 순위(지자체 담당자)

순위	기본계획	분류
1순위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이민관련 국제협력 증진
2순위		중앙부처·지자체·시민사회 협력 강화
3순위		중앙부처·지자체·시민사회 협력 강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이민정책 담당 공무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중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와 관련된 중점 과제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이민정책 담당공무원들은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중 “이민정책 및 연구기반 구축”을 가장 중요한 세부 추진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2순위와 3순위는 “중앙부처·지자체·시민사회 협력 강화”였다.

〈표 8-23〉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세부 추진과제 우선 순위(지자체 담당자)

분류	추진 과제	빈도					평균	표준 편차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	매우 중요		
1. 이민관련 국제협력 증진	① 자발적 귀환 및 인재 양성 관련 협력 강화	0	0	6	5	0	3.45	0.52
	② 국제 이민 거버넌스 참여 활성화	0	0	9	2	0	3.18	0.40
2. 중앙부처·지자체·시민사회 협력 강화	① 중앙부처 차원의 통합적 정책기능 고도화	0	0	7	4	0	3.36	0.50
	② 지자체 협력 증진	0	0	5	6	0	3.55	0.52
	③ 시민사회 협력 강화	0	0	6	4	1	3.55	0.69
3. 이민정책 및 연구기반 구축	① 이민정책 추진기반 고도화	0	0	8	3	0	3.27	0.47
	② 이민관련 연구기반 강화	0	0	9	2	0	3.18	0.40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이민정책 담당 공무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중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과 관련된 세부 추진 과제와 관련하여 중앙부처·지자체·시민사회 협력 강화 영역에서 “지자체 협력 증진”과 “시민사회 협력 강화”가 다른 세부 추진과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두 번째로 이민관련 국제협력 증진 영역에서 “자발적 귀환 및 인재 양성 관련 협력 강화”가 중요한 세부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8-24〉 정책대상자별 중요도 분석(지자체 담당자)

정책대상자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	매우 중요		
외국인전체	0	0	4	5	2	3.82	0.75
관광객	0	1	5	4	1	3.45	0.82
전문외국인력	0	0	6	5	0	3.45	0.52
단순외국인력	0	1	4	6	0	3.45	0.69
유학생	0	0	6	5	0	3.45	0.52
결혼이민자	0	0	3	5	3	4.00	0.77
이민배경자녀	0	0	4	5	2	3.82	0.75
재외동포	0	1	7	2	1	3.27	0.79
난민	0	2	8	1	0	2.81	0.54
국민(전체)	0	1	6	4	0	3.27	0.65
국민(성인)	0	2	6	3	0	3.09	0.70
국민(청소년)	0	2	6	3	0	3.09	0.70

지방자치단체 이민 정책 담당 공무원 시각에서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이 정책 대상자들 중 결혼이민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외국인전체, 이민배경자녀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 제2절 이민자 수요 분석

이민자 수요에 대한 분석은 3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첫째, 17개 광역시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생산된 체류 외국인 통계를 탐색하여 지역별 이민자 유형 또는 특성을 분석하였다. 둘째, 2016년 법무부 용역보고서인 “2015 외국인정책시행계획 평가 연구”의 원자료(raw data)를 이용하여 이민자 유형 또는 특성에 따른 이민정책에 대한 필요도에 대해 분석하였다. 셋째, 이민자 유형(특성)과 이민정책 욕구(필요)를 교차하여 17개 광역시 기반으로 이민자 유형에 따른 이민정책 욕구를 동시에 파악 하였다.

### 1. 지역별 이민자 유형 및 특성

#### 1) 개요

행정안전부에 의해 생산된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통계(행정안전부, 2017)에 의하면 외국인주민 수는 1,764,664명으로 전체 한국 국민과 외국인주민을 합산한 총 인구 대비 3.4%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주민 중 남성은 946,651명 (53.6%), 여성은 818,103명(46.4%)으로 남자 외국인주민 수가 여성 외국인주민 수에 비해 약 7%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외국인주민의 60.6%(1,070,091명) 이상이 수도권인 경기(32.4%, 571,384명), 서울(22.9%, 404,037명), 인천(5.4%, 94,670명)에 거주하고 있다. 총 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은 경기 4.51%, 충남 4.48%, 서울 4.1%, 제주 3.55%, 충북 3.53%, 경남 3.4% 순이었다.

## 2) 지역별 유형 및 특성

2017년 행정안전부에 의해 생산된 외국인주민 통계와 2018년 법무부가 생산한 체류 외국인 통계를 기반으로 지역에 따른 외국인주민 유형 및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때 체류 외국인의 범주는 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 외국인,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하였다. 유형 및 특성은 연령, 체류기간, 출신국가, 체류자격을 중심으로 각 지역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 (1) 지역별 연령 현황

〈표 8-25〉 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지역별 연령대’ 분포

연번	지역	소계	순위								
			1	2	3	4	5	6	7	8	9
1	전국	1, 605, 991	30대	20대	50대	40대	60대	10대미만	10대	70대	80대
			423, 443	382, 533	253, 884	249, 939	170, 522	50,613	33,530	32,720	8,807
			26%	24%	16%	16%	11%	3%	2%	2%	1%
2	강원 도	20, 183 (16)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10대	10대미만	80대
			7,455	4,816	2,578	2,464	1,612	474	399	268	117
			36.9%	23.9%	12.8%	12.2%	8.0%	2.3%	2.0%	1.3%	0.6%
3	경기 도	546, 154 (1)	30대	20대	50대	40대	60대	10대미만	70대	10대	80대
			152, 655	104, 688	92,435	91,325	63,000	19,418	11,497	8,212	2,924
			28.0%	19.2%	16.9%	16.7%	11.5%	3.6%	2.1%	1.5%	0.5%
4	경상 남도	85, 853 (5)	30대	20대	40대	50대	60대	10대미만	10대	70대	80대
			31,008	23,165	13,694	9,432	4,480	1,898	1,080	869	227
			36.1%	27.0%	16.0%	11.0%	5.2%	2.2%	1.3%	1.0%	0.3%
5	경상 북도	61, 764 (6)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10대	10대미만	70대	80대
			21,796	19,502	8,305	5,717	3,004	1,462	1,178	644	156
			35.3%	31.6%	13.4%	9.3%	4.9%	2.4%	1.9%	1.0%	0.3%
5	광주 광역 시	25, 171 (13)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10대 미만	10대	70대	80대
			9,192	6,587	3,441	2,761	1,384	797	662	277	70
			36.5%	26.2%	13.7%	11.0%	5.5%	3.2%	2.6%	1.1%	0.3%

##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평가 및 추진과제 발굴 연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10대	10대미만	70대	80대
6	대구광역시	31,822 (11)	9,662	9,610	4,815	3,585	1,929	836	790	443	152
			30.4%	30.2%	15.1%	11.3%	6.1%	2.6%	2.5%	1.4%	0.5%
7	대전광역시	21,059 (15)	8,568	4,645	2,370	2,203	1,487	717	654	341	74
			40.7%	22.1%	11.3%	10.5%	7.1%	3.4%	3.1%	1.6%	0.4%
8	부산광역시	50,590 (7)	18,723	13,768	6,713	4,687	2,983	1,785	983	714	234
			37.0%	27.2%	13.3%	9.3%	5.9%	3.5%	1.9%	1.4%	0.5%
9	서울특별시	417,171 (2)	87,729	83,874	81,533	62,493	62,027	14,189	11,521	10,458	3,347
			21.0%	20.1%	19.5%	15.0%	14.9%	3.4%	2.8%	2.5%	0.8%
10	세종특별자치시	5,445 (17)	1,496	1,432	853	762	480	190	140	71	21
			27.5%	26.3%	15.7%	14.0%	8.8%	3.5%	2.6%	1.3%	0.4%
11	울산광역시	27,064 (12)	7,580	5,429	4,924	4,781	2,360	894	500	461	135
			28.0%	20.1%	18.2%	17.7%	8.7%	3.3%	1.8%	1.7%	0.5%
12	인천광역시	87,765 (3)	25,720	16,717	14,286	12,782	9,306	3,951	2,277	2,136	590
			29.3%	19.0%	16.3%	14.6%	10.6%	4.5%	2.6%	2.4%	0.7%
13	전라남도	34,303 (9)	11,785	10,203	4,975	3,998	2,047	457	422	329	87
			34.4%	29.7%	14.5%	11.7%	6.0%	1.3%	1.2%	1.0%	0.3%
14	전라북도	32,557 (10)	12,293	8,434	3,892	3,821	2,181	747	538	522	129
			37.8%	25.9%	12.0%	11.7%	6.7%	2.3%	1.7%	1.6%	0.4%
15	제주특별자치도	25,112 (14)	7,172	7,070	4,084	2,534	1,524	1,199	1,123	324	82
			28.6%	28.2%	16.3%	10.1%	6.1%	4.8%	4.5%	1.3%	0.3%
16	충청남도	85,939 (4)	25,285	23,127	14,251	11,330	6,424	2,315	1,654	1,246	307
			29.4%	26.9%	16.6%	13.2%	7.5%	2.7%	1.9%	1.4%	0.4%
17	충청북도	48,039 (8)	13,600	13,531	7,406	6,718	3,828	1,148	934	719	155
			28.3%	28.2%	15.4%	14.0%	8.0%	2.4%	1.9%	1.5%	0.3%

※ 자료: 법무부(2018b) 자료를 재정리. '소계'의 ( )안 숫자는 지역별 총 등록외국인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자의 합계에 따른 순위

전체 지역 기준으로 연령별로는 30대가 391,360명(26%)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20대가 382,533명(24%) 순이었다. 사실상, 20대와 30대를 합하면 50%를 차지하고 있다.

각 시도별 연령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의 경우 20대가 87,729명(21%)가 가장 많으며, 50대가 83,874(20.1%), 30대가 81,533명(19.5%) 순이었다. 20대, 30대, 50대를 합하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전국 기준과 다르게 50대가 높은 비율을 보여준다. 부산은 20대가 18,723(37%)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많은 수는 30대로 13,768명(27.2%)이다. 20대가 전국 기준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대구는 20대(9,662, 30.4%)와 30대(9,610, 30.2%)가 비슷한 비율을 보여주며 가장 많은 수를 나타내고 있다. 20대와 30대를 합치면 60%를 차지하고 있다. 인천은 30대가 25,720명(29.3%)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20대 16,717명(19%), 40대 14,286명(16.3%) 순이다. 20대부터 40대까지 합하면 60%을 넘는 비율을 보여준다. 광주는 20대가 9,192명(36.5%)으로 가장 많으며, 30대가 6,587명(26.2%) 순이며. 부산과 비슷한 양상을 보여준다. 대전은 20대가 8,568명(40.7%)로 가장 많으며, 30대가 4,645명(22.1%)로 20대와 30대를 합하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전에서의 20대의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가장 높다. 울산은 30대가 7,580명(28%)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20대 5,429명(20.1%), 40대 4,924명(18.2%), 50대 4,781명(17.7%) 순이었다. 나머지 연령대는 10% 미만의 비율을 보여준다. 세종은 30대가 1,496명(27.5%)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20대 1,432명(26.3%), 40대 853명(15.7%), 50대 762명(14%) 순이었다. 경기도는 30대가 152,655명(28%)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20대 104,688명(19.2%), 50대 92,435명(16.9%), 40대 91,325명(16.7%), 60대 63,000명(11.5%) 순이었다. 나머지 연령대는 6% 미만의 비율을 보여준다. 강원도는 20대가 7,455명(36.9%)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30대 4,816명(23.9%), 40대 2,578명(12.8%), 50대 2,464명(12.2%) 순이었다. 나머지 연령대는 10% 미만의 비율을 보여준다. 충북은 강원도와 비슷한 연령대 비율이 나타난다. 20대가 13,600명(28.3%)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30대 13,531명(28.2%), 40대 7,406명(15.4%), 50대 6,718명(14%) 순이었다. 나머지 연령대는 10% 미만의 비율을 보여준다. 충남은 30대가 25,285명(29.4%)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20대 23,127명(26.9%), 40대 14,251명(16.6%), 50대 11,330명(13.2%) 순이었다. 나머지 연령대는 10% 미만의 비율이 보여

준다. 전북은 20대가 12,293명(37.8%)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30대 8,434명(25.9%), 40대 3,892명(12%), 50대 3,821명(11.7%) 순이었다. 20대와 30대를 합하면 60% 이상의 비율을 나타낸다. 전남은 전북과 비슷한 연령대 분포를 보이고 있다. 20대가 11,785명(34.4%)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30대 10,203명(29.7%), 40대 4,975명(14.5%), 50대 3,998명(11.7%) 순이었다. 20대와 30대를 합하면 60% 이상의 비율을 나타낸다. 경북은 20대가 21,796명(35.3%)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30대 19,502명(31.6%), 40대 8,305명(13.4%) 순이었다. 20대와 30대를 합하면 60% 이상의 비율을 보여주며, 나머지 연령대는 10% 미만의 비율을 나타낸다. 경남은 30대가 31,008명(36.1%)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20대 23,165명(27%), 40대 13,694명(16%), 50대 9,432명(11%) 순이었다. 나머지 연령대는 6% 미만의 비율을 보여준다. 제주는 20대가 7,172명(28.6%)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30대 7,070명(28.2%), 40대 4,084명(16.3%), 50대 2,534명(10.1%) 순이었다. 나머지 연령대는 7% 미만의 비율을 보여준다.

## (2) 지역별 체류기간 현황

〈표 8-26〉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체류기간별’ 분포

연 번	지역	소계	순위							
			1	2	3	4	5	6	7	8
전국	전국	1,413, 758	5년~10년 미만	1년미만	2년~3년 미만	1년~2년 미만	3년~4년 미만	4년~5년 미만	10년이상	미상
			287,914	282,450	246,975	224,959	152,971	112,940	104,337	1,212
			20.4%	20.0%	17.5%	15.9%	10.8%	8.0%	7.4%	0.1%
1	강원 도	19, 364 (15)	1년미만	5년~10년 미만	1년~2년 미만	2년~3년 미만	10년이상	3년~4년 미만	4년~5년 미만	미상
			4,805	3,322	3,118	2,853	1,891	1,820	1,407	148
			24.8%	17.2%	16.1%	14.7%	9.8%	9.4%	7.3%	0.8%
2	경기 도	472, 699 (1)	5년~10년 미만	1년미만	2년~3년 미만	1년~2년 미만	3년~4년 미만	4년~5년 미만	10년이상	미상
			97,267	88,213	87,955	75,286	53,879	38,440	31,417	242
			20.6%	18.7%	18.6%	15.9%	11.4%	8.1%	6.6%	0.1%

3	경상 남도	92, 185 (3)	5년~10년 미만	1년미만	2년~3년 미만	1년~2년 미만	3년~4년 미만	4년~5년 미만	10년이상	미상
			18,205	17,829	15,760	15,263	11,615	8,785	4,586	142
			19.7%	19.3%	17.1%	16.6%	12.6%	9.5%	5.0%	0.2%
4	경상 북도	60, 706 (6)	1년미만	5년~10년 미만	1년~2년 미만	2년~3년 미만	3년~4년 미만	4년~5년 미만	10년이상	미상
			12,957	11,539	9,985	9,692	7,117	5,635	3,712	69
			21.3%	19.0%	16.4%	16.0%	11.7%	9.3%	6.1%	0.1%
5	광주 광역 시	23, 701 (13)	1년미만	5년~10년 미만	1년~2년 미만	2년~3년 미만	3년~4년 미만	4년~5년 미만	10년이상	미상
			5,933	4,121	4,112	3,607	2,465	1,874	1,559	30
			25.0%	17.4%	17.3%	15.2%	10.4%	7.9%	6.6%	0.1%
6	대구 광역 시	30,492 (11)	5년~10년 미만	1년미만	1년~2년 미만	2년~3년 미만	3년~4년 미만	10년이상	4년~5년 미만	미상
			6,514	5,889	4,526	4,394	3,252	3,133	2,760	24
			21.4%	19.3%	14.8%	14.4%	10.7%	10.3%	9.1%	0.1%
7	대전 광역 시	19, 687 (14)	1년미만	5년~10년 미만	1년~2년 미만	2년~3년 미만	3년~4년 미만	10년이상	4년~5년 미만	미상
			5,042	3,711	3,322	2,754	1,789	1,786	1,250	33
			25.6%	18.9%	16.9%	14.0%	9.1%	9.1%	6.3%	0.2%
8	부산 광역 시	46, 168 (7)	1년미만	5년~10년 미만	1년~2년 미만	2년~3년 미만	3년~4년 미만	10년이상	4년~5년 미만	미상
			11,090	8,654	7,298	6,438	4,752	4,048	3,871	17
			24.0%	18.7%	15.8%	13.9%	10.3%	8.8%	8.4%	0.0%
9	서울 특별 시	335, 167 (2)	5년~10년 미만	1년미만	2년~3년 미만	1년~2년 미만	10년이상	3년~4년 미만	4년~5년 미만	미상
			74,519	65,134	60,219	51,411	31,140	29,963	22,526	255
			22.2%	19.4%	18.0%	15.3%	9.3%	8.9%	6.7%	0.1%
10	세종 특별 자치 시	4,835 (17)	1년미만	5년~10년 미만	2년~3년 미만	1년~2년 미만	3년~4년 미만	4년~5년 미만	10년이상	미상
			1,168	900	823	814	435	357	334	4
			24.2%	18.6%	17.0%	16.8%	9.0%	7.4%	6.9%	0.1%
11	울산 광역 시	28, 792 (12)	5년~10년 미만	2년~3년 미만	1년미만	1년~2년 미만	3년~4년 미만	4년~5년 미만	10년이상	미상
			6,460	5,032	4,939	4,718	3,542	2,684	1,414	3
			22.4%	17.5%	17.2%	16.4%	12.3%	9.3%	4.9%	0.0%
12	인천 광역 시	71, 873 (5)	5년~10년 미만	1년미만	2년~3년 미만	1년~2년 미만	3년~4년 미만	10년이상	4년~5년 미만	미상
			15,458	13,471	11,298	10,712	7,855	7,137	5,909	33
			21.5%	18.7%	15.7%	14.9%	10.9%	9.9%	8.2%	0.0%

13	전라 남도	36, 630 (9)	1년미만	5년~10년 미만	2년~3년 미만	1년~2년 미만	3년~4년 미만	4년~5년 미만	10년이상	미상
			7,772	6,823	6,375	6,093	4,163	3,341	2,024	39
			21.2%	18.6%	17.4%	16.6%	11.4%	9.1%	5.5%	0.1%
14	전라 북도	31, 549 (10)	1년미만	5년~10년 미만	2년~3년 미만	1년~2년 미만	3년~4년 미만	4년~5년 미만	10년이상	미상
			7,210	5,507	5,171	5,032	3,599	2,670	2,332	28
			22.9%	17.5%	16.4%	15.9%	11.4%	8.5%	7.4%	0.1%
15	제주 특별 자치 도	17, 476 (16)	1년미만	1년~2년 미만	2년~3년 미만	5년~10년 미만	3년~4년 미만	4년~5년 미만	10년이상	미상
			4,702	3,041	2,799	2,788	1,898	1,306	914	28
			26.9%	17.4%	16.0%	16.0%	10.9%	7.5%	5.2%	0.2%
16	충청 남도	77, 533 (4)	1년미만	5년~10년 미만	2년~3년 미만	1년~2년 미만	3년~4년 미만	4년~5년 미만	10년이상	미상
			16,628	14,274	13,878	12,799	9,335	6,356	4,175	88
			21.4%	18.4%	17.9%	16.5%	12.0%	8.2%	5.4%	0.1%
17	충청 북도	44, 901 (8)	1년미만	2년~3년 미만	5년~10년 미만	1년~2년 미만	3년~4년 미만	4년~5년 미만	10년이상	미상
			9,668	7,927	7,852	7,429	5,492	3,769	2,735	29
			21.5%	17.7%	17.5%	16.5%	12.2%	8.4%	6.1%	0.1%

※ 자료: 행정안전부(2017) 자료를 재정리. ‘소계’의 ( )안 숫자는 지방자치단체별 총 외국인주민수에 따른 순위. 외국인주민에는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국내 거주 외국인의 체류기간별 현황은 5~10년 미만이 20.4%(287,914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며, 다음으로 1년 미만 20%(282,450명), 2~3년 미만 17.5%(246,975명), 1~2년 미만 15.9%(224,959명) 순이다. 전반적으로 5~10년 체류 외국인의 비율이 높지만 그와 비슷하게 1년 미만 체류 외국인의 비율 또한 높은 수준이다. 이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외국인들이 한국에 도착하고 있으며 이전에 한국으로 유입된 이민자의 체류 기간 또한 증가하는 추세라 할 수 있다.

각 시도별 체류기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은 5~10년 미만이 22.2%(74,519명)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며, 1년 미만 19.4%(65,134명), 2~3년 미만 18%(60,219명), 1~2년 미만 15.3%(51,411명) 순이었다. 부산은 1년 미만이 24%(11,090명)로 가장 높을 비율을 나타내며, 5~10년 미만 18.7%(8,654명), 1~2년 미만 15.8%(7,298명), 2~3년 미만이 13.9%(6,438명) 순이었다. 대구는 5~10년 미만이

21.4%(6,514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며, 1년 미만 19.3%(5,889명), 1~2년 미만 14.8%(4,526명), 2~3년 미만 14.4%(4,394명) 순이었다. 인천은 5~10년 미만이 21.5%(15,458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며, 다음으로 1년 미만 18.7%(13,471명), 2~3년 미만 15.7%(11,298명), 1~2년 미만 14.9%(10,712명) 순이었다. 광주는 1년 미만이 25%(5,933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며, 다음으로 5~10년 미만 17.4%(4,121명), 1~2년 미만 17.3%(4,112명), 2~3년 미만 15.2%(3,607명) 순이었다. 대전은 1년 미만이 25.6%(5,042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며, 5~10년 미만 18.9%(3,711명), 1~2년 미만 16.9%(3,322명), 2~3년 미만 14%(2,754명) 순이었다. 울산은 5~10년 미만이 22.4%(6,460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며, 다음으로 2~3년 미만 17.5%(5,032명), 1년 미만 17.2%(4,939명), 1~2년 미만 16.4%(4,718명) 순이었다. 세종은 1년 미만이 24.2%(1,168명)로 가장 높을 비율을 보여주며, 5~10년 미만 18.6%(900명), 2~3년 미만 17%(823명), 1~2년 미만 16.8%(814명) 순이었다. 경기는 5~10년 미만이 20.6%(97,267명)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며, 1년 미만 18.7%(88,213명), 2~3년 미만 18.6%(87,955명), 1~2년 미만 15.9%(75,286명) 순이었다. 강원은 1년 미만이 24.8%(4,805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며, 5~10년 미만 17.2%(3,322명), 1~2년 미만 16.1%(3,118명), 2~3년 미만 14.7%(2,853명) 순이었다. 충북은 1년 미만이 21.5%(9,668명)로 가장 높으며, 2~3년 미만 17.7%(7,927명), 5~10년 미만 17.5%(7,852명), 1~2년 미만이 16.5%(7,429명) 순이었다. 충남은 1년 미만이 21.4%(16,628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며, 5~10년 미만이 18.4%(14,274명), 2~3년 미만 17.9%(13,878명), 1~2년 미만은 16.5%(12,799명) 순이었다. 전북은 1년 미만이 22.9%(7,210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며, 다음으로 5~10년 미만이 17.5%(5,507명), 2~3년 16.4%(5,171명), 1~2년 미만 15.9%(5,032명) 순이었다. 전남은 1년 미만이 21.2%(7,772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며, 5~10년 미만 18.6%(6,823명), 2~3년 미만 17.4%(6,375명), 1~2년 미만 16.6%(6,093명) 순이었다. 경북은 1년 미만 21.3%(12,957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며, 5~10년 미만 19%(11,539명), 1~2년 미만 16.4%(9,985명), 2~3년 미만 16%(9,692명) 순이었다. 경남은 5~10년 미만이 19.7%(18,205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며, 1년 미만 19.3%(17,829명), 2~3년 미만 17.1%(15,760명), 1~2년 미만 16.6%(15,263명) 순이었다. 제주는 1년 미만이 26.9%(4,702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며, 다음으로 1~2년 미만 17.4%(3,041명),

2~3년 미만 16%(2,799명), 5~10년 미만 16%(2,788명) 순이었다. 전반적으로 각 시도의 체류 기간은 전국 수준과 유사하게 이전에 체류를 시작한 외국인의 체류 기간이 길어지는 양상과 지속적으로 새로운 외국인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었다. 다만 제주도는 체류기간이 5년 이상인 체류 외국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 **(3) 지역별 출신국가 현황**

<표 8-27>은 국내에서 20,000명 이상 체류하고 있는 15개국 출신, 등록 외국인들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15개국은 '한국계 중국인,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네팔, 타이, 스리랑카, 미국, 미얀마, 몽골, 일본, 타이완'이 포함되었다.

〈표 8-27〉 등록외국인 ‘지역별 국적별’ 분포

연 번	지역	소계	순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전국	1,071,377	한국계 중국인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네팔	타이	스리랑카	미국	미얀마	몽골	일본	타이완	
		329, 766	208, 122	154, 589	48, 735	45, 417	44, 660	35, 981	34, 652	29, 177	24, 780	24, 276	24, 106	23, 349	23, 338	20, 429	
		30.8%	19.4%	14.4%	4.5%	4.2%	4.2%	3.4%	3.2%	2.7%	2.3%	2.3%	2.3%	2.2%	2.2%	1.9%	
1	강원 도	15, 605 (15)	베트남	중국	한국계 중국인	네팔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타이	일본	우즈베키스탄	타이완	미국	미얀마	스리랑카
			4,240	2,761	1,184	1,095	1,020	822	689	624	558	553	543	455	422	409	230
			27.2%	17.7%	7.6%	7.0%	6.5%	5.3%	4.4%	4.0%	3.6%	3.5%	3.5%	2.9%	2.7%	2.6%	1.5%
2	경기 도	353, 709 (1)	한국계 중국인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타이	네팔	미얀마	인도네시아	몽골	스리랑카	미국	일본	타이완
			144, 127	52, 134	33, 257	17, 006	16, 757	16, 182	14, 652	13, 067	10, 926	7,901	7,446	6,926	5,541	5,235	2,552
			40.7%	14.7%	9.4%	4.8%	4.7%	4.6%	4.1%	3.7%	3.1%	2.2%	2.1%	2.0%	1.6%	1.5%	0.7%
3	경상 남도	65, 932 (3)	베트남	중국	한국계 중국인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필리핀	스리랑카	네팔	타이	미얀마	일본	미국	몽골	타이완
			17,833	6,719	6,458	6,405	6,343	4,550	3,696	3,477	3,311	2,014	1,986	1,111	867	829	333
			27.0%	10.2%	9.8%	9.7%	9.6%	6.9%	5.6%	5.3%	5.0%	3.1%	3.0%	1.7%	1.3%	1.3%	0.5%
4	경상 북도	49, 333 (6)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한국계 중국인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네팔	스리랑카	미얀마	타이	몽골	미국	일본	타이완
			15,986	6,316	4,394	3,727	3,371	2,984	2,689	2,315	2,266	1,339	1,174	949	767	676	380
			32.4%	12.8%	8.9%	7.6%	6.8%	6.0%	5.5%	4.7%	4.6%	2.7%	2.4%	1.9%	1.6%	1.4%	0.8%

##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평가 및 추진과제 발굴 연구」

5	광주 광역 시	18, 344 (13)	중국	베트남	우즈베 키스탄	한국계 중국인	캄보 디아	필리핀	인도 네시아	스리 랑카	네팔	미국	타이	일본	미얀마	몽골	타이완
			4,664	4,083	2,321	1,475	1,163	1,076	562	456	421	419	396	355	332	325	296
			25.4%	22.3%	12.7%	8.0%	6.3%	5.9%	3.1%	2.5%	2.3%	2.3%	2.2%	1.9%	1.8%	1.8%	1.6%
6	대구 광역 시	23, 487 (11)	베트남	중국	한국계 중국인	필리핀	인도 네시아	우즈베 키스탄	미국	스리 랑카	캄보 디아	타 이 완	네팔	일본	미얀마	타이	몽골
			6,005	4,861	1,948	1,658	1,641	1,349	1,151	969	913	735	630	508	452	377	290
			25.6%	20.7%	8.3%	7.1%	7.0%	5.7%	4.9%	4.1%	3.9%	3.1%	2.7%	2.2%	1.9%	1.6%	1.2%
7	대전 광역 시	14, 965 (16)	중국	베트남	한국계 중국인	미국	필리핀	우즈베 키스탄	일본	타이완	몽골	캄보 디아	인도 네시아	네팔	타이	스리 랑카	미얀마
			5,842	3,076	1,402	771	704	640	442	422	417	311	306	247	194	125	66
			39.0%	20.6%	9.4%	5.2%	4.7%	4.3%	3.0%	2.8%	2.8%	2.1%	2.0%	1.7%	1.3%	0.8%	0.4%
8	부산 광역 시	38, 762 (7)	중국	베트남	한국계 중국인	인도 네시아	필리핀	우즈베 키스탄	타이완	일본	미얀마	미국	캄보 디아	네팔	스리 랑카	타이	몽골
			10, 590	9,940	2,637	2,592	1,967	1,666	1,613	1,329	1,243	1,191	1,186	905	873	581	449
			27.3%	25.6%	6.8%	6.7%	5.1%	4.3%	4.2%	3.4%	3.2%	3.1%	3.1%	2.3%	2.3%	1.5%	1.2%
9	서울 특별 시	243, 292 (2)	한국계 중국인	중국	베트남	미국	타이완	일본	몽골	필리핀	우즈베 키스탄	타이	인도 네시아	캄보 디아	네팔	미얀마	스리 랑카
			119, 558	65,640	13,502	9,545	8,808	8,175	5,988	3,543	2,367	1,532	1,213	1,142	1,088	873	318
			49.1%	27.0%	5.5%	3.9%	3.6%	3.4%	2.5%	1.5%	1.0%	0.6%	0.5%	0.5%	0.4%	0.4%	0.1%
10	세종 특별 자치 시	3,771 (17)	중국	한국계 중국인	베트남	우즈베 키스탄	캄보 디아	필리핀	인도 네시아	네팔	미얀마	타이	미국	스리 랑카	일본	몽골	타이완
			847	772	579	248	224	165	159	137	135	127	117	92	79	50	40
			22.5%	20.5%	15.4%	6.6%	5.9%	4.4%	4.2%	3.6%	3.6%	3.4%	3.1%	2.4%	2.1%	1.3%	1.1%

11	울산 광역 시	18, 234 (14)	한국계 중국인	베트남	중국	필리핀	스리 랑카	캄보 디아	우즈베 키스탄	인도 네시아	미얀마	네팔	몽골	타이	미국	일본	타이완
11		18, 234 (14)	5,605	3,561	2,947	1,103	840	792	668	588	395	352	325	318	256	248	236
			30.7%	19.5%	16.2%	6.0%	4.6%	4.3%	3.7%	3.2%	2.2%	1.9%	1.8%	1.7%	1.4%	1.4%	1.3%
			16,263	10,855	6,862	2,927	2,889	2,553	2,101	1,837	1,766	1,751	1,241	1,185	1,087	1,012	787
12	인천 광역 시	55, 116 (5)	한국계 중국인	중국	베트남	우즈베 키스탄	필리핀	타이완	미얀마	타이	몽골	인도 네시아	네팔	캄보 디아	미국	일본	스리 랑카
12		55, 116 (5)	29.5%	19.7%	12.5%	5.3%	5.2%	4.6%	3.8%	3.3%	3.2%	3.2%	2.3%	2.2%	2.0%	1.8%	1.4%
			8,852	3,672	2,985	2,640	1,955	1,779	1,624	1,436	1,162	814	772	748	498	294	181
			30.1%	12.5%	10.1%	9.0%	6.6%	6.0%	5.5%	4.9%	4.0%	2.8%	2.6%	2.5%	1.7%	1.0%	0.6%
13	전라 남도	29, 412 (9)	베트남	중국	캄보 디아	스리 랑카	한국계 중국인	인도 네시아	필리핀	네팔	우즈베 키스탄	일본	타이	미얀마	몽골	미국	타이완
13		29, 412 (9)	7,811	5,859	2,009	1,955	1,444	1,316	1,216	996	929	839	675	600	517	475	423
			28.9%	21.6%	7.4%	7.2%	5.3%	4.9%	4.5%	3.7%	3.4%	3.1%	2.5%	2.2%	1.9%	1.8%	1.6%
			9,926	2,797	1,505	1,447	815	709	640	584	537	348	312	281	261	260	116
14	전라 북도	27, 064 (10)	베트남	중국	캄보 디아	한국계 중국인	네팔	필리핀	우즈베 키스탄	몽골	인도 네시아	스리 랑카	일본	미얀마	타이	타이완	미국
14		27, 064 (10)	48.3%	13.6%	7.3%	7.0%	4.0%	3.5%	3.1%	2.8%	2.6%	1.7%	1.5%	1.4%	1.3%	1.3%	0.6%
			13,040	10,287	9,034	4,878	4,605	4,053	2,564	2,527	2,346	1,543	1,427	1,366	1,051	607	553
			21.8%	17.2%	15.1%	8.1%	7.7%	6.8%	4.3%	4.2%	3.9%	2.6%	2.4%	2.3%	1.8%	1.0%	0.9%
15	제주 특별 자치 도	20, 538 (12)	한국계 중국인	베트남	한국계 중국인	인도 네시아	스리 랑카	네팔	필리핀	캄보 디아	미국	타이완	미얀마	몽골	타이	일본	우즈베 키스탄
15		20, 538 (12)	13,040	10,287	9,034	4,878	4,605	4,053	2,564	2,527	2,346	1,543	1,427	1,366	1,051	607	553
			48.3%	13.6%	7.3%	7.0%	4.0%	3.5%	3.1%	2.8%	2.6%	1.7%	1.5%	1.4%	1.3%	1.3%	0.6%
			8,852	3,672	2,985	2,640	1,955	1,779	1,624	1,436	1,162	814	772	748	498	294	181
16	충청 남도	59, 881 (4)	한국계 중국인	베트남	중국	우즈베 키스탄	캄보 디아	네팔	인도 네시아	필리핀	타이	스리 랑카	미얀마	일본	몽골	미국	타이완
16		59, 881 (4)	13,040	10,287	9,034	4,878	4,605	4,053	2,564	2,527	2,346	1,543	1,427	1,366	1,051	607	553
			48.3%	13.6%	7.3%	7.0%	4.0%	3.5%	3.1%	2.8%	2.6%	1.7%	1.5%	1.4%	1.3%	1.3%	0.6%
			30.1%	12.5%	10.1%	9.0%	6.6%	6.0%	5.5%	4.9%	4.0%	2.8%	2.6%	2.5%	1.7%	1.0%	0.6%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평가 및 추진과제 발굴 연구」

17	충청 북도	33, 932 (8)	한국계 중국인	베트남	중국	우즈베 키스탄	네팔	필리핀	캄보 디아	스리 랑카	타이	몽골	인도 네시아	미얀마	일본	타이완	미국
			6,155	5,918	5,455	3,125	2,201	1,992	1,863	1,584	1,521	1,065	1,061	762	500	449	281
			18.1%	17.4%	16.1%	9.2%	6.5%	5.9%	5.5%	4.7%	4.5%	3.1%	3.1%	2.2%	1.5%	1.3%	0.8%

※ 자료: 법무부(2018b) 자료를 재정리. ‘소계’는 분류 대상국인 15개국 출신의 지역 내 체류 인원의 총합이며, ( )안의 숫자는 15개국 출신 등록외국인의 지역별 총합 순위임. ‘백분율’은 각 지역 내 15개국 출신 등록 외국인의 분포 비율임.

외국국적동포를 제외한 등록외국인의 출신국가 현황을 살펴보면 다수는 중국 출신이다. 그 중에서 중국 조선족은 329,766명(30.8%), 중국 한족은 208,122명(19.4%)이다. 다음으로 베트남(133,106명, 9.4%), 우즈베키스탄(48,735명, 4.5%), 필리핀(45,417명, 4.2%), 캄보디아(44,660명, 4.2%) 순이다.

각 시도별 출신국가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은 중국 출신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 출신 중에서 조선족이 119,558명(49.1%)으로 가장 많으며, 중국 한족 65,640명(27%), 베트남 13,502명(5.5%) 순이었다. 부산은 중국 한족 출신이 10,590명(27.3%)으로 가장 많으며, 베트남 9,940명(25.6%), 조선족 2,637명(6.8%), 인도네시아 2,592명(6.7%), 필리핀 1,967명(5.1%) 순이었다. 한족과 베트남을 합치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구는 베트남이 6,005명(25.6%)으로 가장 많으며, 중국 한족 4,861명(20.7%), 조선족 1,948명(8.3%), 필리핀 1,658명(7.1%), 인도네시아 1,641명(7%) 순이었다. 베트남과 중국 한족을 합치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인천은 조선족이 16,263명(29.5%)으로 가장 많으며, 중국 10,855명(19.7%), 베트남 6,862명(12.5%), 우즈베키스탄 2,927명(5.3%), 필리핀 2,889명(5.2%) 순이었다. 인천은 중국 출신이 약 49%를 차지하고 있다. 광주는 중국 한족이 4,664명(25.4%)으로 가장 많으며, 베트남 4,083명(22.3%), 우즈베키스탄 2,321명(12.7%), 조선족 1,475명(8%), 캄보디아 1,163명(6.3%), 필리핀 1,076명(5.9%) 순이었다. 광주에서는 중국 한족과 베트남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대전은 중국 한족이 5,842명(39%)으로 가장 많으며, 베트남 3,076명(20.6%), 조선족 1,402명(9.4%), 미국 771명(5.2%) 순이었다. 울산은 조선족이 5,605명(30.7%)으로 가장 많으며, 베트남 3,561명(19.5%), 중국 한족 2,947명(16.2%), 필리핀 1,103명(6%) 순이었다. 울산은 중국 출신과 베트남 출신을 합하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다. 세종은 중국 한족 출신이 847명(22.5%)으로 가장 많으며, 조선족 772명(20.5%), 베트남 579명(15.4%), 우즈베키스탄 248명(6.6%), 캄보디아 224명(5.9%) 순이었다. 세종은 중국 출신이 43%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는 조선족이 144,127명(40.7%)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중국 52,134명(14.7%), 베트남 33,257명(9.4%) 순이었다. 경기는 다른 지역에 비해 조선족 출신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강원은 베트남이 4,240명(27.2%)으로 가장 많고, 중국 한족 2,761명(17.7%), 조선족 1,184명(7.6%), 네팔 1,095명(7%), 캄보디아 1,020명(6.5%), 필리핀 822명(5.3%) 순이었다. 충북은 조

선족이 6,155명(18.1%)으로 가장 많으며, 베트남 5,918명(17.4%), 중국 한족 5,455명(16.1%), 우즈베키스탄 3,125명(9.2%), 네팔 2,201명(6.5%), 필리핀 1,992명(5.9%), 캄보디아 1,863명(5.5%) 순이었다. 충북은 중국 출신과 베트남 출신을 합하면 50% 이상을 차지한다. 충남은 조선족이 13,040명(21.8%)으로 가장 많으며, 베트남 10,287명(17.2%), 중국 9,034명(15.1%), 우즈베키스탄 4,878명(8.1%), 캄보디아 4,605명(7.7%), 네팔 4,053명(6.8%) 순이었다. 충북과 마찬가지로 중국 출신과 베트남 출신을 합하면 50% 이상을 차지한다. 전북은 베트남이 7,811명(28.9%)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중국 한족 5,859명(21.6%), 캄보디아 2,009명(7.4%), 조선족 1,955명(7.2%), 네팔 1,444명(5.3%) 순이었다. 베트남 출신과 중국 한족 출신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전남은 베트남 출신이 8,852명(30.1%)으로 가장 많으며, 중국 한족 3,672명(12.5%), 캄보디아 2,985명(10.1%), 스리랑카 2,640명(9%), 조선족 1,955명(6.6%), 인도네시아 1,779명(9%), 필리핀 1,624명(5.5%) 순이었다. 다른 시도에 비해 전남은 스리랑카 출신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경북은 베트남이 17,833명(32.4%)으로 가장 높으며, 중국 한족 6,316명(12.8%), 인도네시아 4,394명(8.9%), 조선족 3,727명(7.6%), 캄보디아 3,371명(6.8%), 우즈베키스탄 2,984명(6%), 필리핀 2,689명(5.5%) 순이었다. 베트남과 중국 한족 출신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경남은 베트남이 17,833명(27%)으로 가장 높으며, 중국 한족 6,719명(10.2%), 조선족 6,458명(9.8%), 인도네시아 6,405명(9.7%), 우즈베키스탄 6,343명(9.6%), 캄보디아 4,550명(6.9%), 필리핀 3,696명(5.6%), 스리랑카 3,477명(5.3%), 네팔 3,311명(5%) 순이다. 베트남과 중국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는 중국 한족이 9,926명(48.3%)으로 가장 많으며, 베트남 2,797명(13.6%), 조선족 1,505명(7.3%), 인도네시아 1,447명(7%) 순이었다. 중국 한족이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을 비율을 보여준다.

#### **(4) 지역별 체류자격별 현황**

본 연구에서는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의 지역별 체류자격 분포를 확인하기 위하여 체류자격의 특성이 유사한 그룹들로 분류하여 각 그룹별 지역별 분포를 확인하였다. 체류자격별 분류는 다음 <표>와 같다.

〈표 8-28〉 체류자격별 분류표

분류	체류자격 특성	해당체류자격
Group 1	<b>교육 배경 집단</b> (취업활동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연수, 교육, 전문활동 등을 하며 한국에 장기간 체류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 배경을 가진 집단)	D-1, 2, 3, 4, 5, 6, 7
Group 2	<b>전문취업 집단</b> (취업 혹은 영리 활동을 하며 장기간 체류하는 전문 취업 집단)	D- 8, 9, 10 / E-1, 2, 3, 4, 5, 6, 7 / F-3(전문취업집단의 동반가족이 벌금받는 비자)
Group 3	<b>비전문 취업활동 집단</b>	E-9 / H-2
Group 4	<b>거주, 영주 집단</b>	F-2, F-5
Group 5	<b>결혼이민자 집단</b>	F-6
Group 6	<b>방문, 동거 집단</b>	F-1
Group 7	<b>외국국적동포</b>	F-4

이러한 분류표를 토대로 법무부(2018b)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8-29〉 체류자격 그룹별 지역별 분포

연번	지역	소계	순위						
			1	2	3	4	5	6	7
전국	전국	1,556, 056	Group 3	Group 7	Group 4	Group 1	Group 5	Group 6	Group 2
			503,022	418,003	177,613	146,992	121,351	108,480	80,595
			32.3%	26.9%	11.4%	9.4%	7.8%	7.0%	5.2%
1	강원도	19, 289 (16)	Group 3	Group 1	Group 7	Group 5	Group 6	Group 4	Group 2
			4,719	4,089	2,947	2,786	1,825	1,679	1,244
			24.5%	21.2%	15.3%	14.4%	9.5%	8.7%	6.4%
2	경기도	534, 967 (1)	Group 3	Group 7	Group 4	Group 6	Group 5	Group 1	Group 2
			209,141	159,143	63,664	35,015	33,410	18,187	16,407
			39.1%	29.7%	11.9%	6.5%	6.2%	3.4%	3.1%
3	경상 남도	81, 724 (3)	Group 3	Group 7	Group 5	Group 6	Group 2	Group 4	Group 1
			40,294	12,540	8,283	6,659	5,526	4,773	3,649
			49.3%	15.3%	10.1%	8.1%	6.8%	5.8%	4.5%

4	경상 북도	58,	Group 3	Group 1	Group 7	Group 5	Group 6	Group 4	Group 2
		201	23,597	9,611	7,820	6,523	5,093	3,002	2,555
		(6)	40.5%	16.5%	13.4%	11.2%	8.8%	5.2%	4.4%
5	광주 광역시	24,	Group 3	Group 1	Group 7	Group 6	Group 5	Group 2	Group 4
		435	7,209	4,714	3,771	2,844	2,819	1,691	1,387
		(13)	29.5%	19.3%	15.4%	11.6%	11.5%	6.9%	5.7%
6	대구 광역시	30,	Group 3	Group 7	Group 1	Group 5	Group 6	Group 2	Group 4
		412	9,116	4,733	4,398	4,363	2,845	2,527	2,430
		(11)	30.0%	15.6%	14.5%	14.3%	9.4%	8.3%	8.0%
7	대전 광역시	20,	Group 1	Group 7	Group 2	Group 5	Group 4	Group 3	Group 6
		760	7,078	3,044	2,750	2,692	1,889	1,754	1,553
		(15)	34.1%	14.7%	13.2%	13.0%	9.1%	8.4%	7.5%
8	부산 광역시	47,	Group 1	Group 3	Group 7	Group 5	Group 4	Group 2	Group 6
		202	12,409	10,543	6,822	5,791	4,456	4,189	2,992
		(7)	26.3%	22.3%	14.5%	12.3%	9.4%	8.9%	6.3%
9	서울 특별시	405,	Group 7	Group 3	Group 4	Group 1	Group 2	Group 5	Group 6
		346	143,993	79,353	58,834	54,479	27,125	20,847	20,715
		(2)	35.5%	19.6%	14.5%	13.4%	6.7%	5.1%	5.1%
10	세종 특별 자치시	5,	Group 3	Group 7	Group 1	Group 5	Group 6	Group 4	Group 2
		379	1,836	1,170	725	562	425	392	269
		(17)	34.1%	21.8%	13.5%	10.4%	7.9%	7.3%	5.0%
11	울산 광역시	26,	Group 3	Group 7	Group 4	Group 5	Group 6	Group 2	Group 1
		501	8,392	6,819	2,905	2,716	2,461	1,853	1,355
		(14)	31.7%	25.7%	11.0%	10.2%	9.3%	7.0%	5.1%
12	인천 광역시	84,	Group 3	Group 7	Group 4	Group 5	Group 6	Group 2	Group 1
		356	24,925	23,598	12,820	7,865	6,624	4,413	4,111
		(5)	29.5%	28.0%	15.2%	9.3%	7.9%	5.2%	4.9%
13	전라 남도	31,	Group 3	Group 5	Group 6	Group 7	Group 4	Group 1	Group 2
		635	13,918	5,383	3,758	3,201	2,044	1,999	1,332
		(9)	44.0%	17.0%	11.9%	10.1%	6.5%	6.3%	4.2%
14	전라 북도	31,	Group 3	Group 1	Group 5	Group 7	Group 6	Group 4	Group 2
		803	9,506	6,619	4,803	3,452	3,425	2,370	1,628
		(10)	29.9%	20.8%	15.1%	10.9%	10.8%	7.5%	5.1%
15	제주 특별 자치도	23,	Group 4	Group 3	Group 2	Group 7	Group 5	Group 1	Group 6
		083	6,267	4,345	4,021	3,102	2,012	1,845	1,491
		(12)	27.1%	18.8%	17.4%	13.4%	8.7%	8.0%	6.5%
16	충청 남도	83,	Group 3	Group 7	Group 1	Group 6	Group 5	Group 4	Group 2
		747	34,307	21,021	7,404	6,896	6,428	5,851	1,840
		(4)	41.0%	25.1%	8.8%	8.2%	7.7%	7.0%	2.2%

17	충청 북도	47, 216 (8)	Group 3	Group 7	Group 1	Group 5	Group 6	Group 4	Group 2
			20,067	10,827	4,320	4,068	3,859	2,850	1,225
			42.5%	22.9%	9.1%	8.6%	8.2%	6.0%	2.6%

※ 자료: 법무부(2018b) 자료를 재정리. '소계'는 Group 1~7을 합산한 수치이며 ( ) 안의 숫자는 그에 따른 지역별 순위임

국내거주 외국인의 체류자격 유형은 비전문취업활동(E-9, H-2) 유형이 32.3%(50,3,022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음으로 외국국적동포(F-4) 26.9%(418,003명), 영주권(F-2, F-5) 11.4%(177,613명) 순이다.

시도별 체류자격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은 외국국적동포(F-4)가 35.5%(143,993명)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다음으로 비전문취업활동(E-9, H-2) 19.6%(79,353명), 영주권(F-2, F-5) 14.5%(58,834명), 교육/연수(D-1, 2, 3, 4, 5, 6, 7) 13.4%(54,479명)순이다. 부산은 교육/연수(D-1, 2, 3, 4, 5, 6, 7)가 26.3%(12,409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며, 비전문취업활동(E-9, H-2) 22.3%(10,543명), 외국국적동포(F-4) 14.5%(6,822명), 결혼이민(F-6) 12.3%(5,791명)순이다. 대구는 비전문취업활동(E-9, H-2)이 30%(9,116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외국국적동포(F-4) 15.6%(4,733명), 교육/연수(D-1, 2, 3, 4, 5, 6, 7) 14.5%(4,398명), 결혼이민자(F-6) 14.3%(4,363명) 순이다. 인천은 비전문취업활동(E-9, H-2)이 29.5%(24,925명)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외국국적동포(F-4) 28%(23,598명), 영주권(F-2, F-5) 15.2%(12,820명) 순이다. 광주는 비전문취업활동(E-9, H-2)이 29.5%(7,209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교육/연수(D-1, 2, 3, 4, 5, 6, 7) 19.3%(4,714명), 외국국적동포(F-4) 15.4%(3,771명), 방문/동거(F-1) 11.6%(2,844명), 결혼이민자(F-6) 11.5%(2,819명)순이다. 대전은 교육/연수(D-1, 2, 3, 4, 5, 6, 7)가 34.1%(7,078명)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며, 다음으로 외국국적동포(F-4) 14.7%(3,044명), 전문취업활동(D-8, 9, 10 / E-1, 2, 3, 4, 5, 6, 7 / F-3) 13.2%(2,750명), 결혼이민자(F-6) 13%(2,692명) 순이다. 울산은 비전문취업활동(E-9, H-2)이 31.7%(8,392명)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외국국적동포(F-4) 25.7%(6,819명), 영주권(F-2, F-5) 11%(2,905명), 결혼이민자(F-6) 10.2%(2,716명) 순이다. 세종은 비전문취업활동(E-9, H-2)이 34.1%(1,836명)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며, 다음으로 외국국적동포(F-4) 21.8%(1,170명), 교육/연수(D-1, 2, 3, 4, 5,

6, 7) 13.5%(725명), 결혼이민자(F-6) 10.4%(562명) 순이다. 경기는 비전문취업활동(E-9, H-2)이 39.1%(209,141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외국국적동포(F-4) 29.7%(159,143명), 영주권(F-2, F-5) 11.9%(63,664명) 순이다. 강원은 비전문취업활동(E-9, H-2)이 24.5%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며, 다음으로 교육/연수(D-1, 2, 3, 4, 5, 6, 7) 21.2%, 외국국적동포(F-4) 15.3%, 결혼이민자(F-6) 14.4% 순이다. 충북은 비전문취업활동(E-9, H-2)이 42.5%(20,067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외국국적동포(F-4) 22.9%(10,827명), 교육/연수(D-1, 2, 3, 4, 5, 6, 7) 9.1%(4,320명) 순이다. 충남은 충북과 유사하게 비전문취업활동(E-9, H-2)이 41%(34,307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외국국적동포(F-4) 25.1%(21,021명), 교육/연수(D-1, 2, 3, 4, 5, 6, 7) 8.8%(7,404명) 순이다. 전북은 비전문취업활동(E-9, H-2)이 29.9%(9,506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다음으로 교육/연수(D-1, 2, 3, 4, 5, 6, 7) 20.8%(6,619명), 결혼이민자(F-6) 15.1%(4,803명), 외국국적동포(F-4) 10.9%(3,452명), 방문/동거(F-1) 10.8%(3,425명) 순이다. 전남은 비전문취업활동(E-9, H-2)이 44%(13,918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며, 결혼이민자(F-6) 17%(5,383명), 방문동거(F-1) 11.9%(3,758명), 외국국적동포(F-4) 10.1%(3,201명) 순이다. 경북은 비전문취업활동(E-9, H-2)이 40.5%(23,597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다음으로 교육/연수(D-1, 2, 3, 4, 5, 6, 7) 16.5%(9,611명), 외국국적동포(F-4) 13.4%(7,820명), 결혼이민자(F-6) 11.2%(6,523명) 순이다. 경남은 비전문취업활동(E-9, H-2)이 49.3%(40,294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다음으로 외국국적동포(F-4) 15.3%(12,540명), 결혼이민자(F-6) 10.1%(8,283명) 순이다. 제주는 영주권(F-2, F-5)이 27.1%(6,267명)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며, 비전문취업활동(E-9, H-2) 18.8%(4,345명), 전문취업활동(D-8, 9, 10 / E-1, 2, 3, 4, 5, 6, 7 / F-3) 17.4%(4,021명), 외국국적동포(F-4) 13.4%(3,102명) 순이다.

## 2. 이민자 유형별 정책 필요도

### 1) 개요

본 보고서는 법무부에서 발행한 “2015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평가연구”의 자료를 중심으로 이차분석을 실시하였다. “2015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평가연구”의 자료에서의 분석대상은 등록외국인, 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이며, 전국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관할하고 있는 인원에 비례하여, 등록외국인과 거소신고 외국국적 동포를 비례 할당을 통해 표본 추출하여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이 이루어졌다. 최종적으로 1,050부 설문지를 이용하여 이민자의 외국인정책에 대한 인지, 필요, 충분, 이용경험, 만족도, 체감도, 한국생활 중 경험한 어려움 및 차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 2) 이민자 유형 및 특성에 따른 정책 필요도

본 보고서에서는 정책대상집단(결혼이민자, 이민배경자녀,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재외동포)을 연령, 체류기간, 출신국가, 체류자격별 재분류를 실시하였고, 이러한 분류에 따른 조기적응/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한국사회 이해), 고용, 교육, 건강상태와 필수의료서비스, 주거상태, 빈곤, 사회참여 관련 정책/프로그램, 차별경험과 관련한 정책 필요도를 분석하였다. 정책 필요도는 1~4점으로 측정되었으며, 각각의 분류에서 평균값을 도출하여 정책 필요도의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

#### (1) 연령별 정책 필요도

〈표 8-30〉 연령별 정책필요도

연령 정책구분	10대	중 위	20대	중 위	30대	중 위	40대	중 위	50대	중 위	60대 이상	중 위
방문교육	3.27	6	3.19	13	3.26	14	3.13	11	2.61	17	2.77	11
집체교육	3.29	5	3.15	16	3.29	12	3.10	14	2.75	14	2.77	11
통번역	3.26	7	3.15	16	3.20	18	3.05	17	2.60	18	2.52	23
민원신청시- 외국어서비스	3.32	4	3.29	9	3.30	11	3.09	15	2.73	15	2.74	15
한국사회관련정보	3.38	3	3.31	6	3.39	3	3.28	3	3.05	3	2.90	6
비자관련정보	3.45	1	3.40	1	3.43	2	3.30	2	3.21	1	3.10	1
생활정보	3.41	2	3.36	2	3.38	5	3.21	5	2.99	4	3.06	2
임신, 출산	2.70	24	3.14	18	3.27	13	3.02	18	2.49	22	2.71	17
자녀교육, 자녀학습지원	2.85	21	3.19	13	3.36	6	3.14	9	2.59	20	2.71	17
가족문제 상담	2.84	23	3.06	20	3.17	19	2.92	22	2.46	23	2.75	14
일자리 정보, 상담, 알선서비스	3.05	18	3.32	4	3.33	8	3.17	6	2.96	5	3.03	3
취업, 직업교육	3.19	12	3.29	9	3.31	9	3.15	7	2.88	7	2.86	9
직장에서 애로사항 상담	3.19	12	3.22	11	3.25	17	3.13	11	2.83	10	2.93	5
농촌정책 지원서비스	2.85	21	2.92	24	2.93	24	2.74	24	2.43	24	2.60	22
출신국가별 자조모임지원사업	3.05	18	3.03	22	3.15	20	2.88	23	2.60	18	2.50	24
한국주민 네트워크, 교류활동	3.23	10	3.10	19	3.12	21	3.01	19	2.80	12	2.63	20
사회참여 지원프로그램	3.14	15	3.05	21	3.11	22	3.01	19	2.68	16	2.72	16
관청 정책결정 참여과정	2.95	20	2.97	23	3.05	23	2.93	21	2.56	21	2.61	21
보건의료 지원서비스	3.23	10	3.33	3	3.46	1	3.32	1	3.14	2	2.97	4
기초 법질서 교육	3.18	14	3.21	12	3.26	14	3.15	7	2.81	11	2.87	7
생활안전교육	3.14	15	3.17	15	3.26	14	3.11	13	2.79	13	2.87	7
차별, 예방, 신고, 시정조치	3.25	8	3.30	7	3.31	9	3.09	15	2.87	8	2.68	19
폭력피해 예방, 신고, 피해보상	3.24	9	3.32	4	3.39	3	3.14	9	2.92	6	2.78	10
범죄피해 신고, 보상	3.14	15	3.30	7	3.34	7	3.22	4	2.84	9	2.77	11

정책대상집단(결혼이민자, 이민배경자녀,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재외동포)의 연령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으로 재분류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연

령대에 따른 정책 필요도에 대한 교차분석이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대들이 가장 필요한 정책 또는 1순위 정책 필요 영역은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변경 등 비자 관련정보(3.45)였다. 다음으로 외국인등록 등 민원접수, 편의시설 등과 관련된 생활정보(3.38), 외국인등록 등 민원접수, 편의시설 등과 관련된 생활정보(3.41) 순이었다. 20대가 가장 필요한 정책 또는 1순위 정책 필요 영역은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등 비자 관련정보(3.40)였다. 다음으로 외국인등록 등 민원접수, 편의시설 등과 관련된 생활정보(3.36), 건강검진, 질병치료 등 보건의료 지원서비스(3.33) 순이었다. 30대가 가장 필요한 정책 또는 1순위 정책 필요 영역은 건강검진, 질병치료 등 보건의료 지원서비스(3.46)였다. 다음으로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등 비자 관련정보(3.43), 한국 법, 문화 등 한국사회 관련 정보(3.39) 순이었다. 40대가 가장 필요한 정책 또는 1순위 정책 필요 영역은 건강검진, 질병치료 등 보건의료 지원서비스(3.32)였다. 다음으로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등 비자 관련정보(3.30), 한국 법, 문화 등 한국사회 관련 정보(3.28) 순이었다. 50대가 가장 필요한 정책 또는 1순위 정책 필요 영역은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등 비자 관련정보(3.30)였다. 다음으로 건강검진, 질병치료 등 보건의료 지원서비스(3.32), 한국 법, 문화 등 한국사회 관련 정보(3.28) 순이었다. 60대 이상이 가장 필요한 정책 또는 1순위 정책 필요 영역은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등 비자 관련정보(3.10)였다. 다음으로 한국 법, 문화 등 한국사회 관련 정보(3.06), 일자리 정보, 상담, 알선 관련 서비스(3.03) 순이었다.

## ② 체류기간별 정책필요도

〈표 8-31〉 체류기간별 정책필요도

체류기간 정책구분	1년 미만	1년 미만	1~2년 미만	1~2년 미만	2~3년 미만	2~3년 미만	3~4년 미만	3~4년 미만	4~5년 미만	4~5년 미만	5~10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10년 이상
방문교육	2.91	24	3.12	17	2.97	21	3.02	13	3.27	9	3.29	8	3.32	6
집체교육	3.29	12	3.08	20	3.05	17	3.05	12	3.26	14	3.27	10	3.35	3
통번역	3.21	15	3.14	15	3.12	15	2.93	18	3.27	9	3.10	19	3.28	8

##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평가 및 추진과제 발굴 연구」

민원신청시 -외국어 서비스	3.38	7	3.28	10	3.22	9	3.18	1	3.27	9	3.17	16	3.25	9
한국사회 관련정보	3.31	10	3.38	5	3.31	3	3.18	1	3.36	4	3.37	3	3.35	3
비자관련 정보	3.49	4	3.48	1	3.39	2	3.14	4	3.43	1	3.38	2	3.39	1
생활정보	3.65	1	3.43	3	3.29	4	3.07	9	3.31	8	3.36	4	3.34	5
임신, 출산	3.16	17	3.06	21	3.05	17	3.06	11	3.27	9	3.16	17	3.14	20
자녀교육, 자녀학습지원 원	3.34	8	3.09	18	3.14	14	3.11	6	3.26	14	3.22	13	3.31	7
가족문제 상담	3.24	14	3.02	23	2.94	23	2.92	19	3.11	21	3.05	22	3.15	17
일자리 정보, 상담, 알선서비스	3.31	10	3.39	4	3.22	9	3.15	3	3.37	3	3.31	6	3.24	10
취업, 직업교육	3.21	15	3.34	8	3.23	8	3.07	9	3.27	9	3.32	5	3.24	10
직장에서 애로사항 상담	3.28	13	3.25	12	3.20	11	3.10	8	3.33	6	3.24	12	3.17	16
농촌정책 지원서비스	3.07	21	2.88	24	2.92	24	2.61	24	2.84	24	2.93	24	2.90	24
출신국가별 차종도입지 원사업	2.94	23	3.09	18	2.99	20	2.88	20	3.13	19	3.07	21	3.13	21
한국주민 네트워크, 교류활동	3.15	18	3.20	14	3.09	16	2.80	21	3.11	21	3.10	19	3.12	22
사회참여 지원프로그램	3.15	18	3.13	16	3.05	17	2.73	23	3.13	19	3.14	18	3.15	17
관청 정책결정 참여과정	2.97	22	3.06	21	2.96	22	2.75	22	3.09	23	3.05	22	2.98	23
보건의료 지원서비스	3.44	6	3.46	2	3.49	1	3.12	5	3.41	2	3.40	1	3.37	2
기초 법질서 교육	3.32	9	3.28	10	3.16	12	3.02	13	3.20	17	3.21	14	3.22	13
생활안전교 육	3.09	20	3.25	12	3.25	7	3.00	15	3.19	18	3.2	15	3.15	17
차별, 예방, 신고, 시정조치	3.55	3	3.38	5	3.15	13	3.00	15	3.25	16	3.27	10	3.20	15
폭력피해 예방, 신고, 피해보상	3.59	2	3.34	8	3.26	6	3.11	6	3.34	5	3.30	7	3.24	10
범죄피해 신고, 보상	3.47	5	3.35	7	3.28	5	2.98	17	3.33	6	3.28	9	3.22	13

정책대상집단(결혼이민자, 이민배경자녀,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재외동포)의 체류자격을 1년 미만, 1~2년 미만, 2~3년 미만, 3~4년 미만, 4~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으로 재분류 하였다. 이렇게 재분류 된 체류자격에 따른 정책 필요도에 대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년 미만인 정책 대상집단의 1순위 정책 필요 영역은 한국 법, 문화 등 한국사회 관련 정보(3.65)였고, 2순위는 폭력피해의 예방, 신고, 구제, 피해보상(3.59), 3순위는 차별의 예방, 신고, 시정조치(3.55)였다. 1~2년 미만인 정책대상집단의 1순위 정책 필요 영역은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등 비자 관련정보(3.48)였고, 2순위는 건강검진, 질병치료 등 보건의료 지원서비스(3.46), 3순위는 한국 법, 문화 등 한국사회 관련 정보(3.43)였다. 2~3년 미만인 정책대상집단의 1순위 정책 필요 영역은 건강검진, 질병치료 등 보건의료 지원서비스(3.49)였고, 2순위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등 비자 관련정보(3.39), 3순위는 한국 법, 문화 등 한국사회 관련 정보(3.31)였다. 3~4년 미만인 정책대상집단의 1순위 정책 필요 영역은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증 등 민원서류 신청 할 때 외국어서비스(3.18)와 한국 법, 문화 등 한국사회 관련 정보(3.18)였다. 3순위는 일자리 정보, 상담, 알선 관련 서비스(3.15)였다. 4~5년 미만인 정책대상집단의 1순위 정책 필요 영역은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등 비자 관련정보(3.43)였고, 2순위는 건강검진, 질병치료 등 보건의료 지원서비스(3.41), 3순위는 일자리 정보, 상담, 알선 관련 서비스(3.37)였다. 5~10년 미만인 정책대상집단의 1순위 정책 필요 영역은 건강검진, 질병치료 등 보건의료 지원서비스(3.40)였고, 2순위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등 비자 관련정보(3.38)였고, 3순위는 한국 법, 문화 등 한국사회 관련 정보(3.37)였다. 10년 이상인 정책대상집단의 1순위 정책 필요 영역은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등 비자 관련정보(3.39)였고, 2순위는 건강검진, 질병치료 등 보건의료 지원서비스(3.37), 3순위는 한국 법, 문화 등 한국사회 관련 정보(3.35)였다.

### **(3) 출신국가별 정책필요도**

〈표 8-32〉 출신국가별 정책필요도

출신국가 정책구분	네팔	우선 순위	대만	우선 순위	러시 아	우선 순위	몽골	우선 순위	미국	우선 순위
방문교육	2.78	16	3.00	14	3.63	1	3.53	2	2.22	23
집체교육	2.50	23	3.18	3	3.53	4	3.40	3	2.75	9
통번역	2.63	21	2.94	17	3.52	5	3.38	6	2.84	6
민원신청시-외국어서비스	3.13	8	3.24	2	3.50	13	3.20	13	3.12	3
한국사회관련정보	3.00	13	3.18	3	3.52	5	3.33	8	3.00	4
비자관련정보	3.40	1	3.44	1	3.52	5	3.38	6	3.33	1
생활정보	3.10	12	3.12	7	3.52	5	3.54	1	3.00	4
임신, 출산	2.78	16	3.00	14	3.50	13	2.93	23	2.50	17
자녀교육, 자녀학습지원	3.11	9	2.94	17	3.57	2	3.00	21	2.59	16
가족문제 상담	2.89	15	2.80	21	3.26	20	3.21	12	2.46	19
일자리 정보, 상담, 알선서비스	3.25	4	3.07	10	3.39	18	3.20	13	2.75	9
취업, 직업교육	3.25	4	3.18	3	3.39	18	3.33	8	2.48	18
직장에서 애로사항 상담	3.11	9	3.00	14	3.45	16	3.27	10	2.67	15
농촌정책 지원서비스	2.44	24	2.63	23	3.09	24	2.93	23	2.08	24
출신국가별 자조모임지원사업	2.67	20	2.75	22	3.40	17	3.00	21	2.43	21
한국주민 네트워크, 교류활동	2.78	16	3.06	11	3.22	21	3.20	13	2.68	14
사회참여 지원프로그램	3.11	9	3.12	7	3.13	22	3.40	3	2.46	19
관청 정책결정 참여과정	3.00	13	2.59	24	3.13	22	3.20	13	2.30	22
보건의료 지원서비스	3.22	6	3.12	7	3.52	5	3.40	3	3.15	2
기초 법질서 교육	3.22	6	3.06	11	3.48	15	3.20	13	2.69	13
생활안전교육	3.33	3	3.18	3	3.52	5	3.07	20	2.72	12
차별, 예방, 신고, 시정조치	2.75	19	2.88	19	3.52	5	3.27	10	2.84	6
폭력피해 예방, 신고, 피해보상	2.63	21	3.06	11	3.55	3	3.2	13	2.75	9
범죄피해 신고, 보상	3.38	2	2.88	19	3.52	5	3.2	13	2.84	6

〈표 8-33〉 출신국가별 정책필요도

출신국가 정책구분	미얀 마	우선 순위	방글 라데 시	우선 순위	베트 남	우선 순위	스리 랑카	우선 순위	우즈 벡	우선 순위
방문교육	3.00	16	3.00	11	3.42	9	2.5	24	3.58	12
집체교육	3.60	3	3.50	8	3.38	13	3.00	8	3.65	6
통번역	3.60	3	2.00	22	3.32	18	3.50	1	3.79	1
민원신청시-외국어서비스	3.80	1	4.00	1	3.49	1	3.50	1	3.62	10
한국사회관련정보	3.40	10	3.75	3	3.46	3	3.50	1	3.73	2
비자관련정보	3.60	3	3.00	11	3.46	3	3.50	1	3.69	5
생활정보	3.80	1	3.00	11	3.43	8	3.50	1	3.62	10
임신, 출산	2.75	21	2.00	22	3.45	6	3.50	1	3.46	20
자녀교육, 자녀학습지원	2.75	21	2.67	18	3.44	7	3.50	1	3.57	14
가족문제 상담	3.00	16	2.5	20	3.38	13	3.00	8	3.32	24
일자리 정보, 상담, 일선서비스	3.25	12	3.67	4	3.42	9	3.00	8	3.72	3
취업, 직업교육	3.25	12	3.00	11	3.47	2	3.00	8	3.71	4
직장에서 애로사항 상담	3.25	12	3.67	4	3.41	12	3.00	8	3.64	7
농촌정착 지원서비스	2.50	24	2.50	20	3.10	24	3.00	8	3.44	22
출신국가별 자조모임지원사업	2.75	21	3.00	11	3.35	17	3.00	8	3.48	18
한국주민 네트워크, 교류활동	3.50	6	3.50	8	3.21	22	3.00	8	3.52	16
사회참여 지원프로그램	3.00	16	3.25	10	3.24	21	3.00	8	3.63	9
관청 정책결정 참여과정	3.00	16	2.00	22	3.11	23	3.00	8	3.50	17
보건의료 지원서비스	3.40	10	3.67	4	3.46	3	3.00	8	3.64	7
기초 법질서 교육	3.50	6	4.00	1	3.31	19	3.00	8	3.48	18
생활안전교육	3.00	16	3.67	4	3.26	20	3.00	8	3.58	12
차별, 예방, 신고, 시정조치	3.50	6	3.00	11	3.42	9	3.00	8	3.35	23
폭력피해 예방, 신고, 피해보상	3.50	6	2.67	18	3.38	13	3.00	8	3.54	15
범죄피해 신고, 보상	3.25	12	3.00	11	3.37	16	3.00	8	3.46	20

〈표 8-34〉 출신국가별 정책필요도

출신국가 정책구분	일본	우선 순위	중국	우선 순위	캄보 디아	우선 순위	캐나 다	우선 순위	태국	우선 순위
방문교육	3.11	17	3.21	11	3.29	16	2.00	24	3.62	2
집체교육	3.45	3	3.16	14	3.43	11	2.43	17	3.47	10
통번역	3.30	10	3.01	20	3.57	3	2.88	8	3.60	3
민원신청시-외국어서비스	3.43	4	3.09	17	3.62	1	3.00	5	3.47	10
한국사회관련정보	3.17	16	3.34	3	3.52	4	2.75	11	3.53	4
비자관련정보	3.43	4	3.36	2	3.62	1	2.88	8	3.48	7
생활정보	3.26	13	3.34	3	3.48	6	3.13	3	3.48	7
임신, 출산	3.38	6	3.03	18	3.33	15	2.33	21	3.38	19
자녀교육, 자녀학습지원	3.52	1	3.22	10	3.48	6	2.40	20	3.32	21
가족문제 상담	3.19	15	2.92	23	3.29	16	2.20	22	3.45	13
일자리 정보, 상담, 알선서비스	3.48	2	3.27	7	3.43	11	2.57	15	3.43	14
취업, 직업교육	3.30	10	3.24	9	3.48	6	2.43	17	3.67	1
직장에서 애로사항 상담	3.32	9	3.14	15	3.42	13	2.86	10	3.50	6
농촌정책 지원서비스	2.70	23	2.84	24	2.89	24	2.20	22	3.24	24
출신국가별 자조모임지원사업	2.91	20	2.95	22	3.06	23	2.43	17	3.43	14
한국주민 네트워크, 교류활동	2.95	18	3.11	16	3.21	18	2.63	14	3.41	17
사회참여 지원프로그램	2.80	22	3.02	19	3.21	18	2.71	13	3.43	14
관청 정책결정 참여과정	2.57	24	2.98	21	3.11	22	2.50	16	3.30	22
보건의료 지원서비스	3.36	8	3.38	1	3.45	10	3.25	1	3.52	5
기초 법질서 교육	2.86	21	3.21	11	3.35	14	3.00	5	3.47	10
생활안전교육	2.95	18	3.18	13	3.20	20	2.75	11	3.39	18
차별, 예방, 신고, 시정조치	3.21	14	3.26	8	3.20	20	3.14	2	3.28	23
폭력피해 예방, 신고, 피해보상	3.37	7	3.33	5	3.50	5	3.13	3	3.48	7
범죄피해 신고, 보상	3.30	10	3.29	6	3.47	9	3.00	5	3.34	20

〈표 8-35〉 출신국가별 정책필요도

출신국가 정책구분	파키 스탄	우선 순위	필리 핀	우선 순위	한국	우선 순위	기타	우선 순위	조선 족	우선 순위
방문교육	3.25	16	3.38	4	3.28	11	3.11	13	2.88	18
집체교육	3.63	2	3.27	14	3.22	18	3.18	9	2.88	18
통번역	3.38	11	3.37	5	3.21	19	3.17	10	2.75	23
민원신청시-외국어서비스	3.14	19	3.34	9	3.47	3	3.31	5	2.96	13
한국사회관련정보	3.56	6	3.37	5	3.24	14	3.15	12	3.24	2
비자관련정보	3.22	18	3.37	5	3.52	2	3.43	2	3.30	1
생활정보	3.44	9	3.46	1	3.33	7	3.26	7	3.19	5
임신, 출산	3.57	4	3.35	8	3.37	4	2.82	23	2.94	15
자녀교육, 자녀학습지원	3.38	11	3.43	2	3.53	1	3.00	16	2.96	13
가족문제 상담	2.67	23	3.21	17	3.35	5	2.93	20	2.80	21
일자리 정보, 상담, 알선서비스	3.33	13	3.26	16	3.24	14	3.47	1	3.19	5
취업, 직업교육	2.89	22	3.14	20	3.3	10	3.17	10	3.14	9
직장에서 애로사항 상담	3.11	21	3.06	21	3.25	13	3.4	3	3.09	10
농촌정책 지원서비스	2.67	23	2.81	24	2.94	24	2.85	22	2.71	24
출신국가별 자조모임지원사업	3.29	15	3.19	18	3.24	14	2.92	21	2.77	22
한국주민 네트워크, 교류활동	3.25	16	2.92	23	3.26	12	3.33	4	2.93	16
사회참여 지원프로그램	3.13	20	3.03	22	3.20	20	2.94	19	2.89	17
관청 정책결정 참여과정	3.43	10	3.19	18	3.00	23	2.74	24	2.82	20
보건의료 지원서비스	3.50	7	3.42	3	3.33	7	3.30	6	3.23	3
기초 법질서 교육	3.33	13	3.27	14	3.35	5	3.10	14	3.05	12
생활안전교육	3.57	4	3.28	12	3.33	7	2.97	18	3.06	11
차별, 예방, 신고, 시정조치	3.50	7	3.28	12	3.15	22	3.10	14	3.16	8
폭력피해 예방, 신고, 피해보상	3.63	2	3.30	11	3.24	14	3.00	16	3.21	4
범죄피해 신고, 보상	3.86	1	3.31	10	3.17	21	3.21	8	3.18	7

정책대상집단(결혼이민자, 이민배경자녀,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재외동포)의 출신국가는 네팔, 대만, 러시아, 몽골, 미국,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벡,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조선족, 캄보디아, 캐나다, 키리키즈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기타로 분류 하였다. 인도네시아, 스리랑카와 키리키즈스탄의 경

우 케이스가 부족하여 정책 필요도에 대한 교차분석이 불가능하였다. 앞서 살펴본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의 외국인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역별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출신국가는 중국 한족, 조선족, 베트남, 우즈백, 필리핀, 캄보디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 한족, 조선족, 베트남, 우즈백, 필리핀, 캄보디아 중심으로 정책 필요도에 대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중국 한족의 1순위 정책 필요 영역은 건강검진, 질병치료 등 보건의료 지원서비스(3.38)였고, 2순위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등 비자 관련정보(3.36), 3순위는 한국 법, 문화 등 한국사회 관련 정보(3.34)였다. 조선족의 1순위 정책 필요 영역은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등 비자 관련정보(3.30), 2순위는 한국 법, 문화 등 한국사회 관련 정보(3.24), 3순위는 보건의료 지원서비스(3.23)였다. 베트남의 1순위 정책 필요 영역은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증 등 민원서류 신청 할 때 외국어서비스(3.49), 2순위는 취업교육, 직업교육(3.47)였고, 3순위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등 비자 관련정보(3.46), 3순위는 한국 법, 문화 등 한국사회 관련 정보(3.46)였다. 우즈백의 1순위 정책 필요 영역은 통번역서비스(3.79), 2순위는 한국 법, 문화 등 한국사회 관련 정보(3.73)였고, 3순위는 일자리 정보, 상담, 알선 관련 서비스(3.72)였다. 필리핀의 1순위 정책 필요 영역은 한국 법, 문화 등 한국사회 관련 정보(3.46)였고, 2순위는 자녀 교육, 자녀 학습지원(3.43). 3순위는 건강검진, 질병치료 등 보건의료 지원서비스(3.42)였다. 캄보디아의 1순위 정책 필요 영역은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증 등 민원서류 신청 할 때 외국어서비스(3.62)와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등 비자 관련정보(3.62)였고, 3순위는 통번역서비스(3.57)였다.

#### (4) 체류자격별 정책 필요도

〈표 8-36〉 체류자격별 정책필요도

체류자격 정책구분	예술 학술	순위	유학 연수	순위	전문	순위	비전문	순위	거주	순위
방문교육	3.42	8	3.17	13	2.79	22	3.14	13	3.38	2
집체교육	3.25	12	3.14	16	3.07	12	2.91	19	3.29	4
통번역	3.46	5	3.17	13	3.13	11	3.18	11	3.13	17
민원신청시- 외국어서비스	3.17	15	3.34	5	3.43	2	3.23	7	3.26	11

한국사회관련정보	3.21	14	3.28	10	3.28	5	3.32	1	3.28	6
비자관련정보	3.29	11	3.41	1	3.49	1	3.26	3	3.28	6
생활정보	3.69	1	3.36	2	3.35	3	3.19	9	3.27	9
임신, 출산	3.00	19	2.91	22	2.80	20	2.79	20	2.97	23
자녀교육 자녀학습지원	3.10	17	3.04	18	2.87	18	2.76	22	3.06	21
가족문제 상담	2.38	23	2.99	20	2.89	17	2.96	16	2.97	23
일자리 정보, 상담, 알선서비스	3.17	15	3.32	7	3.17	10	3.19	9	3.28	6
취업, 직업교육	3.25	12	3.29	9	3.05	14	2.96	16	3.31	3
직장에서 애로사항 상담	3.00	19	3.20	12	3.19	9	3.28	2	3.27	9
농촌정책 지원서비스	2.33	24	2.91	22	2.66	24	2.54	24	3.05	22
출신국가별 자조모임지원사업	3.33	10	2.95	21	2.79	22	3.12	14	3.14	15
한국주민 네트워크, 교류활동	3.00	19	3.10	17	3.07	12	2.92	18	3.13	17
사회참여 지원프로그램	3.08	18	3.04	18	2.87	18	2.79	20	3.11	19
관청 정책결정 참여과정	2.90	22	2.86	24	2.80	20	2.70	23	3.11	19
보건의료 지원서비스	3.58	3	3.32	7	3.30	4	3.24	5	3.43	1
기초 법질서 교육	3.55	4	3.21	11	2.91	16	3.24	5	3.21	14
생활안전교육	3.64	2	3.17	13	2.93	15	3.20	8	3.23	13
차별, 예방, 신고, 시정조치	3.38	9	3.34	5	3.27	6	3.09	15	3.14	15
폭력피해 예방, 신고, 피해보상	3.45	6	3.36	2	3.25	8	3.17	12	3.29	4
범죄피해 신고, 보상	3.45	6	3.35	4	3.27	6	3.26	3	3.24	12

체류자격은 예술학술 등(D-1, D-3, D-5~D-10), 유학연수(D-2, D-4), 전문외국인력(E-1~E-7), 비전문외국인근로자(E-9~10, H-2),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기타(F-1, F-3, 기타)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와 정책 필요도에 대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예술학술 집단의 1순위 정책 필요 영역은 한국 법, 문화 등 한국사회 관련 정보(3.69), 2순위는 화재예방 등 생활안전교육(3.64), 3순위는 건강검진, 질병치료 등 보건의료 지원서비스(3.58)였다. 유학연수 집단의 1순위 정책 필요 영역은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등 비자 관련정보(3.41)였고, 2순위는 한국 법, 문화 등 한국사회 관련 정보(3.36), 폭력피해의 예방, 신고, 구제, 피해보상(3.36)였다. 전문외국인력 집단의 1순위 정책 필요 영역은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등 비자 관련정보(3.49)였고,

2순위는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증 등 민원서류 신청 할 때 외국어서비스(3.43), 3순위는 한국 법, 문화 등 한국사회 관련 정보(3.35)였다. 비전문외국인근로자(E-9~10, H-2) 집단의 1순위 정책 필요 영역은 한국 법, 문화 등 한국사회 관련 정보(3.22), 2순위는 건강검진, 질병치료 등 보건의료 지원서비스(3.19), 3순위는 체류 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등 비자 관련정보(3.19)였다. 거주(F-2) 집단의 1순위 정책 필요 영역은 건강검진, 질병치료 등 보건의료 지원서비스(3.43), 2순위는 한국어 방문교육(3.38), 3순위는 취업교육, 직업교육(3.31)였다. 재외동포 집단의 1순위 정책 필요 영역은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등 비자 관련정보(3.20)였고, 2순위는 건강검진, 질병치료 등 보건의료 지원서비스(3.17), 3순위는 한국 법, 문화 등 한국사회 관련 정보(3.13)였다. 영주권 집단의 1순위 정책 필요 영역은 건강검진, 질병치료 등 보건의료 지원서비스(3.48), 2순위는 폭력피해의 예방, 신고, 구제, 피해보상(3.43), 3순위는 한국 법, 문화 등 한국사회 관련 정보(3.39)였다. 결혼이민자 집단의 1순위 정책 필요 영역은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등 비자 관련정보(3.48), 2순위는 자녀 교육, 자녀 학습지원(3.47), 3순위는 건강검진, 질병치료 등 보건의료 지원서비스(3.46)였다. 방문취업 집단의 1순위 정책 영역은 건강검진, 질병치료 등 보건의료 지원서비스(3.13), 2순위는 한국 법, 문화 등 한국사회 관련 정보(3.12), 3순위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등 비자 관련정보(3.11)였다. 기타(F-1, F-3, 그밖의 비자) 집단의 1순위 정책 필요 영역은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등 비자 관련정보(3.44)였고, 2순위는 한국 법, 문화 등 한국사회 관련 정보(3.37), 3순위는 건강검진, 질병치료 등 보건의료 지원서비스(3.32), 취업교육, 직업교육(3.32)였다.

### 3. 지역별 매트릭스 분석: 이민자 유형+정책 필요도

본 장에서는 지역별로 이민자 유형(연령, 체류기간, 출신국가, 체류자격)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와 이민자 유형(연령, 체류기간, 출신국가, 체류자격)에 따른 정책 필요도를 분석한 결과를 매트릭스로 배치하여 지역과 이민자 유형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 필요도를 살펴보았다. 즉, 이민자 유형과 정책 필요도에 따른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려 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지역별 매트릭스 분석: 연령+정책 필요도

〈표 8-37〉 지역+연령별 정책필요도

지 역	연령 비율 1순위~3순위	연령별 정책 필요도 1순위, 2순위
서 울	1순위: 20대(21%) 2순위: 50대(20.1%) 3순위: 30대(19.5%)	
부 산	1순위: 20대(37%) 2순위: 30대(27.2%) 3순위: 40대(13.3%)	
인 천	1순위: 30대(29.3%) 2순위: 20대(19%) 3순위: 40대(16.3%)	
대 구	1순위: 20대(30.4%) 2순위: 30대(30.2%) 3순위: 40대(15.1%)	
광 주	1순위: 20대(36.5%) 2순위: 30대(26.2%) 3순위: 40대(13.7%)	
울 산	1순위: 30대(28%) 2순위: 20대(20.1%) 3순위: 40대(1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대: 비자 관련정보, 생활정보</li> <li>• 30대: 보건의료 지원서비스, 비자 관련정보</li> <li>• 40대: 보건의료 지원서비스, 비자 관련정보</li> <li>• 50대: 비자 관련정보, 보건의료 지원서비스</li> </ul>
세종	1순위: 30대(27.5%) 2순위: 20대(26.3%) 3순위: 40대(15.7%)	
경 기	1순위: 30대(28%) 2순위: 20대(19.2%) 3순위: 50대(16.9%)	
충 북	1순위: 20대(28.3%) 2순위: 30대(28.2%) 3순위: 40대(15.4%)	
충 남	1순위: 30대(29.4%) 2순위: 20대(26.9%) 3순위: 40대(16.6%)	
전 북	1순위: 20대(37.8%) 2순위: 30대(25.9%) 3순위: 40대(12%)	
전 남	1순위: 20대(34.4%) 2순위: 30대(29.7%) 3순위: 40대(14.5%)	
경 북	1순위: 20대(35.3%) 2순위: 30대(31.6%) 3순위: 40대(13.4%)	

경 남	1순위: 30대(36.1%) 2순위: 20대(27%) 3순위: 40대(16%)
제 주	1순위: 20대(28.6%) 2순위: 30대(28.2%) 3순위: 40대(16.3%)

지역별(시도)로 가장 많은 연령대를 파악하고, 이러한 연령대에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동시에 고려하려 한다. 지역별로 살펴본 연령과 정책 필요도는 다음과 같다.

각 시도별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는 연령대는 20대 또는 30대였으며, 다음으로 높은 비율은 40대였다. 서울만 특이하게 50대의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높게 나왔다. 이러한 연령대(20대, 30대, 40대, 50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이민정책 영역은 20대를 제외하고 유사하게 도출 되었다. 20대의 경우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등 비자 관련정보, 다음으로 외국인등록 등 민원접수, 편의시설 등과 관련된 생활정보였다. 30대가 가장 필요한 정책 영역은 건강검진, 질병치료 등 보건의료 지원서비스, 다음으로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등 비자 관련정보였다. 40대가 가장 필요한 정책 영역은 건강검진, 질병치료 등 보건의료 지원서비스, 다음으로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등 비자 관련정보였다. 50대가 가장 필요한 정책 영역은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등 비자 관련정보, 다음으로 건강검진, 질병치료 등 보건의료 지원서비스였다. 시도에 상관없이 이민정책은 20대부터 50대까지를 고려해야 하며, 동시에 이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 영역인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등 비자 관련정보, 건강검진, 질병치료 등 보건의료 지원서비스 영역에 초점을 맞춘 이민정책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시도별 2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은 부산, 광주, 전북, 전남이었다. 30대부터 50대까지의 이민자들뿐만 아니라 20대를 좀 더 고려한 이민정책이 이들 지역에서는 필요해 보인다. 즉, 외국인등록 등 민원 접수, 편의시설 등과 관련된 생활정보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이민정책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해 보인다.

## 2) 지역별 매트릭스 분석: 체류기간+정책 필요도

〈표 8-38〉 지역+체류기간 정책필요도

지 역	체류기간 비율 1순위~3순위	체류기간별 정책 필요도 1순위, 2순위
서 울	1순위: 5~10년 미만(22.2%) 2순위: 1년 미만(19.4%) 3순위: 2~3년 미만(18%)	
부 산	1순위: 1년 미만(24%) 2순위: 5~10년 미만(18.7%) 3순위: 1~2년 미만(15.8%)	
인 천	1순위: 5~10년 미만(21.5%) 2순위: 1년 미만(18.7%) 3순위: 2~3년 미만(15.7%)	
대 구	1순위: 5~10년 미만(21.4%) 2순위: 1년 미만(19.3%) 3순위: 1~2년 미만(14.8%)	
광 주	1순위: 1년 미만(25%) 2순위: 5~10년 미만(17.4%) 3순위: 1~2년 미만(17.3%)	
울 산	1순위: 5~10년 미만(22.4%) 2순위: 2~3년 미만(17.5%) 3순위: 1년 미만(1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년 미만: 생활정보, 폭력피해의 예방, 신고, 구제, 피해보상</li> </ul>
세 종	1순위: 1년 미만(24.2%) 2순위: 5~10년 미만(18.6%) 3순위: 2~3년 미만(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년 미만: 비자 관련정보, 보건의료 지원서비스</li> </ul>
경 기	1순위: 5~10년 미만(20.6%) 2순위: 1년 미만(18.7%) 3순위: 2~3년 미만(1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3년 미만: 보건의료 지원서비스, 비자 관련정보</li> </ul>
충 북	1순위: 1년 미만(21.5%) 2순위: 2~3년 미만(17.7%) 3순위: 5~10년 미만(1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10년 미만: 보건의료 지원서비스, 비자 관련정보</li> </ul>
충 남	1순위: 1년 미만(21.4%) 2순위: 5~10년 미만(18.4%) 3순위: 2~3년 미만(17.9%)	
전 북	1순위: 1년 미만(22.9%) 2순위: 5~10년 미만(17.5%) 3순위: 2~3년 미만(16.4%)	
전 남	1순위: 1년 미만(21.2%) 2순위: 5~10년 미만(18.6%) 3순위: 2~3년 미만(17.4%)	
경 북	1순위: 1년 미만(21.3%) 2순위: 5~10년 미만(19%) 3순위: 1~2년 미만(16.4%)	

경 남	1순위: 5~10년 미만(19.7%) 2순위: 1년 미만(19.3%) 3순위: 2~3년 미만(17.1%)
제 주	1순위: 1년 미만(26.9%) 2순위: 1~2년 미만(17.4%) 3순위: 2~3년 미만(16%)

지역별(시도)로 거주하는 외국인 중 체류기간의 분포를 파악하고, 이들이 체류기간에 따라서 어떤 정책을 필요로 하는지 동시에 고려하려 한다. 지역별로 살펴본 체류기간 분포와 정책 필요도는 다음과 같다.

각 시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다수는 10년 미만을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시도별로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1년 미만, 1~2년 미만, 2~3년 미만, 5~10년 미만의 체류기간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시도에 비해 제주도만 5년 미만의 체류 외국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의 외국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이민정책 영역을 제외하고 1~2년 미만, 2~3년 미만, 5~10년 미만의 외국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 영역은 유사하게 도출되었다. 체류기간이 1~2년 미만의 외국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이민정책 영역은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등 비자 관련정보, 다음으로 건강검진, 질병치료 등 보건의료 지원서비스였다. 체류기간이 2~3년, 5~10년인 외국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이민정책 영역은 건강검진, 질병치료 등 보건의료 지원서비스와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등 비자 관련정보였다. 그러나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인 외국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 영역은 외국인등록 등 민원접수, 편의시설 등과 관련된 생활정보, 다음으로 폭력피해의 예방, 신고, 구제, 피해보상이다.

시도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10년 미만의 체류기간을 고려한 이민정책이 필요하다. 다수의 외국인의 체류기간이 10년 미만이기 때문이다. 체류기간이 10년 미만인 외국인을 위해서는 건강검진, 질병치료 등 보건의료 지원서비스와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등 비자 관련정보에 초점을 맞춘 이민정책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인 외국인의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지역은 부산, 광주,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였다. 이를 지역에서는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의 외국인을 위한 이민정책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즉, 체류

기간이 1년 미만인 외국인을 위해 외국인등록 등 민원접수, 편의시설 등과 관련된 생활정보와 폭력피해의 예방, 신고, 구제, 피해보상에 초점을 맞춘 이민정책의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하다.

### 3) 지역별 매트릭스 분석: 출신국가+정책 필요도

〈표 8-39〉 지역+출신국가 정책필요도

지 역	출신국가 비율 (10% 이상)	출신국가별 정책 필요도 1순위, 2순위
서 울	1순위: 조선족(49.1%) 2순위: 중국한족(27%)	
부 산	1순위: 중국한족(27.3%) 2순위: 베트남(25.6%)	
인 천	1순위: 조선족(29.5%) 2순위: 중국한족(19.7%) 3순위: 베트남(12.5%)	
대 구	1순위: 베트남(25.6%) 2순위: 중국한족(20.7%)	
광 주	1순위: 중국한족(25.4%) 2순위: 베트남(22.3%) 3순위: 우즈벡(1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선족: 비자 관련정보, 한국사회 관련정보</li> </ul>
울 산	1순위: 조선족(30.7%) 2순위: 베트남(19.5%) 3순위: 중국한족(1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한족: 보건의료 지원서비스, 비자 관련정보</li> </ul>
세 종	1순위: 조선족(22.5%) 2순위: 중국한족(20.5%) 3순위: 베트남(1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베트남: 외국어 서비스, 취업교육, 직업교육</li> </ul>
경 기	1순위: 조선족(40.7%) 2순위: 중국(1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캄보디아: 외국어 서비스, 비자 관련정보</li> </ul>
충 북	1순위: 조선족(18.1%) 2순위: 베트남(17.4%) 3순위: 중국한족(1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즈벡: 통번역 서비스, 한국사회 관련정보</li> </ul>
충 남	1순위: 조선족(21.8%) 2순위: 베트남(17.2%) 3순위: 중국한족(15.1%)	
전 북	1순위: 베트남(28.9%) 2순위: 중국한족(21.6%)	
전 남	1순위: 베트남(30.1%) 2순위: 중국(12.5%) 3순위: 캄보디아(10.1%)	

경 북	1순위: 베트남(32.4%) 2순위: 중국한족(12.8%)	
경 남	1순위: 베트남(27%) 2순위: 중국한족(10.2%)	
제 주	1순위: 중국한족(48.3%) 2순위: 베트남(13.6%)	

지역별(시도)로 거주하는 외국인 중 출신국가의 분포를 파악하고, 출신국가에 따라서 어떤 정책을 필요로 하는지 함께 고려하려 한다. 이때 출신국가의 분포는 시도별 10% 이상인 출신국가만을 고려하였고, 이를 출신국가별 정책 필요도를 살펴보았다. 지역별로 출신국가 분포와 정책 필요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조선족이 상대적으로 다른 출신국가의 이민자들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중국 한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조선족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 영역은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등 비자 관련정보와 한국 법, 문화 등 한국사회 관련정보 영역이었다. 중국 한족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 영역은 건강검진, 질병치료 등 보건의료 지원서비스 와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등 비자 관련정보 영역이었다. 따라서 수도권 지역의 시도(서울, 경기, 인천)에서는 이들 지역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중국 출신 이민자를 위해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등 비자 관련정보, 한국 법, 문화 등 한국사회 관련정보, 건강검진, 질병치료 등 보건의료 지원서비스 영역에 초점을 맞춘 이민정책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의 경우 중국 출신뿐만 아니라 베트남 출신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베트남 출신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 영역은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증 등 민원서류 신청 할 때 외국어서비스, 취업교육 및 직업교육 영역이었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는 중국 출신 이민자들이 필요한 정책뿐만 아니라 베트남 출신들이 필요한 정책 영역인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증 등 민원서류 신청 할 때 외국어서비스, 취업교육 및 직업교육 영역도에도 초점을 맞추어 이민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광주에서는 중국, 베트남 출신 다음으로 우즈백 출신의 이민자들의 비율이 높았다. 이는 타 시도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우즈백 출신들의 이민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 영역은 통번역 서비스와 한국 법, 문화 등 한국사회 관련정보였다. 따라서 광주에서는 중국, 베트남 출신 이민자들뿐만 아니라 우즈백 출신 이민자들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통번역 서비스와 한국 법, 문화 등 한국사회 관련정보 영역에 초점을 맞춘 이민정책 수립 및 시행 또한 필요해 보인다. 넷째, 전남의 경우 베트남, 중국한족 출신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 비해 캄보디아 출신의 이민자들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캄보디아 출신 이민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이민정책 영역은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증 등 민원서류 신청 할 때 외국어서비스와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등 비자 관련정보 영역이다. 따라서 전남에서는 베트남, 중국한족 출신들이 필요한 정책 영역과 캄보디아 출신 이민자들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증 등 민원서류 신청 할 때 외국어서비스와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등 비자 관련정보 영역의 이민정책 또한 수립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 4) 지역별 매트릭스 분석: 체류자격+정책 필요도

〈표 8-40〉 지역+체류자격 정책필요도

지 역	체류자격 비율	체류자격별 정책 필요도 1순위, 2순위
서 울	1순위: 외국국적동포(35.5%) 2순위: 비전문취업(19.6%) 3순위: 거주/영주(14.5%)	
부 산	1순위: 교육/연수(26.3%) 2순위: 비전문취업(22.3%) 3순위: 외국국적동포(14.5%)	
인 천	1순위: 비전문취업(29.5%) 2순위: 외국국적동포(28%) 3순위: 거주/영주(15.2%)	
대 구	1순위: 비전문취업(30%) 2순위: 외국국적동포(15.6%) 3순위: 교육/연수(14.5%)	•비전문취업: 한국사회 관련정보, 보건의료 지원서비스
광 주	1순위: 비전문취업(29.5%) 2순위: 교육/연수(19.3%) 3순위: 외국국적동포(15.4%)	•외국국적동포: 비자 관련정보, 보건의료 지원서비스
울 산	1순위: 비전문취업(31.7%) 2순위: 외국국적동포(25.7%) 3순위: 거주/영주(11%)	•교육/연수: 비자 관련정보, 생활정보

세 종	1순위: 비전문취업(34.1%) 2순위: 외국국적동포(21.8%) 3순위: 교육/연수(13.5%)	
경 기	1순위: 비전문취업(39.1%) 2순위: 외국국적동포(29.7%) 3순위: 거주/영주(11.9%)	
충 북	1순위: 비전문취업(42.5%) 2순위: 외국국적동포(22.9%) 3순위: 교육/연수(9.1%)	
충 남	1순위: 비전문취업(41%) 2순위: 외국국적동포(25.1%) 3순위: 교육/연수(8.8%)	• 거주/영주: 보건의료 지원서비스, 한국어 방문교육
전 북	1순위: 비전문취업(29.9%) 2순위: 교육/연수(20.8%) 3순위: 결혼이민자(15.1%)	• 결혼이민자: 비자 관련정보, 자녀교육, 자녀학습지원
전 남	1순위: 비전문취업(44%) 2순위: 결혼이민자(17%) 3순위: 방문/동거(11.9%)	
경 북	1순위: 비전문취업(40.5%) 2순위: 교육/연수(16.5%) 3순위: 외국국적동포(13.4%)	• 전문취업: 비자 관련정보, 외국어 서비스
경 남	1순위: 비전문취업(49.3%) 2순위: 외국국적동포(15.3%) 3순위: 결혼이민자(10.1%)	
제 주	1순위: 거주/영주(27.1%) 2순위: 비전문취업(18.8%) 3순위: 전문취업(17.4%)	

지역별(시도)로 거주하는 외국인 중 체류자격의 분포를 파악하고, 체류자격에 따라서 어떤 정책을 필요로 하는지 동시에 고려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본 체류자격 분포와 정책 필요도는 다음과 같다.

지역별 체류자격의 분포와 정책 필요도는 유사점과 차이점이 존재한다. 먼저 유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시도는 비전문취업(E-9, H-2) 자격을 소지한 이민자의 비율이 높았다. 서울, 부산, 제주는 비전문취업 비율이 2번째로 높았지만, 다른 시도는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모든 시도는 비전문취업 자격 소지자의 정책 필요도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 영역은 한국 법, 문화 등 한국사회 관련정보와 건강검진, 질병치료 등 보건의료 지원 서비스 영역이었다. 둘째, 외국국적동포(F-4)의 비율이 높았다. 외국국적동포가 가

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는 시도는 서울이며,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지역은 인천, 대구,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경남이다.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지역은 부산, 광주, 경부이다. 외국국적동포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 영역은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등 비자 관련정보와 건강검진, 질병치료 등 보건의료 지원서비스 영역이다. 따라서 모든 시도에서 공통적으로 비전문취업, 외국국적동포를 위한 이민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즉, 한국 법, 문화 등 한국사회 관련정보, 건강검진, 질병치료 등 보건의료 지원서비스,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등 비자 관련정보 영역에 초점을 맞춘 이민정책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 반대로 각 시도별 차이점이 존재하였고,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연수 (D1~7) 자격을 소지한 이민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시도는 부산, 대구, 광주, 세종, 충북, 충남, 전북, 경북이다. 교육/연수 체류자격 소지자가 가장 필요한 정책 영역은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등 비자 관련정보와 외국인등록 등 민원접수, 편의시설 등과 관련된 생활정보 영역이었다. 따라서 부산, 대구, 광주, 세종, 충북, 충남, 전북, 경북은 비전문취업, 외국국적동포 집단뿐만 아니라 교육/연수 체류자격 소지자가 필요로 하는 정책 영역도 수립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거주/영주 체류자격을 소지한 이민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시도는 서울, 인천, 울산, 경기, 제주이다. 거주/영주 체류자격 소지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 영역은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등 비자 관련정보와 한국어 방문교육 영역이다. 따라서 이들 시도는 비전문취업, 외국국적동포뿐만 아니라 거주/영주(F-2, F-5) 체류자격을 소지한 이민자가 필요로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즉, 한국어 방문교육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정책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다. 셋째, 결혼이민자(F-6) 자격을 소지한 이민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시도는 전북, 전남, 경남이다. 결혼이민자가 가장 필요한 정책 영역은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등 비자 관련정보와 자녀교육 및 자녀학습이다. 따라서 전북, 전남, 경남은 비전문취업과 외국국적동포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가 필요한 정책 영역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즉, 자녀교육 및 자녀학습 영역에 초점을 맞춘 정책 수립과 시행이 필요해 보인다. 넷째, 제주는 다른 시도에 비해 전문취업 (D-8~10/E-1~7/F-3) 체류자격 소지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전문취업 체류자격 소지자들이 가장 필요한 정책 영역은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

변경 등 비자 관련정보와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증 등 민원서류 신청 할 때 외국어서비스 영역이다. 따라서 제주는 비전문취업과 외국국적동포뿐만 아니라 전문취업 체류자격 소지자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즉, 외국어서비스 영역에 초점을 맞춘 이민정책 수립 및 시행 또한 필요해 보인다.

## 제3절 외국인정책 관련 민간단체 면접

### 1. 심층면접 개요

본 연구는 외국인정책 관련 정책대상집단 수요분석의 일환으로 법무부 인증 외국인정책 민간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반구조화된 면접지를 구성하였다(조사지는 부록3 참조). 면접지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피면접 민간단체의 외국인정책 관련 연혁과 현황, 그리고 건의사항 등을 질문하였다. 둘째,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주요 정책목표와 기본계획의 내용을 바탕으로 피면접 민간단체가 중점을 두고 있는 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셋째,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주요 정책목표와 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을 작성할 때 도움이 되는 새로운 정책과제를 제시하도록 요청하였다. 구체적으로 2018년 11월초부터 11월말부터 총 5개 외국인정책 관련 민간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방문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표 8-41〉 면접자 인적사항

연번	성별	소속	직책
1	남	(사) 동포교육지원단	단장
2	여	(사) 건강사회운동본부	실장
3	남	(사) 김해 이주민의 집	대표(외국인)
4	여	(사) 재한외국인사회통합지원센터	국장
5	남	(사) 재한외국인지원협회	회장

## 2. 심층면접의 결과

### 1) 동포교육지원단

#### (1) 단체의 연혁과 사업현황

동포교육지원단은 재외동포(특히, 중국동포와 CIS의 고려인 등)들의 정착과 지원, 체류허가 신청 중심 사회통합관련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 과거(2000년도 이전) 일반외국인 동포들을 포함하여 입국에 있어 폐쇄정책을 시행하였는데 점차 경제성장과 외국인 인력 수요가 맞물리면서 거부반응이 덜한 동포 고려인, 조선족 대상으로 기술교육을 지원하여 동포들이 시설 내에서 최초로 교육한 제도로 동포들의 연착륙과 당시 지원기관 강사 채용 등 일자리 창출에 일정부분 기여를 했다.

지금까지 우리 지원단에서 교육을 받은 이수자가 18만 명 가량 된다. 그리고 지원단에 의해 지정된 학원만 하더라도 이전에는 500여개에 달했다. 지금은 102개로 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 면에서, 동포지원단은 크게 두가지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할 수 있다. 첫째, 6주 연수교육(비용 65만원)을 통해 필터링하는 역할을 하여왔고, 둘째, 교육에 필요한 학원과 강사들, 그리고 브로커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하여 왔다고도 할 수 있다.

최근 2~3년전부터 수요가 줄어들고 있었다. 몇 년간의 교육으로 수요 대부분 들어왔으며, 비취업비자의 확대, 고려인과 조선족의 비자 차별 문제, 기술교육에 대한 부담을 가지면서까지 입국할 이유가 사라지고 있다. 따라서 금년 6월 법무부가 지원단을 폐지를 결정하여 내년 2월 해산이 예정되어 있다. 이 제도로 인한 순기능적 역할이 검증되었고 국내 교육지원기관의 우수 기술이 아직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정관이나 지침을 변경하여 동포를 넘어서 외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과거 여러 차례 시도를 했지만 다른 이민자 문제들로 인해 뒤로 밀렸음).

현재 우리 기관은 준공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사단법인인데 회원의 경우 자영업

자 수준 학원 사업자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이익집단 문제). 만약 외국인교육지원단 식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다면 최소한 재단정도의 수준으로 만들 필요도 있다. 새로운 재단이 불가능 하다면 기존 기관의 본부 형태로 신설되는 방안도 있다. 우리 기관의 경우 8년간 20여명의 직원이 공무원 수준이상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고급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 (2) 외국인정책 관련 제언

첫째, 동포교육지원단은 4. 동포와 함께 공존·발전하는 환경조성 분야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중에서 협력에 바탕한 미래지향적 거버넌스라는 정책목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라는 정책목표 있어 국내적인 문제와 국외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내국적 문제의 경우 외국인을 관리하는 문제에 있어 계절근로자의 비자문제의 경우 법무부가 독자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요 파악 등을 통해 자율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비자문제를 관리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법무부의 경우 전통적인 국경 관리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개별 지자체와 외국지자체와의 자매결연 등 교류협력에 비자 문제에 있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국외적으로는, 일본같이 폐쇄적인 나라도 50만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한다고 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로 힘든 업종군 경우 직업절벽의 상황이다.

둘째, 재외동포에 있어서 원스탑서비스가 필요하다. 노동부, 복지부, 출입국 등 기능이 나뉘져 있어서 매우 불편이 있다. 모든 서비스 지원을 처리할 수 있는 종합행정센터(비자, 교육, 복지, 상담 등)가 만들어져야 한다. 과거 복권기금을 통해 센터를 만드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통과되지 않았다.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이 더욱더 체계화 되어 있어서 이런 종합서비스 측면은 동포들이 오히려 거꾸로 차별받고 있다.

셋째, 현재 있는 상담센터도 전문성이 부족하여 유명무실하다. 사회통합전문가 양성교육이 필요하다. 비자 확대가 아닌 이런 부분이 동포들에 대한 유대강화에 도움된다.

넷째, 현재 3만 명이 비자규제자가 있는데 흉악범, 마약범 등 질 안 좋은 범죄자가 아닌 단순한 불체자, 간단한 경제사범에 대한 비자완화가 필요하긴 한데 현재 기준에서 판단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

다섯째, 현재는 F4로 가는 과도기로 가고 있다고 본다. 결국에는 동포들에 대한 영주권을 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영주권의 경우 중국 등 외국 국가에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는 외교부의 논리이다.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현재 동포의 2가지의 비자체계(H2, F4)를 한가지로 일원화 시켜야 한다. 시행령의 독소조항인 단순노무행위에 대한 규정을 정비(삭제)해야 한다. 현재 외국인노동자는 100만 명의 겹증된 노동시장이다.

여섯째, 시민사회의 경우 국민들이다. 시민단체나 NGO단체만 염두해둔 것은 아닌 것 같다. 시민단체나 NGO 단체의 경우 국가재원을 통해 잘 반영되고 있다. 하지만 막상 근로자들이 일하는 영세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의 경우 형식적 한 두번을 제외하고는 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있는 않는다. 단속만 하고 그에 따른 부족한 인력에 대한 문제는 해결해주고 있지 않아 마비되고 있다. 인증된 우수 중소기업의 요구를 듣고 즉각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 특히 관련된 부처가 법무부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외국인정책 관련하여 총리실 사회정책 수석실이나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리 점검하는 과제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각 부서 별 반대로 인해 절대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법률에 못 둔다면 이를 전담 지휘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 2) 건강사회운동본부

### (1) 단체의 연혁과 사업현황

처음 기관의 설립취지의 경우 이사장님이 치과의사이다. 이 당시 대한치과협회장을 재직하고 있을 당시 광우병 파동으로 큰 집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해 많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었다. 당시 이사장님이 시민의 건강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시민의식이나 시민건강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여 치과협회 간호협회 한의사협회 의사협회 치과위생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들이

모여 건강사회만들기 운동본부를 만들게 되었다. 이때 건강하고 성숙한 시민사회를 만드는 캠페인 목적으로 시작하였다. 나중에 사업이 커지면서 2011년도에 법인화가 되었고 이 당시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 사업, 한마음걷기 축제를 진행하였다. 이 당시 이사장님이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총재를 하고 있었는데 해외지원사업을 진행하였고 이동진료하면서 외국인들 진료뿐만 아니라 인식 개선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주노동자(다문화가정) 의료지원에서 시작되었다. 아시안페스티벌의 경우 처음에 의정부 외국인력지원센터와 함께 했으며 패스티벌에서 본 기관에서는 이동진료 부스를 지원하고 있다. 우리 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중에는 한마음걷기 축제의 경우 내외국인이 3천명이상 참가하는 행사이며 법무부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연 6회 이주노동자 포함 저소득 소외계층 대상 이동 진료를 하고 있다. 교육 사업으로는 사회통합기초질서지키기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매년 정책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다문화 가정이나 이주근로자 관련 토론회 등 그 해당 연도 이슈에 포커싱을 맞춰 진행하고 있다.

한마음걷기축제의 경우 시민들의 선호 및 반응도 좋고 의미있는 사업이 되면서 2~3회부터 공동주최로 진행하였다. 현재 이 축제의 경우 예산이 1억 3~5천이 소요되는데 현재는 전액 법무부에서 지원받고 있으며 공동주최로 진행하고 있다. 외국인의 참여 비율은 천여명이며 서울 경기권 중심 수도권 외국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 (2) 외국인정책 관련 제언

첫째, 건강사회본부는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와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를 주요 정책목표로 생각한다. 건강사회운동본부의 경우 법, 질서의 강화를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안전한 사회, 질서있는 개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2개를 포커스를 두고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에서 시작하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문화 인구 유입이 많기 때문에 다문화에 관련된 자국민과 타국민에 대한 갈등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거주할 때 질서와 문화를 익히는 차원에서 기초질서 지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사장님 추구하는 목표는 사회통합적인 부문이다. 기본적인 기초 질서, 법적인 갈등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사회 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둘째, 외국인 정책이 한쪽에 쏠리지 않고 균형을 잡았으면 좋겠다. 외국인정책의 경우 법질서체계과 지원 두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민간단체에서 이 두 가지 정책에 있어 균형과 중심을 잡고 진행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다. 현재 법무부가 외국인 정책 주관부서인데 출입국관리 쪽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정책 전체적인 것을 아우르는데 있어서 우리 기관(민간단체)이 도움을 줄수 있다고 본다.

셋째, 한국사회에서 외국이민자들에게 국가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데,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외국이민자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만약 외국인 상대로도 법이 강력하게 집행하고 이들도 한국사회에서 법을 지키면서 열심히 살아간다면 자국민들의 인식도 변하며 융합되어 살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외국인 내국인을 불문하고 공정한 차별받지 않는 법 체계가 필요하다. 외국인 개개인도 우리나라 문화에 동화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는 이를 구체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책자, 홍보가 필요하다.

### 3) 김해 이주민의 집

#### (1) 단체의 연혁과 사업현황

‘김해 이주민의 집’은 2013년에 ‘이주민 쉼터’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여 이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설립, 운영해온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지난해 외국인들만의 운영으로는 발전상의 한계를 느껴 내국인들의 도움을 받아 이사회를 구성하고 2018년 1월 9일자로 법무부의 사단법인 허가를 받았다.

원래 인권, 이주 노동자 상담, 쉼터 제공을 주요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오다, 2016년부터 ‘이주민 기술학교’를 김해시의 도움을 받아 운영을 시작하였다. 주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배경 자녀 주말(토요)학교. 갈 곳이 없는 주말에도 일을 하는 부모를

둔 이주배경 자녀들을 대상으로, 지난해에는 문화재단의 ‘꿈다락 사업’을 통해 진행해온 ‘주말 학교’를 2018년에는 ‘녹색사업’의 지원으로 ‘숲 체험 주말 학교’로 운영했다. 매주 토요일 이주배경 자녀 20명과 내국인 자녀 20명, 총 40여 명의 아이들이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내년에는 자체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둘째, 인권, 이주 노동자 상담. 2013년부터 이주민 쉼터를 운영하며, 다양한 외국인 유형에 따른 상담을 지원해오고 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된, 난민에 대해서도 본 기관은 다수의 사례 관리가 되어 있다.

셋째, ‘이주민 기술학교’는 중소도시 중 체류외국인이 두 번째로 많은 인구적 배경과 ‘농업’이라는 김해 지역의 배경을 바탕으로 탄생한 프로그램으로 전국 최초이며, 현재 본 기관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김해시청 농업기술센터’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본 프로그램은 3개월 정도의 이론 교육(기술 언어 교육과 그에 따른 한국어 교육 병행)과 3개월의 실습으로 구성된다. 현재 기존의 농업 교육과 더불어 2018년에는 ‘자동차정비’, ‘제과제빵(창업지원)’도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8년 12월 15일 자동차 정비 18명, 농업 12명, 양계 34명 등 60여명이 졸업할 예정이다.

## (2) 외국인정책 관련 제언

‘김해 이주민의 집’은 이주민 쉼터에서 출발한 기관이기 때문에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와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를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

첫째, 기존의 단속위주의 불법체류방지와는 상이한 전략으로써의 ‘이주민 기술학교’식의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원래 ‘이주민 기술학교’의 취지는 ‘불법체류를 방지’하는 것이다. 즉, ‘체류외국인 관리 체계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이다. 외국인 근로자들과의 상담을 통해, 불법체류자의 발생원인으로 그들이 자국으로 귀국해서 할 일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0대에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는 자국에 귀국했다 다시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다. 하지만, 40대 이상의 외국인 노동자는 그렇지 않다. 그들은 내가 돌아가면 무엇을 하고 살아야하나 하는 고민이 많다.

한국의 은퇴 후 고민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이주민 기술 학교’는 ‘고용허가제’로 들어왔던 외국인 노동자들의 ‘귀환 프로그램’과 같은 것이다. 최근 ‘토마토 비닐 하우스’를 배워간 외국인노동자가 자국에서 창업하였는데, 이처럼 귀환 전 한국의 선진농업을 배워 귀국하게 된다면 기존의 단속위주의 불법체류방지와는 상이한 전략으로 불법체류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국가별 특성과 지자체 특성에 맞게 매칭된다면, ‘비전문직취업이민자 유입 및 활용체계의 고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귀환 프로그램’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인식 변화(기술을 갖추는 것이 귀환 후의 삶에 도움이 된다는 것, 주말 시간을 투자)’, ‘사업주의 배려(귀환 준비를 하는 교육 활동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 ‘법·제도적 보완(귀환 준비 기간의 할애)’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둘째,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를 위해 프로그램 개발 위탁사업의 확충이 필요하다. 외국인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해결과제들이 존재하며, 정부가 이를 모두 해결하거나 관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난민 관리에 있어 법무부에서는 난민 심사만으로도 인력의 부족하다. 이에 사업 역량과 경력이 있는 민간단체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다. 민간단체와의 파트너십의 구축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 개발 위탁 사업’을 활용할 수 있다. 즉, 외국인 정책 관련 분야의 우수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민간단체에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다. 앞서 살핀 ‘이주민 기술학교’를 정부가 ‘이주민 기술교육 센터’로 지정하여 관련 프로그램들의 개발에 대한 사전 조사와 기획, 관리 등을 위탁하는 식으로 민관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다.

## 4) 재한외국인사회통합지원센터

### (1) 단체의 연혁과 사업현황

(사)재한외국인사회통합지원센터는 2007년부터 재한외국인 인권상담 등으로 비공식적으로 활동하다가, 부산 출입국외국인청과의 공조를 통해 사회통합프로그램

등을 추진하면서, 2009년 법무부에서 사단법인 허가를 받았다.

본 기관의 최대 장점은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과의 오랜 공조를 통해 오랜 시간 축적된 경험을 통한 사례 관리라 할 수 있다. 한국어 능력 위주의 수업으로 ‘한국사회 이해’에 대한 개념이 없던 시기에 이를 반영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였다. 구체적으로 본부에서는 흩어져 있는 비영리기관들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한국어 교육 외에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 사회의 이해’ 등과 같은 교과를 포함한 커리큘럼을 운영하였다. 또한 그리고 2010년에는 한국어 교육과 워드프로세서를 접목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2016년부터는 ‘결혼이민자 피부 미용 자격 과정’을 운영해오고 있다. 본 교육과정은 출입국외국인청에서는 프로그램 홍보를, 본 기관은 교육 진행을, 프로그램 운영비는 민간 기업에서 제공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갖추고 있다.

## (2) 외국인정책 관련 제언

(사)재한외국인사회통합지원센터는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와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의 정책목표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정책목표는 ‘이민의 전 단계를 고려한 유기적 사회통합교육 실시(②-1-[2])’와 ‘이민자 취업 및 직장생활 지원 강화(②-1-[3])’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민의 전 단계를 고려한 사회통합교육이 실시될 필요가 있고, 이민자 취업 및 직장생활 관련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겠다.

둘째, 결혼이민자의 장기체류화와 학령기 자녀의 증가는 ‘이민자의 자립’에 대한 중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결혼이민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때 출입국외국인청과의 유연한 상호협력은 사업의 홍보에 크게 도움을 준다. 이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줄 몰랐다’는 ‘정보격차’를 줄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셋째, 제3차 외국인정책의 정책목표 중 ‘개방’은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 있

는 개방’이 있다. 여기에서 “국민이 공감하는”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즉 ‘다문화 사회’라고는 하지만, 그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다. ‘다문화사회에 대한 예절, 배려, 수용’등이 국민의 인식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성세대의 경우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순응하기 더욱 어렵다. 최근 주민센터를 통해 교양강좌, 노인대학, 평생학습프로그램 등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강좌 프로그램을 통한 국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가 필요하다.

## 5) 재한외국인지원협회

### (1) 단체의 연혁과 사업현황

수원시에서 외국인 관련 민간단체를 하던 현 회장과 법무부 수원출입국관리소 전직공무원, 그리고 다양한 비영리단체의 활동가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2014년 민간단체를 설립하였다. 구체적으로 수원 출입국 이민지원 협의회로 활동하던 인원들이 사단법인을 만들어 외국인을 위한 법률, 조언, 상담, 금전적 후원, 문화행사 주체 및 홍보, 중장기 체류 지원을 위한 후원단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제도권에서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기재부의 기부단체로 등록하였고, 법무부 지정 단체가 되었으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현재 약 120명의 회원이 있으며, 15개의 분과(체육, 법률, 적응 등)별로 전문가들이 비상임으로 활동 중이며, 경기도 내 6개 지회가 있다. 현재 전국 단체로 확대 계획을 세우고 있다.

현재 재한외국인지원협회는 법무부의 이민자조기적응프로그램과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4~5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30명 정원으로 현재 약 150명 정도의 프로그램 이용자가 있다. 이민자조기적응프로그램은 한 달에 5차례 정도 운영하고 있다.

### (2) 외국인정책 관련 제언

재한외국인지원협회의 경우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와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라는 정책목표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고 생각한다. 본 협회의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이민자조기적응지원 프로그램이 이러한 정책목표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하지만 외국인정책의 혜택과 대상자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적어도 영주권을 획득한 사람에게 한국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사회복지 안전망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재한외국인지원협회는 법무부 지정, 관리 단체로 소속되어 있지만, 법무부로부터 특별한 재정 지원이나 인센티브를 받고 있지 못하다. 본 기관은 경기도에서도 비영리단체로 지정되어 있는데 경기도나 수원시에서 실시하는 외국인정책 관련 프로그램에 공모하거나 다른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외국인정책 관련 프로그램에 공동 참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7년 경기도 외국인문화 행사에 일원으로 참여하여 경기도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 또한 기재부의 후원단체로 지정되면 후원금 연말정산이 가능해져 다양한 개인과 단체로부터 후원이 용이해질 수 있다. 하지만 법무부로부터는 특별한 지원이나 인센티브가 부족하여 후원금만으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 제9장 2019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추진 방향

### 제1절 지역별 시책의 차별화

지역별 이민자 유형(연령, 체류기간, 출신국가, 체류자격)과 그에 따른 정책 필요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통점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지역에 따른 연령을 고려하였을 때 각 시도별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는 연령대는 20대 또는 30대였으며, 다음으로 높은 비율은 40대였다. 이들 연령대가 공통적으로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 영역인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등 비자 관련정보, 건강검진, 질병치료 등 보건의료 지원서비스 영역은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지역에서 고려해야 할 이민정책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지역에 따른 체류자격을 고려하였을 때 시도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10년 미만의 체류기간을 고려한 이민정책이 필요하다. 다수의 외국인의 체류기간이 10년 미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건강검진, 질병치료 등 보건의료 지원서비스와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등 비자 관련정보에 초점을 맞춘 이민정책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지역에 따른 출신국가를 고려하였을 때 다수를 차지하는 출신국가는 중국이었다. 중국 출신 이민자들을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등 비자 관련정보, 한국법, 문화 등 한국사회 관련정보, 건강검진, 질병치료 등 보건의료 지원서비스 영역의 정책이 시행되기를 희망하였다. 따라서 전체 시도에서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등 비자 관련정보, 한국 법, 문화 등 한국사회 관련정보, 건강검진, 질병치료 등 보건의료 지원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이민정책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해 보인다. 넷째, 지역에 따른 체류자격을 살펴보면, 시도에 상관없이 비전문취업(E-9, H-2) 자격을 소지한 이민자의 비율이 높았다. 이들은 한국 법, 문화 등 한국사회 관련정보, 건강검진, 질병치료 등 보건의료 지원서비스,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등 비자 관련정보 영역이 공통적으로 중요한 정책 영역이라 응답하고 있었다. 따라서 지역에 상관없이 비전문취업 대상자들이 중요한 인식하고 있는 한국 법, 문화 등 한국사회 관련정보, 건강검진, 질병치료 등 보건의료 지원서비스, 체류기

간연장, 체류자격변경 등 비자 관련정보에 초점을 맞춘 이민정책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해 보인다.

다음으로 차이점을 살펴보면, 첫째, 지역별 연령과 관련하여, 시도별로 2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은 부산, 광주, 전북, 전남이었다. 30대부터 50대까지의 이민자들뿐만 아니라 20대를 좀 더 고려한 이민정책이 이들 지역에서는 필요해 보인다. 즉, 외국인등록 등 민원접수, 편의시설 등과 관련된 생활정보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이민정책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지역별 체류기간과 관련하여,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인 외국인의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지역은 부산, 광주,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였다. 이들 지역에서는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의 외국인을 위한 이민정책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즉,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인 외국인을 위해 외국인등록 등 민원접수, 편의시설 등과 관련된 생활정보와 폭력피해의 예방, 신고, 구제, 피해보상에 초점을 맞춘 이민정책의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별 출신국가를 고려하면,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의 경우 중국 출신뿐만 아니라 베트남 출신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베트남 출신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 영역은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증 등 민원서류 신청 할 때 외국어서비스, 취업교육 및 직업교육 영역이었다. 이와 더불어, 광주에서는 중국, 베트남 출신 다음으로 우즈백 출신의 이민자들의 비율이 높았다. 이는 타 시도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우즈백 출신들의 이민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 영역은 통번역 서비스와 한국 법, 문화 등 한국사회 관련정보였다. 넷째, 지역별 체류자격을 고려하면, 교육/연수(D1~7) 자격을 소지한 이민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시도는 부산, 대구, 광주, 세종, 충북, 충남, 전북, 경북이다. 교육/연수 체류자격 소지자가 가장 필요한 정책 영역은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등 비자 관련정보와 외국인등록 등 민원접수, 편의시설 등과 관련된 생활정보 영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 영역이었다. 결혼이민자(F-6) 자격을 소지한 이민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시도는 전북, 전남, 경남이다. 거주/영주 체류자격을 소지한 이민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시도는 서울, 인천, 울산, 경기, 제주이다. 거주/영주 체류자격 소지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 영역은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등 비자 관련정보와 한국어 방문교육 영역이

었다. 결혼이민자가 가장 필요한 정책 영역은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등 비자 관련정보와 자녀교육 및 자녀학습이었다. 17개 광역시에 거주하는 체류자격 유형의 상이했으며, 체류자격에 따른 정책 우선순위도 상이하였다. 따라서 지역별로 다수의 체류자격 소지자들의 정책 필요도를 고려한 이민정책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중앙정부에서 공통적으로 수립해야 할 이민정책에 대한 골격을 완성하고, 그 골격을 기반으로 지역별 상이한 환경과 욕구를 고려한 지방자치수준에서의 세부 이민정책의 수립과 시행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중앙정부에 의한 이민정책은 이민자가 입국하여 실제 거주하는 지역의 특수 환경과 수요를 정확히, 신속하게 파악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비해, 지방자치단체는 이민자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민자의 수요를 파악할 수 있으며,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데 유리하다. 요구에 적합하지 않은 이민정책의 수립과 시행은 정책 수혜자에게 적절한 혜택을 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한 이민정책 수립과 시행에 대해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때 중앙정부는 이민정책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넘기면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부 이민정책의 시행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지방의 상이한 환경과 욕구를 고려한 세부 이민정책 수립과 시행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통합을 위한 기금 확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의무화를 통해 외국인에게 국적 취득에 있어 이용료 또는 응시료를 받으면 기금을 확충하고 있지만 이러한 이용료 또는 응시료는 기금 확보 차원에서 한계라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2가지 제안을 할 수 있다. 첫째, 외국인 고용 기업 차원의 기금 확보이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들은 저렴한 노동력의 대가로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 기업들에서 발생한 이윤의 일부분을 기금으로 확보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다른 방법은 무비자로 한국을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입국세를 거두어 들이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미국, 캐나다의 경우 무비자 입국 시 일정액의 비용을 지불한 경우 사증 면제가 가능하다. 이러한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한국에 사증 면제를 통해 입국하는 국가의 외국인에게 입국세를 거두어 들여 기금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충한 기금을 통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민 정책을 시행 할 수 있는

재원을 제공해 주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 1. 서구 선진국 사례

캐나다와 호주 모두 연방정부 내에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부서가 존재하고 있다. 캐나다는 이민-난민-시민권 부처(The Department of Immigration, Refugee, and Citizenship)가, 호주의 경우는 내무부가(Department of Home Affairs)가 이민정책을 총괄하고 있으며 다른 연방정부 부처와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한국의 경우 외국인정책본부가 존재하지만 부처 간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부처간 중복된 정책이 수립되거나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민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중앙부처가 필요해 보인다. 외국인정책본부를 이민부으로 격상하거나 아니면 이민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캐나다와 호주의 지역추천 이민자 선발제도와 정착 서비스 전달에 있어 거버넌스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캐나다와 호주 모두 연방정부가 매년 새로운 이민자 선발에 대한 쿼터가 존재하지만 지역추천 이민자 선발제도는 연방정부의 쿼터에 구애받지 않고 이민자를 선발하고 있다. 둘째, 연방정부가 제시한 이민자 선발 기준에 비해 지역추천 이민자 선발제도의 선발 기준이 다소 관대하였다. 셋째, 지역추천 이민자로 선발한 이민자의 다수는 초기 정착한 지역에서 거주하는 경향이 높았다. 캐나다는 초기 정착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하고, 호주는 일정 기간(최대 4년) 초기 정착 지역에서 거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와 호주 모두 초기 정착 거주지에 상주하는 경향이 높았다. 넷째, 지역추천 이민자의 적응을 증진하기 위해 지역 거버넌스를 활성화 하였다. 즉, 일선 현장의 정착서비스 전달에 있어 지역 기반으로 설립된 다양한 민간단체의 참여를 증진하고 있었다. 특히, 프로그램별로 지역 기반의 민간단체와 계약을 맺거나 지원금을 제공하여 세부

프로그램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특징이 있었다.

한국에서는 이민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아직까지 거버넌스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역할 확대와 관련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이민자를 선발하기 보다는 중앙정부가 수립한 이민자 선발제도에 의해 일률적으로 이민자가 선발되고 있으며, 이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서비스 또한 일률적이고, 일괄 계약에 의해 오로지 하나의 기관에 의해서만 서비스가 일선현장에서 전달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이민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는 한국 국민을 포함한 새로운 이민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또한 이들 지역은 이민자 집중화 현상뿐만 아니라 한국 국민까지도 이들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인구 유출이 심하며,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생산인력의 감축으로 지역경제가 붕괴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E-9)들은 사업장의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도시, 농어촌 지역의 거주보다는 수도권에서의 취업을 선호하고 있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생산인력의 부족과 경제 상황의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역의 경제상황과 인구변동을 고려한 지역추천 이민자 선발제도에 대한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즉, 이민자 유입이 지역의 경제 부흥과 고령화를 늦추며, 생산인력 확충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이민자 수요 조사를 통한 이민자 선발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때 캐나다와 호주의 연방정부가 주정부에게 할당을 부여했듯이, 한국의 중앙정부도 지방자치단체별로 할당을 부여하는 방식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한국의 경우 농·어촌 인력 부족의 현실에 부합한 맞춤형 외국인력 도입으로 농, 어촌 지역 인력난 해소를 목적으로 계절 근로자 제도가 도입되었다.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을 선정할 수 있으며, 사증 발급을 요청하는 제도로 캐나다와 호주의 사례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비록 90일 동안 농, 어촌 단기 인력 보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게 인력 선발을 허용한 제도이지만, 계절 근로자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양한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고 이를 다른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즉, 캐나다와 호주처럼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사

회적 인력 수요에 따른 자체 인력 선발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출입국 관리소는 이에 따른 사증 발급을 제공해 주는 제도를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본다. 이때 호주의 연방정부처럼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선발된 이민자의 경우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할 것을 명문화하는 방법도 필요해 보인다. 현재 방문취업(H-2) 비자에서 재외동포(F-4) 비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특정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데, 이러한 방법을 지방자치단체가 선발한 이민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의무적인 거주 기간 명시를 통해 브로커들에 의한 이민자 유입 암시장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그러나 의무적으로 거주 기간을 제한하게 될 경우 거주지 선택의 제약이 커지게 되면서 이민자들의 불만이 증가하게 되고, 더 나아가 지역추천 선발제도를 통한 한국 입국을 외면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이민자의 초기 적응을 증진할 수 있는 조례를 수립하고, 지역 중심으로 설립된 다양한 비영리 민간단체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거주 이민자의 적응을 증진할 수 있는 역량을 모아야 한다. 특히 호주의 정착서비스의 경우 참여하는 민간단체에 사회복지사가 채용되어 이들이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적응에 있어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파악하여 1:1 맞춤형 정착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거버넌스 중심의 이민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앞서 논의해야 할 부분은 한국의 지방자치화가 캐나다, 호주, 일본에 비해 약하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거버넌스 중심의 이민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에게 권한부여가 선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민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에게 권한을 부여하지 못한다면 지방자치단체들은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거버넌스 중심의 이민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민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에게 확실한 권한 부여를 명시화하여야 한다. 이때 지방자치단체에게 이민정책에 대해 책임만 전가하고 예산을 줄이는 방안은 지양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게 복지의 책임을 넘기며 예산을 축소하는 경향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버넌스 중심의 이민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는 책임과 함께 예산까지 배정이 필요할 것이다. 캐나다와 호주의 정착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 연방정부는 다양한 지역 중

심의 비영리 민간단체가 일선현장에서 정착서비스를 전달하는 경우 이들 단체에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다. 한편, 일본 또한 각 지방정부마다 이민자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있었으며, 각각의 지방정부에 민간단체인 국제교류 재단이 설립되어 이들 단체 중심으로 지역사회 적응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사실상, 한국정부 또한 예산 축소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부여를 강화하일본의 경우 지역 거버넌스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가교역할을 하는 협의회를 설립하여 이민자의 지역사회 적응과 관련된 정책수립 및 집행에 관한 정보제공, 인재육성, 다문화공생연수 지원(해외 선진국 연수 프로그램),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등 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한국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의 한국이민재단을 활용하여 지방정부 와 중앙정부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각각의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거점 사회통합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이민자 대상의 적응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와의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 할 수 있을 것이다.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 사회에 거주하는 이민자의 적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나 욕구를 개별조직과의 연계를 통해 문제, 욕구를 함께 해결 할 수 있는 지역 거버넌스 구축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 2. 공무원 인식조사 결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인식조사에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발견 할 수 있었다. 먼저 유사점은 다음과 같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인식조사 중 우선순위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공통적으로 우선순위에 두는 정책목표는 협력에 기반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라 할 수 있다. 결국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 협력 기반의 거버넌스 구축이 3차 기본계획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정책 목표라 할 수 있다.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에 의하면 이민관련 국제협력 증진을 가장 중요한 세부 정책목표로 고려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중앙부처, 지자체, 시민사회

협력 강화를 다음으로 중요한 세부 정책목표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9-1〉 정책 담당자의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중요도 분석

순위	중앙부처	지자체
	정책목표	정책목표
1순위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2순위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 있는 개방,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3순위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 있는 개방,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4순위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 있는 개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5순위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표 9-2〉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중점과제 중요도 분석

기본 계획	순위	중앙부처	지자체
		분류	분류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1순위	이민관련 국제협력 증진	이민관련 국제협력 증진
	2순위	중앙부처·지자체·시민사회 협력 강화, 이민정책 및 연구기반 구축	중앙부처·지자체·시민사회 협력 강화
	3순위	중앙부처·지자체·시민사회 협력 강화	중앙부처·지자체·시민사회 협력 강화

이러한 공통된 인식은 거버넌스 구축의 중요성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국제적 거버넌스를 가장 중요한 세부계획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중앙부처, 지자체, 시민사회 협력 강화가 거버넌스에서 중요한 세부계획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결과 기반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거버넌스 구축에서도 국제협력 증진은 서구 선진국과의 협력 구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경우 이민자가 집중하는 도시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매년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National Metropolis Conference([www.metropolisconference.ca/en/index.php](http://www.metropolisconference.ca/en/index.php))가 매년 전국의 각 도시에서 열리고 있다. 특히 이민자가 집중되어 있는 도시를 중심으로 컨퍼런스가 개최되고 있는데, 연구자, 정책 입안자, 공동체 및 정착 단체 대표들이 이민 및 정착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교환 할 수 있는 연례 포럼이라 할 수 있다. 이민 및 다양성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관한 강연자 및 워크샵 및 라운드 테이블 세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컨퍼런스에 한국도 참여하여 서구 선진국과 이민자가 집중되어 있는 도시들의 이민 추세와 정책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장을 이끌어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는 방안을 구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예는 미국의 주요 도시들이 Welcoming City([www.welcomingamerica.org/about/who-we-are](http://www.welcomingamerica.org/about/who-we-are))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가입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이민정책이 국경 통제 및 불법 이민자 추방 등 반 이민정책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러한 반이민정책에 대한 반발로 주요 대도시 특히 이민자가 집중된 도시들이 Welcoming City 프로그램을 만들어 도시의 이민자 유입과 이민자 적응을 적극 돋는 프로그램 및 도시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영국, 독일, 뉴질랜드, 네덜란드의 주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한국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역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외국인정책을 위한 새로운 공적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해 보인다. 부처간 협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외국인정책본부를 이민부로 전환하여 전체 이민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민부가 설립된다면 기존의 공적 전달체계를 이민부→출입국관리청→시·도→시·군·구→사회통합프로그램센터로 이루어지는 전달체계 구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 가족정책의 경우 여성가족부→시·도→시·군·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일원화 되어 있다. 이러한 일원화 되어 있는 전달체계를 기반으로 다문화 가족 정책은 많은 지원을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시군구에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민부 중심으로 지자체로의 일원화된 이민정책 전달체계 구축을 시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시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 중앙부처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간의 차이점을 살펴 볼 수 있다. 정책목표 중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구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정책목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책에 대한 중요성 및 필요성이 중앙부처, 지방부처 담당 공무원들 간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다. 중앙정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의거하여 시행계획이 수립되는 지금과 같은 체계하에서는 중앙정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방에서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수요에 대해 인식하여야 한다. 즉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서의 정책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안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담당 공무원들과의 주기적인 만남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여 인식의 차이를 좁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현재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정기적인 워크숍이 개최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와의 내실있는 협조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사회통합기금의 확보가 시급한 이유가 여기에도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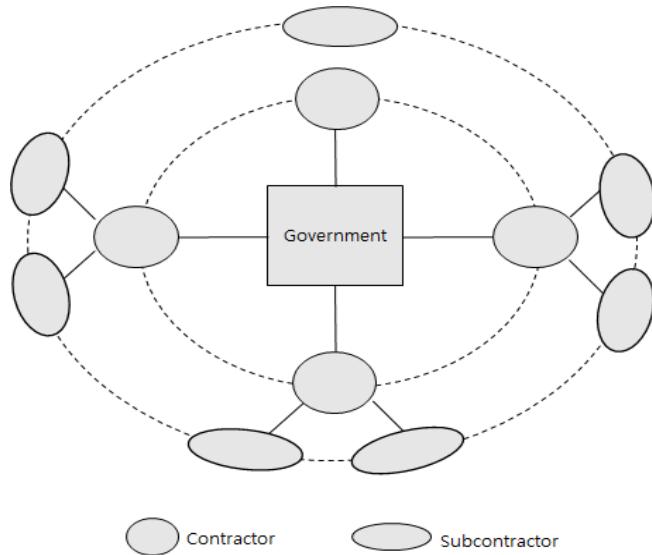
### 제3절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단체의 거버넌스 확립

외국인정책에 관여하는 조직은 정부기관으로서의 법무부를 포함하여 권역별 출입국관리청,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민간단체들이 존재하고 있다. 본 절에서 다루는 핵심내용은 이들 간의 기능분담과 운영을 어떻게 원활하게 끌고 갈 것인가, 즉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를 확립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어떤 형태의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거버넌스의 관리주체를 누구로 설정할 것인가이다. 관리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크게 3가지 유형을 고려할 수 있다(Stephen Goldsmith & William D. Eggers, 2004, 76-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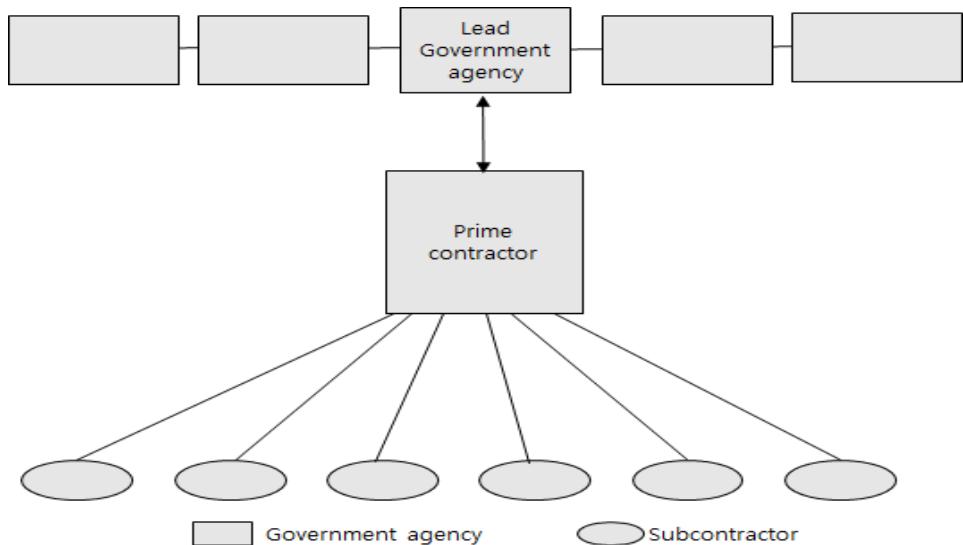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형태, 정부가 아닌 자 중에서 정부와 계약관계에 있는 서비스제공조체 등 중 정부가 지정해서 주계약자가 관리하는 형태, 그리고 정부도 아니고 서비스 제공자도 아닌 제3의 관리주체를 설정하는 형태 등을 고려할 수 있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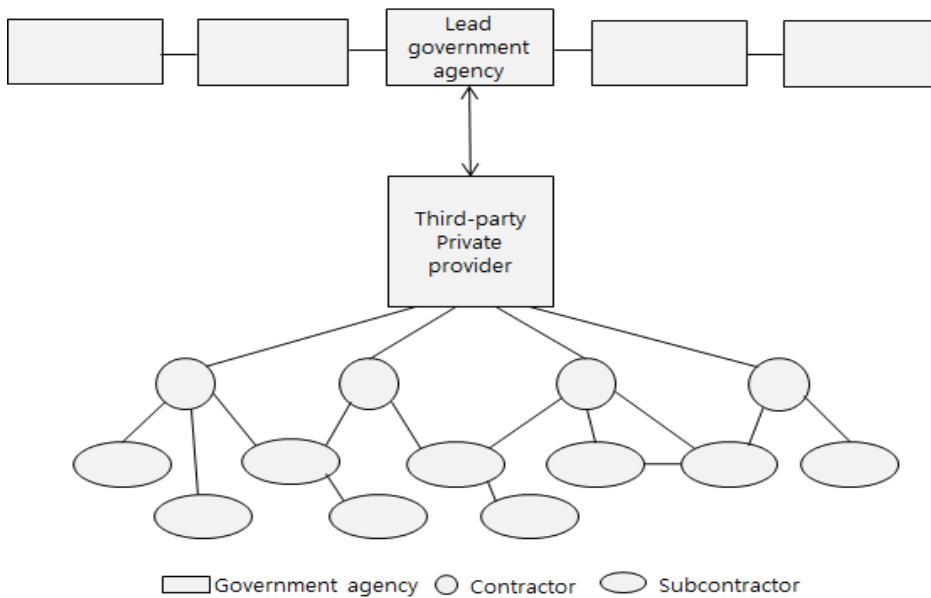
〈그림 9-1〉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 유형: 제1유형-정부가 직접 관리

※ 자료: Stephen Goldsmith and William D. Eggers, 2004,



〈그림 9-2〉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 유형: 제2유형-주계약자 관리형태

※ 자료: Stephen Goldsmith and William D. Eggers, 2004,



<그림 9-3>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 유형: 제3유형-제3의 기관 관리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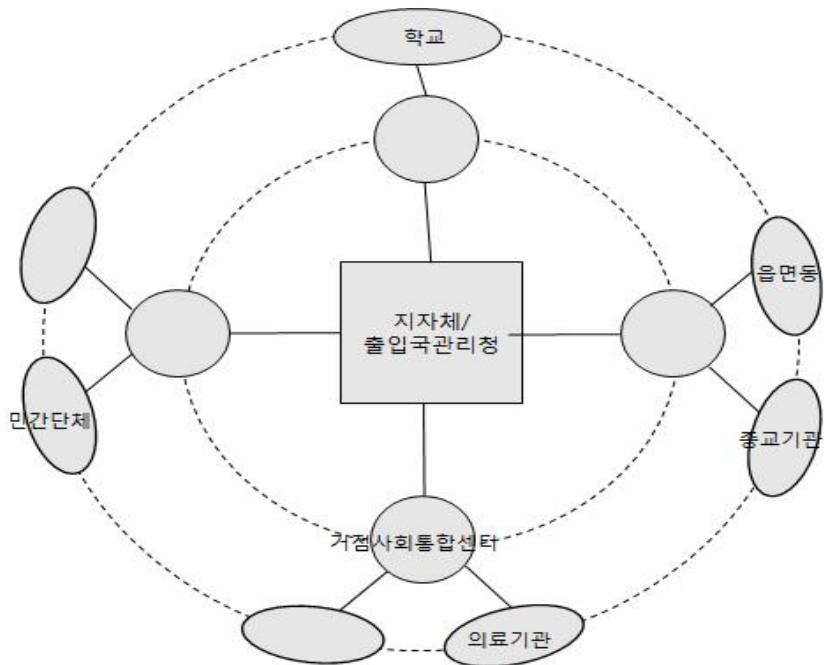
※ 자료: Stephen Goldsmith and William D. Eggers, 2004.

이러한 거버넌스 형태 중 어떤 유형을 선택할 것인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거버넌스 내 각 조직들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정해야 한다. 단순히 정보를 제공할 것인가? 혹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서비스 중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등에 대해서 정해야 한다. 둘째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즉 거버넌스 내 각 기관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specialization)을 확보하는 것, 혹은 혁신(innovation)을 끌어내는 것, 혹은 유연성(flexibility)과 신속성(speed)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공공서비스 제공 영역의 확대(increased reach)를 꾀하는 것이 목표인가 등에 대해 고려하여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셋째, 일의 성격이 지속성을 갖느냐 일회성에 그치느냐 등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넷째 자금동원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책무성과 유연성 중 어떤 가치가 더 중요하느냐에 따라서도 거버넌스 유형이 달라질 수 있는데 책무성이 보다 중요하다면 서비스공급 계약형태가 바람직하고, 유연성이 더 중요하다면 보다 느슨한 형태의 네트워크

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외국인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첫째의 고려사항에서 보면 정보제공과 서비스제공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둘째 거버넌스를 통한 목표는 사실상 모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지만 우선은 각 집행기관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즉시적인 인식과 이를 기반으로 한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로의 투입이 중요한 목표가 될 것이다. 외국인 정책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갖고 추진해야 할 사항이며, 자금동원과 관련해서는 앞의 절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사회통합기금을 마련한다는 전제하에 이러한 기금이 구축된 거버넌스 내 조직들의 활동에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가 시행하는 시책인 만큼 책무성은 반드시 따라야 하나, 거버넌스 내 조직들의 유형이나 기능, 목적 등이 다양하므로 어느 정도 시행 상에 유연성은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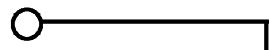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외국인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위의 3가지 유형 중 첫 번째 유형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림 9-4〉 외국인정책 민관협력 거버넌스

이러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기로 결정하고 나면, 이를 간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업무관리 어플리케이션을 공유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모든 외국인정책관련 업무 전달 및 정보 공유, 기능 조정,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 때의 정보 및 업무전달의 흐름은 하향식, 상향식 양방향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러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단계별로 접근하는 경우, 먼저 법무부 차원에서 관련 기관과의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다음 단계는 본 보고서에서 제안한 대로 외국인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새로운 조직이 확립되면 그러한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기존의 외국인정책, 다문화정책관련 기관들을 거버넌스 체제 내로 흡수하여 확대, 강화해나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참고문헌

### I. 국내문헌

- 강동관·김원숙·민지원·박성일·양윤희·이상지·현채민. (2017). 주요국가의 이민 정책추진 체계 및 이민법 . IOM이민정책연구원 연구총서 No. 06. IOM이민정책연구원. 대한민국. 고양.
- 김대진·Berry, Frances S. (2010). “정책혁신과 확산 연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한국 정책학회보」 19(4): 75–113.
- 김대진. (2011). “반복적 정책도입과 확산에 관한 경험 분석 연구: 서울시 자치구의 반복”.
- 김석주. (2009). 전자정부 추진과정에서 부처간 협력방안 연구, 「한국지역혁신논집」 4(3).
- 김찬수·오윤섭. (2013). 공공부문 유사중복사업 식별·관리 실태와 주요 이슈. 감사원 감사연구원.
- 백종윤·최영훈. (2006). 중앙행정기관의 관할중복의 원인과 해결대안–장애인 고용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2(2).
- 법무부. (2018a).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년~2022년).
- 법무부. (2018b).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8년 3월 등록외국인현황, 외국국적동포 현황’.
- 안경섭. (2012). 정부 물관리 정책 기능 중복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3(3).
- 외국인정책위원회. (2008).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 \_\_\_\_\_\_. (2017a) 2017 중앙행정기관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 \_\_\_\_\_\_. (2017b) 2017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 유승현·이혜승(2012). 노인장기요양체계의 서비스 연계성 분석–서비스 중복 및 사각 위험요인 탐색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6(4).
- 윤상호. (2005). 정부부처간 정책경쟁에 관한 연구–산업정보화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 연구」 16(2)
- 정명주. (2010). 정책수단 분석을 통해 본 한국의 다문화 정책의 특성–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6(2).
- 정명주. (2012). 한국 외국인정책의 정책체계 분석–정책내용, 정책수단, 정책과정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3(4).

- 정영태 외. (2016). 2015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평가 연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연구 보고서.
- 조일형 외. (2014). 정책학습이 정책확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출산장려금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3(3): 1-26
- 최웅선·이용모·주운현. (2012). 중앙정부의 다문화정책 조정에 관한 연구-한국과 독일의 다문화정책 비교를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22(1)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지방자치단체-중앙정부 복지사업의 유사·중복 실태 분석 및 조정 방안 연구(강혜규 외)
- 행정안전부. (2017).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 홍승현·김선미. (2014). 유사중복 사업 관리 사례. KIPF 재정지출분석센터.

## II. 국외문헌

- Baglay, S. (2012). Provincial Nominee Programs: A Note on Policy Implications and Future Research Needs. *International Migration & Integration*, 13, 121-141.
-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 (2017). 2016-17 Migration Programme Report.
- Filomeno, F. (2015). The Migration-development Nexus in Local Immigration Policy: Baltimore city and the Hispanic diaspora. *Urban Affairs Review*, 53(1), 102-137.
-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1994). Multiple employment training programs; overlap among programs questions about efficiency, GAO/HEHS-94-193.
- \_\_\_\_\_. (1995). Program consolidation: budgetary implication and other issues, GAO/T-AIMD-95-145.
- \_\_\_\_\_. (2000). Early education and care: overlap indicates need to assess, GAO/HEHS-00-78.
- \_\_\_\_\_. (2002). Special education: grant program designed to serve children age 0-5, GAO-02-394.
- \_\_\_\_\_. (2005). Government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tax expenditures represent a substantial federal commitment and need to be reexamined, GAO-05-690.
- \_\_\_\_\_. (2011). Opportunities to reduce potential duplication

- in government programs, Save tax dollars and enhance revenue, GAO-11-318SP.
- 
- (2012). 2012 Annual Report: Opportunities to reduce duplication, overlap and fragmentation, Achieving savings, and enhance revenue, GAO-12-342SP.
- 
- (2013). Wind Energy: Additional actions could help ensure effective use of federal financial support, GAO-13-136.
- 
- Landau, M.(1969). "Redundancy, Rationality, and the Problem of Duplication and Overlap",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29(4).
- 
- OECD (2018).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18, Paris: OECD Publishing.
- 
- Portes, A, and Rumbaut, R. G. (2006). *Immigrant America: A Portrait*. London, Englan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 Stephen Goldsmith and William D. Eggers. (2004). *Governing by Networks*, Brookings Institution Press(Washington, D. C.).
- 
- Sumption, M. (2014). *Giving Cities and Regions a Voice in Immigration Policy: Can National Policies Meet Local Demand?* Washington, DC: Migration Policy Institute.

### III. 기타자료집

[www.isana.org.au/dibp-is-now-department-of-home-affairs-dha](http://www.isana.org.au/dibp-is-now-department-of-home-affairs-dha)

[www.homeaffairs.gov.au/australian-border-force-abf](http://www.homeaffairs.gov.au/australian-border-force-abf)

<https://www.homeaffairs.gov.au/about/corporate/information/fact-sheets/26state>





부 록



<부록 1> 중앙행정기관 외국인정책 담당자 인식조사 설문지

## 외국인 정책 담당자 인식 조사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 등) - 통계작성 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귀하 및 귀댁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 설문지는 서울행정학회가 지방자치단체가 인식하고 있는 외국인 정책에 대해 조사하여, 향후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기반한 시행계획 추진과 과제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실시·관리되므로, 조사에서 얻어진 정보는 목적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기입하신 사항은 종합적으로 통계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귀중한 자료로 사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조사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구글 설문지를 통해 응답을 희망하시는 경우 아래의 링크에서 응답 부탁드립니다 (<https://goo.gl/forms/AiU7vqThifMHHQKC3>). 한글 파일로 응답을 희망하시는 경우 직접 한글 파일에 응답하신 이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surveycollection2018@gmail.com](mailto:surveycollection2018@gmail.com)).

본 조사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항상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18년 7, 8월

**SAPA** 서울행정학회

주관기관: **SAPA** 서울행정학회

문의사항:  
서울행정학회  
연구 담당자: 황민철, 허거훈  
TEL> 051-256-5482  
[surveycollection2018@gmail.com](mailto:surveycollection2018@gmail.com)

1. 다음은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의 주요 정책목표입니다.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부처) 시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목표를 순서대로 숫자를 기입해 주십시오.

정책목표	순위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 있는 개방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2. 다음은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중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 있는 개방”과 관련된 세부 추진 과제입니다.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부처) 시각에서 각 분류별 우선순위를 숫자로 표시해주시고(1위부터 4위), 세부 추진 과제별로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목표 달성을 있어서 어느 정도 중요한지 기입(“V”나 “O” 표시)하여 주십시오.

분류	순위	추진 과제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	매우 중요
1. 우수 인재 유치 및 성장 지원 강화		① 유치 및 정주 인프라 강화					
		② 유학생 등 교육기반 고도화					
2.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취업이민자 유치·활용		① 새로운 취업이민 수요 적극 대응					
		② 비전문직취업이민자 유입·활용체계 고도화					
3. 관광객 및 투자자 등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① 목표 그룹별 맞춤형 전략 수립					
		② 외래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③ 창업이민, 투자이민제도 개선					
4. 유입 체계 고도화 및 체류·국적 제도 개선		① 유입계획 수립 및 효과 분석 체계 마련					
		② 체류 제도 개선					
		③ 국적 제도 개선 등					

3. 다음은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중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와 관련된 세부 추진 과제입니다.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부처) 시각에서 각각의 각 분류별 우선순위를 숫자로 표시해주시고(1위부터 4위), 세부 추진 과제별로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목표 달성을 있어서 어느 정도 중요한지 기입(“V”나 “O” 표시)하여 주십시오.

분류	순위	추진 과제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	매우 중요
1. 이민 단계별 정착지원 및 사회통합 촉진		① 안정적 정착을 위한 이민자 친화적 생활환경 개선					
		② 이민의 전 단계를 고려한 유기적 사회통합 교육 실시					
		③ 이민자 취업 및 직장생활 지원 강화					
		④ 결혼이민제도 개선 및 피해자 보호 강화					
2. 이민배경 자녀 역량강화		① 미래사회에 적합한 글로벌 인재육성					
		② 성장주기별·대상 특성별 지원정책 강화					
3.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지원 내실화		① 이민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지원					
		② 거주 환경 및 의료 서비스 개선					
4. 이민자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		① 적극적 참여 활성화 정책 시행					
		② 지역 서비스 고도화					

4. 다음은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중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와 관련된 세부 추진 과제입니다.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부처) 시각에서 각 분류별 우선순위를 숫자로 표시해주시고(1위부터 2위), 세부 추진 과제별로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목표 달성을 있어서 어느 정도 중요한지 기입(“V”나 “O” 표시)하여 주십시오.

분류	순위	추진 과제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	매우 중요
1. 안전하고 신속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		① 대규모 출입국 시대에 맞는 출입국 시스템 구축					
		② 국익위해 외국인 출입국 차단 시스템 구축					
		③ 해상을 통한 출입국 관리 체계 강화					
2. 체류외국인 관리 체계 선진화		① 불법체류 발생 억제 및 법질서 준수 촉진					
		②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					

5. 다음은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중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와 관련된 세부 추진 과제입니다.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부처) 시각에서 각 분류별 우선순위를 숫자로 표시해주시고(1위부터 5위), 세부 추진 과제별로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목표 달성에 있어서 어느 정도 중요한지 기입(“V”나 “O” 표시)하여 주십시오.

분류	순위	추진 과제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	매우 중요
1. 이민자 인권보호 체계 강화		① 차별방지 제도 강화					
		② 체계적 인권보호 시스템 구축					
		③ 취업이민자 인권증진					
2. 여성·아동 등 취약 이민자 인권증진		① 농축산어업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					
		② 여성 및 아동 인권보호 강화					
		③ 외국인보호·단속관련 인권보장					
3. 문화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 제고		① 문화다양성 관련 프로그램 활성화 및 지표 관리					
		② 문화다양성 이해 제고					
4. 동포와 함께 공존·발전하는 환경 조성		① 동포 차세대 인재 양성 및 유대 강화					
		② 고국방문·체류편의 증진 및 동포에 대한 인식 개선					
5.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선진 난민 정책 추진		① 난민의 한국사회 통합체계 구축					
		② 난민심사 체계 고도화					
		③ 난민위기에 대한 국제적 공조 강화					

6. 다음은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중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와 관련된 세부 추진 과제입니다.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부처) 시각에서 각 분류별 우선순위를 숫자로 표시해주시고(1위부터 3위), 세부 추진 과제별로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목표 달성에 있어서 어느 정도 중요한지 기입(“V”나 “O” 표시)하여 주십시오.

분류	순위	추진 과제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	매우 중요
1. 이민관련 국제협력 증진		① 자발적 귀환 및 인재 양성 관련 협력 강화					
		② 국제 이민 거버넌스 참여 활성화					
2. 중앙부처·지자체·시민사회 협력 강화		① 중앙부처 차원의 통합적 정책기능 고도화					
		② 지자체 협력 증진					
		③ 시민사회 협력 강화					
3. 이민정책 및 연구기반 구축		① 이민정책 추진기반 고도화					
		② 이민관련 연구기반 강화					

7. 다음은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의 주요 정책 대상자입니다.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부처) 시각에서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이 정책 대상자들에게 어느 정도 중요한지 기입("V"나 "O" 표시)하여 주십시오.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	매우 중요
외국인전체					
관광객					
전문외국인력					
단순외국인력					
유학생					
결혼이민자					
이민배경자녀					
재외동포					
난민					
국민(전체)					
국민(성인)					
국민(청소년)					

8.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관련 시책 중 외국인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혁혁한 성과를 냈다고 생각하는 우수사례를 1개 이상 추천해 주십시오.

세부추진과제 영역	우수사례	추천사유(서술)	추천기준(선택하여 표기)
			창의성, 고난도, 확산가능성, 국민공감성, 참여, 협력, 기타
예시) 문화다양성 이 해 제고	이민자와 국민 간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	초기에는 대부분 이민자들로 구성된 자발적 모임 정도의 수준이었으나 점차 국민참여가 증가하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 어떤 다른 주민참여 프로그램보다 더 활발한 내외국인 공동참여 프로그램으로 성장	참여, 확산가능성

9.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부처)에서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시행계획 사업은 어떤 분야의 어떤 사업인지, 또한 그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분야	세부추진과제	사유

※ 다음 문항들은 귀하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빈 칸에 표시하거나 기입하여 주십시오. 본 조사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실시·관리되므로, 인적사항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성별	① 남 _____      ② 여 _____
연령	① 20세 이상~30세 미만 _____ ② 30세 이상~40세 미만 _____ ③ 40세 이상~50세 미만 _____ ④ 50세 이상~60세 미만 _____ ⑤ 60세 이상 _____
교육수준 (졸업기준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① 고등학교 이하 _____      ② 대학교(4년제 미만) _____ ③ 대학교(4년제 이상) _____      ④ 대학원 이상 _____
소속기관 및 부서	소속기관: 예시) 법무부
	소속부서: 예시) 외국인정책과
	현재 담당업무 근무 기간(1년 미만인 경우 개월 수만 기입해 주십시오):  년      /      개월

– 끝까지 성실히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2> 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인식조사 설문지

## 외국인 정책 담당자 인식 조사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 등) - 통계작성 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귀하 및 귀댁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 설문지는 서울행정학회가 지방자치단체가 인식하고 있는 외국인 정책에 대해 조사하여, 향후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기반한 시행계획 추진과 과제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실시·관리되므로, 조사에서 얻어진 정보는 목적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기입하신 사항은 종합적으로 통계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귀중한 자료로 사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조사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구글 설문지를 통해 응답을 희망하시는 경우 아래의 링크에서 응답 부탁드립니다 (<https://goo.gl/forms/xD7F6LhLPgDStvYQ2>). 한글 파일로 응답을 희망하시는 경우 직접 한글 파일에 응답하신 이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surveycollection2018@gmail.com](mailto:surveycollection2018@gmail.com)).

본 조사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항상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18년 7, 8월

**SAPA** 서울행정학회

주관기관:

**SAPA** 서울행정학회

**문의사항:**

서울행정학회

연구 담당자: 황민철, 허거훈

TEL> 051-256-5482

[surveycollection2018@gmail.com](mailto:surveycollection2018@gmail.com)

1. 다음은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의 주요 정책목표입니다.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시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목표를 순서대로 숫자를 기입해 주십시오.

정책목표	순위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 있는 개방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2. 다음은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중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 있는 개방”과 관련된 세부 추진 과제입니다.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시각에서 각 분류별 우선 순위를 숫자로 표시해주시고(1위부터 4위), 세부 추진 과제별로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목표 달성을 있어서 어느 정도 중요한지 기입(“V”나 “O” 표시)하여 주십시오.

분류	순위	추진 과제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	매우 중요
1. 우수 인재 유치 및 성장 지원 강화		① 유치 및 정주 인프라 강화					
		② 유학생 등 교육기반 고도화					
2.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취업이민자 유치·활용		① 새로운 취업이민 수요 적극 대응					
		② 비전문직취업이민자 유입·활용체계 고도화					
3. 관광객 및 투자자 등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① 목표 그룹별 맞춤형 전략 수립					
		② 외래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③ 창업이민, 투자이민제도 개선					
4. 유입 체계 고도화 및 체류·국적제도 개선		① 유입계획 수립 및 효과 분석 체계 마련					
		② 체류 제도 개선					
		③ 국적 제도 개선 등					

3. 다음은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중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와 관련된 세부 추진 과제입니다.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시각에서 각각의 각 분류별 우선순위를 숫자로 표시해주시고(1위부터 4위), 세부 추진 과제별로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목표 달성에 있어서 어느 정도 중요한지 기입(“V”나 “O” 표시)하여 주십시오.

분류	순위	추진 과제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	매우 중요
1. 이민 단계별 정착지원 및 사회통합 촉진		① 안정적 정착을 위한 이민자 친화적 생활환경 개선					
		② 이민의 전 단계를 고려한 유기적 사회통합 교육 실시					
		③ 이민자 취업 및 직장생활 지원 강화					
		④ 결혼이민제도 개선 및 피해자 보호 강화					
2. 이민배경 자녀 역량강화		① 미래사회에 적합한 글로벌 인재육성					
		② 성장주기별·대상 특성별 지원정책 강화					
3.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지원 내실화		① 이민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지원					
		② 거주 환경 및 의료 서비스 개선					
4. 이민자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		① 적극적 참여 활성화 정책 시행					
		② 지역 서비스 고도화					

4. 다음은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중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와 관련된 세부 추진 과제입니다.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시각에서 각 분류별 우선순위를 숫자로 표시해주시고(1위부터 2위), 세부 추진 과제별로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목표 달성에 있어서 어느 정도 중요한지 기입(“V”나 “O” 표시)하여 주십시오.

분류	순위	추진 과제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	매우 중요
1. 안전하고 신속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		① 대규모 출입국 시대에 맞는 출입국 시스템 구축					
		② 국익위해 외국인 출입국 차단 시스템 구축					
		③ 해상을 통한 출입국 관리 체계 강화					
2. 체류외국인 관리 체계 선진화		① 불법체류 발생 억제 및 법질서 준수 촉진					
		②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					

5. 다음은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중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와 관련된 세부 추진 과제입니다.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시각에서 각 분류별 우선순위를 숫자로 표시해주시고(1위부터 5위), 세부 추진 과제별로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목표 달성을 있어서 어느 정도 중요한지 기입(“V”나 “O” 표시)하여 주십시오.

분류	순위	추진 과제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	매우 중요
1. 이민자 인권보호 체계 강화	1	① 차별방지 제도 강화					
	2	② 체계적 인권보호 시스템 구축					
	3	③ 취업이민자 인권증진					
2. 여성·아동 등 취약 이민자 인권증진	1	① 농축산어업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					
	2	② 여성 및 아동 인권보호 강화					
	3	③ 외국인보호·단속관련 인권보장					
3. 문화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 제고	1	① 문화다양성 관련 프로그램 활성화 및 지표 관리					
	2	② 문화다양성 이해 제고					
4. 동포와 함께 공존·발전하는 환경 조성	1	① 동포 차세대 인재 양성 및 유대 강화					
	2	② 고국방문·체류편의 증진 및 동포에 대한 인식 개선					
5. 국제사회가 흥감하는 선진 난민 정책 추진	1	① 난민의 한국사회 통합체계 구축					
	2	② 난민심사 체계 고도화					
	3	③ 난민위기에 대한 국제적 공조 강화					

6. 다음은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중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와 관련된 세부 추진 과제입니다.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시각에서 각 분류별 우선순위를 숫자로 표시해주시고(1위부터 3위), 세부 추진 과제별로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목표 달성을 있어서 어느 정도 중요한지 기입(“V”나 “O” 표시)하여 주십시오.

분류	순위	추진 과제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	매우 중요
1. 이민관련 국제협력 증진	1	① 자발적 귀환 및 인재 양성 관련 협력 강화					
	2	② 국제 이민 거버넌스 참여 활성화					
2. 중앙부처·지자체·시민사회 협력 강화	1	① 중앙부처 차원의 통합적 정책기능 고도화					
	2	② 지자체 협력 증진					
	3	③ 시민사회 협력 강화					
3. 이민정책 및 연구기반 구축	1	① 이민정책 추진기반 고도화					
	2	② 이민관련 연구기반 강화					

7. 다음은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의 주요 정책 대상자입니다.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시각에서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이 정책 대상자들에게 어느 정도 중요한지 기입("V"나 "O" 표시)하여 주십시오.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	매우 중요
외국인전체					
관광객					
전문외국인력					
단순외국인력					
유학생					
결혼이민자					
이민배경자녀					
재외동포					
난민					
국민(전체)					
국민(성인)					
국민(청소년)					

8.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순수 외국인이 설립하였거나 외국인에 의해서만 운영되고 있는 민간단체(기관)를 추천해 주십시오.

지역	단체명	담당자	연락처

9.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에 의해 설립되었거나 한국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민간단체(기관)를 추천해 주십시오.

지역	단체명	담당자	연락처

10.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관련 시책 중 외국인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혁혁한 성과를 냈다고 생각하는 우수사례를 1개 이상 추천해 주십시오.

세부추진과제 영역	우수사례	추천사유(서술)	추천기준(선택하여 표기)
			창의성, 고난도, 확산가능성, 국민공감성, 참여, 협력, 기타
예시) 문화다양성 이해 제고	이민자와 국민간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	초기에는 대부분 이민자들은 구성된 자발적 모임 정도의 수준이었으나 점차 국민 참여가 증가하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 어떤 다른 주민참여 프로그램보다 더 활발한 내외국인 공동참여 프로그램으로 성장	참여, 확산가능성

11.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시행계획 사업은 어떤 분야의 어떤 사업인지, 또한 그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분야	세부추진과제	사유

※ 다음 문항들은 귀하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빈 칸에 표시하거나 기입("V", "O" 표시)하여 주십시오. 본 조사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실시·관리되므로, 인적사항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성별	① 남 _____ ② 여 _____
연령	① 20세 이상 ~ 30세 미만 _____ ② 30세 이상 ~ 40세 미만 _____ ③ 40세 이상 ~ 50세 미만 _____ ④ 50세 이상 ~ 60세 미만 _____ ⑤ 60세 이상 _____
교육수준 (졸업기준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① 고등학교 이하 _____ ② 대학교(4년제 미만) _____ ③ 대학교(4년제 이상) _____ ④ 대학원 이상 _____
소속기관 및 부서	소속기관: 예시) 서울시 관악구청
	소속부서: 예시) 외국인정책과
	현재 담당업무 근무 기간(1년 미만인 경우 개월 수만 기입해 주십시오):
년      /      개월	

– 끝까지 성실히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lt;부록 3&gt; 법무부 허가 사단법인 정책 담당자 인터뷰

면접일		면접대상자	
-----	--	-------	--

**외국인 정책 담당자 조사**

안녕하십니까? 서울행정학회는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외국인정책을 대해 조사하고, 향후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기반한 시행계획 추진과 과제발굴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질문지는 크게 세 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질문지는 반구조화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질문에 답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면접과정에 얼마든지 유연하게 답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친 염려를 하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한국의 외국인 정책의 발전과 저희 연구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 먼저, 귀 기관의 외국인 정책 관련 연혁과 현황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귀 기관의 설립취지와 과정, 조직구조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2. 귀 기관이 외국인(다문화) 관련과 사업현황과 사업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3. 귀 기관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의견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다음으로,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의 주요 정책목표와 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4. 다음은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의 주요 정책목표입니다.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부처) 시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책목표	순위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 있는 개방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 ①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 있는 개방

분류	순위	추진 과제
1. 우수 인재 유치 및 성장 지원 강화		① 유치 및 정주 인프라 강화 ② 유학생 등 교육기반 고도화
2.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취업이민자 유치·활용		① 새로운 취업이민 수요 적극 대응 ② 비전문직취업이민자 유입·활용 체계 고도화
3. 관광객 및 투자자 등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① 목표 그룹별 맞춤형 전략 수립 ② 외래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③ 창업이민, 투자이민 제도 개선
4. 유입 체계 고도화 및 체류·국적제도 개선		① 유입계획 수립 및 효과 분석 체계 마련 ② 체류 제도 개선 ③ 국적 제도 개선 등

### ②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분류	순위	추진 과제
1. 이민 단계별 정착 지원 및 사회통합 촉진		① 안정적 정착을 위한 이민자 친화적 생활환경 개선 ② 이민의 전 단계를 고려한 유기적 사회통합 교육 실시 ③ 이민자 취업 및 직장생활 지원 강화 ④ 결혼이민제도 개선 및 피해자 보호 강화
2. 이민배경 자녀 역량 강화		① 미래사회에 적합한 글로벌 인재 육성 ② 성장주기별·대상 특성별 지원정책 강화
3.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지원 내실화		① 이민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지원 ② 거주 환경 및 의료 서비스 개선
4. 이민자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		① 적극적 참여 활성화 정책 시행 ② 지역 서비스 고도화

### ③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분류	순위	추진 과제
1. 안전하고 신속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		① 대규모 출입국 시대에 맞는 출입국 시스템 구축 ② 국익위해 외국인 출입국 차단 시스템 구축 ③ 해상을 통한 출입국 관리 체계 강화
2. 체류외국인 관리 체계 선진화		① 불법체류 발생 억제 및 법질서 준수 촉진 ②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

### ④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분류	순위	추진 과제
1. 이민자 인권보호 체계 강화		① 차별방지 제도 강화 ② 체계적 인권보호 시스템 구축 ③ 취업이민자 인권증진
2. 여성·아동 등 취약 이민자 인권증진		① 농축산어업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 ② 여성 및 아동 인권보호 강화 ③ 외국인보호·단속관련 인권보장
3. 문화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 제고		① 문화다양성 관련 프로그램 활성화 및 지표 관리 ② 문화다양성 이해 제고
4. 동포와 함께 공존·발전하는 환경 조성		① 동포 차세대 인재 양성 및 유대 강화 ② 고국방문·체류편의 증진 및 동포에 대한 인식 개선
5.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선진 난민 정책 추진		① 난민의 한국사회 통합체계 구축 ② 난민심사 체계 고도화 ③ 난민위기에 대한 국제적 공조 강화

### ⑤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분류	순위	추진 과제
1. 이민관련 국제협력 증진		① 자발적 귀환 및 인재 양성 관련 협력 강화 ② 국제 이민 거버넌스 참여 활성화
2. 중앙부처·지자체·시민사회 협력 강화		① 중앙부처 차원의 통합적 정책기능 고도화 ② 지자체 협력 증진 ③ 시민사회 협력 강화
3. 이민정책 및 연구 기반 구축		① 이민정책 추진기반 고도화 ② 이민관련 연구기반 강화

4. 위에서 살핀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의 주요 정책목표와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귀 기관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과제가 무엇입니까?
  
5. 귀 기관이 향후 추진하는 혹은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와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는 방향이 일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귀 기관이 이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 마지막으로, 제3차 외국인 정책기본계획의 주요 정책목표와 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을 작성할 때 도움이 되는 새로운 정책과제를 제시해 주십시오.

6. 제3차 외국인 정책기본계획의 주요 정책목표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과제를 제시해 주십시오.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주 관 기 관      서울행정학회
- 연 구 진  
    연 구 책 임 자      정명주 (부산대 경제통상대학 공공정책학부 교수)  
    공 동 연 구 원      최무현 (상지대 인문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  
                            황민철 (순천대 사회복지학부 조교수)  
    연 구 보 조 원      허거훈 (사단법인 Dream C.T. 다문화공동체 사무국장)

##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평가 및 추진과제 발굴 연구

- 
- 발 행 인      박상기
  - 발 행 처      법무부  
                            경기도 과천시 판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연구기관      서울행정학회
  - 발 행 일      2018년 12월
  - 인 쇄 처      계림문화사(051-817-8177)
- 

발간등록번호